

조사통계 2012-02

EDI

# 2012 장애인 통계

조사통계 2012-02

EDI

# 2012 장애인 통계

- 작성기준일 : 2012년 11월 30일
-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Tel : 031-728-7108 Fax : 031-728-7143



## 머리말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1년 12월 말 현재 2,519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8천명에서 약 163% 증가하였습니다. 급격한 장애인구 증가로 인한 정책 수요의 다양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고용의무제 개정 등으로 고용, 복지, 교육, 사회 참여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 따라 다양한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통계는 그 수와 종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생산방법과 제공내용 및 정의 등의 차이도 있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장애인 통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장애인 통계집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2012 장애인 통계」는 2011년 장애인 통계에 수록된 내용을 근간으로 국내외 가장 최신 데이터를 수록하였으며, 이용자가 주로 찾는 지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림으로 보는 주요통계」를 주제영역별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자료집이 장애인 현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 자료 발간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해외통계를 수집, 번역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권기돈



# 목 차

• 일러두기	1
--------	---

## 제1장 개요 3

제1절 작성개요	5
1. 작성배경 및 필요성	5
2. 작성목표	6
3. 작성원칙	6
4. 작성의 한계	7
제2절 「2012 장애인 통계」 체계	8
1. 국내 장애인 통계	8
2. 해외 장애인 통계	18

## 제2장 국내 장애인 통계 23

제1절 장애인구	25
1. 장애인구	29
2. 장애인가구와 가족	36
3. 장애특성	44
제2절 경제	51
1. 경제수준	55
2. 경제적 생활수준	62
제3절 고용	75
1. 경제활동	79
2. 장애인 고용 현황	94
3. 기업체 특성	112
4. 장애인기업 특성	122
5. 고용서비스	129

제4절 교육 .....	137
1. 교육수준 .....	141
2. 장애아동 및 청소년 교육 .....	143
3. 특수교육 .....	150
4. 직업훈련 .....	158
제5절 보건 .....	165
1. 건강상태 및 행태 .....	169
2. 보건의료이용 .....	173
3. 보건의료제도 .....	180
제6절 복지 .....	185
1. 복지서비스 .....	189
2. 사회보장 .....	196
3. 복지시설 .....	205
제7절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	211
1. 일상생활 .....	215
2. 문화 및 여가활동 .....	225
3. 사회참여 .....	231
<b>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b>	<b>241</b>
제1절 OECD .....	243
제2절 독일 .....	261
제3절 미국 .....	272
제4절 일본 .....	280
제5절 프랑스 .....	299
제6절 영국 .....	310
<b>부 록 .....</b>	<b>319</b>
1. 수록 통계 소개 .....	321
2. 주요 용어 해설 .....	351

## 표 목차

〈표 2-1- 1〉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	29
〈표 2-1- 2〉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	30
〈표 2-1- 3〉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별 .....	31
〈표 2-1- 4〉 등록장애인 수 - 성별, 장애유형별 .....	32
〈표 2-1- 5〉 등록장애인 수 - 연령별, 장애유형별 .....	33
〈표 2-1- 6〉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	34
〈표 2-1- 7〉 장애등록연도 - 장애유형별 .....	35
〈표 2-1- 8〉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	36
〈표 2-1- 9〉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 .....	37
〈표 2-1-10〉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	38
〈표 2-1-11〉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 .....	39
〈표 2-1-12〉 평균 초혼 연령 .....	40
〈표 2-1-13〉 평균 초혼 연령 - 장애유형별 .....	40
〈표 2-1-14〉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	41
〈표 2-1-15〉 자녀 수 및 장애자녀 유무 .....	42
〈표 2-1-16〉 마지막 임신 시 장애유무 및 출산 연령 .....	43
〈표 2-1-17〉 장애발생원인 .....	44
〈표 2-1-18〉 장애발생시기 .....	45
〈표 2-1-19〉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작(ADL) .....	46
〈표 2-1-20〉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작(IADL) .....	47
〈표 2-1-21〉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소지비율 .....	48
〈표 2-1-22〉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형태 .....	50
〈표 2-2- 1〉 주관적 소속 계층 .....	55
〈표 2-2- 2〉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 .....	56
〈표 2-2- 3〉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입원별 평균 금액 .....	57
〈표 2-2- 4〉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	58
〈표 2-2- 5〉 최소한의 생활비 .....	59
〈표 2-2- 6〉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	60
〈표 2-2- 7〉 노후준비 방법 및 충분정도 .....	61

〈표 2-2- 8〉 가구특성별 주거상황	62
〈표 2-2- 9〉 가구특성별 주택설비 유무	63
〈표 2-2-10〉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64
〈표 2-2-11〉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율 및 경험률	65
〈표 2-2-12〉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66
〈표 2-2-13〉 장애인가구의 차량소유 유무	67
〈표 2-2-14〉 제1차량 차종 및 연료, 소유명의, 용도, 운전자	68
〈표 2-2-15〉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69
〈표 2-2-16〉 컴퓨터 보유율	70
〈표 2-2-17〉 장애인가구의 컴퓨터보유율	70
〈표 2-2-18〉 인터넷 이용률	71
〈표 2-2-19〉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71
〈표 2-2-20〉 일상활동별 인터넷 활용비중	72
〈표 2-2-21〉 장애인 정보격차 지수	73
〈표 2-3- 1〉 경제활동상태	79
〈표 2-3- 2〉 경제활동상태 - 연령별	80
〈표 2-3- 3〉 경제활동상태 - 장애유형별	81
〈표 2-3- 4〉 경제활동상태 - 장애정도별	81
〈표 2-3- 5〉 경제활동상태 - 교육정도별	82
〈표 2-3- 6〉 경제활동상태 - 지역별	82
〈표 2-3- 7〉 취업자 인적구성	83
〈표 2-3- 8〉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84
〈표 2-3- 9〉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85
〈표 2-3-10〉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86
〈표 2-3-11〉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87
〈표 2-3-12〉 근로형태별 취업자의 구성비	87
〈표 2-3-13〉 미취업에서 취업을 한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88
〈표 2-3-14〉 실업자 인적구성	89
〈표 2-3-15〉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90
〈표 2-3-16〉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구성비	90
〈표 2-3-17〉 일자리를 그만 둔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91
〈표 2-3-18〉 비경제활동인구 인적구성	92
〈표 2-3-19〉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	93

〈표 2-3-20〉 구직단념자 구성비	93
〈표 2-3-21〉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94
〈표 2-3-22〉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95
〈표 2-3-23〉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96
〈표 2-3-24〉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97
〈표 2-3-25〉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98
〈표 2-3-26〉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99
〈표 2-3-27〉 정부부문 장애인 수 - 성별, 장애정도별	100
〈표 2-3-28〉 정부부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101
〈표 2-3-29〉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102
〈표 2-3-30〉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103
〈표 2-3-31〉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지역별	104
〈표 2-3-32〉 민간부문 사업체 수 - 이행정도별(고용률별)	105
〈표 2-3-33〉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 성별, 장애정도별	106
〈표 2-3-34〉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 장애유형별	107
〈표 2-3-35〉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108
〈표 2-3-36〉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산업별	109
〈표 2-3-37〉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지역별	110
〈표 2-3-38〉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수 - 성별, 종사상 지위별	111
〈표 2-3-39〉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이유(1순위)	112
〈표 2-3-40〉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모집 경로	113
〈표 2-3-41〉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주로 이용한 취업알선기관	113
〈표 2-3-42〉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주된 장애인 채용 전형방식	114
〈표 2-3-43〉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1순위)	114
〈표 2-3-44〉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제공사항(중복응답)	115
〈표 2-3-45〉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1순위)	116
〈표 2-3-46〉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제공사항(중복응답)	117
〈표 2-3-47〉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 정도	118
〈표 2-3-48〉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8
〈표 2-3-49〉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119
〈표 2-3-50〉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실적	120
〈표 2-3-51〉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현황	121
〈표 2-3-52〉 장애인기업 수 - 산업별	122

〈표 2-3-53〉 장애인기업 수 - 규모별	123
〈표 2-3-54〉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123
〈표 2-3-55〉 장애인기업의 재무 상황	124
〈표 2-3-56〉 장애인기업의 창업 동기	125
〈표 2-3-57〉 장애인기업의 창업 소요기간	126
〈표 2-3-58〉 장애인기업의 초기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127
〈표 2-3-59〉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 요인	127
〈표 2-3-60〉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여부 및 계약형태	128
〈표 2-3-61〉 효과적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128
〈표 2-3-62〉 연도별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129
〈표 2-3-63〉 구인·구직 및 취업자 특성	130
〈표 2-3-64〉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131
〈표 2-3-65〉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131
〈표 2-3-66〉 고용서비스 유형	132
〈표 2-3-67〉 고용서비스 기관	132
〈표 2-3-68〉 고용서비스 참여정도	133
〈표 2-3-69〉 고용서비스 도움정도	133
〈표 2-3-70〉 자격증 보유	134
〈표 2-3-71〉 자격증 보유 - 경제활동상태별	134
〈표 2-3-72〉 자격증 도움정도	135
〈표 2-4- 1〉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141
〈표 2-4- 2〉 장애인구의 교육수준	142
〈표 2-4- 3〉 보육시설 형태	143
〈표 2-4- 4〉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144
〈표 2-4- 5〉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145
〈표 2-4- 6〉 유치원 형태	146
〈표 2-4- 7〉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147
〈표 2-4- 8〉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148
〈표 2-4- 9〉 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149
〈표 2-4-10〉 특수교육 규모	150
〈표 2-4-11〉 특수교육 대상학생 비율	151
〈표 2-4-12〉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	152
〈표 2-4-13〉 장애영역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153

〈표 2-4-14〉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154
〈표 2-4-15〉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취업 현황	155
〈표 2-4-16〉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156
〈표 2-4-17〉 특수교육예산 현황	157
〈표 2-4-18〉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 경험 여부	158
〈표 2-4-19〉 공공/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	159
〈표 2-4-20〉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159
〈표 2-4-21〉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실시기관	160
〈표 2-4-22〉 직업교육훈련 참여 및 도움정도	161
〈표 2-4-23〉 향후 직업훈련 희망분야	162
〈표 2-5- 1〉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169
〈표 2-5- 2〉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주관적 건강평가	169
〈표 2-5- 3〉 평소 건강상태	170
〈표 2-5- 4〉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171
〈표 2-5- 5〉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172
〈표 2-5- 6〉 건강검진 수진율	173
〈표 2-5- 7〉 건강검진 유형	174
〈표 2-5- 8〉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175
〈표 2-5- 9〉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176
〈표 2-5-10〉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177
〈표 2-5-11〉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178
〈표 2-5-12〉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1순위)	179
〈표 2-5-13〉 건강보험 가입 여부	180
〈표 2-5-14〉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181
〈표 2-5-15〉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182
〈표 2-5-16〉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	183
〈표 2-6- 1〉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189
〈표 2-6- 2〉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	190
〈표 2-6- 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률·이용희망률	191
〈표 2-6- 4〉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192
〈표 2-6- 5〉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194
〈표 2-6- 6〉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195
〈표 2-6- 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	196

〈표 2-6- 8〉 가구유형별 일반수급가구 수	197
〈표 2-6- 9〉 보장기간별 일반수급가구 수	198
〈표 2-6-10〉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지원현황	199
〈표 2-6-11〉 장애수당 수급자 수	200
〈표 2-6-12〉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	201
〈표 2-6-13〉 가입한 연금 종류	202
〈표 2-6-14〉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203
〈표 2-6-15〉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204
〈표 2-6-16〉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입소자 수	205
〈표 2-6-17〉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현황	206
〈표 2-6-1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이용자 수	207
〈표 2-6-19〉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현황	208
〈표 2-6-2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209
〈표 2-6-2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210
〈표 2-7- 1〉 일상생활 만족정도	215
〈표 2-7- 2〉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216
〈표 2-7- 3〉 도와주는 사람 여부	217
〈표 2-7- 4〉 도움을 줄 외부인 활용 의사	218
〈표 2-7- 5〉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	219
〈표 2-7- 6〉 외출의 빈도	220
〈표 2-7- 7〉 외출의 목적	221
〈표 2-7- 8〉 교통수단	222
〈표 2-7- 9〉 저상버스 도입현황	223
〈표 2-7-10〉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224
〈표 2-7-11〉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	225
〈표 2-7-12〉 예술행사 관람률 및 연평균 관람횟수	227
〈표 2-7-13〉 생활체육 참여율	228
〈표 2-7-14〉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코너) 설치 현황	229
〈표 2-7-15〉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정도	230
〈표 2-7-16〉 선거 투표 여부	231
〈표 2-7-17〉 장애인에 대한 견해	232
〈표 2-7-18〉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233
〈표 2-7-19〉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234

〈표 2-7-20〉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235
〈표 2-7-21〉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236
〈표 2-7-22〉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237
〈표 2-7-23〉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238
〈표 2-7-2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여부	240
〈표 3-1- 1〉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출현율	244
〈표 3-1- 2〉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 연령별	246
〈표 3-1- 3〉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247
〈표 3-1- 4〉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 경제활동상태별	249
〈표 3-1- 5〉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빈곤 비율	250
〈표 3-1- 6〉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251
〈표 3-1- 7〉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시간제 근로률	253
〈표 3-1- 8〉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실업률	255
〈표 3-1- 9〉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256
〈표 3-1-10〉 OECD 각 국가별 GDP 대비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지출	257
〈표 3-1-11〉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259
〈표 3-2- 1〉 독일 중증장애인 수	262
〈표 3-2- 2〉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연령별	263
〈표 3-2- 3〉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263
〈표 3-2- 4〉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별	264
〈표 3-2- 5〉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원인별	265
〈표 3-2- 6〉 독일 중증장애인의 실업자 수	266
〈표 3-2- 7〉 독일 통합사무소 지출	266
〈표 3-2- 8〉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67
〈표 3-2- 9〉 독일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67
〈표 3-2-10〉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규모별	268
〈표 3-2-11〉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269
〈표 3-2-12〉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0년)	270
〈표 3-2-13〉 독일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0년)	270
〈표 3-2-14〉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고용주 현황	271
〈표 3-2-15〉 독일 조정금 납부 고용주 현황	271
〈표 3-2-16〉 독일 조정금 수입 규모	271
〈표 3-3- 1〉 미국 장애인 수 - 성별	273

〈표 3-3- 2〉 미국 장애인 수 - 연령별	273
〈표 3-3- 3〉 미국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274
〈표 3-3- 4〉 미국 장애인 수 - 연령별, 장애유형별	274
〈표 3-3- 5〉 미국 장애인의 빈곤수준	275
〈표 3-3- 6〉 미국 장애인의 소득수준	275
〈표 3-3- 7〉 미국 장애인의 중위소득	276
〈표 3-3- 8〉 미국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 연령별	276
〈표 3-3- 9〉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277
〈표 3-3-10〉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장애유형별	277
〈표 3-3-11〉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월별	278
〈표 3-3-12〉 미국 장애인의 교육수준	279
〈표 3-4- 1〉 일본 장애인 수	281
〈표 3-4- 2〉 일본 신체장애인 수	282
〈표 3-4- 3〉 일본 지적장애인 수	282
〈표 3-4- 4〉 일본 정신장애인 수	282
〈표 3-4- 5〉 일본 장애인의 취업현황	283
〈표 3-4- 6〉 일본 장애인의 취업현황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284
〈표 3-4- 7〉 일본 장애인의 직종별 취업자 구성비	285
〈표 3-4- 8〉 일본 장애인의 취업형태별 취업자 구성비	286
〈표 3-4- 9〉 일본 장애인의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286
〈표 3-4-10〉 일본 장애인의 미취업자 취업희망 여부	287
〈표 3-4-11〉 일본 장애인의 미취업자 희망 취업형태	287
〈표 3-4-12〉 일본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88
〈표 3-4-13〉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89
〈표 3-4-14〉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89
〈표 3-4-15〉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0
〈표 3-4-16〉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0
〈표 3-4-17〉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0
〈표 3-4-18〉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1
〈표 3-4-19〉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기업규모별	292
〈표 3-4-20〉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292
〈표 3-4-21〉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293
〈표 3-4-22〉 일본 Hello Work 서비스 현황	294

〈표 3-4-23〉 일본 Hello Work 신규구직신청건수	295
〈표 3-4-24〉 일본 Hello Work 유효구직건수	295
〈표 3-4-25〉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296
〈표 3-4-26〉 일본 Hello Work 취직률	296
〈표 3-4-27〉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산업별	297
〈표 3-4-28〉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직종별	298
〈표 3-5- 1〉 프랑스 장애인 수	300
〈표 3-5- 2〉 프랑스의 장애 인정방법에 따른 장애인 수	301
〈표 3-5- 3〉 프랑스의 2005년 RQTH 결정 현황	301
〈표 3-5- 4〉 프랑스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302
〈표 3-5- 5〉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수	303
〈표 3-5- 6〉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수 - 성별, 연령별	303
〈표 3-5- 7〉 프랑스 장애인의 직업별 구성비	304
〈표 3-5- 8〉 프랑스 기업규모별 장애인근로자 근속연수	305
〈표 3-5- 9〉 프랑스 고용 수요 현황	306
〈표 3-5-10〉 프랑스 장애인 구직자 현황	306
〈표 3-5-11〉 프랑스 장애인 구직자 특성	307
〈표 3-5-12〉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08
〈표 3-5-13〉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08
〈표 3-5-14〉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08
〈표 3-5-15〉 프랑스 Cotorep/CDAPH의 2005년 정책 신청 현황	309
〈표 3-6- 1〉 영국 장애인 수	311
〈표 3-6- 2〉 영국 장애인 수 - 성별	311
〈표 3-6- 3〉 영국 장애인 수 - 장애유형	312
〈표 3-6- 4〉 영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313
〈표 3-6- 5〉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314
〈표 3-6- 6〉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 장애유형별	315
〈표 3-6- 7〉 영국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 비율	316
〈표 3-6- 8〉 영국 장애인의 추가 희망 취업자 비율	316
〈표 3-6- 9〉 영국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	317

## 그림 목차

[그림 2-1- 1]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	25
[그림 2-1- 2] 장애인구 대비 여성장애인 비율 .....	26
[그림 2-1- 3] 장애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 .....	26
[그림 2-1- 4]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	27
[그림 2-1- 5] 평균 가구원 수 .....	28
[그림 2-1- 6] 평균 초혼 연령 .....	28
[그림 2-2- 1] 가구 월평균 소득 및 소비 지출액 .....	51
[그림 2-2- 2] 주택유형별 가구분포 .....	52
[그림 2-2- 3] 점유형태별 가구분포 .....	52
[그림 2-2- 4] 가구특성별 주택설비 유무 .....	52
[그림 2-2- 5] 컴퓨터 보유율 .....	53
[그림 2-2- 6] 인터넷 이용률 .....	54
[그림 2-3- 1] 경제활동상태 .....	75
[그림 2-3- 2] 경제활동상태 - 성별 .....	75
[그림 2-3- 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	76
[그림 2-3- 4]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	76
[그림 2-3- 5]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77
[그림 2-3- 6]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 정도 .....	78
[그림 2-3- 7]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	78
[그림 2-4- 1]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	137
[그림 2-4- 2] 특수교육 규모 .....	138
[그림 2-4- 3]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	139
[그림 2-4- 4] 특수교육예산 현황 .....	140
[그림 2-5- 1]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	165
[그림 2-5- 2] 건강검진 수진율 .....	166
[그림 2-5- 3]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	167
[그림 2-6- 1]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	185
[그림 2-6- 2]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	185

[그림 2-6-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186
[그림 2-6- 4] 국민연금 수급자 수	187
[그림 2-6- 5] 장애인 복지시설 수	188
[그림 2-7- 1] 일상생활 만족정도	211
[그림 2-7- 2] 여가활용방법	212
[그림 2-7- 3] 예술행사 관람률	213
[그림 2-7- 4] 투표율	213
[그림 2-7- 5]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214
[그림 3-1- 1]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출현율	243
[그림 3-1- 2]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고용률 격차	243
[그림 3-2- 1] 독일 중증장애인 수	261
[그림 3-2- 2]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61
[그림 3-3- 1] 미국 장애인 수	272
[그림 3-3- 2]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272
[그림 3-4- 1] 일본 장애인 수 및 취업비율	280
[그림 3-4- 2] 일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80
[그림 3-5- 1] 프랑스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299
[그림 3-5- 2]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9
[그림 3-6- 1] 영국 장애인 수	310
[그림 3-6- 2]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310



## 일 려두기

1. 「2012 장애인 통계」에 수록된 각종 통계는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일본 후생노동성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출처를 표기하였음
  - 인쇄물로 출판된 경우 - 자료 : 발행처, 「책제목」, 발행연도
  - 웹사이트에 게재된 경우 - 자료 : 게시기관, 「자료출처」
  - 관련기관에 문서 또는 전화로 문의한 경우 - 자료 : 관련기관(작성연도)
2.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표를 가급적 원안대로 수록하였으므로 모든 통계표에 있어 형태(표축, 표두)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일부 통계표에서 발견된 합계 계산 등의 오류를 수정하여 수록하였음
3.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통계표의 메타정보(생성방법, 용어정의, 출처 등 의 정보)를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각 통계표 하단에 관련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표기하였음
4. 통계수치 중 세목과 총계(또는 합계)가 각각 반올림된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자료의 경우 주요 항목만 발췌하여 작성한 경우 계와 항목 간 자료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5. 전년 호와 일치하지 않는 통계자료는 이번 호에서 정정된 것임
6. 통계표 중 사용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0 : 단위 미만
  - - : 해당숫자 없음



# 1

Chapter

개요

- 제1절 작성개요
  1. 작성배경 및 필요성
  2. 작성목표
  3. 작성원칙
  4. 작성의 한계
- 제2절 「2012 장애인 통계」 체계
  1. 국내 장애인 통계
  2. 해외 장애인 통계



## 제1장 개요

### 제1절 작성개요

#### 1. 작성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1년 12월 말 현재 2,519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8 천명에서 약 163.0% 급증하였다. 이러한 장애인구의 증가는 1·2차 장애범주 확대로 신규 장애인이 다수 유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기인한 바도 커서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정책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보다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수요에 적합한 정책마련과 정책효과 측정을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 장애인 통계 인프라는 점차 보강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구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sup>1)</sup>」의 조사주기가 5년에서 2008년부터 각각 3년, 2년으로 단축되고, 개인적·환경적 경제활동 요인 파악을 위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가 2007년 패널구축을 시작으로 현재 5차년도 조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장애인 통계는 그 수와 종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통계 생산방법과 제공내용 및 정의 등의 차이도 있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통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장애인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2012 장애인 통계」는 「2011 장애인 통계」에 이어 현 시점에서 국내외 장애인 관련 통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인구, 고용, 교육, 복지 및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객관적인 통계 숫자를 통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구의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살펴

1) 기존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의 조사 설계와 대상을 일부 변경하여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로 실시,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로 명칭을 변경함

보고자 작성되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들에게 장애인 통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통계 작성자들에게는 향후 장애인 통계 기획 시 장애인 통계의 흐름 및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작성목표

『2012 장애인 통계』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검토·종합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인구, 경제, 고용, 복지 등 통상적인 주제별로 묶어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해외 장애인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독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장애인 통계자료도 수록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이용자가 주로 찾는 지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 현황을 가능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고, 우리나라 비장애인(가구포함)과의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구가 속해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고자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를 주제영역별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목표는 장애인 통계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다. 가령 미국의 장애인 실업률 지표를 예로 들면, 미국의 장애인 및 실업률의 정의, 자료 생성방법, 해석 시 주의사항 등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의 통계표에서는 주석, 해석 등을 설명하고 부록에서는 조사와 지표,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을 담아 이용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돋고자 하였다.

## 3. 작성원칙

본 『2012 장애인 통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통계자료는 국내외 장애인과 관련된 최신 주요 통계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sup>2)</sup>에서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할 계획이 있는 통계로 한정하였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거나 일회성 조사로 생산된 통계자료의

---

2) 정부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본 JEED 등 장애인 관련 대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OECD 등 국제기구에 한함

경우에는 가급적 제외하되, 특별조사로 진행되었거나 주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게재하였다. 특히 해외 통계의 경우 장애인 통계 생산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특별조사 형식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아 예외로 하였다.

둘째,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메타정보(통계생성정보, 작성기준, 용어정의 등)를 최대한 자세히 제공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통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로 출처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직접 해당 통계의 원시자료나 메타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해외 통계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생성한 장애인 통계를 우선적으로 수록하였다. 다만 국제기구 통계의 경우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일괄 생성, 수집하기 때문에 정리시간이 오래 소요돼 국가별 최신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독일, 미국, 일본, 영국 등 2011년에 수록되지 않은 최신통계를 탐색하였다.

넷째, 주제가 같은 분야의 통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관련성을 파악하여 가급적 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표를 원안대로 게재하였다. 원시자료 분석 시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나 통계법 상의 공표기준이나 해당 통계생산 기관의 통계공표 정책과도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차변수는 장애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성별, 연령, 장애 유형, 장애정도 등)를 상대중요도에 따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 4. 작성의 한계

첫째, 통계 간 비교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당초 국내 통계와 해외 통계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비교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으나, 통계 간 문항, 보기, 정의, 생성년도, 생성방법, 생성기준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메타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관별, 국가별 발표하는 통계의 종류가 다르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든 해외든 장애인과 관련된 통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며,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의 실태에 대해 다양한 부문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수록하는데 한계가 있고, 통계표의 종류와 내용,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제2절 「2012 장애인 통계」 체계

### 1. 국내 장애인 통계

#### 가. 장애인구

##### 1) 장애인구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등록장애인 현황	등록장애인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표 2-1- 1	29
		연도별, 성별		표 2-1- 2	30
		연도별, 장애정도별		표 2-1- 3	31
		성별, 장애유형별		표 2-1- 4	32
		연령별, 장애유형별		표 2-1- 5	33
		장애인유형별, 장애 등급별		표 2-1- 6	34
	장애인등록연도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1- 7	35

##### 2) 장애인가구와 가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가구구성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연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1- 8	36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	연도별, 장애정도별		표 2-1- 9	37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연도별		표 2-1-10	38
가족형성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1-11	39
	평균 초혼 연령	성별		표 2-1-12	40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인유무	장애인 유무		표 2-1-13	40
	자녀 수 및 장애자녀 유무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1-14	41
	마지막 임신 시 장애유무 및 출산연령			표 2-1-15	42
				표 2-1-16	43

### 3) 장애특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생	장애인생원인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2-1-17	44
	장애인생시기			표 2-1-18	45
장애정도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작(ADL)	장애정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1-19	46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작(IADL)			표 2-1-20	47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소지비율	장애인유형별, 장애 정도별		표 2-1-21	48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형태	장애인유형별		표 2-1-22	50

### 나. 경제

#### 1) 경제수준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소득과 지출	주관적 소득계층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2- 1	55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	연도별		표 2-2- 2	56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입원별 평균 금액	장애인 유형별		표 2-2- 3	57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표 2-2- 4	58	
	최소한의 생활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2-2- 5	59	
	장애인 인한 추가 소요비용	연도별		표 2-2- 6	60	
	노후준비 방법 및 충분정도	경제활동상태별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2-2- 7	61	

#### 2) 경제적 생활수준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주거 수준	가구특성별 주거상황	소득계층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표 2-2- 8	62
	가구특성별 주택설비 유무	가구형태별		표 2-2- 9	63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소득계층별		표 2-2- 10	64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율 및 경험률	-		표 2-2-11	65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소득계층별, 장애 유형별		표 2-2-12	66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소유 차량	장애인가구의 차량소유 유무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2-13	67
	제1차량 차종 및 연료, 소유명의, 용도, 운전자	장애인유형별		표 2-2-14	68
정보와 통신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표 2-2-15	69
	컴퓨터 보유율	연도별 거주규모별, 소득별, 가구구성형태별		표 2-2-16	70
	인터넷 이용률	연도별 성별, 장애유형별, 학력별, 소득별		표 2-2-17	70
	일상활동별 인터넷 활용비중	일상활동별		표 2-2-18	71
	장애인 정보격차 지수	연도별		표 2-2-19	71
				표 2-2-20	72
				표 2-2-21	73

## 다. 고용

### 1) 경제활동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상태	성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표 2-3- 1	79
		연령별		표 2-3- 2	80
		장애인유형별		표 2-3- 3	81
		장애정도별		표 2-3- 4	81
		교육정도별		표 2-3- 5	82
		지역별		표 2-3- 6	82
취업자 특성	취업자 인적구성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표 2-3- 7	8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종사상지위별		표 2-3- 8	8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성별, 산업별		표 2-3- 9	85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성별, 직업별		표 2-3-10	86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성별, 취업시간대별		표 2-3-11	87
	근로형태별 취업자의 구성비	성별, 근로형태별		표 2-3-12	87
	미취업에서 취업을 한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		표 2-3-13	88
실업자 특성	실업자 인적구성	-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2-3-14	89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구직기간별		표 2-3-15	90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구성비	성별, 취업경험 유무별		표 2-3-16	90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실업자 특성	일자리를 그만 둔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2-3-17	91
비경제활동 인구 특성	비경제활동인구 인적구성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표 2-3-18	92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	성별, 활동상태별		표 2-3-19	93
	구직단념자 구성비	성별		표 2-3-20	93

## 2) 장애인 고용 현황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3-21	94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3-22	95		
2011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3-23	96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3-24	97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3-25	98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3-26	99		
	정부부문 장애인 수			표 2-3-27	100		
				표 2-3-28	101		
				표 2-3-29	102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3-30	103		
				표 2-3-31	104		
				표 2-3-32	105		
1인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표 2-3-33	106		
				표 2-3-34	107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표 2-3-35	108			
			표 2-3-36	109			
1인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규모별	표 2-3-37	110		
			산업별	표 2-3-38	111		
			지역별				
			성별, 종사상				
			지위별				

## 3) 기업체 특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도입과 채용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이유(1순위)	규모별, 이행정도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표 2-3-39	112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모집 경로			표 2-3-40	113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주로 이용한 취업알선기관			표 2-3-41	113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주된 장애인 채용 전형방식			표 2-3-42	114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1순위)			표 2-3-43	114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제공사항(중복응답)			표 2-3-44	115
노무관리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1순위)			표 2-3-45	116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제공사항(중복응답)			표 2-3-46	117
장애인 고용 인식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 정도			표 2-3-47	118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표 2-3-48	118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표 2-3-49	119
산재보험 장해급여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실적	연도별, 장해등급별	산재보험 사업연보	표 2-3-50	120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현황	연도별		표 2-3-51	121

## 4) 장애인기업 특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기업 현황	장애인기업 수	연도별, 산업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표 2-3-52	122
		연도별, 규모별		표 2-3-53	123
재무 현황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규모별, 산업별		표 2-3-54	123
		연도별, 규모별, 산업별		표 2-3-55	124
창업 현황	장애인기업의 창업 동기 장애인기업의 창업 소요기간 장애인기업의 초기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규모별, 산업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표 2-3-56	125
				표 2-3-57	126
				표 2-3-58	127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창업 현황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 요인	규모별, 산업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표 2-3-59	127
경영활동 및 지원정책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여부 및 계약형태			표 2-3-60	128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표 2-3-61	128

### 5) 고용서비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고용서비스 현황	연도별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연도별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표 2-3-62	129
	구인·구직 및 취업자 특성	-		표 2-3-63	130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표 2-3-64	131
서비스 이용경험	고용서비스 유형	경제활동상태별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2-3-65	131
	고용서비스 기관			표 2-3-66	132
	고용서비스 참여정도			표 2-3-67	132
	고용서비스 도움정도			표 2-3-68	133
	자격증 보유			표 2-3-69	133
자격증 보유	자격증 보유	-	경제활동상태별	표 2-3-70	134
		-		표 2-3-71	134
	자격증 도움정도	-		표 2-3-72	135

## 라. 교육

### 1) 교육수준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교육수준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 구성비	연도별, 성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4- 1	141
	장애인구의 교육수준	장애인유형별		표 2-4- 2	142

### 2) 장애아동 및 청소년 교육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보육시설	보육시설 형태	장애인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4- 3	143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표 2-4- 4	144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보육시설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설립주체별	보육통계	표 2-4- 5	145
유치원	유치원 형태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4- 6	146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표 2-4- 7	147
재활치료 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표 2-4- 8	148
	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표 2-4- 9	149

### 3) 특수교육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특수교육 현황	특수교육 규모	연도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표 2-4-10	150	
	특수교육 대상학생 비율			표 2-4-11	151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			표 2-4-12	152	
	장애인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2-4-13	153	
졸업생 진로현황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연도별		표 2-4-14	154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취업 현황			표 2-4-15	155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표 2-4-16	156	
	특수교육 예산 현황			표 2-4-17	157	

### 4) 직업훈련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직업훈련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 경험 여부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4-18	158
	공공/민간기관	-		표 2-4-19	159
	직업능력개발 경험	경제활동상태별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2-4-20	159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실시기관	-		표 2-4-21	160
	직업교육훈련 참여 및 도움정도	-		표 2-4-22	161
	향후 직업훈련 희망분야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4-23	162

## 마. 보건

### 1) 건강상태 및 행태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주관적 건강평가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성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5- 1	169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주관적 건강평가	-		표 2-5- 2	169
	평소 건강상태	장애인 유형별		표 2-5- 3	170
장애치료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장애인 유형별		표 2-5- 4	171
만성질환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장애인 유형별		표 2-5- 5	172

### 2) 보건의료이용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예방	건강검진 수진율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5- 6	173
	건강검진 유형			표 2-5- 7	174
외래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5- 8	175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표 2-5- 9	176
스트레스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5-10	177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표 2-5-11	178
기타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 (1순위)			표 2-5-12	179

### 3) 보건의료제도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 여부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5-13	180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표 2-5-14	181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연도별	건강보험 통계연보	표 2-5-15	182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	-		표 2-5-16	183

## 바. 복지

## 1) 복지서비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서비스 이용	장애인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6- 1	189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	-		표 2-6- 2	190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 률·이용희망률	-		표 2-6- 3	191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	장애인유형별		표 2-6- 4	192
서비스 욕구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연도별, 장애등급별	사회조사	표 2-6- 5	194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표 2-6- 6	195

## 2) 사회보장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형태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6- 7	196
	가구유형별 일반수급가구 수	연도별		표 2-6- 8	197
	보장기간별 일반수급가구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표 2-6- 9	198
장애인 및 장애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지원현황	연도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참고자료	표 2-6-10	199
	장애인수당 수급자 수	연도별, 지역별	장애인 및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표 2-6-11	200
	장애인 아동수당 수급자 수			표 2-6-12	201
연금	가입한 연금 종류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6-13	202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연도별	국민연금 통계연보	표 2-6-14	203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성별, 연령별		표 2-6-15	204

## 3) 복지시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입소자 수	연도별, 성별, 연령 별, 장애유형별	보건복지 통계연보	표 2-6-16	205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현황	연도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표 2-6-17	206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이용자 수	연도별		표 2-6-18	207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현황	연도별		표 2-6-19	208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연도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표 2-6-20	20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		표 2-6-21	210

## 사.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 1) 일상생활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일상생활 만족도	일상생활 만족정도	장애인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7- 1	215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2-7- 2	216
	도와주는 사람 여부	장애인유형별		표 2-7- 3	217
	도움을 줄 외부인 활용 의사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2-7- 4	218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	연도별, 소득수준별, 성별, 연령별	보건복지 백서	표 2-7- 5	219
외출 및 이동	외출의 빈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7- 6	220
	외출의 목적	장애인유형별		표 2-7- 7	221
	교통수단	장애인유형별		표 2-7- 8	222
	저상버스 도입현황	지역별	교통약자이동 편의실태조사	표 2-7- 9	223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지역별		표 2-7-10	224

### 2) 문화 및 여가활동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	장애인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7-11	225
	예술행사 관람률 및 연평균 관람횟수	-		표 2-7-12	227
	생활체육 참여율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표 2-7-13	228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문화 및 여가활동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코너) 설치 현황	-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표 2-7-14	229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정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7-15	230

### 3) 사회참여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정치참여	선거 투표 여부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7-16	231
사회적 인식	장애인에 대한 견해	연도별	사회조사	표 2-7-17	232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표 2-7-18	233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표 2-7-19	234
차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연도별, 장애등급별	사회조사	표 2-7-20	235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7-21	23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표 2-7-22	237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표 2-7-23	238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 여부	장애인유형별		표 2-7-24	240

## 2. 해외 장애인 통계

### 가. OECD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각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국가별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표 3-1- 1	244
		국가별, 연령별		표 3-1- 2	246
경제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국가별, 연도별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표 3-1- 3	247
		국가별, 경제활동상태별		표 3-1- 4	249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빈곤 비율	국가별		표 3-1- 5	250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고용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국가별, 연도별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표 3-1- 6	251
	각 국가별 장애인 시간제 근로률	국가별		표 3-1- 7	253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실업률	국가별		표 3-1- 8	255
교육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국가별		표 3-1- 9	256
복지	각 국가별 GDP 대비 장애인 및 상병급여 지출	국가별, 연도별		표 3-1-10	257
	각 국가별 근로가능 연령 장애인 수급자 비율			표 3-1-11	259

## 나. 독일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중증장애인 수	연도별, 성별	중증장애인 통계	표 3-2- 1	262
		연도별, 연령별		표 3-2- 2	263
		장애유형별		표 3-2- 3	263
		연도별, 장애정도별		표 3-2- 4	264
		장애인원별		표 3-2- 5	265
고용	중증장애인의 실업자 수	연도별	연례보고서	표 3-2- 6	266
	통합사무소 지출			표 3-2- 7	266
고용의무 현황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부문별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2- 8	267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기관형태별		표 3-2- 9	267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규모별		표 3-2-10	268
		연도별, 산업별		표 3-2-11	269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0년)	부문별		표 3-2-12	270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0년)	기관형태별		표 3-2-13	270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고용주 현황	연도별	연례보고서	표 3-2-14	271
	조정금 납부 고용주 현황			표 3-2-15	271
	조정금 수입 규모			표 3-2-16	271

## 다. 미국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장애인 수	성별	American Community Survey	표 3-3- 1	273
		연령별		표 3-3- 2	273
		장애인유형별		표 3-3- 3	274
		연령별, 장애유형별		표 3-3- 4	274
경제	장애인의 빈곤수준	-	American Community Survey	표 3-3- 5	275
	장애인의 소득수준	-		표 3-3- 6	275
	장애인의 중위소득	-		표 3-3- 7	276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연령별		표 3-3- 8	276
고용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Current Population Survey	표 3-3- 9	277
		장애인유형별		표 3-3-10	277
		월별		표 3-3-11	278
교육	장애인의 교육수준	연령별	Current Population Survey	표 3-3-12	279

## 라. 일본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장애인 수	연령별	장애인 백서	표 3-4- 1	281	
	신체장애인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3-4- 2	282	
	지적장애인 수	장애정도별		표 3-4- 3	282	
	정신장애인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3-4- 4	282	
취업현황	장애인의 취업현황	연령별, 장애유형별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표 3-4- 5	283	
		장애인유형별, 장애 정도별		표 3-4- 6	284	
	직종별 취업자 구성비	직종별		표 3-4- 7	285	
	취업형태별 취업자 구성비	장애인유형별, 취업 형태별		표 3-4- 8	286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장애인유형별		표 3-4- 9	286	
	미취업자 취업희망 여부			표 3-4-10	287	
	미취업자 희망 취업형태			표 3-4-11	287	
고용의무 현황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표 3-4-12	288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기관형태별		표 3-4-13	289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표 3-4-14	289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고용의무 현황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기관형태별 연도별 기업규모별 산업별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표 3-4-15	290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4-16	290
	독립행정법인 등의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4-17	290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4-18	291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표 3-4-19	292
	Hello Work 서비스 현황			표 3-4-20	292
	Hello Work 신규구직신청수			표 3-4-21	293
	Hello Work 유효구직건수			표 3-4-22	294
	Hello Work 취직잔수			표 3-4-23	295
	Hello Work 취직률			표 3-4-24	295
고용 서비스	Hello Work 취직건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표 3-4-25	296
	Hello Work 취직률			표 3-4-26	296
	Hello Work 취직건수	장애인 유형별, 산업별 장애인 유형별, 직종별		표 3-4-27	297
	Hello Work 취직률			표 3-4-28	298

## 마. 프랑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장애인 수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Atlas National	표 3-5- 1	300
	장애인 인정방법에 따른 장애인 수	-		표 3-5- 2	301
	2005년 RQTH 결정 현황	-		표 3-5- 3	301
고용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성별, 연령별	Atlas National	표 3-5- 4	302
	장애인 근로자 수	연령별		표 3-5- 5	303
	장애인의 직업별 구성비	성별, 연령별		표 3-5- 6	303
	기업규모별 장애인 근로자 근속연수	직업별		표 3-5- 7	304
	고용 수요 현황	기업규모별		표 3-5- 8	305
	장애인 구직자 현황	-		표 3-5- 9	306
	장애인 구직자 특성	연도별		표 3-5-10	306
				표 3-5-11	307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고용의무 현황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연간보고서 Atlas National	표 3-5-12	308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5-13	308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5-14	308
복지	Cotorep/CDAPH의 2005년 정책 신청 현황	-	Atlas National	표 3-5-15	309

## 바. 영국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장애인 수	연도별	Family Resources Survey	표 3-6- 1	311
		연도별, 성별		표 3-6- 2	311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3-6- 3	312
고용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연도별	Labor Force Survey	표 3-6- 4	313
	장애인의 고용률	연도별, 근로시간제별		표 3-6- 5	314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3-6- 6	315
취업자 특성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 비율	연도별	Labor Force Survey	표 3-6- 7	316
	장애인의 추가 희망 취업자 비율			표 3-6- 8	316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			표 3-6- 9	317

# 2

Chapter

## 국내 장애인 통계

- 제1절 장애인구
- 제2절 경 제
- 제3절 고 용
- 제4절 교 육
- 제5절 보 건
- 제6절 복 지
- 제7절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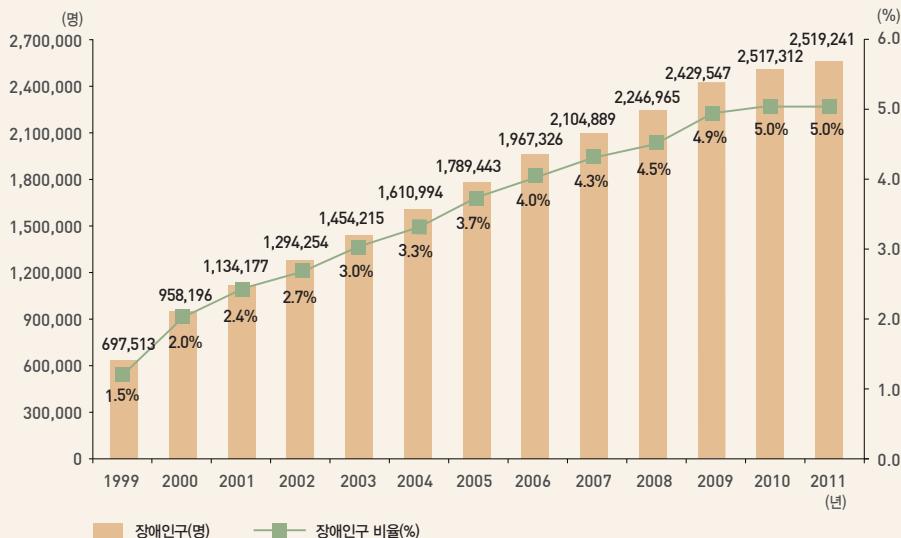
##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제 1 절 장애인구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그림 2-1-1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주 1) 장애인구 비율(%) = (등록장애인 수/주민등록인구 수)×100

2) 장애유형 확대 : 5개 유형→10개 유형(2000.1)→15개 유형(2003.7)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 2011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519,241명으로 총인구(통계청, 2011년 주민등록인구 50,734,284명) 대비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1·2차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등록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장애인 비율은 1999년 1.5%에서 2011년 5.0%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2 장애인구 대비 여성장애인 비율



주 : 여성장애인 비율(%) = (여성장애인 수/등록장애인 수) × 100

그림 2-1-3 장애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



주 1)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며, 단,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34.3% 적용)도 인정함(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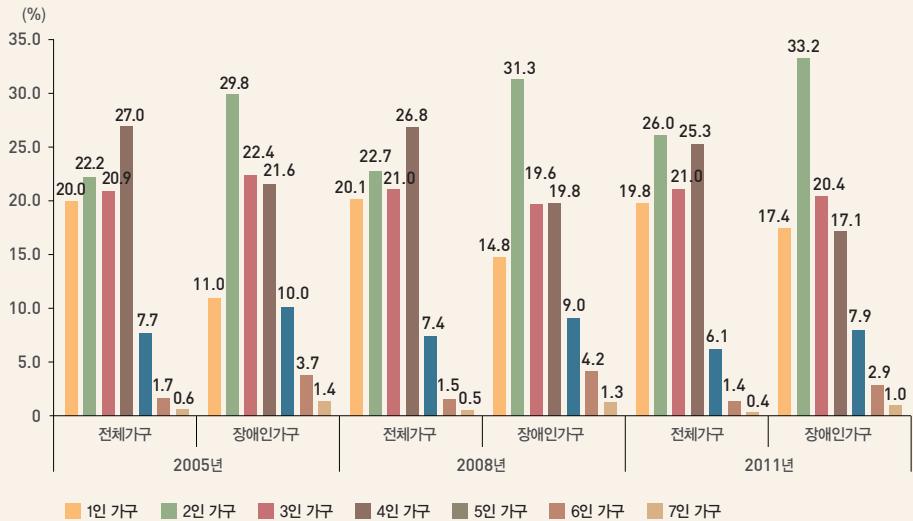
2) 중증장애인 비율(%) = (중증장애인 수/등록장애인 수) × 100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 2011년 여성장애인 비율은 41.8%로 매년 증가하고, 중증장애인 비율은 32.9%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1-4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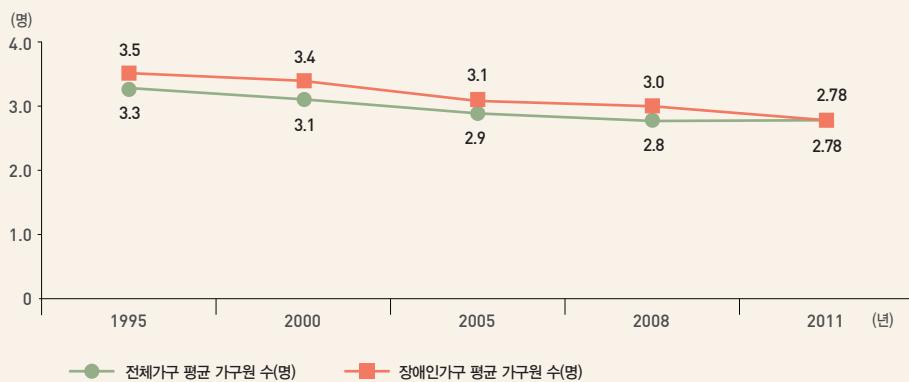
주 1)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 2) 전체가구는 일반가구(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또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함.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친족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함
- 3) 2008년 전체가구는 통계청 「2007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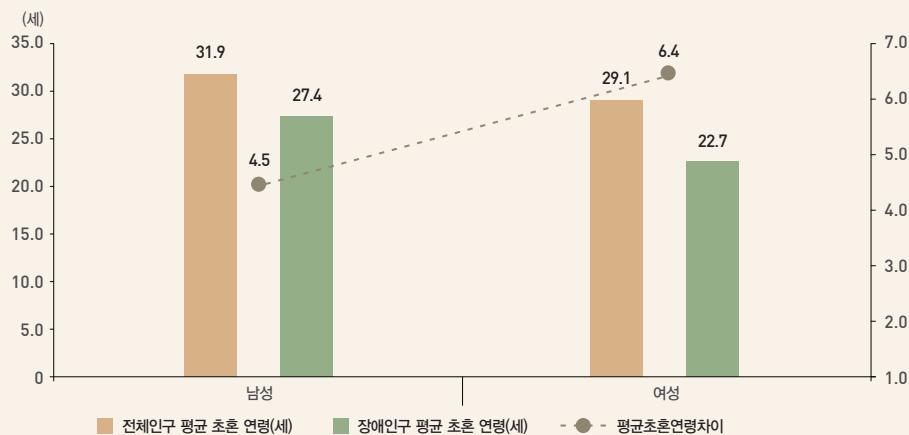
- 2011년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2인 가구'가 3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가구도 '2인 가구'의 비율이 26.0% 가장 높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남

그림 2-1-5 평균 가구원 수



주 1) 평균 가구원 수(명) = 총 가구원 수(명)/가구 수(가구)  
 2) 2008년 전체가구는 통계청 「2007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수치임

그림 2-1-6 평균 초혼 연령



주 1) 전체인구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구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통계청, 「2011 인구동태통계연보」, 201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년도

- ◉ 장애인가구와 전체가구 모두 조사시마다 평균 가구원 수는 소폭 감소하는 비슷한 추세를 보임
- ◉ 장애인구의 초혼 평균 연령은 25.3세로, 전체인구에 비해 '남성' 4.5세, '여성' 6.4세 빠른 것으로 나타남

## 1. 장애인구

### 가. 등록장애인 현황

#### 1) 등록장애인 수

〈표 2-1-1〉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명, 천명,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장 애 인 구	697,513	958,196	1,134,777	1,294,254	1,454,215	1,610,994	1,789,443	1,967,336	2,104,889	2,246,965	2,429,547	2,517,312	2,519,241
(증가율)		(37.4)	(18.4)	(14.1)	(12.4)	(10.8)	(11.1)	(9.9)	(7.0)	(6.7)	(8.1)	(3.6)	(0.08)
등 록 인 구	47,336	47,733	48,022	48,230	48,387	48,584	48,782	48,992	49,269	49,540	49,773	50,516	50,734
(비율)	(1.5)	(2.0)	(2.4)	(2.7)	(3.0)	(3.3)	(3.7)	(4.0)	(4.3)	(4.5)	(4.9)	(5.0)	(5.0%)
지 체	502,647	606,422	682,325	754,651	813,916	883,296	965,014	1,049,396	1,114,094	1,191,013	1,298,331	1,387,722	1,333,429
뇌 병 변*	-	33,126	64,950	91,998	117,514	142,804	168,585	195,253	214,751	232,389	251,818	261,746	260,718
시 각	46,957	90,997	115,911	135,704	152,857	170,107	189,933	196,507	216,881	228,126	241,237	249,259	251,258
청각/언어	67,890	87,387	105,711	123,823	139,325	155,382	175,587	205,155	218,206	238,560	262,050	277,610	278,530
지 적	80,019	86,793	94,951	103,640	112,043	119,207	127,881	137,596	142,589	146,898	154,953	161,249	167,479
자 폐 성*	-	1,514	2,516	4,014	5,717	7,740	9,518	10,926	11,874	12,954	13,933	14,888	15,857
정 신*	-	23,559	32,581	39,494	46,883	54,333	63,642	75,058	81,961	86,624	94,776	95,821	94,739
신 장*	-	23,427	28,118	32,094	34,884	38,175	41,823	44,571	47,509	50,474	54,030	57,142	60,110
심 장*	-	4,971	7,114	8,836	10,409	11,634	12,807	13,739	14,352	14,732	15,127	12,864	9,542
호흡기**	-	-	-	-	7,039	9,768	11,728	13,035	14,289	14,984	15,860	15,551	14,671
간**	-	-	-	-	3,108	4,072	5,160	5,875	6,329	6,968	7,730	7,920	8,145
안 면**	-	-	-	-	673	1,114	1,490	1,863	2,149	2,337	2,505	2,696	2,715
장루·요루*	-	-	-	-	6,585	8,182	9,575	10,461	11,184	11,740	12,437	13,072	13,098
간 질**	-	-	-	-	3,262	5,180	6,700	7,891	8,721	9,166	9,760	9,772	8,950

주 1) 증가율(%)은 전년 등록장애인 대비, 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수를 말함

2) 장애유형 확대 : 5개 유형→10개 유형\*(2000.1)→15개 유형\*\*\*(2003.7)

3) 장애유형 용어변경(2008.2) : 정신지체→지적장애,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37/342페이지 참조

▣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 : 351페이지 참조

- 2011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2,519,241명으로 총인구(50,734,284명) 대비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옴
  - 등록장애인 수는 1차 장애범주 확대 시점인 2000년 37.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 까지 매년 10%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도입으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함

〈표 2-1-2〉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남 성		여 성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1999년	697,513	100.0	501,902	72.0	195,611	28.0
2000년	958,196	100.0	669,762	69.9	288,434	30.1
2001년	1,134,177	100.0	779,356	68.7	354,821	31.3
2002년	1,294,254	100.0	872,739	67.4	421,515	32.6
2003년	1,454,215	100.0	964,363	66.3	489,852	33.7
2004년	1,610,994	100.0	1,047,562	65.0	563,432	35.0
2005년	1,789,443	100.0	1,138,641	63.6	650,802	36.4
2006년	1,967,326	100.0	1,223,644	62.2	743,682	37.8
2007년	2,104,889	100.0	1,284,089	61.0	820,800	39.0
2008년	2,246,965	100.0	1,345,557	59.9	901,408	40.1
2009년	2,429,547	100.0	1,425,896	58.7	1,003,651	41.3
2010년	2,517,312	100.0	1,468,333	58.3	1,048,979	41.7
2011년	2,519,241	100.0	1,466,460	58.2	1,052,781	41.8

주 :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7/342페이지 참조

☞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 : 351페이지 참조

- 2011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1,466,460명(58.2%), '여성' 1,052,781명(41.8%)으로, 매년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3〉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중 중		경 중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1999년	697,513	100.0	300,932	43.1	396,581	56.9
2000년	958,196	100.0	406,432	42.4	551,764	57.6
2001년	1,134,177	100.0	468,254	41.3	665,923	58.7
2002년	1,294,254	100.0	522,426	40.4	771,828	59.6
2003년	1,454,215	100.0	569,097	39.1	885,118	60.9
2004년	1,610,994	100.0	616,057	38.2	994,937	61.8
2005년	1,789,443	100.0	668,139	37.3	1,121,304	62.7
2006년	1,967,326	100.0	718,644	36.5	1,248,682	63.5
2007년	2,104,889	100.0	755,390	35.9	1,349,499	64.1
2008년	2,246,965	100.0	786,090	35.0	1,460,875	65.0
2009년	2,429,547	100.0	831,117	34.2	1,598,430	65.8
2010년	2,517,312	100.0	841,479	33.4	1,675,833	66.6
2011년	2,519,241	100.0	827,728	32.9	1,691,513	67.1

주 1)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며, 단,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장애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 장애인도 인정함

2) 지체 3급 장애인의 경우는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지체 3급 등록장애인의 장애부위 정보를 활용하여 중증비율(34.3%)을 산출하여 각 연도에 적용함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7/342페이지 참조

- 2011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중증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은 827,728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4〉 등록장애인 수 – 성별, 장애유형별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남 성		여 성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2,519,241	100.0	1,466,460	58.2	1,052,781	41.8
지 체	1,333,429	52.9	773,142	58.0	560,287	42.0
뇌 병 변	260,718	10.3	140,749	54.0	110,969	42.6
시 각	251,258	10.0	150,130	59.8	101,128	40.2
청 각	261,067	10.4	143,649	55.0	117,418	45.0
언 어	17,463	0.7	12,626	72.3	4,837	27.7
지 적	167,479	6.6	101,431	60.6	66,048	39.4
자 폐 성	15,857	0.6	13,466	84.9	2,391	15.1
정 신	94,739	3.8	50,160	52.9	44,579	47.1
신 장	60,110	2.4	34,219	56.9	25,891	43.1
심 장	9,542	0.4	5,974	62.6	3,568	37.4
호 흡 기	14,671	0.6	11,252	76.7	3,419	23.3
간	8,145	0.3	5,990	73.5	2,155	26.5
안 면	2,715	0.1	1,583	58.3	1,132	41.7
장루 · 요루	13,098	0.5	8,128	62.1	4,970	37.9
간 질	8,950	0.4	4,961	55.4	3,989	44.6

주 :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 : 351페이지 참조

- 2011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52.9%, 「청각장애」 10.4%, 「뇌병변  
장애」 10.3%, 「시각장애」 10.0%, 「지적장애」 6.6%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안면장애, 간장애, 심장장애, 간질장애  
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5〉 등록장애인 수 - 연령별, 장애유형별

구 분	전 체	-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전 체	2,519,241 (100.0)	24,114 (1.0)	70,278 (2.8)	95,156 (3.8)	196,676 (7.8)	367,756 (14.6)	545,558 (21.6)	540,841 (21.5)	503,412 (19.9)	176,450 (7.0)
지 체	1,333,429 (100.0)	1,412 (0.1)	7,343 (0.5)	28,390 (2.1)	96,890 (7.3)	212,387 (15.9)	331,399 (24.9)	311,807 (23.4)	271,455 (20.4)	72,346 (5.4)
뇌 병 변	260,718 (100.0)	6,561 (2.5)	7,653 (2.9)	6,231 (2.4)	9,801 (3.8)	19,133 (7.4)	45,727 (17.5)	65,520 (25.1)	74,477 (28.6)	25,615 (9.8)
시 각	251,258 (100.0)	1,006 (0.4)	3,422 (1.4)	8,414 (3.3)	20,875 (8.3)	34,326 (13.7)	49,837 (19.8)	59,027 (23.5)	53,300 (21.2)	21,051 (8.4)
청 각	261,067 (100.0)	1,795 (0.7)	4,036 (1.5)	5,137 (2.0)	9,974 (3.8)	20,390 (7.8)	38,110 (14.6)	55,859 (21.4)	74,632 (28.6)	51,134 (19.6)
언 어	17,463 (100.0)	1,020 (5.8)	736 (4.2)	775 (4.4)	1,717 (9.8)	2,646 (15.2)	3,475 (19.9)	3,453 (19.9)	2,954 (16.9)	687 (3.9)
지 적	167,479 (100.0)	8,596 (5.1)	36,346 (21.7)	36,663 (21.9)	31,599 (18.9)	26,264 (15.7)	18,098 (10.8)	6,849 (4.1)	2,688 (1.6)	376 (0.2)
자 폐 성	15,857 (100.0)	3,081 (19.4)	9,060 (57.1)	3,325 (21.1)	303 (1.9)	66 (0.4)	17 (0.1)	4 (0.0)	0 (0.0)	1 (0.0)
정 신	94,739 (100.0)	20 (0.0)	306 (0.3)	3,378 (3.6)	15,497 (16.4)	33,475 (35.3)	28,287 (29.9)	10,298 (10.9)	3,079 (3.2)	399 (0.4)
신 장	60,110 (100.0)	39 (0.1)	330 (0.5)	1,340 (2.2)	5,501 (9.1)	11,656 (19.4)	16,945 (28.2)	13,450 (22.4)	9,001 (15.1)	1,848 (3.1)
심 장	9,542 (100.0)	224 (2.3)	509 (5.3)	323 (3.4)	324 (3.4)	677 (7.1)	1,707 (17.9)	2,773 (29.1)	2,395 (25.1)	610 (6.4)
호 흡 기	14,671 (100.0)	36 (0.2)	34 (0.2)	72 (0.5)	284 (2.0)	1,064 (7.3)	3,182 (21.7)	4,725 (32.2)	4,432 (30.2)	842 (5.7)
간	8,145 (100.0)	194 (2.4)	168 (2.1)	101 (1.2)	316 (3.9)	1,466 (18.0)	3,520 (43.2)	2,086 (25.6)	280 (3.4)	14 (0.2)
안 면	2,715 (100.0)	33 (1.2)	97 (3.6)	238 (8.7)	496 (18.3)	607 (22.4)	628 (23.1)	420 (15.5)	162 (5.9)	34 (1.3)
장루·요루	13,098 (100.0)	39 (0.3)	44 (0.4)	89 (0.7)	234 (1.8)	844 (6.4)	2,272 (17.3)	3,781 (28.9)	4,328 (33.0)	1,467 (11.2)
간 질	8,950 (100.0)	58 (0.6)	194 (2.2)	680 (7.6)	1,865 (20.8)	2,755 (30.8)	2,354 (26.3)	789 (8.8)	229 (2.6)	26 (0.3)

주 :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 : 351페이지 참조

- 2011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50대’ 21.6%, ‘60대’ 21.5%, ‘70대’ 19.9% 등의 순임

- 40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전체의 84.6%, 50세 이상은 70%, 60세 이상은 48.4%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6〉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단위: 명, %)

구 분	전 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 체	2,519,241 (100.0)	208,123 (8.3)	351,176 (13.9)	433,044 (17.2)	389,490 (15.5)	530,710 (21.0)	606,698 (24.1)
지 체	1,333,429 (100.0)	37,797 (2.8)	76,943 (5.8)	166,625 (12.5)	263,832 (19.8)	398,314 (29.9)	389,918 (29.2)
뇌 병 변	260,718 (100.0)	62,436 (23.9)	63,752 (24.5)	64,470 (24.7)	32,179 (12.3)	22,365 (8.6)	15,516 (6.0)
시 각	251,258 (100.0)	33,510 (13.3)	8,086 (3.2)	13,190 (5.3)	13,834 (5.5)	21,108 (8.4)	161,530 (64.3)
청 각	261,067 (100.0)	6,662 (2.6)	47,636 (18.2)	44,864 (17.1)	58,088 (22.3)	64,098 (24.6)	39,719 (15.2)
언 어	17,463 (100.0)	83 (0.5)	1,661 (9.5)	7,369 (42.2)	8,344 (47.8)	4 (0.0)	2 (0.0)
지 적	167,479 (100.0)	48,371 (28.9)	58,085 (34.7)	61,019 (36.4)	4 (0.0)	- (-)	- (-)
자 폐 성	15,857 (100.0)	8,072 (50.9)	5,241 (33.1)	2,544 (16.0)	- (-)	- (-)	- (-)
정 신	94,739 (100.0)	4,757 (5.0)	38,410 (40.6)	51,559 (54.4)	4 (0.0)	4 (0.0)	5 (0.0)
신 장	60,110 (100.0)	3,124 (5.2)	44,276 (73.7)	50 (0.0)	411 (0.7)	12,249 (20.4)	1 (0.0)
심 장	9,542 (100.0)	270 (2.9)	1,280 (13.4)	7,599 (79.6)	21 (0.2)	369 (3.9)	3 (0.0)
호 흡 기	14,671 (100.0)	2,373 (16.2)	3,769 (25.7)	8,509 (58.0)	2 (0.0)	17 (0.1)	1 (-)
간	8,145 (100.0)	407 (5.0)	801 (9.8)	970 (11.9)	134 (1.7)	5,832 (71.6)	1 (0.0)
안 면	2,715 (100.0)	104 (3.8)	412 (15.2)	929 (34.2)	1,261 (46.4)	7 (0.3)	2 (0.1)
장루 · 요루	13,098 (100.0)	13 (0.2)	162 (1.2)	960 (7.3)	5,620 (42.9)	6,343 (48.4)	- (-)
간 질	8,950 (100.0)	144 (1.6)	662 (7.4)	2,387 (26.7)	5,756 (64.3)	- (-)	1 (0.0)

주 :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 : 351페이지 참조

- 2011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등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1급' 8.3%, '2급' 13.9%, '3급' 17.2%, '4급' 15.5%, '5급' 21.0%, '6급' 24.1%를 차지하고 있음

## 2) 장애등록연도

〈표 2-1-7〉 장애등록연도 – 장애유형별

(단위 : 명, %)

구 分	전국추정수	전 체	1988~1989년	1990~1995년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년~
전 체	2,517,110	100.0	3.1	4.4	17.7	30.9	40.9	3.0
지 체	1,295,819	100.0	3.3	6.2	20.4	31.0	37.4	1.7
뇌 병 변	305,008	100.0	0.7	2.3	14.0	32.0	45.4	5.4
시 각	248,158	100.0	1.7	2.3	18.8	36.1	37.9	3.2
청 각	259,335	100.0	5.8	1.8	16.2	25.7	47.6	2.8
언 어	18,443	100.0	1.3	15.5	12.8	22.0	41.3	7.0
지 적	152,135	100.0	7.8	6.6	15.7	23.9	41.7	4.3
자 폐 성	15,793	100.0	-	-	1.7	30.3	59.4	8.6
정 신	99,803	100.0	-	-	14.2	30.7	48.0	7.1
신 장	56,398	100.0	-	-	14.0	29.3	50.4	6.3
심 장	12,864	100.0	-	-	6.1	57.4	36.5	-
호흡기	17,218	100.0	-	-	9.7	36.2	52.1	2.0
간	8,117	100.0	-	-	2.4	27.0	70.1	0.5
안 면	2,426	100.0	-	-	-	88.8	11.2	-
장루·요루	13,508	100.0	-	-	2.2	47.4	40.4	10.0
간 질	12,085	100.0	-	-	7.5	32.9	53.2	6.4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등록제 도입 초기인 「1988~1989년」은 전체의 3.1%, 「1990~1995년」 4.4%, 「1996~2000년」 17.7%, 「2001~2005년」 30.9%, 「2006~2010년」 40.9%, 2011년 이후는 3.0%의 장애인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까지 시기가 지날수록 장애등록률이 점차 증가해 왔는데, 이는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각종 혜택에 대한 인지 향상,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2. 장애인가구와 가족

### 가. 가구구성

〈표 2-1-8〉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단위 : %, 명)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12.7	10.3	15.5	9.5	20.0	11.0	20.1	14.8	19.8	17.4
2인 가구	16.9	23.0	19.1	24.0	22.2	29.8	22.7	31.3	26.0	33.2
3인 가구	20.3	42.0 <sup>④</sup>	20.9	20.0	20.9	22.4	21.0	19.6	21.0	20.4
4인 가구	31.7		31.1	24.7	27.0	21.6	26.8	19.8	25.3	17.1
5인 가구	12.9		10.1	13.0	7.7	10.0	7.4	9.0	6.1	7.9
6인 가구	3.8		2.4	6.1	1.7	3.7	1.5	4.2	1.4	2.9
7인 이상	1.7	3.7	0.9	2.7	0.6	1.4	0.5	1.3	0.4	1.0
평균 가구원 수	3.3	3.5	3.1	3.4	2.9	3.1	2.8	3.0	2.78	2.78

주 1)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전체가구는 일반가구(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또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함.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친족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함

3) 평균 가구원 수(명)=총 가구원 수(명)/가구 수(가구)

4) 1995년의 경우 5개 항목(1인/2인/3~4인/5~6인/7인 이상)으로 조사됨

5) 2008년 전체가구는 통계청 「2007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32/321페이지 참조

☞ '가구, 가구원, 장애인가구' 설명 보기 : 352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2인 가구' 33.2%, '3인 가구' 20.4%, '1인 가구' 17.4%, '4인 가구'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평균가구원 수는 1995년 3.5명에서 2000년 3.4명, 2005년 3.1명, 2008년 3.0명, 2011년 2.78%로 계속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전체가구에서도 평균 가구원수가 조사시마다 소폭 감소하여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 2-1-9〉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

(단위 : 명, %)

구 分	2005년	2008년			2011년
		전 체	중증(1-2급)	경증(3-6급)	
전국추정수	1,944,791	2,137,226	553,750	1,583,476	2,442,442
부부	22.4	24.3	16.6	26.9	24.1
기타 1세대	1.2	0.6	1.0	0.5	1.0
부부 + 미혼자녀	33.4	31.0	34.5	29.8	29.5
부부 + 기혼자녀	0.6	0.9	1.3	0.7	0.2
편부 + 미혼자녀	2.1	1.5	1.9	1.4	2.7
편모 + 미혼자녀	6.1	5.8	7.9	5.1	7.2
부부 + 양친	0.1	0.4	0.2	0.5	0.2
부부 + 편부모	2.3	2.3	1.1	2.7	1.7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0.6	0.6	0.5	0.6	0.7
조부모 + 손자녀	1.6	1.4	1.5	1.3	1.2
기타 2세대	2.7	1.9	2.6	1.7	2.2
부부 + 자녀(미혼·기혼) + 양친	2.7	3.2	2.5	3.4	2.0
부부 + 자녀(미혼·기혼) + 편부모	7.5	5.7	5.7	5.8	5.3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	5.5	5.5	5.1	5.7	4.6
1인 가구	11.0	14.8	17.3	13.9	17.4
비혈연가구	0.4	0.1	0.4	0.1	0.2

주 : 「2008 장애인 실태조사」 <표5-1-16>에서 제시하는 2005년 수치는 「2005 장애인 실태조사」 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 보고서 해석에 준하여 「2005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중증' 설명 보기 : 352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29.5%, '부부'로 구성된 가구 24.1%, '장애인 1인 가구' 17.4% 등의 순으로 2008년과 비슷한 분포로 나타남
  - 2005년, 2008년, 2011년 장애인가구 가구구성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표 2-1-10〉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단위 :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전 체	100.0	100.0	100.0	100.0
본 인	49.9	53.3	55.0	53.9
그 외	50.1	46.7	45.0	46.1

주 1)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구성비를 표기함

2) 그 외는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가구주인 경우를 말함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장애인 실태조사」, 199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 실태조사」, 200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가구주'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 49.9%, 2000년 53.3%, 2005년 55.0%로 증가하다가 2008년 53.9%로 소폭 감소함

## 나. 가족형성

### 1) 혼인

〈표 2-1-11〉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단위: 명, %) 기타(미혼모부)
			13.5	58.1	19.1	8.1	1.2	0.0
전 체	2,520,859	100.0						
지 체	1,316,266	100.0	8.2	63.0	19.9	7.4	1.3	0.1
뇌 병 변	304,767	100.0	10.5	59.0	19.8	10.2	0.4	0.0
시 각	251,077	100.0	10.1	59.4	21.8	7.0	1.6	0.0
청 각	275,078	100.0	5.8	60.7	27.2	5.4	0.9	0.0
언 어	17,182	100.0	11.3	71.8	7.6	6.0	3.1	0.0
지 적	112,007	100.0	71.5	17.7	3.9	6.3	0.6	0.0
자 폐 성	4,617	100.0	100.0	0.0	0.0	0.0	0.0	0.0
정 신	103,641	100.0	52.8	24.9	3.3	16.7	2.3	0.0
신 장	58,285	100.0	15.8	58.9	11.2	13.3	0.7	0.0
심 장	16,041	100.0	5.2	66.2	10.5	18.0	0.0	0.0
호 흡 기	19,042	100.0	3.1	65.0	18.1	13.9	0.0	0.0
간	9,223	100.0	6.8	75.5	2.6	10.6	4.5	0.0
안 면	2,355	100.0	60.8	39.2	0.0	0.0	0.0	0.0
장루 · 요루	16,705	100.0	0.0	53.5	42.1	4.4	0.0	0.0
간 질	14,573	100.0	26.0	44.9	5.0	24.1	0.0	0.0

주 1)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장애인이 대상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혼인상태’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2011년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유배우’ 58.1%, ‘사별’ 19.1%, ‘미혼’ 13.5%, ‘이혼’ 8.1%, ‘별거’ 1.2% 등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기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폐성장애의 ‘미혼’ 비율이 1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장애(75.5%), 언어장애(71.8%), 심장애(66.2%), 호흡기장애(65.0%), 지체장애(63.0%)는 유배우의 비율이 높음

〈표 2-1-12〉 평균 초혼 연령

(단위 : 세)

구 분	남성	여성	차이
전체인구	31.9	29.1	2.8
장애인구	27.4	22.7	4.7

주 1) 전체인구는 만 15세 이상, 장애 인구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

2) 2011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2011 인구동태통계연보」, 201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3/321페이지 참조

〈표 2-1-13〉 평균 초혼 연령 - 장애유형별

(단위 : 세, 명, %)

구 분	평균초혼연령	전국추정수	전 체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 체	25.3	2,179,951	100.0	13.1	69.5	15.2	1.7	0.5
지 체	25.3	1,206,524	100.0	13.5	69.0	15.5	1.6	0.5
뇌 병 변	25.0	272,869	100.0	13.5	70.6	14.5	1.1	0.3
시 각	26.0	225,659	100.0	11.5	69.9	15.5	2.1	1.0
청 각	24.7	259,104	100.0	17.9	67.3	12.2	2.3	0.3
언 어	27.7	15,233	100.0	4.5	78.4	9.8	7.3	0.0
지 적	28.3	31,957	100.0	2.4	59.5	31.2	6.9	0.0
정 신	26.4	48,876	100.0	4.7	76.9	15.4	1.9	1.1
신 장	25.7	49,065	100.0	8.1	72.7	18.8	0.3	0.2
심 장	25.1	15,200	100.0	16.7	73.6	9.7	0.0	0.0
호 흡 기	26.4	18,456	100.0	2.8	71.9	25.3	0.0	0.0
간	25.9	8,595	100.0	0.0	95.5	4.5	0.0	0.0
안 면	26.3	923	100.0	0.0	95.6	4.4	0.0	0.0
장루 · 요루	23.2	16,705	100.0	17.3	72.6	9.6	0.6	0.0
간 질	25.6	10,785	100.0	5.5	82.2	11.1	1.3	0.0

주 1)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구의 결혼 평균 연령 25.3세로, 전체인구에 비해 '남성' 4.5세, '여성' 6.4세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결혼 시기가 늦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28.3세), 언어장애(27.7세), 호흡기 및 정신장애(26.4세) 등의 순이고, 장루·요루장애(23.2세), 청각장애(24.7세), 뇌병변장애(25.0세) 등은 상대적으로 결혼 시기가 빠른 편으로 나타남

〈표 2-1-14〉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단위 :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본인 장애유무		배우자 장애유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2,180,678	22.6	77.4	2.5	97.5
지 체	1,207,252	22.5	77.5	1.7	98.3
뇌 병 변	272,869	4.6	95.4	0.8	99.2
시 각	225,659	35.8	64.2	3.1	96.9
청 각	259,104	25.0	75.0	4.7	95.3
언 어	15,233	34.8	65.2	2.4	97.6
지 적	31,956	84.3	15.7	25.4	74.6
정 신	48,877	25.2	74.8	4.4	95.6
신 장	49,065	8.2	91.8	0.6	99.4
심 장	15,200	16.6	83.4	0.0	100.0
호흡기	18,457	14.6	85.4	9.0	91.0
간	8,595	2.3	97.7	0.0	100.0
안 면	923	7.2	92.8	0.0	100.0
장루·요루	16,704	3.4	96.6	4.6	95.4
간 질	10,784	67.5	32.5	1.3	98.7

주 1)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결혼 시 본인 장애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결혼 시점에 장애가 없었다가 77.4%를 보였고, 결혼 시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2.5%로 나타남
  - 지적장애는 '결혼 시 장애' 가 있거나(84.3%) '배우자가 장애인' 인 비율이(25.4%)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 출산

〈표 2-1-15〉 자녀 수 및 장애자녀 유무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유자녀율	자녀 수					유장애 자녀율
			1명	2명	3명	4명	5~10명	
전 체	2,520,859	82.5	11.8	35.2	22.5	15.2	15.3	5.9
지 체	1,316,266	88.5	11.7	38.2	21.6	14.1	14.3	5.2
뇌 병 변	304,767	85.9	8.4	29.7	24.4	18.3	19.2	7.2
시 각	251,077	85.2	10.0	37.2	24.3	16.3	12.2	4.7
청 각	275,079	90.5	9.6	27.6	23.8	16.0	23.0	7.5
언 어	17,182	84.4	14.2	33.3	28.1	14.3	10.1	6.6
지 적	112,008	18.1	45.3	36.2	12.1	1.9	4.5	19.9
자 폐 성	4,617	0.0	-	-	-	-	-	-
정 신	103,641	36.8	28.6	30.8	19.6	12.7	8.3	7.9
신 장	58,284	81.7	18.8	39.8	17.8	16.8	6.8	2.4
심 장	16,041	94.8	18.1	22.8	33.3	14.2	11.6	16.1
호 흡 기	19,043	96.9	20.3	13.5	32.9	18.6	14.7	9.2
간	9,223	93.2	19.6	57.2	15.8	7.4	0.0	0.0
안 면	2,355	39.2	0.0	47.0	18.0	35.0	0.0	10.8
장루 · 요루	16,704	97.5	6.1	16.8	17.5	35.2	24.5	2.1
간 질	14,572	66.6	9.5	47.3	27.8	7.7	7.7	22.0

주 1)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유자녀율 및 유장애자녀율을 표기함

2)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3)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의 82.5%가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전체 자녀 중 5.9%가 장애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유자녀율이 90% 이상인 장애유형으로는 장루·요루장애(97.5%), 호흡기장애(96.9%), 심장장애(94.8%), 간장애(93.2%), 청각장애(90.5%) 등의 순이며, 안면장애(39.2%), 정신장애(36.8%), 지적장애(18.1%) 등의 순으로 자녀가 상대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장애가 있는 유장애자녀율을 살펴보면, 「간질장애」 22.0%, 「지적장애」 19.9%, 「심장장애」 16.1%, 「안면장애」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16〉 마지막 임신 시 장애유무 및 출산 연령

(단위 : 명, %, 세)

구 분	전국 추정수	임신 경험률	출산율	출산연령						
				평균연령	소 계	13~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전 체	119,884	57.6	89.3	29.4	100.0	0.9	18.4	42.2	31.1	7.4
지 체	56,699	60.9	89.6	30.1	100.0	0.5	15.6	40.3	33.0	10.6
뇌 병 변	6,821	47.7	100.0	28.5	100.0	0.0	33.4	24.8	41.8	0.0
시 각	10,738	68.9	93.2	29.5	100.0	0.0	19.6	34.5	38.0	8.0
청 각	10,094	68.4	88.2	29.4	100.0	1.6	24.3	36.3	34.5	3.4
언 어	1,132	100.0	100.0	26.7	100.0	0.0	36.2	63.8	0.0	0.0
지 적	8,991	86.8	87.5	27.1	100.0	0.0	31.9	53.0	7.4	7.8
자 폐 성	-	-	-	-	-	-	-	-	-	-
정 신	14,665	35.5	79.3	27.3	100.0	7.9	0.0	71.7	20.4	0.0
신 장	6,554	12.0	45.5	26.0	100.0	0.0	0.0	100.0	0.0	0.0
심 장	825	0.0	-	-	100.0	-	-	-	-	-
호 흡 기	-	0.0	-	-	100.0	-	-	-	-	-
간	63	0.0	-	-	100.0	-	-	-	-	-
안 면	392	0.0	-	-	100.0	-	-	-	-	-
장루 · 요루	-	0.0	-	-	100.0	-	-	-	-	-
간 질	2,910	71.1	100.0	32.5	100.0	0.0	0.0	24.4	75.6	0.0

주 1) 장애상태에서의 임신경험률 및 출산율을 표기함

2) 임신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3)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임신할 당시 또는 가장 최근의 임신 시 전체의 57.6%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경험하고, 마지막 임신을 경험한 여성장애인 중 89.3%가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연령은 평균 29.4세인 것으로 나타남
- 임신경험률을 보면, '언어장애' 100%, '지적장애' 8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질장애(100.0%), 뇌병변장애 (100.0%), 언어장애(100.0%), 시각장애(93.2%), 지체장애(89.6%)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 마지막 임신시 출산연령은 만 26~30세가 42.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31~35세가 31.1%임
- 간질장애(32.5세), 지체장애(30.1세), 시각장애(29.5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에 출산을 경험한 반면, 신장장애(26.0 세), 언어장애(26.7세), 지적장애(27.1세), 정신장애(27.3세)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최종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남

### 3. 장애특성

#### 가. 장애발생

〈표 2-1-17〉 장애발생원인

(단위: 명, %)

구 分	전국추정수	전 체	선천적 원인	출산시 원인	후천적원인			원인불명
					소 계	질 환	사 고	
2005년	2,085,311	100.0	4.0	0.7	89.0	52.4	36.6	6.3
2008년	2,135,512	100.0	4.9	0.5	90.0	55.6	34.4	4.6
2011년	2,609,372	100.0	4.6	0.9	90.5	55.1	35.4	4.0
지 체	1,325,002	100.0	1.6	0.3	97.6	44.2	53.4	0.5
뇌 병 변	316,308	100.0	2.2	2.3	94.8	82.1	12.7	0.7
시 각	256,839	100.0	4.6	0.4	90.8	53.5	37.3	4.2
청 각	278,337	100.0	3.5	0.8	91.2	75.7	15.5	4.5
언 어	21,049	100.0	24.2	5.2	64.1	57.8	6.3	6.5
지 적	152,457	100.0	35.9	5.3	21	11.2	9.8	37.8
자 폐 성	16,237	100.0	22.6	-	12.7	12.7	-	64.8
정 신	103,893	100.0	1.1	-	97.9	83.0	14.9	1.0
신 장	58,500	100.0	-	-	99.7	99.5	0.2	0.3
심 장	18,508	100.0	22.3	-	77.7	77.7	-	-
호흡 기	19,249	100.0	-	-	100.0	100.0	-	-
간	9,289	100.0	0.7	-	99.3	99.3	-	-
안 면	2,426	100.0	2.9	-	97.1	52.6	44.5	-
장루 · 요루	16,705	100.0	-	-	100.0	100.0	-	-
간 질	14,573	100.0	3.2	1.1	81.8	60.4	21.4	13.9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질환 및 사고의 '후천적 원인' 90.5%, '선천적 원인' 4.6%, '원인 불명' 4.0%, '출산 시 원인' 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55.1%)이 사고(35.4%)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지체장애(44.5%)와 같은 외부장애는 '사고', 호흡기장애(100.0%), 장루·요루장애(100.0%), 신장애(99.5%), 간장장애(99.3%)와 같은 내부장애는 '질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1-18〉 장애발생시기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돌 이전	돌 이후
2005년	1,994,357	100.0	2.2	2.1	95.7
2008년	2,135,765	100.0	1.9	1.4	96.7
2011년	2,877,112	100.0	3.2	2.9	93.9
지 체	1,372,612	100.0	1.4	1.3	97.4
뇌 병 변	330,157	100.0	3.7	3.6	92.7
시 각	285,585	100.0	3.1	3.7	93.3
청 각	311,993	100.0	1.9	2.7	95.4
언 어	103,880	100.0	8.4	7.2	84.4
지 적	181,126	100.0	12.0	6.6	81.4
자 폐 성	21,421	100.0	2.8	3.8	93.4
정 신	109,839	100.0	0.7	-	99.3
신 장	64,176	100.0	-	-	100.0
심 장	22,219	100.0	11.1	3.4	85.5
호흡 기	20,116	100.0	-	-	100.0
간	9,972	100.0	-	0.7	99.3
안 면	3,502	100.0	2.0	-	98.0
장루 · 요루	20,101	100.0	-	-	100.0
간 절	20,413	100.0	0.8	10.3	89.0

주 : 2011년의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돌 이후」가 93.9%로 가장 많고,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3.2%, 「돌 이전」 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적장애(12.0%), 심장장애(11.1%)는 출생 전 또는 출생 시에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고, 언어장애(7.2%)는 지적장애(6.6%)와 함께 돌 이전에 발생하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장애유형은 돌 이후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음

## 나. 장애정도

〈표 2-1-19〉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단위 : %)

구 分	전 체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소 계	중증 (1-2급) (3-6급)	경증	소 계	중증 (1-2급) (3-6급)	경증	소 계	중증 (1-2급) (3-6급)	경증
옷 벗고 입기	100.0	87.1	60.2	95.1	9.2	26.4	4.2	3.7	13.4	0.8
세수하기	100.0	92.2	73.8	97.6	4.8	15.4	1.6	3.0	10.8	0.8
양치질하기	100.0	92.5	74.5	97.8	4.5	14.7	1.5	3.0	10.8	0.7
목욕하기	100.0	83.6	54.7	92.1	10.7	25.6	6.3	5.7	19.6	1.6
식사하기	100.0	91.2	71.3	97.1	6.8	21.1	2.6	2.0	7.6	0.4
체위변경하기	100.0	95.1	84.5	98.2	2.9	8.2	1.4	2.0	7.2	0.4
일어나 앉기	100.0	93.7	81.5	97.3	3.9	9.8	2.2	2.4	8.7	0.5
눕거나 앉기	100.0	93.9	80.5	97.8	3.6	10.6	1.5	2.5	8.9	0.7
방밖으로 나가기	100.0	90.8	75.7	95.2	5.5	11.6	3.8	3.7	12.7	1.0
화장실 사용하기	100.0	91.7	73.1	97.2	5.0	15.5	2.0	3.3	11.5	0.9
용변	100.0	91.7	73.2	97.2	4.9	15.2	1.9	3.3	11.7	0.9
대변 조절하기	100.0	94.5	82.7	98.0	3.0	8.7	1.3	2.5	8.6	0.7
소변 조절하기	100.0	94.2	83.1	97.5	3.2	8.5	1.7	2.5	8.4	0.8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ADL, IADL'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의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은 전반적으로 ‘완전자립’의 응답률이 80% 이상의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목욕하기, 옷 입고 벗기 등 개인위생 관련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정도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짐

〈표 2-1-20〉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단위 : %)

구 分	전 체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소 계	중증 (1-2급)	경증 (3-6급)	소 계	중증 (1-2급)	경증 (3-6급)	소 계	중증 (1-2급)	경증 (3-6급)
전화 사용하기	100.0	81.0	49.6	90.2	13.1	29.7	8.2	5.9	20.7	1.6
물건 사기(쇼핑)	100.0	77.7	41.5	88.4	14.7	32.4	9.3	7.7	26.1	2.3
식사준비	100.0	72.8	34.0	84.3	15.7	29.2	11.7	11.5	36.8	4.0
집안일	100.0	67.9	32.2	78.5	23.5	40.7	18.4	8.6	27.2	3.1
빨래하기	100.0	74.8	41.2	84.7	13.1	21.1	10.7	12.1	37.7	4.5
약 챙겨먹기	100.0	85.6	56.2	94.2	7.1	18.0	3.8	7.4	25.8	1.9
금전관리	100.0	77.0	42.8	87.1	12.2	22.6	9.2	10.7	34.6	3.7
교통수단 이용하기	100.0	73.0	34.1	84.5	22.0	48.9	14.1	5.0	17.0	1.4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ADL, IADL'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은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에 비해서 ‘완전자립’의 응답비율이 낮고, ‘부분 도움 이하’의 응답비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집안일하기, 빨래하기, 식사준비하기와 같은 가사 관련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정도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 장애인보조기구

〈표 2-1-21〉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소지비율

(단위 : %)

구 분	장애인보조기구	필 요			소 지		
		전체	중 중	경 중	전체	중 중	경 중
지 체 및 뇌병변	상지의지	1.4	2.2	1.2	1.1	2.9	0.7
	하지의지	1.3	2.0	1.1	1.3	2.5	1.0
	척추보조기	3.5	1.5	3.7	3.6	2.0	3.6
	상지보조기	0.8	2.2	0.6	0.7	2.7	0.4
	하지보조기	2.7	7.3	1.9	2.6	7.3	1.8
	정형외과용 구두	2.9	4.6	2.6	2.1	4.5	1.7
	지팡이	22.3	33.0	19.6	23.3	35.9	20.4
	목발	4.2	8.2	3.4	6.0	10.4	5.2
	보행기	6.8	10.2	6.0	6.0	9.6	5.2
	자세보조기구	2.0	5.0	1.4	1.5	2.6	1.3
	전동휠체어	6.9	19.6	4.4	3.6	13.7	1.8
	수동휠체어	9.0	37.6	3.4	8.1	36.4	2.6
	전동스쿠터	5.3	13.1	3.8	2.6	7.1	1.8
	기타	3.9	4.7	3.5	3.1	3.5	3.0
시 각	안경(콘택트렌즈)	50.2	26.0	54.0	48.5	27.9	51.7
	저시력보조기	9.6	11.1	8.8	5.6	5.1	5.7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9.3	44.2	2.2	7.3	36.3	1.4
	의안	10.7	9.4	11.3	9.4	7.2	10.2
	스크린 리더	1.6	8.9	0.1	1.4	8.5	0.0
	화면 확대기	6.5	6.4	6.6	2.6	4.1	2.4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3.2	17.6	0.0	1.5	8.6	0.0
	음성손목/탁상시계	5.8	21.2	2.2	1.9	10.0	0.2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1.0	5.9	0.0	-	-	-
	점자프린터	1.5	7.7	0.0	-	-	-
	화면해설기	3.2	18.5	0.1	0.7	4.2	0.0
	기타	3.9	3.0	4.1	3.3	1.5	3.7
언 어	인공후두(성대)	3.6	-	-	4.2	0.0	0.6
	의사소통보조기	1.7	0.0	2.1	5.9	0.0	2.7
	기타	-	-	-	-	-	-
지적 및 자폐성	스위치	1.2	1.8	0.0	-	-	-
	터치모니터	3.0	4.4	0.4	0.1	0.0	0.4
	기타	0.2	0.2	0.0	-	-	-

〈표 2-1-21〉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소지비율(계속)

(단위 : %)

구 分	장애인보조기구	필 요			소 지		
		전 체	중 중	경 증	전 체	중 중	경 증
청 각	보청기	74.3	57.3	78.0	66.0	55.3	68.9
	화상전화기	7.9	21.0	5.0	2.8	11.2	0.8
	골도전화기	1.6	4.0	1.1	0.8	3.3	0.2
	문자전화기	3.0	6.6	2.3	1.6	2.7	1.5
	문자송수신기	1.6	5.0	0.9	0.7	2.7	0.2
	음성증폭기	3.9	3.1	4.0	0.8	0.0	1.1
	인공외우	3.9	11.3	1.9	2.5	9.2	0.8
	자막수신기	6.0	11.0	4.4	2.0	6.2	1.1
	기타	0.3	0.0	0.4	0.3	0.0	0.4
신 장	복막투석기구	10.6	11.2	0.0	12.1	13.2	0.0
	기타	-	-	-	-	-	-
호흡기	산소발생기	49.6	71.6	39.3	36.0	64.2	16.4
	인공호흡기	17.2	8.6	30.0	3.2	7.1	0.0
	기타	11.0	8.8	7.4	11.0	8.8	7.4
안 면	압력옷	12.9	0.0	25.0	12.9	0.0	25.0
	기타	11.2	0.0	21.7	11.2	0.0	21.7
장루 · 요루	장루주머니	88.9	-	88.2	88.9	-	88.2
	피부보호관	88.4	-	89.8	86.1	-	87.0
	기타	14.5	-	10.8	14.5	-	10.8
전체	호흡 산소발생기	0.3	0.8	0.1	0.2	0.5	0.0
	보조기 인공호흡기	0.1	0.4	0.0	0.1	0.3	0.0
	욕창방지용매트	2.9	9.7	0.7	1.8	6.2	0.4
	욕창방지용방석	1.8	6.7	0.4	1.0	4.0	0.1
	기저귀매트	2.2	6.6	0.7	1.3	4.0	0.4
	목욕 의자	4.4	10.6	2.5	1.6	5.4	0.5
	특수 키보드	0.2	0.7	0.1	0.0	0.0	0.0
	특수 마우스	0.2	0.6	0.1	0.0	0.0	0.0
	스위치, 음성인식장치	0.2	0.7	0.0	0.1	0.3	0.0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0.2	0.6	0.1	0.1	0.2	0.0
	환경제어장치	0.1	0.4	0.0	-	-	-
	이동변기	3.0	8.0	1.2	2.3	6.7	0.7
	기타	0.3	1.0	0.1	0.3	1.1	0.1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인보조기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표 2-1-22〉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형태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외부지원 경험률	지원형태				
			비용 전액 지원	비용 일부 지원	무상 임대	유상 임대	기타
전 체	1,171,230	38.8	39.8	56.5	2.4	1.1	0.2
지 체	501,784	34.8	50.0	46.6	2.2	1.1	0.1
뇌 병 변	218,987	50.9	42.2	53.8	2.5	1.2	0.2
시 각	178,367	23.0	46.3	51.0	1.9	0.0	0.8
청 각	205,458	50.2	19.3	80.3	0.4	0.0	0.0
언 어	2,020	15.7	100.0	0.0	0.0	0.0	0.0
지 적	8,892	46.2	20.6	45.3	34.1	0.0	0.0
자 폐 성	201	0.0	-	-	-	-	-
정 신	2,684	0.0	-	-	-	-	-
신 장	17,648	34.9	30.8	26.5	25.8	16.9	0.0
심 장	2,122	4.7	0.0	100.0	0.0	0.0	0.0
호흡 기	11,759	43.6	53.6	33.4	0.0	13.0	0.0
간	490	0.0	-	-	-	-	-
안 면	635	0.0	-	-	-	-	-
장루 · 요루	16,705	40.6	18.9	81.1	0.0	0.0	0.0
간 질	3,478	47.8	35.5	64.5	0.0	0.0	0.0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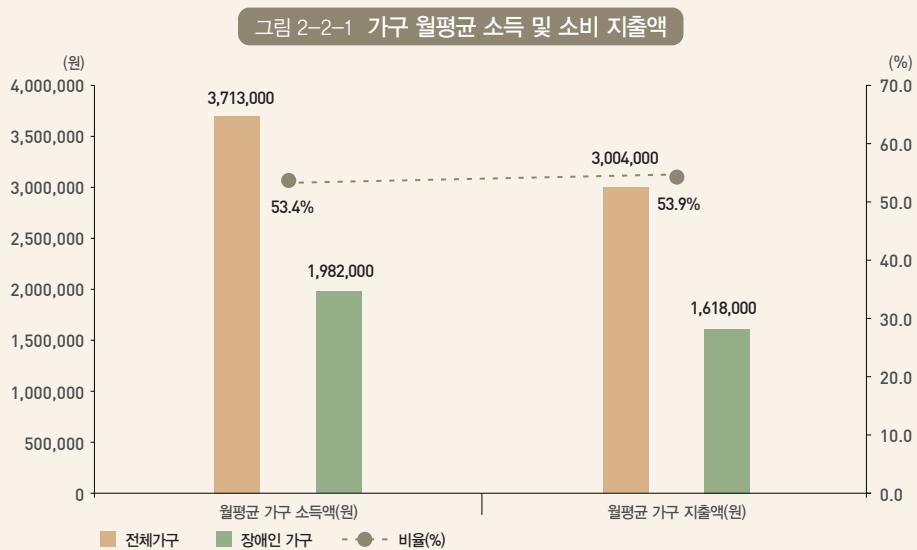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인보조기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외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38.8%로 나타났으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56.5%,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9.8%, '무상임대'와 '유상임대'의 형태로 지원을 받은 비율은 각각 2.4%와 1.1%로 나타남
  -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지원이 구입비용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임대를 통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임

## 제 2 절 경제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2011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3,713천원)의 53.4% 수준이며, 월평균 지출은 1,618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3,004천원)의 53.9% 수준임

그림 2-2-2 주택유형별 가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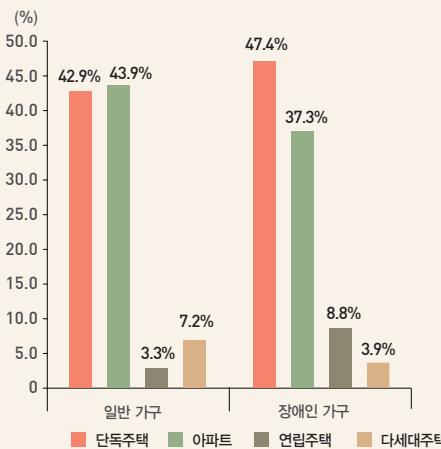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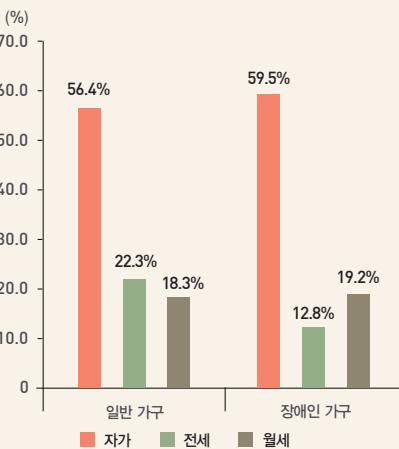


그림 2-2-3 점유형태별 가구분포



주 1) 월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모두를 포함

2) 일반가구는 2008년 기준, 장애인가구는 2009년 기준임

그림 2-2-4 가구특성별 주택설비 유무



주 : 2008년 기준임

자료 |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8 주거실태조사」, 2009.

국토해양부 · 국토연구원, 「2009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2010.

- ◉ 장애인가구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47.4%로 가장 많고 일반가구(56.4%)에 비해 자가 비율(59.5%)은 높으나 전반적으로 일반가구 주거실태와 비교한 결과 장애인가구의 주거상태는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 전체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의 주택 설비율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나,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2-2-5 컴퓨터 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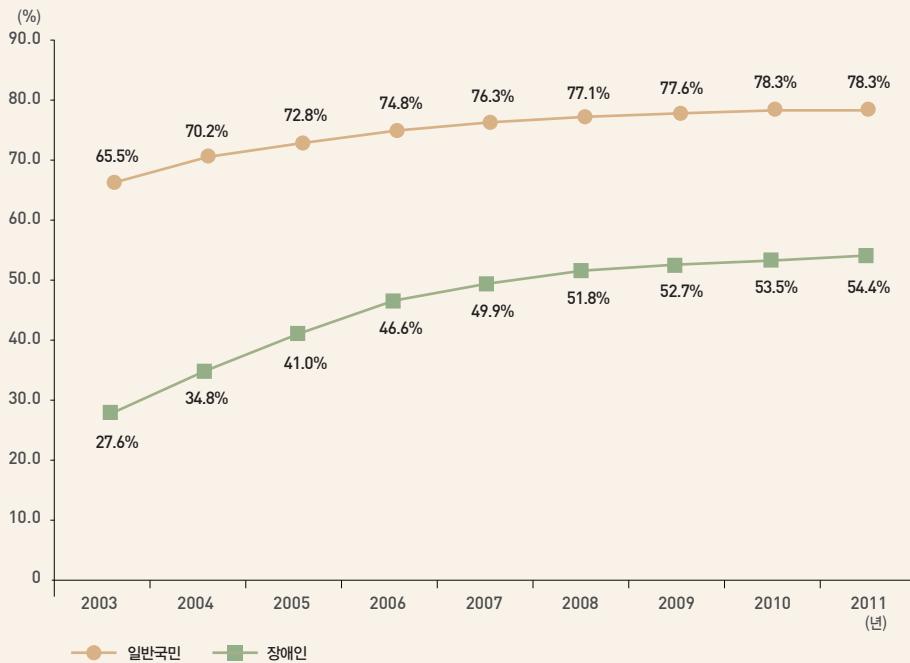


주 : 전체 국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1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2.

- 2011년 말 현재 장애인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71.9%로 전체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81.9% 보다 10%p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컴퓨터보유율보다는 여전히 낮음

그림 2-2-6 인터넷 이용률



주 1) 전체 국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1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기준임  
2) 인터넷 이용자는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로 함

자료 | 행정안전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2

- 2011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만 7~6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54.4%로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78.3%)보다 23.9%p 낮은 수준이나,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감소 추세임

## 1. 경제수준

### 가. 소속계층

〈표 2-2-1〉 주관적 소속 계층

(단위 :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하 층	중 층	상 층
2005년	2,100,393	100.0	61.3	38.3	0.4
2008년	2,137,226	100.0	71.6	28.1	0.4
2011년	2,611,126	100.0	68.5	30.6	0.9
지 체	1,325,877	100.0	66.7	32.4	0.9
뇌 병 변	316,309	100.0	74.3	25.3	0.4
시 각	256,841	100.0	70.6	28.3	1.1
청 각	278,337	100.0	62.6	36.3	1.1
언 어	21,049	100.0	69.9	27.7	2.4
지 적	153,332	100.0	70.6	29.3	0.1
자 폐 성	16,238	100.0	51.7	48.3	0.0
정 신	103,894	100.0	81.0	17.2	1.7
신 장	58,500	100.0	64.1	34.4	1.6
심 장	18,508	100.0	79.7	20.3	0.0
호 흡 기	19,249	100.0	66.0	34.0	0.0
간	9,289	100.0	73.0	27.0	0.0
안 면	2,426	100.0	80.1	19.9	0.0
장루·요루	16,705	100.0	75.8	24.2	0.0
간 질	14,572	100.0	79.1	20.3	0.6

주 : 2011년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들의 주관적 소속계층을 살펴보면, '하층' 68.5%, '중층' 30.6%, '상층' 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중층'의 비율은 2.5%p 증가하고, '하층'의 비율이 3.1%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분포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나. 소득과 지출

### 1) 소득과 지출 규모

〈표 2-2-2〉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

(단위 : %, 만원)

구 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만원 미만	25.3	20.7	16.2	13.4	12.3	11.7	10.3	9.0
50~99만원	27.2	33.3	22.8	25.8	24.8	25.2	20.7	23.9
100~149만원	19.4	23.2	17.3	20.6	16.3	18.6	15.2	18.0
150~199만원	12.1	12.3	13.5	15.5	11.2	13.8	12.7	15.2
200~249만원	6.6	6.1	10.2	12.1	10.4	11.7	11.7	13.0
250~299만원	3.0	2.0	5.9	4.5	5.9	6.8	6.9	6.5
300~349만원			5.9	4.7	6.3	5.1	7.8	6.6
350~399만원			2.1	1.1	4.1	2.4	3.9	2.5
400~449만원	6.2 <sup>1)</sup>	2.4 <sup>1)</sup>	1.9	1.3	4.1 <sup>2)</sup>	2.7 <sup>2)</sup>	3.4	2.6
450~499만원			0.9	0.1			1.6	0.8
500만원 이상			3.4	1.0	4.4	2.0	5.7	2.0
평균금액	108.2	98.9	157.2	134.5	181.9	155.5	198.2	161.8

주 : 1) 2000년의 경우 300만원 이상(300~349만원/350~399만원/400~449만원/450~499만원/500만원 이상) 비율임

2) 2008년의 경우 400~499만원(400~449만원/450~499만원) 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 실태조사」, 200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가구 월평균 소득, 가구 월평균 지출' 설명 보기 : 354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3,713천원)의 53.4% 수준이며, 월평균 지출은 1,618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3,004천원)의 53.9% 수준임
  - 전체 장애인 가구의 46.2%가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지출액이 100만원 미만인 장애인 가구가 32.9%를 보이고 있음.

## 2) 소득수준

〈표 2-2-3〉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입원별 평균 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평균금액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개인재산· 금융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
전 체	198.0	115.9	32.4	8.6	27.4	13.3	0.3
지 체	203.9	119.2	37.8	9.0	24.2	13.4	0.2
뇌 병 변	181.1	99.0	18.4	9.7	33.2	19.6	0.7
시 각	202.2	133.0	26.9	6.2	24.9	11.2	0.1
청 각	192.0	111.5	31.0	10.4	23.9	14.8	0.1
언 어	193.4	92.8	61.3	1.1	25.0	11.5	0.0
지 적	203.8	125.1	30.0	8.2	34.2	5.9	0.1
자 폐 성	309.8	265.2	29.0	0.1	14.3	1.3	0.0
정 신	148.2	69.4	20.9	3.9	44.9	9.0	0.0
신 장	221.1	124.7	37.1	10.6	37.0	11.1	0.7
심 장	194.5	126.1	13.9	6.9	34.6	13.0	0.0
호 흡 기	180.5	75.5	17.4	17.5	50.6	19.6	0.0
간	246.4	163.8	50.1	6.1	25.5	0.9	0.0
안 면	119.7	47.6	42.4	8.1	15.2	6.4	0.0
장루·요루	151.6	83.2	2.4	2.9	38.4	24.7	0.0
간 절	215.3	88.3	75.8	10.7	39.3	8.2	0.0

주 : 2011년 지난 1개월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금액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지난 1개월간 장애인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198만원인 것으로, 수입원별 평균금액은 ‘근로소득’ 115만 9천 원, ‘사업·부업소득’ 32만 4천원, ‘공적이전소득’ 27만 4천원, ‘사적이전소득’ 13만 3천원,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 8만 6천원, ‘기타소득’ 3천원으로 나타남

〈표 2-2-4〉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평균금액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개인재산· 금융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	기타
전 체	81.2	34.8	14.2	5.2	18.8	8.0	0.1
지 체	99.6	47.3	20.1	6.1	17.3	8.7	0.1
뇌 병 변	53.1	10.3	2.6	4.8	25.1	10.0	0.2
시 각	87.7	43.1	15.4	4.2	17.3	7.6	0.1
청 각	77.1	31.2	13.1	6.8	17.1	8.7	0.1
언 어	63.4	18.3	23.6	0.9	15.0	5.5	0.0
지 적	26.1	8.1	0.5	0.2	15.3	1.8	0.1
자 폐 성	6.4	0.3	0.0	0.0	5.9	0.1	0.0
정 신	37.5	5.0	1.2	0.7	26.5	4.2	0.0
신 장	82.3	24.5	14.3	7.2	29.1	7.2	0.0
심 장	62.0	30.7	1.2	4.8	20.0	5.3	0.0
호 흡 기	64.3	4.2	1.3	11.9	34.4	12.4	0.0
간	97.5	47.0	25.7	6.1	18.4	0.4	0.0
안 면	34.1	3.1	14.1	0.8	11.8	4.2	0.0
장루 · 효루	58.5	13.9	1.3	1.2	25.9	16.3	0.0
간 질	45.7	21.3	1.1	2.1	17.6	3.6	0.0

주 : 2011년 지난 1개월간 장애인 개인의 월평균 소득의 금액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지난 1개월간 장애인의 개인 총소득은 평균 81만 2천원으로, 수입원별 평균 금액은 「근로소득」 34만 8천원, 「공적이전소득」 18만 8천원, 「사업·부업소득」 14만 2천원, 「사적이전소득」 8만원,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 5만 2천원, 「기타소득」 1천원으로 나타남

## 3) 지출수준

〈표 2-2-5〉 최소한의 생활비

(단위 : 만원, %)

구 분	평균 금액	전 체	~50만원	50~ 99만원	100~ 149만원	150~ 199만원	200~ 249만원	250~ 299만원	300~ 349만원	350~ 399만원	400~ 499만원	500만원~
2005년	137.8	100.0	13.4	25.8	20.6	15.5	12.1	4.5	4.7	1.1	2.4 <sup>2)</sup>	
2008년	137.9	100.0	8.9	27.8	22.7	14.0	12.6	5.9	5.0	1.1	1.4	0.8
2011년	154.0	100.0	5.2	24.9	22.1	16.0	13.9	5.4	6.7	1.8	2.3	1.7
지 체	157.5	100.0	5.2	24.0	21.9	15.1	14.1	6.1	7.6	2.1	2.0	1.8
뇌 병 변	152.2	100.0	4.4	28.7	21.6	16.7	11.6	4.0	7.4	1.5	1.4	2.6
시 각	149.4	100.0	6.9	24.6	22.1	17.3	12.3	5.6	5.7	1.0	2.7	1.8
청 각	139.6	100.0	6.8	25.9	23.9	16.2	14.6	4.1	4.3	1.7	1.9	0.6
언 어	159.2	100.0	0.6	15.4	22.3	33.9	19.2	4.6	0.5	1.0	0.0	2.3
지 적	168.4	100.0	4.1	18.7	23.4	17.2	16.9	4.0	7.4	2.9	4.4	1.1
자 폐 성	270.3	100.0	0.0	4.6	6.8	9.5	22.8	12.7	21.6	2.4	11.5	8.1
정 신	119.1	100.0	4.8	36.3	26.2	16.6	8.5	4.8	0.5	0.6	1.3	0.3
신 장	169.0	100.0	3.0	16.9	20.2	22.2	17.8	5.9	5.5	2.7	5.1	0.7
심 장	145.7	100.0	5.3	38.6	9.5	10.8	18.5	9.1	1.9	0.0	6.2	0.0
호흡기	147.6	100.0	12.5	25.3	19.4	11.2	14.1	2.2	6.1	3.9	5.3	0.0
간	237.5	100.0	0.0	8.4	15.0	13.7	6.5	9.6	35.5	0.0	5.3	5.9
안 면	99.8	100.0	0.0	59.8	17.4	19.1	0.0	1.7	2.0	0.0	0.0	0.0
장류·요류	134.9	100.0	2.8	44.5	14.4	7.3	16.3	6.1	0.0	0.0	8.6	0.0
간 질	139.3	100.0	0.9	28.2	23.1	16.0	27.9	0.0	1.7	0.0	1.6	0.6

주 1) 최소 생활비란, 가족이 한 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말함

2) 400~499만원 + 500만원 이상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가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는 월평균 154만원으로 2008년 137만 9천원에 비해 16만 1천원 늘어 남. 최소한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50~99만원 범주가 24.9%로 가장 많았으며, 100~149만원이 22.1%, 150~199만원이 16.0%, 200~249만원이 13.9%로 나타남

〈표 2-2-6〉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전 체	157.9	155.4	158.7	160.7
교통비	29.1	22.9	17.8	22.8
의료비	83.3	90.2	57.3	56.8
보육·교육비	7.5	6.1	6.2	6.0
보호·간병인	9.6	11.8	9.9	14.1
재활기관 이용료	-	2.1	2.0	1.9
통신비	-	1.2	1.4	9.6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5.6	6.4	36.8	31.7
부모사후 대비비	-	8.8	6.2	5.4
기 타	4.2	6.0	21.2	12.3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 실태조사」, 200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설명 보기 : 354페이지 참조

- 2011년의 경우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용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2.0%로 나타나 2008년의 68.5%보다 3.5% 포인트 정도가 높아짐. 월평균 추가비용 총액은 16만 7백 원으로, 2008년 15만 8천 7백원보다 2,000원 증가함. 추가비용 중 의료비가 5만 6천 8백원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3만 1천 7백원임

## 4) 노후준비

〈표 2-2-7〉 노후준비 방법 및 충분정도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노후 준비자 비율	13.8	26.6	7.3	4.4
노후 준비	전혀 충분하지 않음	14.6	13.3	70.6	16.1
충분	충분하지 않음	62.9	65.6	29.4	53.0
정도	충분함	21.8	20.5	0.0	29.1
	매우 충분함	0.8	0.6	0.0	1.7
구 분			2차년도 (2009년)	3차년도 (2010년)	4차년도 (2011년)
노후 준비방법 (1순위)	저축, 적금 등		26.5	23.4	20.0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		46.8	56.0	58.8
	민간금융 개인연금 가입 및 수령		6.6	4.5	4.3
	퇴직연금, 퇴직보험 가입 및 수령		6.4	4.5	3.5
	주식, 펀드, 채권 등 운용		0.6	0.2	1.1
	부동산 이용		5.4	6.0	5.2
	저축성 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 및 수령		7.3	5.4	7.1
	기타		0.3	0.0	0.1

주 1) 만 3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2) 노후준비방법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에게만 질문함

3) 2011년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만 30세 이상의 장애인이 60세 이후의 노후를 별도로 준비하는 비율은 전체의 13.8%로, 노후준비 방법은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 58.8%, '저축, 적금 등' 20.0%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현재 노후준비가 충분하다는 비율은 2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 경제적 생활수준

### 가. 주거 수준

#### 1) 주거 상황

〈표 2-2-8〉 가구특성별 주거상황

(단위 : %, 개, 만원)

구 분		일반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주택유형	단독주택	42.9	62.2	34.8	20.9	47.4	51.9	36.0	35.5
	아파트	43.9	25.9	50.3	68.1	37.3	32.5	48.3	54.8
	연립주택	3.3	3.0	3.7	2.5	8.8	8.5	10.2	6.5
	다세대주택	7.2	6.1	8.3	6.6	3.9	4.0	4.0	1.6
점유형태	자가	56.4	51.9	54.7	69.4	59.5	53.2	73.6	83.3
	전세	22.3	16.8	27.8	22.0	12.8	13.2	11.9	9.9
	월세	18.3	27.0	15.1	6.8	19.2	23.7	9.0	3.7
가구당	평균주거면적(m <sup>2</sup> )	69.3	59.6	69.8	88.4	67.5	61.0	79.0	108.6
주거면적	평균사용방수	3.7	3.4	3.7	4.2	3.7	3.5	4.1	4.7
무주택가구 중	10년 이상 무주택기간	49.0	59.4	41.4	35.6	71.2	72.1	67.1	53.7
가계수지	세후소득(a)	239.4	90.6	256.9	514.3	147.0	82.1	252.0	550.3
	생활비(b)	142.4	68.4	157.0	264.9	105.4	70.4	177.5	262.4
	주거비(c)	21.2	14.7	23.0	30.8	19.3	16.1	25.6	35.6
	주거비/세후소득(c/a)	8.9	16.2	9.0	6.0	13.1	19.6	10.1	6.5
대출금·임대료 부담정도	생필품 출입 정도	7.4	12.4	4.9	2.4	21.1	25.5	12.0	4.8
	부담되나 낼 수 있음	20.8	16.2	24.6	21.8	20.1	16.4	29.9	25.9
	생계에 영향 없음	14.4	9.2	16.7	20.7	8.0	6.2	11.1	16.1

주 1) 월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모두를 포함

2) 주요 항목만 발췌하여 작성함에 따라 항목 간 자료의 합계가 100.0% 되지 않을 수 있음

3) 일반가구는 2008년 기준, 장애인가구는 2009년 기준임

자료 :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9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3페이지 참조

☞ '소득계층'/'주택'/'소득, 생활비' 설명 보기 : 354/355/356페이지 참조

○ 일반가구 주거실태(2008년)와 비교한 결과 장애인가구의 주거상태(2009년)는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이 47.4%로 가장 많고, 일반가구(56.4%)에 비해 자가 비율(59.5%)은 높으나,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 비중 (19.2%)도 높은 편이며, 가구당 주거면적은 일반가구(69.3m<sup>2</sup>)보다 작은 67.5m<sup>2</sup>임

〈표 2-2-9〉 가구특성별 주택설비 유무

(단위 : 가구, %)

구 분	전 체	1인가구	고령자가 있는 가구	장애인 있는 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
전 체	16,439,967	2,561,408	4,802,062	1,203,185	605,047
복도/계단 손잡이	9,476,641 (57.6)	1,133,588 (44.3)	2,072,301 (43.2)	575,275 (47.8)	215,896 (35.7)
화장실/욕실	2,024,277	224,767	473,862	105,421	41,451
지지대손잡이	(12.3)	(8.8)	(9.9)	(8.8)	(6.9)
닫기 쉬운	13,342,440	1,961,618	3,752,020	953,359	436,067
화장실/욕실문	(81.2)	(76.6)	(78.1)	(79.2)	(72.1)
단차제거	2,601,388 (15.8)	266,828 (10.4)	523,824 (10.9)	157,567 (13.1)	34,606 (5.7)
화장실양변기	15,308,311 (93.1)	2,167,558 (84.6)	4,143,093 (86.3)	1,085,482 (90.2)	460,354 (76.1)
안전한 바닥재	2,655,036 (16.1)	282,047 (11.0)	594,910 (12.4)	153,708 (12.8)	46,410 (7.7)
휠체어통행	5,551,181	578,831	1,243,430	339,995	133,876
가능한 넓은 출구/복도	(33.8)	(22.6)	(25.9)	(28.3)	(22.1)
응급비상벨	1,957,290 (11.9)	114,567 (4.5)	362,474 (7.5)	108,180 (9.0)	29,908 (4.9)
적절한 높이의 부엌	14,525,712	2,150,912	4,195,643	1,032,894	490,641
작업대	(88.4)	(84.0)	(87.4)	(85.8)	(81.1)
집 앞 소방차 진입	14,813,086 (90.1)	2,126,577 (83.0)	4,089,404 (85.2)	1,059,347 (88.0)	489,236 (80.9)

주 : 2008년 기준임

자료 :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8 주거실태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23페이지 참조

- 2008년 가구특성별 주택설비 유무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체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의 주택 설비율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나, 고령자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10〉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점)

구 분	주택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일반가구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장애인가구
전 체	2.8	2.8	2.8	2.9
저소득층	2.7	2.7	2.7	2.9
중소득층	2.8	3.0	2.8	3.0
고소득층	2.9	3.2	2.9	3.2

주 1) 만족도는 4점을 만점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

2) 일반가구는 2008년 기준, 장애인가구는 2009년 기준임

자료 :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9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3페이지 참조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설명 보기 : 356페이지 참조

- 2009년 장애인가구의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8점(4점 만점),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2.9점(4점 만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가구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2) 주거 복지

〈표 2-2-11〉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율 및 경험률

구 분	인지율	경험률	(단위 : %)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	13.3	1.3	
전세금 저리융자	11.9	0.9	
주거비보조	15.1	7.1	
주택개조 비용 보조	6.6	0.9	
영구임대 입주 우선권	28.0	5.8	
국민임대 입주 우선권	21.3	1.2	
장기 전세주택 입주 우선권	10.0	0.2	
다가구매입임대 입주 우선권	5.7	0.2	
전세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4.9	0.1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입주 우선권	7.7	0.2	
일반분양주택 입주 우선권	10.6	0.0	
국민임대 편의시설 무료설치	6.8	0.2	
간단한 주택관리	9.9	3.5	
간단한 집수리	13.7	4.7	
개조 및 주거이동 정보제공	4.6	0.6	

주 : 2009년 기준임

자료 :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9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3페이지 참조

☞ '주거지원프로그램' 설명 보기 : 357페이지 참조

- 장애인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인지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10% 내외의 낮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일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1%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구임대 입주 우선권, 국민임대 입주 우선권에 대한 인지율만 20%가 넘었으며, 주거비 보조(7.1%), 영구임대 입주 우선권제도(5.8%), 간단한 집수리(4.7%), 간단한 주택관리(3.5%) 순의 경험률을 보이고 있음

## 〈표 2-2-12〉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단위 : %)

구 분	전 체	주택구입 자금저리 융자	주거비 보조	주택개조 비용보조	공공임대 주택입주 우선권부여	자립생활 을 위한 재가서비스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집수리	기타
전 체	100.0	14.9	38.5	7.9	5.9	3.8	7.3	21.8
저소득층	100.0	10.5	44.4	7.9	5.8	2.9	8.1	20.4
중소득층	100.0	25.4	25.7	8.0	6.7	5.6	4.7	23.9
고소득층	100.0	29.0	15.1	6.9	3.9	7.7	7.2	30.2
지 체	100.0	16.9	36.8	8.4	5.7	2.6	7.6	22.1
뇌 병 변	100.0	11.7	40.9	8.5	5.8	5.0	6.3	21.8
시 각	100.0	14.8	39.1	6.2	7.0	3.8	8.0	21.2
청 각	100.0	11.8	42.2	8.8	5.5	3.3	9.1	19.2
언 어	100.0	12.0	46.1	6.5	5.9	7.7	5.5	16.3
지 적	100.0	10.0	41.0	6.0	4.6	8.9	4.9	24.7
자 폐 성	100.0	17.8	25.3	2.8	9.1	15.8	2.8	26.5
정 신	100.0	9.5	44.5	7.1	4.5	9.5	5.3	19.7
신 장	100.0	21.2	33.5	5.7	6.6	3.4	7.4	22.4
심 장	100.0	14.0	45.2	6.2	7.2	0.7	6.2	20.5
호 흡 기	100.0	10.3	39.1	7.6	11.0	2.4	4.2	25.4
간	100.0	25.0	31.1	8.7	4.2	1.5	8.0	21.5
안 면	100.0	22.0	30.6	6.3	10.8	8.1	7.8	14.5
장루·요루	100.0	12.6	30.9	6.4	11.0	4.9	7.6	26.6
간 절	100.0	9.9	44.7	6.0	8.2	2.7	4.9	23.6

주 : 2009년 기준임

자료 :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9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3페이지 참조

▣ '주거지원프로그램' 설명 보기 : 357페이지 참조

- 장애인가구의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거비보조' 38.5%,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 14.9%, '주택 개조 비용 보조' 7.9% 등의 순으로 재정적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3%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보조'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호흡기, 안면, 장루·요루 장애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부여'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폐성 장애는 '자립생활을 위한 재가서비스' 필요성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나. 소유 차량

〈표 2-2-13〉 장애인가구의 차량소유 유무

(단위 :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있 다	없 다
2005년	2,100,729	100.0	48.9	51.1
2008년	2,137,226	100.0	49.3	50.7
2011년	2,611,126	100.0	52.7	47.3
지 체	1,325,877	100.0	56.7	43.3
뇌 병 변	316,309	100.0	48.2	51.8
시 각	256,841	100.0	50.1	49.9
청 각	278,337	100.0	47.7	52.3
언 어	21,049	100.0	51.6	48.4
지 적	153,332	100.0	55.3	44.7
자 폐 성	16,238	100.0	86.7	13.3
정 신	103,894	100.0	26.9	73.1
신 장	58,500	100.0	55.5	44.5
심 장	18,508	100.0	52.2	47.8
호흡기	19,249	100.0	63.8	36.2
간	9,289	100.0	86.6	13.4
안 면	2,426	100.0	26.9	73.1
장루·요루	16,705	100.0	35.9	64.1
간 질	14,572	100.0	29.8	70.2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 실태조사」, 200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가구 중 52.7%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 조사의 49.3%보다 3.4%p 증가한 것임
- 자폐성장애(86.7%)와 간장애(86.6%)는 가구 내 차량 소유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14〉 제1차량 차종 및 연료, 소유명의, 용도, 운전자

구 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단위 : %)
																간질	
차 종	승용차	82.9	82.5	86.1	82.7	80.2	82.6	83.5	84.4	79.6	89.9	92.4	86.4	88.9	89.1	63.6	62.5
	승합차	9.4	9.0	10.5	9.8	11.6	0.0	6.7	9.4	12.8	6.2	7.6	11.7	4.8	10.9	28.2	19.2
	화물차	7.7	8.6	3.5	7.5	8.2	17.4	9.8	6.2	7.6	3.9	0.0	1.9	6.3	0.0	8.2	18.3
연료	휘발유	25.4	25.5	21.4	26.5	28.0	7.7	20.7	17.3	29.4	39.9	16.1	42.1	25.1	15.3	47.5	7.8
	LPG	50.6	50.5	58.4	48.2	45.1	72.8	49.4	56.7	48.8	42.0	63.7	44.0	59.5	66.4	29.0	68.1
	디젤	24.0	24.1	20.2	25.3	26.9	19.5	29.9	25.9	21.8	18.1	20.2	13.9	15.5	18.3	23.5	24.1
소 유	장애인	53.3	64.0	35.6	53.7	48.5	57.9	11.6	1.9	21.1	52.7	61.5	73.5	62.1	21.6	62.8	15.4
	보호자	20.5	17.8	18.4	24.1	25.5	34.6	23.3	36.8	37.5	20.9	20.6	12.0	26.1	0.0	27.8	40.5
	명 의	23.6	16.1	44.2	19.6	22.1	5.5	58.3	61.3	34.6	23.5	17.9	11.6	11.8	78.4	1.4	34.5
용 도	기타	2.7	2.0	1.8	2.6	3.8	2.0	6.9	0.0	6.8	2.8	0.0	2.9	0.0	0.0	8.0	9.6
	출·퇴근	55.4	55.3	50.9	63.3	56.9	43.2	58.3	44.5	49.0	68.4	51.5	29.3	24.7	18.4	49.5	51.6
	통학	1.5	0.7	1.1	1.2	1.3	2.1	7.2	13.9	0.0	1.8	0.0	0.0	19.0	0.0	0.0	9.8
운 전	사업용	9.1	9.9	4.6	7.7	12.8	26.4	6.9	7.0	18.1	5.1	0.0	1.6	3.6	0.0	2.0	6.8
	외출	33.8	33.9	43.1	27.8	29.1	28.3	27.5	34.6	32.8	24.7	48.5	69.0	52.7	81.6	48.5	31.8
	기타	0.1	0.2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자	본인	42.6	56.2	15.3	40.1	39.6	37.1	0.5	0.0	6.0	36.6	39.7	61.2	49.9	6.3	43.0	2.0
	보호자	49.2	36.5	71.1	50.1	55.3	53.0	91.1	100.0	78.3	58.2	52.2	27.0	50.1	78.4	32.8	88.4
	기타	8.2	7.2	13.5	9.8	5.1	9.9	8.4	0.0	15.7	5.2	8.1	11.8	0.0	15.3	24.2	9.6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인가구 내 소유하고 있는 제1차량에 대한 조사 결과, 주로 차종은 승용차(82.9%), 연료는 LPG(50.6%), 자동차 소유현황은 '장애인 명의' (53.3%), 자동차의 사용 용도는 '주로 출·퇴근' (55.4%), 차량운전자는 보호자(49.2%)인 것으로 나타남

## 다. 정보와 통신

### 1) 정보통신기기

〈표 2-2-15〉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구 분	휴대폰	스마트폰	컴퓨터(PC)	인터넷	(단위 : %)
	사용률	사용률	사용률	사용률	
2005년	81.2	-	36.4	36.0	
2008년	66.7	-	26.7	25.7	
2011년	70.1	7.2	31.3	31.0	
지 체	78.7	9.7	35.8	35.5	
뇌 병 변	51.0	2.4	16.1	15.7	
시 각	78.7	7.6	31.2	31.0	
청 각	68.1	5.0	21.1	21.0	
언 어	71.8	0.5	45.2	45.2	
지 적	38.4	3.4	40.9	40.1	
자 폐 성	22.3	1.2	62.6	62.6	
정 신	45.8	4.1	16.0	16.0	
신 장	83.9	9.9	33.7	33.3	
심 장	75.0	0.4	57.5	57.5	
호 흡 기	74.5	1.8	38.0	38.0	
간	89.7	11.4	59.1	59.1	
안 면	60.0	19.0	52.2	52.2	
장루 · 요루	74.2	3.5	19.8	19.8	
간 질	66.8	11.5	42.1	42.1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정보기기 사용률은 '휴대폰' 70.1%, '컴퓨터' 31.3%, '인터넷' 31.0%, '스마트폰' 7.2% 순으로 2008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함

## 2) 컴퓨터 보유

〈표 2-2-16〉 컴퓨터 보유율

구 분	일반국민	장애인	격차	(단위 : %, %p)
2002년	78.5	56.4		22.1
2003년	77.9	57.9		20.0
2004년	77.8	62.3		15.5
2005년	78.9	66.2		12.7
2006년	79.6	68.7		10.9
2007년	80.4	69.9		10.5
2008년	80.9	70.7		10.2
2009년	81.4	71.2		10.2
2010년	81.8	71.6		10.2
2011년	81.9	71.9		10.0

주 : 전체 국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1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4페이지 참조

〈표 2-2-17〉 장애인가구의 컴퓨터보유율

구 분	컴퓨터 보유율	구 분	컴퓨터 보유율	(단위 : %)
전 체	71.9			
거주지 규모별		월가구 소득별		
도시지역	72.8	100만원 미만		54.7
군지역	60.6	100~199만원		77.9
가구구성형태		200~299만원		87.6
장애인 단독거주	53.1	300만원 이상		
일반인 공동거주	77.8			93.1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4페이지 참조

- 2011년 말 현재 장애인 거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71.9%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인 81.9%보다 10.0%p 낮은 수준임
- 장애인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컴퓨터보유율 보다는 여전히 낮음
- 군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장애인 단독거주보다 일반인 공동 거주 시에,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컴퓨터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3) 인터넷 이용

〈표 2-2-18〉 인터넷 이용률

구 분	일반국민	장애인	격차
2002년	59.4	22.4	37.0
2003년	65.5	27.6	37.9
2004년	70.2	34.8	35.4
2005년	72.8	41.0	31.8
2006년	74.8	46.6	28.2
2007년	76.3	49.9	26.4
2008년	77.1	51.8	25.3
2009년	77.6	52.7	24.9
2010년	78.3	53.5	24.8
2011년	78.3	54.4	23.9

주 1) 전체 국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1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기준임

2) 인터넷 이용자는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로 함

자료 :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4페이지 참조

〈표 2-2-19〉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구 분	인터넷 이용률	구 분	인터넷 이용률
전체	54.4	학력별	중졸이하
성별	남성		고졸
	58.5		92.9
	여성		대졸이상
장애유형별	지체장애인	59.1	월가구 소득별
	뇌병변장애	41.2	100만원 미만
	시각장애인	46.9	100~199만원
	청각/언어장애인	48.3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78.4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4페이지 참조

- 2011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만 7세~ 6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54.4%로 전년 대비 0.9%p 증가하였으나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인 78.3%보다 23.9%p 낮은 수준임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 국민과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감소 추세이며, 여성보다 남성, 타 장애유형 대비 지체장애인,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상대적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표 2-2-20〉 일상활동별 인터넷 활용비중

구 분	일반국민	장애인	(단위 : %) 일반국민 대비수준
전체 평균	28.9	18.3	63.3
뉴스보기	43.1	30.8	71.5
자료 송수신	27.0	16.3	60.4
예약/예매	26.1	14.4	55.2
제품구매	28.5	17.9	62.8
정보검색/습득	52.7	39.9	75.7
행정업무	14.3	8.5	59.4
은행업무	21.3	12.4	58.2
원거리 의사소통	26.6	13.6	51.1
교제/대인관계	20.7	10.6	51.2

주 1) 인터넷 이용자 기준임

2) 일반국민 대비수준은 일반국민의 인터넷 활용비중을 100으로 할 때, 장애인의 일반국민 대비 수준을 의미

3) 2011년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1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4페이지 참조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애인의 인터넷 활용비중(인터넷 일상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63.3% 수준

- 「뉴스보기」 및 「정보검색/습득」 활동의 인터넷 활용비중은 일반국민의 70%이상이나, 타 활동은 일반국민의 50~60%수준에 그침

## 4) 정보화 수준

〈표 2-2-21〉 장애인 정보격차 지수

(단위 : 점)

구 分	종 합		접 근		역 량		활 용	
	격차지수	대비수준	격차지수	대비수준	격차지수	대비수준	격차지수	대비수준
2004년	42.5	57.5	27.0	73.0	58.9	41.1	51.9	48.1
2005년	34.8	65.2	22.4	77.6	50.0	50.0	42.9	57.1
2006년	26.1	73.9	14.6	85.4	39.0	61.0	33.9	66.1
2007년	24.0	76.0	11.2	88.8	36.6	63.4	33.3	66.7
2008년	21.2	78.8	7.4	92.6	34.0	66.0	31.2	68.8
2009년	19.7	80.3	7.3	92.7	27.8	72.2	29.4	70.6
2010년	18.7	81.3	6.6	93.4	27.2	72.8	28.3	71.7
2011년	17.8	82.2	6.5	93.5	24.9	75.1	27.1	72.9

- 주 1) 격차지수=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수준  
 격차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정보격차가 큰 것을 의미함  
 2) 대비수준 :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수준  
 3) 종합격차지수 : 접근·역량·활용 부문을 종합한 정보화 수준의 격차 측정  
 4) 접근격차지수 :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 수준의 격차 측정  
 5) 역량격차지수 :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의 격차 측정

자료 :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4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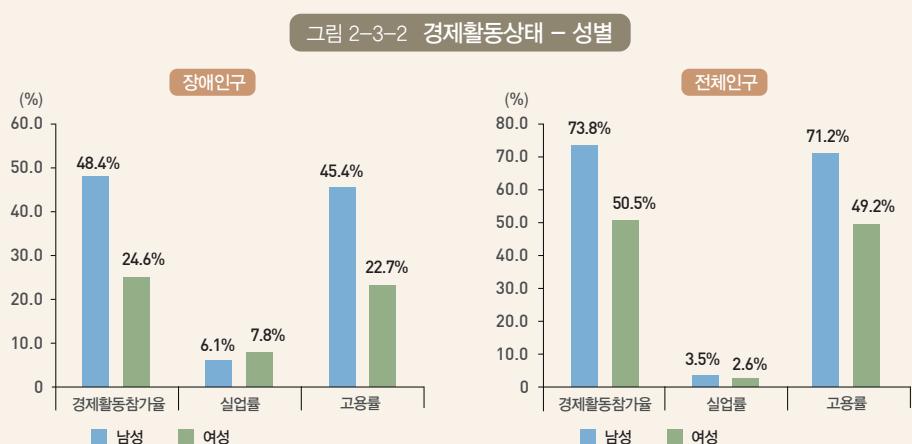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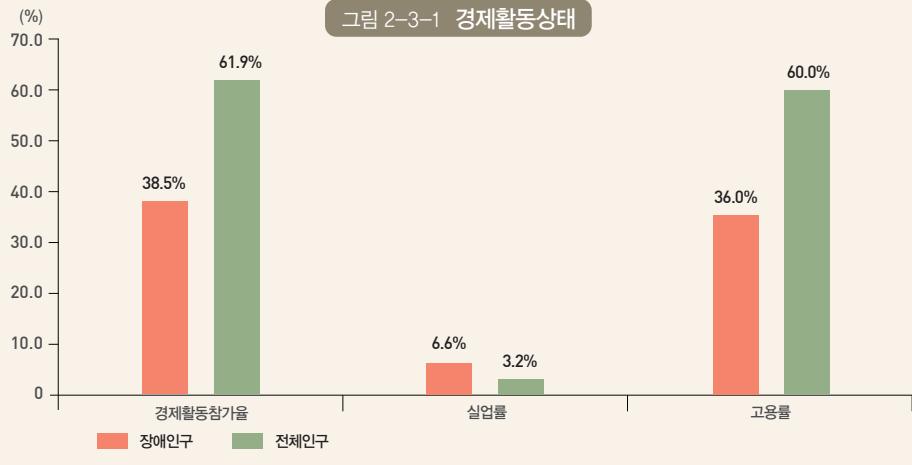
☞ '정보격차 지수' 설명 보기 : 357페이지 참조

- 접근·역량·활용 등 모든 부문에서 정보격차 지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국민과 장애인 간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접근, 역량, 활용 부문별 정보격차 수준의 종합 측정 요약치인 종합 격차지수는 '10년 18.7점에서' '11년 17.8점으로 전년 대비 0.9점 감소하였으며, 장애인의 부문별 전년 대비 격차지수 감소폭은 활용 부문 1.2점, 접근 부문 0.1점, 역량 부문 2.3점 감소함



### 제 3 절 고 용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주 : 2010년 5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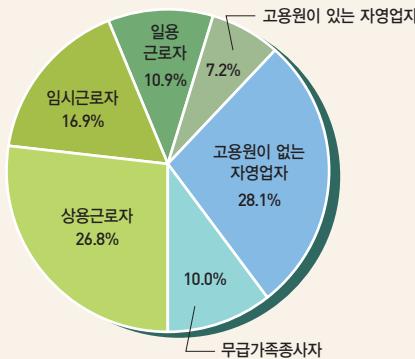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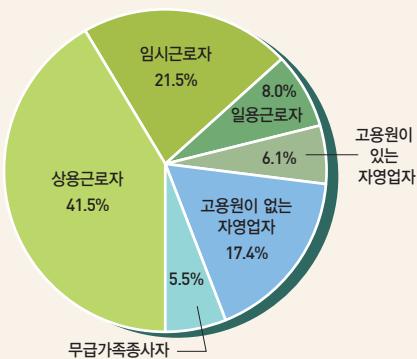
- 2010년 5월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 고용률은 36.0%, 실업률은 6.6%로 나타난 반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61.9%, 60.0%, 3.2%로 나타나,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음

그림 2-3-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장애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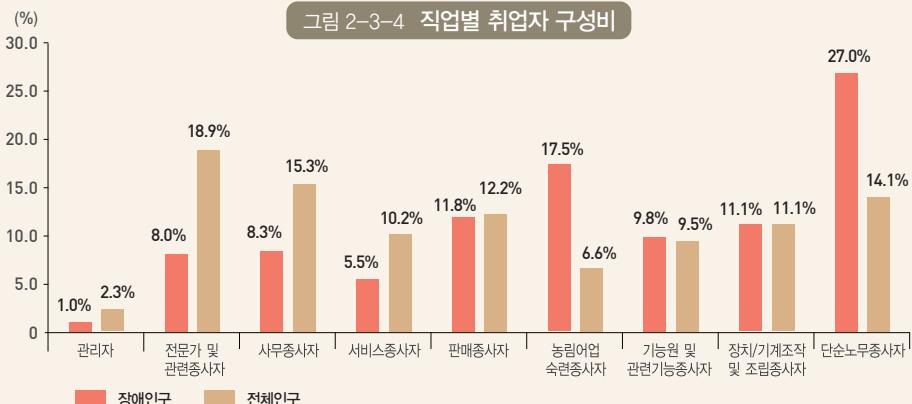


전체인구



주 : 2010년 5월 기준임

그림 2-3-4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 기준임

2) 장애인구의 경우 '모름/응답거절' 제외함에 따라 각 항목의 합계가 100.0% 되지 않음

3)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 종사상지위별 장애인의 취업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8.1%, '상용근로자' 26.8%, '임시근로자' 16.9%, '일용근로자' 10.9%, '무급가족종사자'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 27.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7.5%, '판매종사자' 11.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5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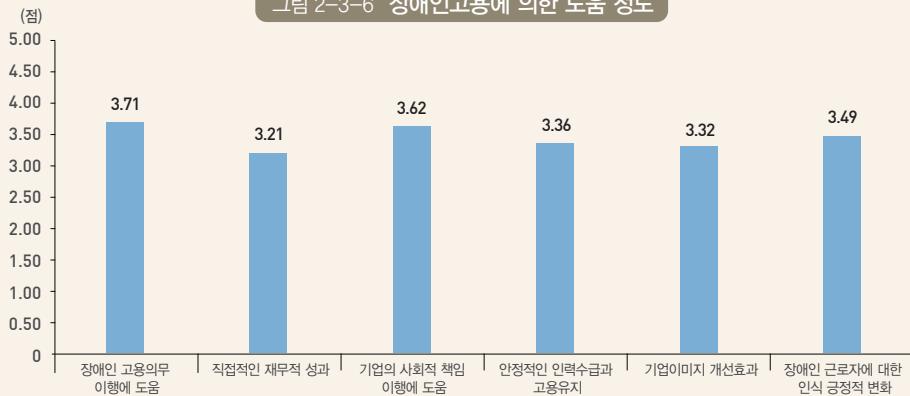


- 주 1)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를 모두 포함함
- 2)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이 월평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2004년부터는 50명 이상으로 확대됨
- 3) 2006년부터 정부부문 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 및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적용됨
- 4)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2%에서 3%로 상향조정
- 5) 2010년부터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 2%에서 2.3%로 상향조정(단,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 6)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적용한 고용률
- 7) 2010년부터 정부부문 고용률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현황이 포함된 수치

자료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각년도.

- ◉ 정부부문,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11년 2.28%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6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직종 확대와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66%에서 2011년 2.48%로 약 4배 증가,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0%에서 2011년 2.24%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림 2-3-6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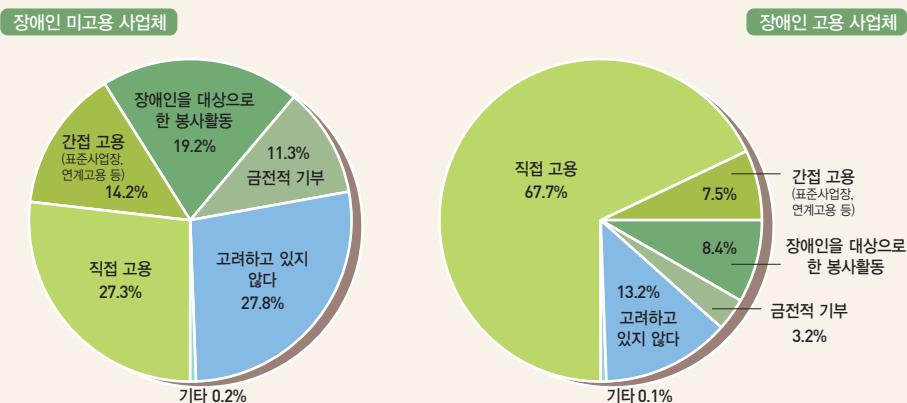


주 1) 5점 척도 기준으로 1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 그렇다'임

2)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08년 기준임. 제주 포함

그림 2-3-7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주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09년 기준임. 제주 포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1.

- ◉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도움'(3.71점)이 가장 높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도움'(3.62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긍정적 변화'(3.49점), '인력수급과 고용유지'(3.3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방식으로는 장애인 고용 기업체의 67.7%가 '직접 고용'을 선호한 반면, 미고용기업체는 27.3%만이 '직접 고용'을 선호하고 30.5%는 '봉사활동'과 '금전적 기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1. 경제활동

### 가. 경제활동상태

〈표 2-3-1〉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376,431	915,217	855,158	60,059	1,461,214	38.5	6.6	36.0
남 성	1,391,839	673,231	631,960	41,271	718,608	48.4	6.1	45.4
여 성	984,592	241,985	223,197	18,788	742,607	24.6	7.8	22.7
전체인구	40,533	25,099	24,306	793	15,434	61.9	3.2	60.0
남 성	19,819	14,635	14,116	519	5,185	73.8	3.5	71.2
여 성	20,714	10,464	10,190	274	10,250	50.5	2.6	49.2

-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3) 전체인구의 경우 천명 단위임  
 4)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5)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6)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7)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334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58페이지 참조

- 2010년 5월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 고용률은 36.0%, 실업률은 6.6%로 나타난 반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61.9%, 60.0%, 3.2%로 나타남
  -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실업률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나 실업률은 1.7%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2〉 경제활동상태 – 연령별

(단위 : 명, %)

구 分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설업자				
장애인구	2,376,431	915,217	855,158	60,059	1,461,214	38.5	6.6	36.0
15~29세	130,564	43,115	37,529	5,586	87,449	33.0	13.0	28.7
30~39세	196,143	109,952	101,422	8,530	86,191	56.1	7.8	51.7
40~49세	372,037	220,313	200,721	19,592	151,724	59.2	8.9	54.0
50~59세	507,728	244,607	229,220	15,387	263,121	48.2	6.3	45.1
60세이상	1,169,960	297,230	286,266	10,964	872,730	25.4	3.7	24.5
전체인구	40,533	25,099	24,306	793	15,434	61.9	3.2	60.0
15~29세	9,720	4,301	4,027	274	5,418	44.3	6.4	41.4
30~39세	8,112	6,068	5,858	210	2,044	74.8	3.5	72.2
40~49세	8,417	6,759	6,609	150	1,657	80.3	2.2	78.5
50~59세	6,711	4,969	4,867	102	1,742	74.0	2.0	72.5
60세이상	7,573	3,002	2,944	58	4,572	39.6	1.9	38.9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판단기준(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3) 전체인구의 경우 천명 단위임

4)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2-3-1〉 참조

5)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334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58페이지 참조

- 2010년 5월 기준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모두 40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대와 20대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구의 「15~29세」의 실업률은 13.0%로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고 전체인구(6.4%)의 약 2배 이상 높음

〈표 2-3-3〉 경제활동상태 – 장애유형별

(단위 : 명, %)

구 分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전 체	2,376,431	915,217	855,158	60,059	1,461,214	38.5	6.6	36.0
신체 장애	지체장애	1,289,269	619,256	585,099	34,157	670,013	48.0	5.5
	지체 외	243,031	29,005	25,064	3,941	214,026	11.9	13.6
감각 장애	시각장애	238,997	100,647	94,564	6,083	138,350	42.1	6.0
	시각 외	257,094	87,746	81,287	6,459	169,348	34.1	7.4
정신적 장애		234,575	48,188	43,114	5,074	186,387	20.5	10.5
내부장애		113,465	30,376	26,031	4,345	83,089	26.8	14.3
								22.9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3) 지체 외 신체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를 의미함

4)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2-3-1〉 참조

5)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58페이지 참조

〈표 2-3-4〉 경제활동상태 – 장애정도별

(단위 : 명, %)

구 分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전 체	2,376,431	915,217	855,158	60,059	1,461,214	38.5	6.6	36.0
중 중	797,530	161,062	142,102	18,960	636,468	20.2	11.8	17.8
경 중	1,578,901	754,155	713,056	41,099	824,746	47.8	5.4	45.2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3)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2-3-1〉 참조

4)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58페이지 참조

〈표 2-3-5〉 경제활동상태 – 교육정도별

(단위 : 명, %)

구 分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전 체	2,376,431	915,217	855,158	60,059	1,461,214	38.5	6.6	36.0
중졸이하	1,519,106	467,289	446,167	21,122	1,051,817	30.8	4.5	29.4
고졸	616,575	297,373	269,134	28,239	319,202	48.2	9.5	43.6
대졸이상	240,751	150,555	139,857	10,698	90,196	62.5	7.1	58.1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3)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2-3-1〉 참조

4)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58페이지 참조

〈표 2-3-6〉 경제활동상태 – 지역별

(단위 : 명, %)

구 分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전 체	2,376,431	915,217	855,158	60,059	1,461,214	38.5	6.6	36.0
수도권	980,341	374,729	341,874	32,855	605,612	38.2	8.8	34.9
광역시권	453,479	154,061	143,309	10,752	299,418	34.0	7.0	31.6
기타 시도	942,611	386,426	369,974	16,452	556,185	41.0	4.3	39.2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3)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광역시권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기타시도는 나머지 지역을 의미함

4)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2-3-1〉 참조

5)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58페이지 참조

## 나. 취업자 특성

〈표 2-3-7〉 취업자 인적구성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비 율	인구분포
전 체		855,158	100.0	100.0
성별	남 성	631,960	73.9	58.6
	여 성	223,197	26.1	41.4
연령별	15~29세	37,529	4.4	5.5
	30~39세	101,422	11.9	8.3
	40~49세	200,721	23.5	15.7
	50~59세	229,220	26.8	21.4
	60세 이상	286,266	33.5	49.2
장애 정도별	중 중	142,102	16.6	33.6
	경 중	713,056	83.4	66.4
장애 유형별	신체장애	585,099	68.4	54.3
	지체 외	25,064	2.9	10.2
	감각장애	94,564	11.1	10.1
	시각 외	81,287	9.5	10.8
	정신적 장애	43,114	5.0	9.9
지역별	내부장애	26,031	3.0	4.8
	수도권	341,874	40.0	41.3
	광역시권	143,309	16.8	19.1
학력별	기타 시도	369,974	43.3	39.7
	중졸 이하	446,167	52.2	63.9
	고졸	269,134	31.5	25.9
	대졸 이상	139,857	16.4	10.1

주 1)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지체 외 신체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광역시권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기타시도는 나머지 지역을 의미함

4)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페이지 참조

〈표 2-3-8〉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구 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취업자 중 비율	임금/비임금 내 비율	취업자 중 비율	임금/비임금 내 비율
전 체	100.0	-	100.0	-
임금 근로자	소 계	54.6	100.0	71.0
	상용근로자	26.8	49.1	41.5
	임시근로자	16.9	30.9	21.5
비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10.9	19.9	8.0
	소 계	45.4	100.0	29.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2	15.9	6.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8.1	61.9	17.4
	무급가족종사자	10.0	22.1	5.5
				19.0

주 :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334페이지 참조

☞ '종사상 지위' 설명 보기 : 359페이지 참조

- 2010년 5월 기준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유급종사자를 두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는 28.1%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상용근로자' 26.8%, '임시근로자' 16.9%, '일용근로자' 10.9%, '무급가족종사자' 10.0% 등의 순으로 나타냄
  - 임금근로자 내에서는 상용, 임시, 일용의 순이며, 비임금근로자 내에서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의 순임

〈표 2-3-9〉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구 分	장애인구			전체인구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9.0	15.2	29.5	7.3	6.9	7.9
제조업	14.6	17.1	7.4	16.6	19.8	12.2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0.4	0.5	0.0	0.3	0.5	0.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1	0.2	0.0	0.3	0.4	0.1
건설업	8.3	11.1	0.2	7.5	11.7	1.6
도매 및 소매업	11.5	12.3	9.2	14.8	13.6	16.5
운수업	6.3	7.4	3.3	5.3	8.4	1.1
숙박 및 음식점업	4.7	3.2	8.8	7.9	4.6	12.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5	0.6	0.1	2.7	3.4	1.7
금융 및 보험업	1.8	1.9	1.8	3.3	3.0	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3.6	3.4	3.9	2.2	2.5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	2.4	0.4	3.7	4.3	2.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3	6.5	2.1	4.2	4.1	4.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9	6.1	9.0	4.3	4.5	3.9
교육 서비스업	2.7	2.1	4.5	7.6	4.3	12.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1.6	11.9	4.7	1.6	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	1.8	1.7	1.6	1.6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3	6.3	6.1	5.2	4.7	5.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 활동	0.1	0.1	0.0	0.6	0.0	1.4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0	0.0	0.0	0.0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 기준임

2)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334페이지 참조

▣ ‘산업, 직업’ 설명 보기 : 359페이지 참조

- 2010년 5월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9.0%, ‘제조업’ 14.6%, ‘도매 및 소매업’ 11.5%, ‘건설업’ 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3-10〉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구 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관리자	1.0	1.4	0.0	2.3	3.5	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0	7.9	8.1	18.9	18.0	20.1
사무종사자	8.3	9.5	4.7	15.3	13.9	17.3
서비스종사자	5.5	3.3	11.8	10.2	5.9	16.1
판매종사자	11.8	11.5	12.5	12.2	9.8	15.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7.5	14.2	26.8	6.6	6.5	6.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9.8	12.4	2.3	9.5	14.0	3.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1.1	14.6	1.1	11.1	16.8	3.2
단순노무종사자	27.0	25.0	32.7	14.1	11.6	17.4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 기준임

2)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334페이지 참조

☞ ‘산업, 직업’ 설명 보기 : 359페이지 참조

- 2010년 5월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 27.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7.5%, ‘판매종사자’ 11.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장애인(25.0%)과 여성장애인(32.7%) 모두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11〉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시간)

구 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6시간 미만	23.7	18.5	38.3	13.2	8.3	20.0
1~17시간	8.4	5.5	16.5	4.3	2.5	6.9
18~35시간	15.3	13.0	21.8	8.8	5.8	13.0
36시간 이상	75.2	80.5	60.5	85.7	90.9	78.6
지난 주 일시 휴직자	1.1	1.1	1.1	1.1	0.8	1.5
주당 평균 취업시간	44.1	46.8	36.8	46.2	48.6	42.8

주 :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334페이지 참조

☞ '취업시간' 설명 보기 : 360페이지 참조

〈표 2-3-12〉 근로형태별 취업자의 구성비

(단위 : 명, %)

구 分	장애인구		전체인구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466,916	100.0	16,617	100.0
정규직	171,687	36.8	11,119	66.9
비정규직	295,229	63.2	5,498	33.1
한시적	172,626	37.0	3,202	19.3
시간제	94,640	20.3	1,525	9.2
비전형	151,679	32.5	2,178	13.1

주 1) 전체인구의 경우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로, 친명 단위임

2) 비정규직근로자 내 유형별 중복으로 합계는 불일치함

3)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4)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0년 3월)」,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334페이지 참조

☞ '근로형태' 설명 보기 : 360페이지 참조

〈표 2-3-13〉 미취업에서 취업을 한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단위 : %, 만원)

구 분		취업 유지	미취업자→취업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23.3	4.8
	제조업	15.4	26.4
	건설업	7.9	3.3
	도매 및 소매업	10.5	4.8
	운수업	5.6	2.9
	숙박 및 음식점업	4.2	4.1
	사업시설관련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7	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6	1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4	4.8
종사하고 있는 직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1	9.3
	관리자	1.9	0.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6	5.4
	사무종사자	7.4	9.1
	서비스종사자	5.6	7.5
	판매종사자	9.8	4.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2.9	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2.0	7.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8.4	3.3
종사상 지위	단순노무종사자	28.4	58.8
	상용근로자	26.9	16.8
	임시근로자	15.9	40.8
	일용근로자	14.1	27.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2.3	10.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8	0.4
	무급가족종사자	8.0	4.2

주 1) 각 항목의 대상, 세부통계 및 설명, 주석 등에 대해서는 원 보고서 참조

2) 산업들 중 일부는 생략하였으며 따라서 각 비율의 합계는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신규 취업자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 실업자 특성

〈표 2-3-14〉 실업자 인적구성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비 율	인구분포
전 체		60,059	100.0	100.0
성별	남 성	41,271	68.7	58.6
	여 성	18,788	31.3	41.4
연령별	15~29세	5,586	9.3	5.5
	30~39세	8,530	14.2	8.3
	40~49세	19,592	32.6	15.7
	50~59세	15,387	25.6	21.4
	60세 이상	10,964	18.3	49.2
장애 정도별	중 증	18,960	31.6	33.6
	경 증	41,099	68.4	66.4
장애 유형별	신체장애	지체장애 지체 외	34,157 3,941	56.9 6.6
	감각장애	시각장애 시각 외	6,083 6,459	10.1 10.8
	정신적 장애		5,074	8.4
	내부장애		4,345	7.2
				4.8
지역별	수도권		32,855	54.7
	광역시권		10,752	17.9
	기타 시도		16,452	27.4
학력별	중졸 이하		21,122	35.2
	고졸		28,239	47.0
	대졸 이상		10,698	17.8

주 1)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지체 외 신체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광역시권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기타시도는 나머지 지역을 의미함

4)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페이지 참조

〈표 2-3-15〉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단위 : 명, %)

구 分	장애인구		전체인구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60,059	100.0	793	100.0
3개월 미만	21,617	36.0	470	59.3
3~6개월 미만	24,811	41.3	261	32.9
6~12개월 미만	7,094	11.8	59	7.4
12개월 이상	6,537	10.9	2	0.3

주 1) 전체인구의 경우 천명 단위임

2)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334페이지 참조

☞ ‘구직기간’ 설명 보기 : 361페이지 참조

〈표 2-3-16〉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구성비

(단위 : %)

구 分	장애인구			전체인구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 무경험 실업자	13.3	11.7	16.8	3.9	3.1	5.5
취업 유경험 실업자	86.7	88.3	83.2	96.1	96.9	94.5

주 :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334페이지 참조

- 2010년 5월 장애인 실업자의 구직기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6개월 이상’ 22.7%, ‘12개월 이상’ 10.9%로 나타나 전체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 실업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5월 장애인의 취업 유경험 실업자 비율은 86.7%로 전체인구(96.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17〉 일자리를 그만 둔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단위 : %, 만원)

구 分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93.0	7.0
	제조업	93.9	6.1
	건설업	88.4	11.6
	도매 및 소매업	90.1	9.9
	운수업	94.4	5.6
	부동산 및 임대업	84.8	15.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2	24.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7.9	12.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4	5.6
종사하고 있는 직종	관리자	89.9	10.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96.2	3.8
	사무종사자	96.1	3.9
	서비스종사자	90.7	9.3
	판매종사자	94.3	5.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93.4	6.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93.2	6.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94.2	5.8
	단순노무종사자	84.8	15.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96.4	3.6
	임시근로자	82.8	17.2
	일용근로자	81.2	18.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5.4	4.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87.2	12.8
	무급가족종사자	96.0	4.0

주 1) 3차 조사(2010년) 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함

2) 각 항목의 대상, 세부통계 및 설명, 주석 등에 대해서는 원 보고서 참조

3) 산업들 중 일부는 생략하였음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3차 조사(2010년) 시 취업상태였으나 현재 미취업중인 장애인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나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일자리에 종사했던 비율이 높음

## 라.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표 2-3-18〉 비경제활동인구 인적구성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비 율	인구분포
전 체		1,461,214	100.0	100.0
성별	남 성	718,608	49.2	58.6
	여 성	742,607	50.8	41.4
연령별	15~29세	87,449	6.0	5.5
	30~39세	86,191	5.9	8.3
	40~49세	151,724	10.4	15.7
	50~59세	263,121	18.0	21.4
	60세 이상	872,730	59.7	49.2
장애정도별	중 증	636,468	43.6	33.6
	경 증	824,746	56.4	66.4
장애유형별	신체장애	지체장애인 지체 외	45.9 14.6	54.3 10.2
	감각장애	시각장애인 시각 외	9.5 11.6	10.1 10.8
	정신적 장애	186,387	12.8	9.9
	내부장애	83,089	5.7	4.8
	수도권	605,612	41.4	41.3
지역별	광역시권	299,418	20.5	19.1
	기타 시도	556,185	38.1	39.7
	교육정도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72.0 21.8 6.2	63.9 25.9 10.1

주 1)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지체 외 신체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광역시권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기타시도는 나머지 지역을 의미함

4)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페이지 참조

〈표 2-3-19〉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

(단위 : %)

구 分	장애인구			전체인구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육 아	0.6	0.2	1.0	9.4	0.1	14.1
가 사	10.7	0.5	20.6	36.0	2.5	53.0
재학·수강 등	2.9	4.1	1.8	28.1	44.5	19.9
연 로	16.3	15.2	17.5	10.8	18.5	6.9
심신장애	31.1	33.6	28.7	2.9	5.7	1.5
그 외	38.3	46.5	30.4	12.7	28.7	4.6

주 1) 재학·수강 등 : 정규교육기관 통학(재학)+입시학원 통학(수강)+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수강) 등

2) 그 외 : 학원·기관 통학(수강) 외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대기 + 결혼준비 + 쉬었음 등

3)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334페이지 참조

☞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 설명 보기 : 361페이지 참조

〈표 2-3-20〉 구직단념자 구성비

(단위 : 명, %)

구 分	장애인구		전체인구	
	구직단념자	비율	구직단념자	비 율
전 체	14,144(64,895)	100.0(100.0)	229	100.0
남 성	10,007(47,575)	70.8(73.3)	126	55.0
여 성	4,137(17,320)	29.2(26.7)	103	45.0

주 1)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말함

2) 팔호 안의 수치는 EDI 기준의 구직단념자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를 말함

3) 전체인구의 경우 천명 단위임

4) 2010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5/334페이지 참조

☞ '구직단념자'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 2. 장애인 고용 현황

### 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1)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3-21〉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단위 : 명, %)

구 분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수	고용률
1991년	2,427,301	26,128	10,462	0.43
1992년	2,432,231	38,959	10,735	0.44
1993년	2,294,250	44,639	11,024	0.48
1994년	2,371,854	46,153	11,406	0.48
1995년	2,529,815	49,299	12,147	0.48
1996년	2,549,774	50,145	12,742	0.50
1997년	2,546,410	49,484	13,634	0.54
1998년	2,229,501	43,645	14,038	0.63
1999년	2,230,987	44,283	17,588	0.79
2000년	2,251,698	44,975	18,499	0.82
2001년	2,292,414	44,804	22,060	0.96
2002년	2,378,485	46,490	25,385	1.07
2003년	2,390,768	46,801	28,139	1.18
2004년	3,847,875	69,108	52,753	1.37
2005년	4,000,662	71,875	61,862	1.55
2006년	5,801,788	107,369	79,480	1.37
2007년	5,807,665	107,012	89,546	1.54
2008년	6,035,950	111,043	104,132	1.73
2009년	6,091,555	120,277	114,053	1.87
2010년	6,511,624	145,535	145,981(126,416)	2.24(1.94)
2011년	6,909,276	154,432	157,468(133,451)	2.28(1.93)

주 1)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를 모두 포함

2)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이 월평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 사업주에서 2004년부터는 50인 이상으로 확대

3) 2006년부터 정부부문 고용의무 적용직종 확대 및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적용

4)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 정부부문,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11년 2.28%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6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직종 확대와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2-3-22〉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단위 : 명, %)

구 분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수	고용률
1990년	291,584	5,793	1,504	0.52
1991년	256,403	5,128	1,698	0.66
1992년	279,480	5,548	1,987	0.71
1993년	280,887	5,580	2,181	0.78
1994년	279,849	5,568	2,309	0.83
1995년	291,325	5,794	2,565	0.88
1996년	294,594	5,851	2,926	0.99
1997년	305,542	6,073	3,303	1.08
1998년	277,002	5,500	3,413	1.23
1999년	270,985	5,380	3,591	1.33
2000년	274,702	5,452	4,065	1.48
2001년	274,488	5,490	4,420	1.61
2002년	281,454	5,631	4,676	1.66
2003년	289,158	5,830	5,421	1.87
2004년	297,505	5,996	6,079	2.04
2005년	305,067	6,147	6,853	2.25
2006년	812,656	16,292	12,219	1.50
2007년	822,590	16,497	13,142	1.60
2008년	824,164	16,526	14,468	1.76
2009년	822,749	24,723	16,232	1.97
2010년	1,029,075	29,305	24,638(21,403)	2.39(2.08)
2011년	1,071,671	29,856	26,579(22,998)	2.48(2.15)

- 주 1) 2006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의무적용대상 확대(교원·판사 등)  
 2)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를 2%에서 3%로 상향조정  
 3)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4) 2010년부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현황이 포함된 수치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0년 0.52%에서 2011년 2.48%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6년 고용의무적용직종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2-3-23〉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대상 사업체수	상시 근로자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1991년	2,178	2,808,557	2,170,898	21,000	8,764	0.40
1992년	2,242	2,885,010	2,152,751	33,411	8,748	0.41
1993년	2,158	2,640,209	2,013,363	39,059	8,843	0.44
1994년	2,141	2,719,944	2,092,005	40,585	9,097	0.43
1995년	2,229	2,922,444	2,238,490	43,505	9,582	0.43
1996년	2,227	2,917,096	2,255,180	44,294	9,816	0.44
1997년	2,184	2,907,897	2,240,868	43,411	10,331	0.46
1998년	1,919	2,537,312	1,952,499	38,145	10,625	0.54
1999년	1,925	2,526,972	1,960,002	38,903	13,997	0.71
2000년	1,891	2,592,819	1,976,996	39,523	14,434	0.73
2001년	2,090	2,589,763	2,017,926	39,314	17,640	0.87
2002년	2,159	2,673,494	2,097,031	40,859	20,709	0.99
2003년	2,141	2,683,546	2,101,610	40,971	22,718	1.08
2004년	16,950	4,480,296	3,550,370	63,112	46,674	1.31
2005년	17,414	4,642,624	3,695,595	65,728	55,009	1.49
2006년	19,068	4,989,132	-	91,077	67,261	1.35
2007년	20,375	4,985,075	-	90,515	76,404	1.53
2008년	22,027	5,211,786	-	94,517	89,664	1.72
2009년	22,128	5,268,806	-	95,554	97,821	1.86
2010년	22,876	5,482,549	-	116,230	121,343(105,013)	2.21(1.92)
2011년	23,709	5,837,659	-	124,040	130,889(110,453)	2.24(1.89)

주 1) 1990년부터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 고용의무율 : 1%(1991년)→1.6%(1992년)→2%(1993년)→2.3%(2010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2) 2004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을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주에서 50명 이상 사업주로 확대

3) 2006년부터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고용률 산정

4) 2003년부터 산재장해자 10~14급 제외, 2009년부터 산재장해자 제외

5) 1999년, 2000년 산재경증을 제외하여 고용률 제산정, 2001년, 2002년 고용률은 2004년에 재산정

6)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0%에서 2011년 2.24%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6년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2-3-24〉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대상기관수	적용대상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고용률
1997년	45	149,265	2,962	1,223	0.82
1998년	44	137,968	2,740	1,210	0.88
1999년	47	91,083	1,800	904	0.99
2000년	48	94,052	1,881	1,816	1.93
2001년	88	158,078	3,125	2,901	1.84
2002년	83	126,118	2,477	2,444	1.94
2003년	85	124,357	2,444	2,063	1.66
2004년	133	122,178	2,381	2,452	2.01
2005년	135	141,833	2,776	3,528	2.49
2006년	136	177,762	3,484	3,839	2.16
2007년	250	288,331	5,643	5,650	1.96
2008년	253	288,225	5,645	5,899	2.05
2009년	250	292,086	5,723	6,156	2.11
2010년	260	294,245	7,791	7,538(6,775)	2.56(2.30)
2011년	257	305,971	8,224	8,332(7,427)	2.72(2.43)

주 1) 민간부문과 동일한 기준 적용

2)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기관 범위 확대 적용

3) 2010년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고용의무율 3%로 상향 조정

4)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7년 0.82%에서 2011년 2.72%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6년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 2011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3-25〉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分	대상사업체	상시근로자	장애인수	고용률	
				중증2배수 미적용	중증2배수 적용
전 체	24,083	6,909,276	133,451	1.93(1.94)	2.28(2.24)
정부부문	374	1,071,617	22,998	2.15(2.08)	2.48(2.39)
공무원	81	824,067	18,141	2.20(2.09)	2.52(2.40)
비공무원	293	247,550	4,857	1.96(2.02)	2.35(2.36)
민간부문	23,709	5,837,659	110,453	1.89(1.92)	2.24(2.21)
공공기관	257	305,971	7,427	2.43(2.30)	2.72(2.56)
민간기업	23,452	5,531,688	103,026	1.86(1.89)	2.22(2.19)

주 1) 대상사업주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단위를 말함

2) 2011년 12월 말 기준이며, ( )는 2010년 12월 말 기준임

3)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 2011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133,451명이며, 고용률은 2.28%로 전년대비 7,035명, 0.04%p 증가함
- 부문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2.72%, ‘공무원’ 2.52%, ‘정부부문’ 2.48%로 나타남

## 가) 정부부문

〈표 2-3-26〉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分	기관 수	적용대상	장애인수	고용률	
				중증2배수 미적용	중증2배수 적용
전 체	374	1,071,617	22,998	2.15(2.08)	2.48(2.39)
공무원	소 계	81	824,067	18,141	2.20(2.09)
	중앙행정기관	45	168,146	4,665	2.77(2.61)
	현 법 기 관	4	22,446	464	2.07(1.91)
	시 · 도	16	245,925	8,128	3.31(3.21)
	교 육 청	16	387,550	4,884	1.26(1.16)
비공무원	소 계	293	247,550	4,857	1.96(2.02)
	중앙행정기관	30	39,689	757	1.91(1.65)
	현 법 기 관	3	938	25	2.67(2.40)
	시 · 도	244	75,329	3,599	4.78(4.58)
	교 육 청	16	131,594	476	0.36(0.32)

주 1)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2%에서 3%로 상향조정, 시험실시기관장은 장애인공무원이 3%에 도달 시까지 신규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2) 2011년 12월 말 기준이며, ( )는 2010년 12월 말 기준

3)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4) 2010년부터 정부부문에 고용된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의무제 시행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표 2-3-27〉 정부부문 장애인 수 –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 명, %)

구 분	전체			경 중	중 중
	전 체	남성	여성		
공무원	18,141 (100.0)	14,903 (83.0)	3,238 (18.0)	15,514 (85.5)	2,627 (14.5)
중앙행정기관	4,665 (100.0)	4,046 (86.7)	619 (14.3)	3,953 (84.7)	712 (15.3)
현 법 기 관	464 (100.0)	394 (85.0)	70 (15.0)	413 (89.0)	51 (11.0)
지방자치단체	8,128 (100.0)	6,888 (84.7)	1,240 (15.3)	6,950 (85.5)	1,178 (14.5)
교 육 청	4,884 (100.0)	3,575 (73.2)	1,309 (26.8)	4,198 (86.0)	686 (14.0)
비공무원	4,857 (100.0)	3,813 (78.5)	1,044 (21.5)	3,864 (79.6)	993 (20.4)
중앙행정기관	757 (100.0)	547 (72.3)	210 (27.7)	563 (74.4)	194 (25.6)
현 법 기 관	25 (100.0)	21 (84.0)	4 (16.0)	13 (52.0)	12 (48.0)
지방자치단체	3,599 (100.0)	3,013 (83.7)	586 (16.3)	2,922 (81.2)	677 (18.8)
교 육 청	476 (100.0)	232 (48.7)	244 (51.3)	366 (76.9)	110 (23.1)

주 :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 2011년 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81개 기관의 장애인공무원은 18,141명, 고용률은 2.52%로 전년대비 0.12%p 상승함.
- 공무원 중증장애인은 2,627명이며 전체 장애인공무원의 14.5%를 차지하고, 비공무원 중증장애인은 993명으로 전체 비공무원 장애인의 20.4%를 차지하고 있음
- 공무원 여성장애인은 3,238명이며 전체 장애인공무원의 18.0%를 차지하고, 비공무원 여성장애인은 1,044명으로 전체 비공무원 장애인의 21.5%를 차지하고 있음

〈표 2-3-28〉 정부부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중앙행정기관	현 법 기관	시 · 도	교 육 청
공 무 원	18,141(100.0)	4,665(100.0)	464(100.0)	8,128(100.0)	4,884(100.0)
지 체	12,148(67.0)	3,032(65.0)	274(59.1)	5,704(70.2)	3,138(64.3)
시 각	2,173(12.0)	487(10.4)	90(19.4)	926(11.4)	670(13.7)
청각 · 언어	890(4.9)	189(4.1)	27(5.8)	423(5.2)	251(5.1)
뇌 병 변	543(3.0)	118(2.5)	10(2.2)	272(3.3)	143(2.9)
신 장	530(2.9)	104(2.2)	9(1.9)	267(3.3)	150(3.1)
기 타	1,857(10.2)	735(15.8)	54(11.6)	536(6.6)	532(10.9)
비공무원	4,857(100.0)	757(100.0)	25(100.0)	3,599(100.0)	476(100.0)
지 체	3,254(66.9)	441(58.3)	11(44.0)	2,480(68.9)	322(67.6)
시 각	513(10.6)	73(9.6)	0(0.0)	395(11.0)	45(9.5)
청각 · 언어	407(8.4)	65(8.6)	2(8.0)	300(8.3)	40(8.4)
뇌 병 변	226(4.7)	39(5.2)	4(16.0)	167(4.6)	16(3.4)
신 장	67(1.4)	8(1.1)	0(0.0)	53(1.5)	6(1.3)
기 타	390(8.0)	131(17.3)	8(32.0)	204(5.7)	47(9.9)

주 :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12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은 18,141명이고,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는 4,857명임
  - 장애인공무원 장애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67%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12.0%, 청각 · 언어장애인 4.9%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66.9%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10.6%, 청각 · 언어장애인 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나) 민간부문

〈표 2-3-29〉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	고용율	
				중증2배수미적용	중증2배수적용
전 체	23,709	5,837,659	110,453	1.89(1.92)	2.24(2.21)
공공기관	257	305,971	7,427	2.43(2.30)	2.72(2.56)
공기업	27	103,391	2,897	2.80(2.67)	3.05(2.91)
준정부기관	82	84,947	2,619	3.08(2.91)	3.55(3.33)
기타공공기관	148	117,633	1,911	1.62(1.68)	1.84(1.86)
민간기업	23,452	5,531,688	103,026	1.86(1.89)	2.22(2.19)
100인 미만	11,579	819,739	15,796	1.93(1.98)	2.42(2.34)
100~299인	8,924	1,458,720	31,985	2.19(2.24)	2.63(2.60)
300~499인	1,370	523,001	10,457	2.00(2.03)	2.38(2.37)
500~999인	951	648,410	12,499	1.93(1.92)	2.29(2.22)
1,000인 이상	628	2,081,818	32,289	1.55(1.57)	1.78(1.78)
30대 기업집단	609	1,106,586	17,716	1.60(1.56)	1.80(1.69)

주 1) 30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소속회사 중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정함

2) 2011년 12월 말 기준이며, ( )는 2010년 12월 말 기준임

3) 장애인근로자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 2011년 말 현재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주는 23,709개소,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110,45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24%로 전년대비 0.03% 증가하여 장애인 고용률의 상승추세를 이어감
  - 기관형태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7,427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72%로 나타났고 '민간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103,026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은 2.22%로 나타남

〈표 2-3-30〉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대상 사업체수	상시 근로자수	고용의무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10년 고용률
전 체	23,709(100.0)	5,837,659	124,040	110,453(100.0)	2.24	2.21
농업, 임업 및 어업	88(0.4)	15,227	306	217(0.2)	1.64	2.14
광업	24(0.1)	5,782	142	149(0.1)	2.68	2.72
제조업	8,538(36.0)	1,897,762	39,511	35,234(31.9)	2.20	2.1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4(0.3)	58,997	1,623	1,541(1.4)	2.84	2.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9(0.6)	14,484	273	422(0.4)	3.33	3.43
건설업	1,149(4.9)	317,515	6,829	3,705(3.4)	1.30	1.42
도매 및 소매업	1,268(5.4)	410,790	8,831	4,509(4.1)	1.33	1.39
운수업	2,028(8.6)	402,264	8,544	12,612(11.4)	3.53	3.47
숙박 및 음식점업	349(1.5)	137,811	3,006	1,583(1.4)	1.64	1.7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88(5.9)	329,303	6,917	3,455(3.1)	1.27	1.40
금융 및 보험업	954(4.1)	383,688	8,522	4,902(4.4)	1.41	1.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39(1.4)	73,998	1,552	1,660(1.5)	2.63	2.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57(5.3)	263,508	5,700	4,466(4.1)	1.98	1.8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456(10.4)	733,235	15,658	20,121(18.2)	3.13	3.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01(1.3)	126,295	2,896	2,682(2.4)	2.65	2.81
교육 서비스업	783(3.3)	222,581	4,728	3,190(2.9)	1.66	1.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75(7.9)	326,026	6,598	6,858(6.2)	2.92	3.3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3(0.9)	35,578	731	593(0.5)	1.86	1.8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1(2.0)	82,416	1,666	2,552(2.3)	4.45	4.44
기타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관·비 생산활동	5(0.0)	399	7	2(0.0)	0.50	1.15

주 1) 본사 사업장의 주된 산업으로 산업을 분류함

2) 2011년 12월 말 기준임

3) 장애인고용률에는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가 반영된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고용의무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8,538개소(36.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456개소(10.4%), '운수업' 2,028개소(8.6%) 등으로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 비율이 가장 많음
- 장애인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35,234명(31.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121명(18.2%), '운수업' 12,612명(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3-31〉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지역별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고용률	'10년 고용률
전 체	23,709(100.0)	5,837,659	124,040	110,453	2.24	2.21
강 원	409(1.7)	69,420	1,399	1,447(1.3)	2.51	2.54
경 기	4,527(19.1)	992,396	20,863	19,189(17.4)	2.29	2.23
경 남	1,732(7.3)	262,694	5,211	5,255(4.8)	2.29	2.18
경 북	1,206(5.0)	199,497	4,010	3,918(3.6)	2.40	2.34
광 주	509(2.2)	87,705	1,782	2,151(1.9)	3.05	3.07
대 구	887(3.8)	151,515	3,054	3,439(3.1)	2.73	2.63
대 전	543(2.3)	167,054	3,848	3,766(3.4)	2.57	2.54
부 산	1,425(6.0)	250,090	5,070	6,164(5.5)	2.91	2.81
서 울	7,461(31.5)	2,855,768	62,753	47,433(42.9)	1.97	1.97
울 산	709(3.0)	124,621	2,528	2,878(2.6)	2.65	2.57
인 천	1,058(4.5)	199,093	4,099	5,143(4.7)	3.03	3.03
전 남	646(2.7)	86,787	1,681	1,746(1.6)	2.23	2.35
전 북	603(2.5)	87,045	1,711	1,993(1.8)	2.65	2.75
제 주	168(0.7)	26,058	516	579(0.5)	2.88	2.81
충 남	1,092(4.6)	168,886	3,357	3,056(2.8)	2.21	2.14
충 북	734(3.1)	109,030	2,158	2,296(2.1)	2.72	2.56

주 1) 본사 소재지로 지역을 분류함

2) 2011년 12월 말 기준

3) 장애인고용률에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가 반영된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 고용의무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7,461개소(31.5%), ‘경기’ 4,527개소(19.1%) 등으로 전체 사업체의 50.6%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본사를 둔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음
  - 장애인근로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47,433명(42.9%), ‘경기’ 19,189명(17.4%) 등으로 전체 근로자의 60.3%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근무하고 있음
  - 지역별 장애인 고용률은 ‘광주’ 3.05%, ‘인천’ 3.03%, ‘부산’ 2.91% 순으로 고용의무율을 초과 달성한 반면, 고용의무사업체 수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울’은 1.97%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2-3-32〉 민간부문 사업체 수 – 이행정도별(고용률별)

(단위 : 개소, %)

구 분	전 체	2.3% 이상	2%이상 ~2.3% 미만	1.3이상 ~2% 미만	1.3% 미만	0%
민간기업	23,709 (100.0)	7,847 (33.1)	1,243 (5.2)	3,676 (15.5)	3,952 (16.7)	6,991 (29.5)
300인 미만	20,617 (100.0)	6,854 (33.2)	1,007 (4.9)	3,086 (15.0)	2,769 (13.4)	6,901 (33.5)
300인 이상	3,092 (100.0)	993 (32.1)	236 (7.6)	590 (19.1)	1,183 (38.3)	90 (2.9)

주 1) 2011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인고용률에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가 반영된 것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 50인 이상 전체 사업체 23,709개소 중 2.3% 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7,847개소(33.1%), 1.3%이상~2.3미만 사업체는 4,919개소(20.7%), 1.3미만 사업체는 3,952개소(16.7%), 미고용사업체는 6,991개소(29.5%)임
- 300인 이상 대기업체의 2.3%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993개소(32.1%), 1.3%이상~2.3미만 사업체는 826개소(26.7%), 1.3미만 사업체는 1,183개소(38.3%), 미고용 사업체수 90개소(2.9%)임

〈표 2-3-33〉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성별		장애정도	
		남성	여성	경증	중증
전 체	110,453 (100.0)	93,211 (84.4)	17,242 (15.6)	89,435 (81.0)	21,018 (19.0)
공공기관	7,427 (100.0)	6,663 (89.7)	764 (10.3)	6,520 (87.8)	907 (12.2)
공기업	2,897 (100.0)	2,788 (96.2)	109 (3.8)	2,638 (91.1)	259 (8.9)
준정부기관	2,619 (100.0)	2,280 (87.1)	339 (12.9)	2,222 (84.8)	397 (15.2)
기타공공기관	1,911 (100.0)	1,595 (83.5)	316 (16.5)	1,660 (86.9)	251 (13.1)
민간기업	103,026 (100.0)	86,548 (84.0)	16,478 (16.0)	82,915 (80.5)	20,111 (19.5)
300인 미만	47,781 (100.0)	39,956 (83.6)	7,825 (16.4)	37,176 (77.8)	10,605 (22.2)
300인 이상	55,245 (100.0)	46,592 (84.3)	8,653 (15.7)	45,739 (82.8)	9,506 (17.2)

주 1) 2011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 고용의무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남성 93,211명(84.4%), 여성 17,242명(15.6%)으로 남성이 절대적인 분포를 보임
- 고용의무 사업체의 경증장애인은 89,435명(81.0%), 중증장애인은 21,018(19.0%)으로 경증장애인이 절대적인 분포를 보임

〈표 2-3-34〉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 장애유형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체	110,453(100.0)	7,427(100.0)	103,026(100.0)
등록 장애인	소계	104,201(94.3)	97,900(95.0)
	간	364(0.3)	311(0.3)
	간질	105(0.1)	101(0.1)
	뇌병변	3,199(2.9)	2,948(2.9)
	시각	9,924(9.0)	9,193(8.9)
	신장	1,564(1.4)	1,381(1.3)
	심장	324(0.3)	306(0.3)
	안면	189(0.2)	173(0.2)
	언어	774(0.7)	732(0.7)
	자폐성	219(0.2)	213(0.2)
	장루·요루	235(0.2)	231(0.2)
	정신	1,179(1.1)	1,164(1.1)
	지적	4,783(4.3)	4,766(4.6)
	지체	72,058(65.2)	67,421(65.4)
	청각	9,092(8.2)	8,776(8.5)
	호흡기	192(0.2)	184(0.2)
국가유공	상이등급	6,252(5.7)	5,126(5.0)

주 1) 2011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 고용의무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104,20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6,252명으로 등록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94.3%를 차지하고 있음

## 나.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표 2-3-35〉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 분	사업체 수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전 체	장애인고용	비 율			
전 체	1,160,237	56,929	4.9	12,253,036	153,419	1.25
비고용의무사업체	1,135,822	42,051	3.7	6,836,829	69,616	1.02
1~4인	830,394	12,163	1.5	1,764,691	13,735	0.78
5~49인	305,427	29,888	9.8	5,072,138	55,882	1.10
고용의무사업체	24,415	14,877	60.9	5,416,206	83,803	1.55
50~299인	21,903	12,578	57.4	2,534,616	45,285	1.79
300인 이상	2,513	2,300	91.5	2,881,590	38,518	1.34

주 1) 장애인 고용률(%)=(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100

2)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제주 제외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26페이지 참조

▣ '사업체' 설명 보기 : 363페이지 참조

▣ '상시근로자' 설명 보기 : 36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근로자' 설명 보기 : 363페이지 참조

- 2008년 6월 30일 현재 상시 1인 이상 사업체 1,160,237개 중 56,929개(4.9%)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장애인근로자 수는 153,419명, 장애인 고용률은 1.25%로 추정됨
- 상시 50인 미만 사업체 1,135,822개 중 42,051개 사업체(3.7%)에서 69,616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체 24,415개 중 14,877개 사업체(60.9%)에서 83,803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지다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표 2-3-36〉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산업별

(단위 : 개소, %, 명)

구 分	사업체 수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전 체	장애인고용	비 율			
전 체	1,160,237	56,929(100.0)	4.9	12,253,036	153,419(100.0)	1.25
농업 및 임업·어업	716	35(0.1)	4.9	20,098	302(0.2)	1.50
광업	813	77(0.1)	9.5	10,255	98(0.1)	0.95
제조업	199,985	22,406(39.4)	11.2	3,683,484	63,197(41.2)	1.72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245	45(0.1)	18.4	19,683	275(0.2)	1.40
건설업	58,632	3,033(5.3)	5.2	1,145,094	6,804(4.4)	0.59
도매 및 소매업	270,335	7,444(13.1)	2.8	1,466,586	11,043(7.2)	0.75
숙박 및 음식점업	254,431	3,256(5.7)	1.3	859,893	4,003(2.6)	0.47
운수업	25,123	3,330(5.8)	13.3	645,659	17,402(11.3)	2.70
통신업	3,660	117(0.2)	3.2	77,727	1,407(0.9)	1.81
금융 및 보험업	8,592	859(1.5)	10.0	437,290	4,122(2.7)	0.94
부동산 및 임대업	28,107	1,086(1.9)	3.9	211,922	2,383(1.6)	1.12
사업서비스업	59,392	4,705(8.3)	7.9	1,474,232	18,945(12.3)	1.29
교육서비스업	61,471	2,419(4.3)	3.9	739,062	6,476(4.2)	0.8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3,698	2,857(5.0)	4.5	779,152	6,585(4.3)	0.8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44,368	924(1.6)	2.1	210,618	1,487(1.0)	0.7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80,670	4,336(7.6)	5.4	472,280	8,891(5.8)	1.88

주 1) 농업 및 임업과 어업은 사례수가 작아 합산하여 추정함

2) 장애인 고용률(%)=(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100

3)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제주 제외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26페이지 참조

☞ ‘사업체’ 설명 보기 : 363페이지 참조

☞ ‘상시근로자’ 설명 보기 : 36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근로자’ 설명 보기 : 36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산업으로는 ‘운수업’(2.7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88%), ‘통신업’(1.81%), ‘제조업’(1.72%)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0.47%), ‘건설업’(0.5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0.71%), ‘도매 및 소매업’(0.75%)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최다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분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41.2%(63,197명)를 고용하고 있음

〈표 2-3-37〉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지역별

(단위 : 개소, %, 명)

구 분	사업체 수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전 체	장애인고용	비 율			
전 체	1,160,237	56,929(100.0)	4.9	12,253,036	153,419(100.0)	1.25
서 울	308,115	12,489(21.9)	4.1	4,521,020	42,872(27.9)	0.95
부 산	89,420	4,417(7.8)	4.9	766,930	10,856(7.1)	1.42
대 구	62,394	2,672(4.7)	4.3	498,781	7,366(4.8)	1.48
인 천	55,317	2,954(5.2)	5.3	553,370	7,676(5.0)	1.39
광 주	33,968	1,225(2.2)	3.6	287,858	3,600(2.3)	1.25
대 전	30,163	1,809(3.2)	6.0	281,293	4,905(3.2)	1.74
울 산	22,166	1,340(2.4)	6.0	285,692	4,470(2.9)	1.56
경 기	256,369	12,388(21.8)	4.8	2,491,023	29,860(19.5)	1.20
강 원	33,613	1,985(3.5)	5.9	214,795	4,914(3.2)	2.29
충 북	31,344	2,453(4.3)	7.8	274,158	5,096(3.3)	1.86
충 남	39,203	1,978(3.5)	5.0	355,559	4,256(2.8)	1.20
전 북	35,456	2,071(3.6)	5.8	269,768	5,108(3.3)	1.89
전 남	36,276	2,197(3.9)	6.1	273,487	5,418(3.5)	1.98
경 북	54,142	2,740(4.8)	5.1	486,659	6,981(4.6)	1.43
경 남	72,292	4,211(7.4)	5.8	692,641	10,042(6.5)	1.45
수도권	619,800	27,831(48.9)	4.5	7,565,414	80,408(52.4)	1.06
광역시권	238,111	11,463(20.1)	4.8	2,120,554	31,197(20.3)	1.47
기타지역	302,326	17,635(31.0)	5.8	2,567,068	41,814(27.3)	1.63

주 1)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분류, 광역시권은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묶은 개념임

2) 다수의 사업장(공장·지점·영업소 등)을 여러 지역에 두고 있는 경우에 본사를 기준으로 자료가 집계됨

3) 장애인 고용률(%)=(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100

4)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제주 제외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26페이지 참조

☞ ‘사업체’ 설명 보기 : 363페이지 참조

☞ ‘상시근로자’ 설명 보기 : 36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근로자’ 설명 보기 : 363페이지 참조

○ 지역별 장애인 고용사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사업체 56,929개의 48.9%인 27,831개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장애인근로자도 153,419명의 과반수인 80,408명이 ‘수도권’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도권’의 장애인 고용률은 1.06%로서 ‘광역시권’ (1.47%)이나 ‘기타지역’ (1.63%)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표 2-3-38〉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수 - 성별, 종사상 지위별

(단위 : 명, %)

구 分	상시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수	비 율	근로자 수	비 율	
전 체	12,253,036	100.0	153,419	100.0	1.25
남 성	7,938,445	64.8	128,445	83.7	1.62
여 성	4,314,591	35.2	24,975	16.3	0.58
상용직	11,305,783	92.3	149,982	97.8	1.33
임시직	400,610	3.3	2,249	1.5	0.56
일용직	546,643	4.5	1,188	0.8	0.22

주 1) 근로자의 기준은 상시근로자(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로 한정함

2) 장애인 고용률(%)=(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100

3)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제주 제외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26페이지 참조

☞ '상시근로자' 설명 보기 : 36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근로자' 설명 보기 : 363페이지 참조

- 상시근로자의 여성 비율이 35.2%인 반면, 장애인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16.3%로 약 절반가량 수준이며,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0.58%로 남성장애인 고용률(1.6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보면, 상시근로자는 '상용직' 92.3%, '임시직' 3.3%, '일용직' 4.5%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근로자는 '상용직' 97.8%, '임시직' 1.5%, '일용직' 0.8%로 나타나 상시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근로자의 상용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용직의 장애인 고용률은 1.33%로 전체 평균 장애인 고용률 1.25%를 상회하는 데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0.56%, 0.22%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3. 기업체 특성

#### 가. 모집과 채용

〈표 2-3-39〉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이유(1순위)

(단위 : %)

구 분	계	규모별			
		50~ 99인	100~ 199인	200~ 299인	3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이 낮을 것 같아서	0.4	0.1	0.8	0.2	0.7
장애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6.7	9.0	5.0	7.0	4.8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6.2	6.3	5.7	6.5	6.3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36.9	29.8	39.0	45.6	42.6
장려금 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때문에	3.3	2.3	4.4	3.3	3.4
외부의 채용추천 때문에	1.6	2.3	1.3	1.2	1.1
구인난 때문에	4.5	7.3	2.9	4.1	1.7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29.5	31.0	27.7	26.0	32.0
입사 후 장애인이 됐거나 장애인임을 알게 됨	9.6	10.0	11.9	6.1	6.4
기타	1.3	1.9	1.4	0.0	0.9

주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09년 기준임. 전국(제주 포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6페이지 참조

-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한 이유를 살펴보면,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36.9%가 가장 높고,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29.5%, ‘입사 후 장애인이 됐거나 장애인임을 알게 됨’ 9.6%, ‘장애인의 비장애인에 비해 성실할 것 같아서’ 6.7%,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체 규모별로는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채용한 기업체의 비율은 ‘300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한편,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은 ‘50인 이상 99인 이하’ 기업체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40〉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모집 경로

(단위 : %)

구 분	계	규모별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알선기관 및 민간취업알선업체를 이용	29.2	27.2	27.7	35.6	32.1
기업 자체적으로 모집	70.8	72.8	72.3	64.4	67.9

주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09년 기준임. 전국(제주 포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6페이지 참조

〈표 2-3-41〉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주로 이용한 취업알선기관

(단위 : %)

구 분	계	규모별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직업능력개발원 포함)	16.1	12.5	14.5	23.6	22.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8.0	20.9	16.8	18.4	13.7
복지관·장애인단체 등 장애인 기관	3.2	4.1	2.5	2.8	2.3
민간·공공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2.5	3.0	2.0	1.3	3.1
민간취업알선업체	9.0	7.1	9.3	10.0	12.0
특수학교 및 대학교를 포함한 학교·학원의 추천	0.6	0.3	0.3	0.7	1.5
지방자치단체	2.0	2.0	3.0	1.7	0.4
국가보훈처	1.8	1.4	1.5	0.2	4.5
취업알선기관 통해 채용한적 없음	46.9	48.8	50.1	41.3	40.4

주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09년 기준임. 전국(제주 포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6페이지 참조

〈표 2-3-42〉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주된 장애인 채용 전형방식

(단위 : %)

구 분	계	규모별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경쟁하는 일반채용	80.5	82.7	80.5	75.8	78.9
일반 공채채용 시 일부를 할당해 장애인만 경쟁하는 구분 및 할당채용	7.3	5.7	7.2	9.0	9.8
장애인만 별도로 전형하는 특별채용	12.2	11.6	12.3	15.3	11.3

주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09년 기준임. 전국(제주 포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1.

☞ ‘장애인 근로자 채용방식’ 설명 보기 : 363페이지 참조

〈표 2-3-43〉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

구 분	계	규모별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유형	26.8	26.5	28.6	26.8	23.8
장애정도	36.8	36.6	34.3	43.1	37.7
경력	15.9	15.3	17.2	12.8	17.0
학력	1.4	1.4	1.3	1.0	2.1
자격증 취득 사항(기술보유)	9.3	10.4	9.6	9.1	6.7
성품·태도	6.8	8.1	5.3	5.6	7.5
성별	0.3	0.0	0.6	0.5	0.4
연령	0.4	0.3	0.1	0.4	1.0
기타	2.3	1.4	3.1	0.5	3.8

주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09년 기준임. 전국(제주 포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6페이지 참조

〈표 2-3-44〉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제공사항(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계	규모별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산점 부여	13.5	7.4	11.7	23.2	24.0
연령제한 완화	11.7	11.0	11.2	13.5	12.7
학력제한 완화	9.1	9.0	8.3	10.1	10.3
채용 공지 시 장애인 편의 제공	7.8	6.2	7.4	9.1	11.4
전형 시 장애인 편의 제공	5.9	4.3	5.6	8.0	8.5
신체검사 규정 완화	7.8	7.8	8.6	6.9	7.1
기타	0.3	0.3	0.3	0.0	0.2
제공사항 없음	67.3	73.5	67.7	60.7	57.4

주 1) 중복응답으로 합계가 100.0%를 넘을 수 있음

2)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09년 기준임. 전국(제주 포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6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기업체들 10곳 중 7곳 정도(67.3%)가 장애인 채용 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가산점 부여' 13.5%, '연령제한 완화' 11.7%, '학력제한 완화' 9.1% 등의 순임

## 나. 노무관리

〈표 2-3-45〉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1순위)

(단위 : %)

구 분	계	규모별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업무실적 향상	8.1	7.8	6.3	7.3	12.8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32.8	32.0	32.7	34.0	33.9
타인에게 의존적이지 않은 태도	3.5	2.9	4.1	5.5	2.5
업무능력 개발 노력	5.4	5.6	4.6	3.7	7.5
출퇴근·근무 시간 등 시간 준수	0.9	0.6	1.1	0.7	1.2
결근·병가 등의 업무 공백 최소화	2.8	3.7	2.3	3.6	1.1
건강관리	16.2	18.2	17.0	15.0	10.9
직장생활 예절 준수	0.5	0.6	0.7	0.2	0.3
원만한 직장 내 대인관계 유지	4.4	2.6	5.8	6.0	4.7
장기근속	4.6	4.3	5.4	4.2	4.1
기타	0.0	0.0	0.0	0.0	0.1
특별히 바라는 사항 없음	20.8	21.7	19.9	19.9	20.9

주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09년 기준임. 전국(제주 포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6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으로는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이 32.8%로 나타나고, '특별히 바라는 사항 없음' 20.8%, '건강관리' 16.2%, '업무실적 향상' 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3-46〉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제공사항(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계	규모별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고용 지원인력 배치	4.2	4.0	3.3	5.1	6.0
타 직무로 재배치, 동일직무 시간 조정 등 직무 재조정	5.9	5.1	5.3	8.3	7.4
개인용 작업 보조도구 지원	3.7	3.4	4.2	2.8	3.7
업무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장비, 설비의 개조, 설치 등	4.4	3.6	4.5	3.6	6.6
장애인 근로자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나 장치, 교육 등 조치	4.7	3.8	4.7	5.0	6.3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8.7	7.5	7.8	10.2	12.2
건강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등 운영	3.6	3.5	2.4	4.3	5.6
통근차량, 통근비 등 출퇴근 지원	8.2	9.4	8.3	5.2	7.3
별도수당 지급 등 금전적 지원	4.3	2.7	2.5	7.9	9.1
동료 근로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동호회 활동 등 지원	3.5	3.2	1.6	4.3	7.5
별도 지원 사항 없음	72.1	75.4	73.9	68.5	63.7

주 1) 중복응답으로 합계가 100.0%를 넘을 수 있음

2)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09년 기준임. 전국(제주 포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6페이지 참조

-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생활을 위해 제공한 사항을 살펴보면, '별도 지원사항 없음'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8.7%, '통근차량, 통근비 등 출퇴근 지원' 8.2%, '타 직무로 재배치, 동일직무 시간조정 등 직무재조정' 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 장애인 고용 인식

〈표 2-3-47〉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 정도

(단위 : 점)

구 분	계	규모별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었다	3.71	3.61	3.80	3.72	3.76
직접적으로 재무적 성과가 있었다	3.21	3.04	3.29	3.32	3.3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62	3.56	3.64	3.62	3.70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고용유지가 이뤄졌다	3.36	3.36	3.37	3.31	3.39
기업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었다	3.32	3.25	3.34	3.30	3.43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3.49	3.45	3.51	3.47	3.54

주 1) 5점 척도 기준으로 1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 그렇다'임

2)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09년 기준임. 전국(제주 포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6페이지 참조

〈표 2-3-48〉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점)

구 분	계	규모별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태도	3.69	3.71	3.70	3.68	3.63
장애인 근로자의 대인관계	3.66	3.69	3.68	3.63	3.57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및 업무능력	3.63	3.65	3.65	3.57	3.58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67	3.70	3.68	3.64	3.61

주 1) 5점 척도 기준으로 1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 그렇다'임

2)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09년 기준임. 전국(제주 포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6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3.71점)이 가장 높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행에 도움」(3.62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긍정적 변화」(3.49점),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고용유지」(3.36점), 「기업이미지 개선효과」(3.3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고용기업체들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태도」(3.69점)에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기업체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67점으로 나타남

〈표 2-3-49〉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구 분	계	규모별				고용 여부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고용	미고용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접 고용	55.6	47.8	63.1	62.0	65.7	67.7	27.3
간접 고용(표준사업장, 연계 고용 등)	9.5	10.0	7.4	11.5	10.6	7.5	14.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11.6	12.6	9.0	12.9	12.6	8.4	19.2
금전적 기부	5.6	7.2	4.8	2.8	3.2	3.2	11.3
고려하고 있지 않다	17.5	22.4	15.6	10.4	7.9	13.2	27.8
기타	0.1	0.0	0.2	0.4	0.0	0.1	0.2

주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09년 기준임. 전국(제주 포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6페이지 참조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시 선호하는 방식은 '직접 고용' 55.6%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11.6%, '간접 고용' 9.5%, '금전적 기부' 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67.7%가 '직접 고용'을 선호한 반면, 미고용기업체의 경우 27.3%만이 '직접 고용'을 선호하고 30.5%는 '봉사활동'과 '금전적 기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라. 산재보험 장해급여

〈표 2-3-50〉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전체	55,781	922,185	61,894	1,067,385	67,227	1,170,647	70,580	1,265,916	74,584	1,291,084	88,863	1,397,872
1급	1,220	47,994	1,409	56,067	1,554	66,138	1,686	68,592	1,827	73,965	2,309	86,687
2급	1,710	56,350	2,137	74,576	2,364	83,376	2,633	83,577	2,903	86,643	3,351	96,756
3급	2,144	59,661	2,481	70,658	2,727	83,053	2,928	84,084	3,082	84,373	3,409	90,848
4급	1,364	29,626	1,607	34,934	1,808	45,177	2,028	47,686	2,116	50,862	2,306	55,267
5급	4,171	79,159	4,954	96,370	5,660	117,604	6,453	128,786	6,777	136,555	7,587	148,261
6급	7,419	123,044	9,035	148,023	10,726	185,891	12,400	210,294	12,870	214,027	14,156	239,870
7급	5,869	85,123	7,415	109,914	8,675	134,622	10,228	152,987	11,065	164,741	12,989	182,428
8급	3,310	112,019	3,574	124,350	3,340	108,896	2,988	108,508	1,990	70,612	2,100	69,958
9급	1,811	45,649	2,026	52,877	1,867	48,622	1,941	54,673	2,031	57,725	2,276	59,115
10급	4,527	89,468	5,137	103,788	5,234	106,002	5,678	122,554	5,332	117,440	5,400	119,910
11급	3,660	52,146	3,730	54,005	3,673	53,346	3,952	61,346	4,845	77,008	7,782	80,761
12급	8,402	92,190	8,846	97,200	9,232	94,119	8,708	99,454	9,195	104,830	9,723	108,734
13급	2,957	20,463	2,081	14,153	2,023	14,248	2,127	15,253	2,796	20,025	6,567	23,064
14급	7,501	29,294	7,722	30,470	8,623	29,553	7,085	28,125	8,029	32,279	9,180	36,207

주 1) 장해등급은 지급일 기준으로 장해등급별 수급자 수는 중복될 수 있음

2)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함

자료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10 산재보험사업연보」,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8페이지 참조

☞ '산재보험 장해급여'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 2010년 장해급여 수급자는 88,863명으로 전년 74,584명 대비 14,279명, 19.1% 증가하였으며, 지급액은 1,397,87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6,788백만원, 8.3% 증가함

〈표 2-3-51〉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일시금		연 금	
	수급자 수	금 액	수급자 수	금 액
2000년	19,400	223,749	8,380	136,706
2001년	23,799	278,884	10,428	168,120
2002년	24,484	302,845	12,499	211,553
2003년	28,105	371,292	15,157	254,930
2004년	31,361	429,629	18,250	322,658
2005년	33,394	505,783	22,427	416,402
2006년	34,150	531,305	27,772	536,080
2007년	34,888	503,267	32,368	667,380
2008년	33,420	543,319	37,174	722,598
2009년	35,250	542,928	39,349	748,156
2010년	37,274	553,512	52,272	844,360
전년 대비 증감률	5.7	1.9	32.8	12.9

주 : 1~3급 산재장애인에게는 연금으로만 지급, 4~7급까지의 산재장애인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고, 8~14급까지의 산재장애인에게는 일시금으로만 지급

자료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10 산재보험사업연보」,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8페이지 참조

☞ '산재보험 장해급여'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 2010년 장해급여 일시금 수급자는 37,274명, 연금 수급자는 52,27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5.7%, 32.8% 증가함
  - 일시금 지급액은 553,51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 소폭 증가한 반면, 연금은 844,36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4. 장애인기업 특성

### 가. 기업 현황

〈표 2-3-52〉 장애인기업 수 – 산업별

(단위 : 개소, %)

구 분	장애인기업				
	2007년		2009년		2011년
	기업 수	기업수	비율	기업 수	비 율
전 체	32,808	32,027	100.0	32,685	100.0
도소매업	10,904	10,921	34.1	11,108	34.0
숙박음식업	5,033	4,803	15.0	4,892	15.0
운수업	1,648	1,507	4.7	1,538	4.7
제조업	4,273	5,862	18.3	5,954	18.3
부동산 및 임대업	924	704	2.2	718	2.2
사업서비스업	552	671	2.1	685	2.1
교육서비스업	622	576	1.8	592	1.8
보건/사회복지사업	487	447	1.4	465	1.4
오락/운동관련사업	819	832	2.6	849	2.6
통신업	20	33	0.1	33	0.1
금융/보험업	164	128	0.4	131	0.4
건설업	862	993	3.1	1,012	3.1
농업/어업	23	33	0.1	34	0.1
광업	33	33	0.1	34	0.1
기타/수리/개인서비스업	6,444	4,484	14.0	4,595	14.1

주 :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기업 모집단 조사결과, 2009년도 대비 658개소가 증가한 32,685개인 것으로 추정
  - 산업별 분류시 ‘도소매업’ 34.0%로 장애인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53〉 장애인기업 수 - 규모별

(단위 : 개소, %)

구 분	장애인기업					
	2007년		2009년		2011년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 율	기업 수	비율
전 체	32,808	100.0	32,027	100.0	32,685	100.0
소상공인	30,450	92.8	29,945	93.5	30,519	93.4
소기업	1,750	5.3	1,602	5.0	1,653	5.1
중기업	608	1.9	480	1.5	510	1.6

주 : 규모별 장애인기업 규정은 중소기업법(2009.5, 중소기업청) 종사자 규모범주에 따름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소상공인(10인 미만), 소기업(10~50인 미만), 중기업(50인 이상)

- 그 밖의 모든 업종 : 소상공인(5인 미만), 소기업(5~10인 미만), 중기업(10인 이상)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표 2-3-54〉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단위 : 명, %)

구 분	현 종사자 수	현 장애인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전 체	3.14	1.27	40.6
소상공인	1.59	1.04	65.5
소기업	15.74	2.94	18.7
중기업	36.18	7.28	20.1
제조업	8.15	1.84	22.6
도/소매업	1.46	1.10	75.1
숙박/음식점업	1.54	1.02	66.0
개인서비스업	1.64	1.22	74.1
기타	3.72	1.30	34.9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기업의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93.4%, '소기업' 5.1%, '중기업'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50인 미만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장애인기업의 현 종사자 수는 평균 3.14명이었으며, 장애인 근로자는 평균 1.27명으로 나타나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40.6%로 나타남

## 나. 재무 현황

〈표 2-3-55〉 장애인기업의 재무 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부채액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전 체	165.4	163.4	217.6	237.8	32.1	35.3	63.4	65.7
소상공인	110.8	107.5	97.3	115.8	20.7	27.0	36.8	42.5
소기업	569.8	574.6	1,200.7	1,237.6	131.9	114.7	336.8	301.6
중기업	315.3	377.1	1,596.5	1,472.7	138.4	81.3	256.8	228.8
제조업	345.3	339.1	681.6	644.3	78.9	79.2	185.3	164.6
도/소매업	77.0	85.6	101.1	136.9	18.8	22.0	35.4	44.7
숙박/음식점업	140.7	127.3	48.3	48.8	18.4	17.3	29.5	34.9
개인서비스업	76.1	81.7	55.2	69.5	16.0	16.0	22.9	27.2
기타	165.6	143.4	180.6	195.8	30.8	38.5	51.8	53.8

주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최근 2년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의 2009년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자본금 165.4백만원, 매출액 217.6백만원, 순이익 32.1백만원, 부채액 63.4백만원이나, 2010년에는 자본금 163.4백만원, 매출액 237.8백만원, 순이익 35.3백만원, 부채액 65.7백만원으로 나타남
  - 최근 2년간 꾸준히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채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다. 창업 현황

〈표 2-3-56〉 장애인기업의 창업 동기

(단위 : %)

구 분	오랫동안 안정적 으로 할 수 있어서	장애인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서	장애인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커서
전 체	29.2	20.7	15.6	10.3
소상공인	29.9	21.7	16.4	7.3
소기업	19.3	9.0	8.0	44.3
중기업	32.5	15.0	5.0	32.5
제조업	28.9	11.6	8.8	26.9
도/소매업	30.4	22.8	15.0	5.4
숙박/음식점업	26.2	25.9	22.2	4.5
개인서비스업	33.4	21.0	19.3	6.2
기타	26.7	21.6	15.5	10.8

주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상위 4개 항목만을 표기함

3) 2011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창업 동기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가 29.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서' 20.7%, '장애인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15.6%,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커서' 10.3%,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살펴보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인 경우는 개인서비스업(33.4%)에서, '장애인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서' 인 경우는 숙박/음식점업(25.9%)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57〉 장애인기업의 창업 소요기간

구 분	(단위 : %)						
	6개월 이내	6개월~1년	1~1.5년	1.5~2년	2~2.5년	2.5~3년	3년 이상
전 체	40.7	31.6	10.4	4.9	1.9	1.7	8.8
소상공인	42.3	31.7	10.1	4.6	1.7	1.6	8.0
소기업	23.9	30.7	13.1	6.8	2.7	4.0	18.8
중기업	27.5	30.0	15.0	10.0	5.0	0.0	12.5
제조업	26.0	30.6	13.8	7.0	4.4	2.4	15.8
도/소매업	47.5	29.8	8.7	4.6	1.3	1.2	6.9
숙박/음식점업	35.3	47.3	10.7	3.7	0.3	0.3	2.4
개인서비스업	49.0	25.5	11.3	5.2	1.4	1.4	6.2
기타	40.7	27.8	9.3	4.2	1.9	3.4	12.7

주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 창업/인수 결심 후 창업까지 걸린 기간은 '6개월 이내' 인 경우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개월~1년' 31.6%, '1~1.5년' 10.4%, '3년 이상' 8.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기업 10곳 중 7곳 정도는 창업 결심 후 1년 이내에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준비기간은 70% 이상이 1년 미만의 기간이 소요되고, 3년 이상인 경우는 '소기업' (18.8%), '중기업' (12.5%)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58〉 장애인기업의 초기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구 분	매출부진	자금조달	마케팅 능력	정보수집능력 미흡	(단위 : %)
전 체	40.3	38.5	5.9	4.4	
소상공인	40.8	39.0	5.5	4.4	
소기업	33.0	36.4	9.7	5.7	
중기업	45.0	20.0	10.0	0.0	
제조업	34.4	40.0	8.8	5.5	
도/소매업	41.5	37.7	5.5	5.5	
숙박/음식점업	46.0	36.1	5.6	2.9	
개인서비스업	39.9	41.1	5.4	3.4	
기타	39.4	38.4	4.3	3.4	

주 1) 상위 4개 항목만을 표기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표 2-3-59〉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 요인

구 분	자금조달 능력	경영/ 마케팅 능력	입지선정	제품의 품질	(단위 : %)
전 체	36.4	26.3	21.4	6.6	
소상공인	37.9	25.0	23.0	5.7	
소기업	20.5	38.6	5.7	17.6	
중기업	20.0	45.0	0.0	12.5	
제조업	31.7	28.9	9.8	14.0	
도/소매업	41.9	23.7	26.3	2.8	
숙박/음식점업	25.7	29.7	25.4	9.4	
개인서비스업	34.0	26.3	30.9	2.8	
기타	41.2	25.6	13.4	7.1	

주 1) 상위 4개 항목만을 표기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 라. 경영활동 및 지원정책

〈표 2-3-60〉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여부 및 계약형태

(단위 : %)

구 분	경험률(있다)	계약형태				경험률(없다)
		일반경쟁	지역경쟁	지역견적경쟁	수의계약	
전 체	17.2	56.5	24.4	17.0	55.6	82.8
소상공인	13.9	53.5	22.6	17.0	56.0	86.1
소기업	51.7	62.6	28.9	16.5	59.3	48.3
중기업	52.5	76.2	33.3	19.0	33.3	47.5
제조업	44.6	55.4	27.9	17.2	62.7	55.4
도/소매업	10.6	58.9	22.2	16.7	52.2	89.4
개인서비스업	4.5	58.8	0.0	11.8	52.9	95.5
기타	7.6	55.6	11.1	11.1	55.6	92.4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표 2-3-61〉 효과적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단위 : %)

구 분	창업자금 지원	세금지원 확대	컨설팅 지원	시장정보 제공	창업절차 개선	기타
전 체	76.5	8.8	5.8	4.7	2.9	1.3
소상공인	76.7	8.6	5.6	5.0	2.8	1.3
소기업	74.4	11.9	6.8	1.2	4.0	1.7
중기업	72.5	7.5	12.5	2.5	5.0	0.0
제조업	73.7	10.3	7.9	3.1	3.5	1.5
도/소매업	74.9	10.0	4.2	6.7	2.8	1.4
숙박/음식점업	75.1	5.3	12.6	4.3	2.7	0.0
개인서비스업	82.2	5.9	2.5	5.9	2.3	1.2
기타	78.9	10.3	3.7	1.9	3.3	1.9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 5. 고용서비스

### 가. 고용서비스 현황

〈표 2-3-62〉 연도별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단위 : 명)

구 분	2012년 3/4분기	2011년 3/4분기	2010년 3/4분기	2009년 3/4분기	2008년 3/4분기	2007년 3/4분기
구직자 수	10,152	13,244	19,067	18,061	15,999	15,298
구인 수	19,097	19,170	21,106	20,362	8,237	7,174
취업자 수	4,492	4,459	5,527	5,345	4,036	4,221

주 1)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개편으로 기존 장애인만 구인하는 사업장에서 장애인도 구인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구인인원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효구인인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취업자는 해당 분기에 취업한 인원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3/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9페이지 참조

☞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 2012년 3/4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구인 수, 구직자 수는 감소한 반면, 취업자 수는 증가함
  - 구인 수는 19,097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4% 감소, 구직자 수는 10,152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3.3% 감소, 취업자 수는 4,492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7% 증가함

〈표 2-3-63〉 구인·구직 및 취업자 특성

(단위: 명, %)

구 分	구직자수			구인 수			취업자 수			
	2012년 3/4분기	2011년 3/4분기	증감	2012년 3/4분기	2011년 3/4분기	증감	2012년 3/4분기	2011년 3/4분기	증감	
전 체	10,152	13,244	-23.3	19,097	19,170	-0.4	4,492	4,459	0.7	
성별	남 성	7,111	9,578	-25.8			3,009	3,100	-2.9	
	여 성	3,041	3,666	-17.0			1,483	1,359	9.1	
장애 정도별	중 중	5,180	5,996	-13.6			2,133	2,149	-0.7	
	경 증	4,972	7,248	-31.4			2,359	2,310	2.1	
연령별	19세 이하	646	597	8.2			255	175	45.7	
	20~29세	2,430	2,900	-16.2			1,167	1,239	-5.8	
	30~39세	2,299	3,051	-24.6			1,037	1,183	-12.3	
	40~49세	1,978	2,693	-26.6			886	859	3.1	
	50~59세	1,809	2,582	-29.9			722	655	10.2	
	60세 이상	990	1,421	-30.3			425	348	22.1	
교육 정도별	무학	257	593	-56.7			136	174	-21.8	
	초등졸업	735	1,283	-42.7			313	316	-0.9	
	중학졸업	1,661	2,366	-29.8			671	685	-2.0	
	고등졸업	5,272	6,296	-16.3			2,402	2,259	6.3	
	대졸	2,159	2,602	-17.0			931	952	-2.2	
	대학원 이상	68	94	-27.7			32	31	3.2	
	미분류	-	10	-100.0			7	42	-83.3	
임금별	50만 미만	84	101	-16.8	129	105	22.9	97	71	36.6
	50~99만	1,821	3,533	-48.5	1,365	5,059	-73.0	626	1,364	-54.1
	100~149만	5,825	5,998	-2.9	10,889	8,799	23.8	2,158	1,552	39.0
	150~199만	1,752	2,201	-20.4	4,817	3,744	28.7	509	426	19.5
	200만 이상	669	1,387	-51.8	1,897	1,463	29.7	221	175	26.3
	미분류	1	24	-95.8	-	0	-	881	871	1.1

주 1)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개편으로 기존 장애인만 구인하는 사업장에서 장애인도 구인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구인인원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효구인인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취업자는 해당 분기에 취업한 인원임

3) 임금별 구직자 수는 희망임금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3/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9페이지 참조

☞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 나. 서비스 이용경험

〈표 2-3-64〉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

구 分	경제활동상태 변동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3차 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추정 수 전 체	674,120 100.0	66,859 100.0	62,214 100.0	1,031,038 100.0
	있 음	2.7	9.8	18.7	1.7
	없 음	97.3	90.2	81.3	98.3
최근 6년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추정 수 전 체	674,120 100.0	66,860 100.0	62,214 100.0	1,031,038 100.0
	있 음	18.6	26.8	44.6	14.4
	없 음	81.4	73.2	55.4	85.6

주 1) ‘최근 6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은 1차조사 시 파악한 과거 3년간의 고용서비스 경험과 지난조사 이후 새로 경험한 고용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4차조사 현재 장애인 개인이 최근 6년간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2) 경제활동상태 변동은 3차 조사(2010년)와 4차 조사(2011년)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 : 365/366페이지 참조

〈표 2-3-65〉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정 수 전 체	2,202,333	924,968	61,594	1,215,770
	100.0	100.0	100.0	100.0
지난 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경험	있 음	3.0	3.9	25.7
	없 음	97.0	96.1	74.3
최근 6년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있 음	18.6	22.3	57.6
	없 음	81.4	77.7	42.4

주 : ‘최근 6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은 1차조사 시 파악한 과거 3년간의 고용서비스 경험과 지난조사 이후 새로 경험한 고용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4차조사 현재 장애인 개인이 최근 6년간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 : 365/366페이지 참조

〈표 2-3-66〉 고용서비스 유형

(단위 : 건, %)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서비스 추정 수	78,981	38,437	19,601	20,943
취업알선	37.2	52.3	26.0	20.0
구직(직업)상담	28.7	18.8	47.6	29.4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9.6	11.0	11.1	5.4
취업정보 제공	8.3	6.1	9.7	11.0
직업능력 평가	3.7	0.0	0.0	13.9
정보화 교육	3.0	0.0	0.0	11.2
근로지원인(활동보조인) 지원	2.0	0.0	0.0	7.7
취업지원프로그램	1.7	1.8	3.2	0.0
보조공학기기 지원	0.3	0.0	0.0	1.0

주 1) 지난 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보기들 중 일부는 생략되었음

3) 서비스 총수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 : 365/366페이지 참조

〈표 2-3-67〉 고용서비스 기관

(단위 : 건, %)

구 分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서비스 추정 수	78,981	38,437	19,601	20,943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2.8	12.7	13.6	12.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5.6	12.3	33.2	42.7
장애인복지관	7.1	6.7	5.7	9.1
지방자치단체	34.5	44.6	28.8	21.2
장애인단체	5.0	2.9	14.4	0.0
기타	13.4	20.8	4.4	8.3
모름	1.7	0.0	0.0	6.3

주 1) 지난 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서비스 총수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 : 365/366페이지 참조

〈표 2-3-68〉 고용서비스 참여정도

(단위 : 건, %)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서비스 추정 수	78,981	38,437	19,601	20,94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참여하지 않음	8.4	8.7	13.3	3.5
보통	19.4	23.7	14.5	16.0
참여함	72.2	67.6	72.2	80.5

주 1) 지난 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서비스 총수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 : 365/366페이지 참조

〈표 2-3-69〉 고용서비스 도움정도

(단위 : 건, %)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서비스 추정 수	78,981	38,437	19,601	20,94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도움되지 않음	40.5	11.9	67.3	67.7
보통	10.1	8.1	15.5	8.7
도움됨	49.4	80.0	17.2	23.6

주 1) 지난 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서비스 총수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 : 365/366페이지 참조

- 지난 조사 이후 이용한 전체 서비스 78,981건 중 72.2%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참여하였으나, 40.5%가 취업(또는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함
-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서비스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고용서비스 불만족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 자격증 보유

〈표 2-3-70〉 자격증 보유

(단위: 명, %)

구 분	경제활동상태 변동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3차 조사 이후 신규 취득 여부	추정 수 전 체	674,120 100.0	66,859 100.0	62,214 100.0	1,031,038 100.0
	있 음	2.9	1.7	2.7	0.7
	없 음	97.1	98.3	97.3	99.3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	추정 수 전 체	674,120 100.0	66,860 100.0	62,214 100.0	1,031,038 100.0
	있 음	27.8	15.4	19.4	9.3
	없 음	72.2	84.6	80.6	90.7

주 1)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는 1차조사 시 파악한 자격증과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신규 자격증을 모두 고려하여 4차조사 시 장애인 개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2) 경제활동상태 변동은 3차 조사(2010년)와 4차 조사(2011년)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표 2-3-71〉 자격증 보유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명, %)

구 分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정 수 전 체	2,202,333	924,968	61,595	1,215,770
	100.0	100.0	100.0	100.0
지난 조사 이후 신규 취득 여부	있 음	1.5	2.4	2.9
	없 음	98.5	97.6	97.1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	있 음	17.0	27.2	26.3
	없 음	83.0	72.8	73.7

주 1)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는 1차조사 시 파악한 자격증과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신규 자격증을 모두 고려하여 4차조사 시 장애인 개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2) 지난 조사 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자격증은 신규자격증으로 간주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지난 조사 이후 신규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1.5%, 현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7.0%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의 자격증 보유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3-72〉 자격증 도움정도

(단위 : 건, %)

구 분	신규 취득 자격증	현재 보유 자격증
자격증 추정 수	35,936	551,431
전 체	100.0	100.0
전혀 도움 안됨	1.0	10.8
별로 도움 안됨	11.7	17.8
보통	14.7	12.6
다소 도움 됨	33.2	32.3
매우 도움 됨	39.4	26.4
모름/응답거절	0.0	0.1

주 1) 지난 조사 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자격증은 신규 자격증으로 간주함

2)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복수개의 자격증 각각에 대해 질문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페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자격증 보유자가 갖고 있는 551,431개의 자격증 중 58.7%의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으며, 지난 조사 이후 신규로 취득한 35,936개 자격증의 중 72.6%는 도움이 된다고 나타남



## 제 4 절 교육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그림 2-4-1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자료 |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2007.

원자력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년도.

- 25세 이상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이상의 비율이 1995년 20.6%, 2000년 32.0%, 2005년 36.1%로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 기준 전체인구(69.7%)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림 2-4-2 특수교육 규모



주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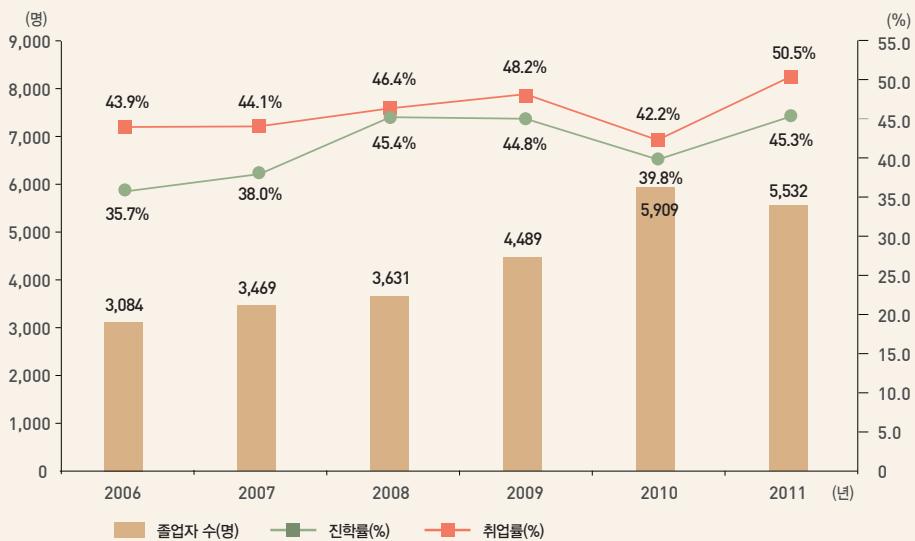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1.

◉ 최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확산으로 특수학급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42학급이 증가함

- 2011년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82,665명으로 전년 대비 2,954명 증가하였으며 최근 특수 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서비스 강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1년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2명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기준(4.0:1)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06년 5.6:1→2007년 5.4:1→2008년 5.4:1→2009년 5.4:1→2010년 5.2:1→2011년 5.2:1

그림 2-4-3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주 1)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의 진학률 및 취업률 현황임

- 2) 진학률(%)=(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 3) 취업률(%)=(취업자 수/(졸업자 수-진학자 수))×100
- 4) 복지시설·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 ➊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의 진학률은 2006년 35.7%, 2008년 45.4%, 2010년 39.8%, 2011년 45.3%로, 장애학생의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진학률은 계속 증가하다 2010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 증가함
- ➋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률은 2006년 43.9%, 2008년 46.4%, 2010년 42.2%, 2011년 50.5%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그림 2-4-4 특수교육예산 현황



주 1)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중 1995년 ~ 2007년까지 예산은 구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며,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2008년 이후 예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예산 중 교육 부문의 예산임  
 2) 특수교육예산비율(%)=(특수교육 예산/교육과학기술부 예산)×1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1.

◎ 2011년도 9월 현재 특수교육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문 예산의 4.7%를 차지하며,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23,78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65천원 증액되었음

## 1. 교육수준

〈표 2-4-1〉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단위 : %)

구 분		전 체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95년	전 체	전체인구	100.0	26.6	15.7	38.0
		장애인구	100.0	65.4	14.0	14.6
	남 성	전체인구	100.0	17.8	14.2	41.4
		장애인구	100.0	50.4	18.3	21.8
2000년	여 성	전체인구	100.0	35.0	17.1	34.8
		장애인구	100.0	82.6	9.1	6.3
	남 성	전체인구	100.0	23.0	13.3	39.4
		장애인구	100.0	54.2	13.9	23.3
2005년	여 성	전체인구	100.0	15.1	12.3	41.6
		장애인구	100.0	43.4	16.0	28.8
	전 체	전체인구	100.0	30.4	14.3	37.3
		장애인구	100.0	71.1	10.4	14.4
	남 성	전체인구	100.0	19.1	11.2	38.3
		장애인구	100.0	47.3	16.6	25.5
	여 성	전체인구	100.0	12.2	10.2	39.7
		장애인구	100.0	35.5	18.7	31.3

자료 :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2007.

원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32/321페이지 참조

- 25세 이상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이상의 비율이 1995년 20.6%, 2000년 32.0%, 2005년 36.1%로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 기준 전체인구(69.7%)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특히 2005년 남성장애인의 고졸 이상 비율(45.7%)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22.0%로 상당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4-2〉 장애인구의 교육수준

구 분	전 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단위 : %)
전 체	100.0	11.8	32.9	18.3	25.0	12.0	
지 체	100.0	11.0	32.9	19.1	25.0	12.2	
뇌 병 변	100.0	13.3	37.6	17.3	20.2	11.6	
시 각	100.0	12.5	30.9	18.8	23.3	14.6	
청 각	100.0	19.7	37.4	17.1	15.5	10.4	
언 어	100.0	8.7	31.6	15.9	28.3	15.6	
지 적	100.0	12.4	27.8	18.4	38.1	3.3	
자 폐 성	100.0	10.3	49.0	8.2	27.5	4.9	
정 신	100.0	3.4	18.5	18.5	46.2	13.5	
신 장	100.0	4.9	21.3	21.1	34.2	18.4	
심 장	100.0	4.2	43.6	15.6	16.3	20.2	
호흡 기	100.0	11.7	45.5	8.9	24.9	9.0	
간	100.0	0.0	29.5	6.9	10.8	52.8	
안 면	100.0	0.0	30.8	35.2	19.9	14.1	
장루 · 요루	100.0	12.6	42.4	15.1	16.3	13.6	
간 질	100.0	4.0	27.1	11.9	41.2	15.8	

주 1) 대학이상은 3년제 이하 대학~대학원 모두 포함

2) 미취학자 만6세 미만 제외

3)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의 교육정도를 보면, '초등학교' 32.9%, '고등학교' 25.0%, '중학교' 18.3%, '대학이상' 12.0%, '무학'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학을 포함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 63%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함
  - 청각장애인 무학의 비율이 19.7%로 가장 높고, 간장에는 대학이상의 비율이 52.8%로 가장 높아 장애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 장애아동 및 청소년 교육

### 가. 보육시설

〈표 2-4-3〉 보육시설 형태

(단위 :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일반 보육시설	장애인 통합보육시설	장애인담 보육시설	다니지 않음
전 체	43,292	100.0	3.9	14.1	6.2	75.8
지 체	4,499	100.0	2.4	0.0	0.0	97.6
뇌 병 변	6,031	100.0	0.0	15.8	15.9	68.3
시 각	2,878	100.0	0.0	0.0	17.0	83.0
청 각	1,253	100.0	28.7	51.3	0.0	20.0
언 어	2,789	100.0	15.3	0.0	9.5	75.3
지 적	14,792	100.0	3.3	18.2	0.0	78.5
자 폐 성	8,090	100.0	1.4	22.2	12.1	64.3
정 신	-	-	-	-	-	-
신 장	216	100.0	100.0	0.0	0.0	0.0
심 장	2,467	100.0	0.0	0.0	0.0	100.0
호흡 기	206	100.0	0.0	0.0	0.0	100.0
간	-	-	-	-	-	-
안 면	71	100.0	0.0	0.0	0.0	100.0
장루 · 요루	-	-	-	-	-	-
간 질	-	-	-	-	-	-

주 1)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아동의 75.8%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보육시설 형태는 '장애인 통합보육시설' 14.1%, '장애인담보육시설' 6.2%, '일반보육시설' 3.9% 등의 순임
- 신장장애는 일반보육시설 이용률이 100%이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인은 장애전담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4〉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단위 : 시간, %, 만원)

구 분	1일 평균 이용시간			월 평균 비용					
	평균시간	1~5간	6~10시간	평균비용	무료	1~5만원	6~10만원	11~15만원	
전 체	4.9	46.9	53.1	1.0	89.1	4.8	3.6	-	2.5
지 체	5.0	100.0	0.0	2.0	0.0	100.0	0.0	-	0.0
뇌 병 변	4.1	63.7	36.3	2.8	86.2	0.0	0.0	-	13.8
시 각	1.3	100.0	0.0	0.0	100.0	0.0	0.0	-	0.0
청 각	8.1	0.0	100.0	0.0	100.0	0.0	0.0	-	0.0
언 어	6.6	0.0	100.0	0.0	100.0	0.0	0.0	-	0.0
지 적	4.4	54.5	45.5	1.2	88.3	0.0	11.7	-	0.0
자 폐 성	5.0	47.5	52.5	0.4	86.4	13.6	0.0	-	0.0
정 신	-	-	-	-	-	-	-	-	-
신 장	7.0	0.0	100.0	0.0	100.0	0.0	0.0	-	0.0
심 장	-	-	-	-	-	-	-	-	-
호 흡 기	-	-	-	-	-	-	-	-	-
간	-	-	-	-	-	-	-	-	-
안 면	-	-	-	-	-	-	-	-	-
장루 · 요루	-	-	-	-	-	-	-	-	-
간 질	-	-	-	-	-	-	-	-	-

주 1)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1일 평균 이용시간은 4.9시간, 전체의 53.1%가 「6~10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비용은 1만원으로 전체의 89.1%가 「무료」로 이용하고, 「1~5만원」 4.8%, 「6~10만원」 3.6%, 「16~20만원」 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5〉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장애아 전담시설			장애아 통합시설		
	시설 수	장애 아동 수	종사자 수	시설 수	장애 아동 수	종사자 수
			장애인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장애인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전 체	169	6,152	2,553	815	3,513	1,231
국·공립 보육어린이집	33	1,027	431	484	2,299	825
법인 보육어린이집	100	4,027	1,675	46	174	63
법인 외 민간보육어린이집	6	222	88	40	198	65
민간 개인 보육어린이집	28	841	346	211	758	252
가정 보육어린이집	2	35	13	32	72	22
부모협동 보육어린이집	-	-	-	-	-	-
직장 보육어린이집	-	-	-	2	12	4

- 주 1)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
- 2)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시설
- 3) 국·공립 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4) 법인 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5)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6) 가정 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7) 직장 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8) 민간 보육시설 :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외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법인 외 보육시설, 민간 개인 보육시설)
- 9) 장애아동 수 : 아동자격이 영유아(장애아무상보육)인 아동 수
- 10)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보육통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9페이지 참조

☞ '보육시설'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2011년 12월 말 특수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 전담시설 수는 총 169개소이며 6,152명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아 통합시설은 총 815개소로 3,513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음
- 설립주체별로 보면 시설 수는 「국·공립 보육시설」 517개소, 「민간 개인 보육시설」 239개소, 「법인 보육시설」 146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장애아동 수는 「법인 보육시설」 4,201명, 「국·공립 보육시설」 3,326명, 「민간 개인 보육시설」 1,599명 등의 순임

## 나. 유치원

〈표 2-4-6〉 유치원 형태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일반유치원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부)	다니지 않음
전 체	43,292	100.0	0.6	1.9	0.8	96.6
지 체	4,499	100.0	6.2	0.0	0.0	93.8
뇌 병 변	6,031	100.0	0.0	0.0	0.0	100.0
시 각	2,877	100.0	0.0	0.0	12.3	87.7
청 각	1,254	100.0	0.0	0.0	0.0	100.0
언 어	2,790	100.0	0.0	25.3	0.0	74.7
지 적	14,792	100.0	0.0	0.8	0.0	99.2
자 폐 성	8,089	100.0	0.0	0.0	0.0	100.0
정 신	-	-	-	-	-	-
신 장	216	100.0	0.0	0.0	0.0	100.0
심 장	2,467	100.0	0.0	0.0	0.0	100.0
호 흡 기	206	100.0	0.0	0.0	0.0	100.0
간	-	-	-	-	-	-
안 면	71	100.0	0.0	0.0	0.0	100.0
장루 · 요루	-	-	-	-	-	-
간 질	-	-	-	-	-	-

주 1)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 아동이 현재 다니는 유치원 형태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96.6%가 '다니지 않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유치원 형태로는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1.9%, '특수학교 유치원(부)' 0.8%, '일반유치원' 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지체장애 6.2%로 유일하고,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에 다니는 비율은 언어장애 25.3%로 가장 높고, 특수학교 유치원(부)에 다니는 비율은 시각장애가 12.3%로 유일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7〉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단위 : 시간, %, 만원)

구 분	1일 평균 이용시간			월 평균 비용
	평균시간	1~5시간	6~10시간	
전 체	5.1	80.9	19.1	100.0
지 체	7.0	0.0	100.0	100.0
뇌 병 변	-	-	-	-
시 각	4.0	100.0	0.0	100.0
청 각	-	-	-	-
언 어	5.0	100.0	0.0	100.0
지 적	4.0	100.0	0.0	100.0
자 폐 성	-	-	-	-
정 신	-	-	-	-
신 장	-	-	-	-
심 장	-	-	-	-
호흡기	-	-	-	-
간	-	-	-	-
안 면	-	-	-	-
장루·요루	-	-	-	-
간 질	-	-	-	-

주 1)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현재 다니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1일 평균 이용시간은 5.1시간으로 전체의 80.9%가 '1~5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비용은 장애아동 무상교육제도 실시에 따라 모두 무료로 이용하고 있음.

## 다. 재활치료서비스

〈표 2-4-8〉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구 분	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심리행동치료	(단위 : %) 기타치료
전 체	0.9	1.1	1.5	20.3	1.0	0.5	1.0	1.2
지 체	-	-	0.1	26.7	0.2	-	0.1	0.5
뇌 병 변	0.9	1.6	2.1	29.6	4.0	0.6	0.5	1.9
시 각	0.1	0.1	0.1	9.1	0.4	-	0.1	0.4
청 각	0.3	0.3	0.6	11.7	-	0.1	-	0.1
언 어	2.4	5.1	11.0	5.3	-	5.2	7.5	5.2
지 적	5.5	7.9	12.5	5.6	2.4	3.9	5.8	6.4
자 폐 성	22.1	23.6	45.3	-	12.1	11.9	8.8	23.1
정 신	6.4	4.6	0.3	7.6	3.1	-	8.8	2.3
신 장	-	-	-	4.7	-	-	-	-
심 장	-	-	-	11.5	-	-	-	-
호흡 기	-	-	-	2.5	-	-	-	-
간	-	-	-	4.2	-	-	-	-
안 면	-	-	-	21.9	11.2	-	11.2	-
장루 · 요루	-	-	-	8.5	-	-	-	-
간 질	-	-	-	3.3	-	-	2.5	-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살펴보면 물리치료가 2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등의 예술치료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장애아동에 대한 바우처 제도 시행으로 많은 장애아동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제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매우 적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 안면장애는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이 높고 자폐성장애는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을 다양하게 받는 반면,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는 주로 '언어치료'를 받고 내부장애는 주로 물리치료만 받음

〈표 2-4-9〉 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단위 : 시간, 만원)

구 분	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심리·행동치료		기타치료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전 체	1.82	7.83	1.76	6.76	1.83	12.99	2.37	4.35	3.43	11.15	2.72	6.87	1.47	10.22	2.94	11.10
지 체	-	-	2.00	26.00	2.00	16.47	2.23	3.96	2.51	17.96	-	-	1.00	1.00	4.03	5.68
뇌 병 변	2.80	2.31	2.44	2.80	2.52	16.99	3.24	6.99	2.82	9.31	3.05	7.17	1.14	14.75	3.70	9.12
시 각	2.00	24.00	1.00	3.00	1.00	6.00	1.85	3.56	1.00	20.00	-	-	1.00	2.45	5.00	1.00
청 각	1.00	4.00	1.00	-	1.58	9.4	2.03	1.93	-	-	1.00	5.00	-	-	1.00	6.00
언 어	1.00	6.78	1.25	18.42	1.69	6.69	2.07	4.35	-	-	1.24	7.30	1.17	3.42	2.00	14.54
지 적	1.55	8.78	1.37	6.98	1.65	10.15	1.59	7.33	7.52	10.19	2.35	5.13	1.54	11.34	2.31	12.52
자 폐 성	1.61	12.03	1.63	7.77	1.75	18.31	-	-	2.27	12.90	1.51	17.28	1.93	30.55	2.60	23.91
정 신	2.04	1.23	2.37	1.00	2.00	-	2.51	1.37	3.22	2.00	4.18	1.00	1.57	2.00	1.00	1.00
신 장	-	-	-	-	-	-	1.66	3.22	-	-	-	-	-	-	-	-
심 장	-	-	-	-	-	-	2.90	1.00	-	-	-	-	-	-	-	-
호흡기	-	-	-	-	-	-	2.19	1.00	-	-	-	-	-	-	-	-
간	-	-	-	-	-	-	2.00	-	-	-	-	-	-	-	-	-
안 면	-	-	-	-	-	-	3.45	-	1.00	-	-	-	-	1.00	-	-
장루·요루	-	-	-	-	-	-	2.98	4.83	-	-	-	-	-	-	-	-
간 질	-	-	-	-	-	-	1.94	180.0	-	-	-	-	-	2.00	-	-

주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의 주 평균 이용시간은 '작업치료' 3.43시간, '놀이치료' 2.72시간, '물리치료' 2.37시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약 2시간 정도의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월평균비용(본인부담)은 '언어치료' 13만원, '작업치료' 11만 2천원, '심리·행동치료' 10만 2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 특수교육

#### 가. 특수교육 현황

〈표 2-4-10〉 특수교육 규모

(단위 : 교, 학급, 명)

구 분	특수 학교 수	특수 학급 수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교원 수
			소 계	장애인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2002년	136	3,953	54,470	-	1,809	32,006	11,356	8,491	808	8,695
2003년	137	4,102	53,404	-	1,932	30,838	11,055	8,779	800	9,175
2004년	141	4,366	55,374	-	2,677	30,329	11,326	10,207	835	9,846
2005년	142	4,697	58,362	-	3,057	31,064	12,493	10,756	992	10,429
2006년	143	5,204	62,538	-	3,243	32,263	13,972	11,851	1,209	11,259
2007년	144	5,753	65,940	-	3,125	32,752	15,267	13,349	1,447	12,249
2008년	149	6,352	71,484	-	3,236	33,974	16,833	15,686	1,755	13,165
2009년	150	6,924	75,187	288	3,303	34,035	17,946	17,553	2,062	13,997
2010년(A)	150	7,792	79,711	290	3,225	35,294	19,375	19,111	2,416	15,244
2011년(B)	155	8,415	82,665	356	3,367	35,124	20,508	20,439	2,871	15,934
B-A	5	623	2954	66	142	-170	1133	1328	455	690

주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2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최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확산으로 특수학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특수학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42학급이 증가함
    - 2011년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82,665명으로 전년 대비 2,954명 증가함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1년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2명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기준(4:0:1)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2006년 5.6:1→2007년 5.4:1→2008년 5.4:1→2009년 5.4:1→2010년 5.2:1→2011년 5.2:1

〈표 2-4-11〉 특수교육 대상학생 비율

(단위 : 명, %)

구 분	일반학교 학생 수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2005년	8,368,134	58,362	0.7
2006년	8,325,384	62,538	0.8
2007년	8,276,312	65,940	0.8
2008년	8,155,806	71,484	0.9
2009년	7,967,419	75,187	0.9
2010년	7,745,551	79,711	1.0
2011년	7,646,178	82,665	1.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5.

교육과학기술부, 「200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6.

교육과학기술부, 「200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0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8.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2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일반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2010년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총 1.1%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2-4-12〉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학교		
			소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통합학급)
2002년	54,470 (100.0)	24,276 (44.6)	30,194 (55.4)	26,925 (49.4)	3,269 (6.0)
2003년	53,404 (100.0)	24,192 (45.3)	29,212 (54.7)	26,908 (50.4)	2,304 (4.3)
2004년	55,374 (100.0)	23,762 (42.9)	31,612 (57.1)	28,002 (50.6)	3,610 (6.5)
2005년	58,362 (100.0)	23,449 (40.2)	34,913 (59.8)	29,803 (51.1)	5,110 (8.8)
2006년	62,538 (100.0)	23,291 (37.2)	39,247 (62.8)	32,506 (52.0)	6,741 (10.8)
2007년	65,940 (100.0)	22,963 (34.8)	42,977 (65.2)	35,340 (53.6)	7,637 (11.6)
2008년	71,484 (100.0)	23,400 (32.7)	48,084 (67.3)	37,857 (53.0)	10,227 (14.3)
2009년	75,187 (100.0)	23,801 (31.7)	51,386 (68.3)	39,380 (52.4)	12,006 (16.0)
2010년	79,711 (100.0)	23,944 (30.0)	55,767 (70.0)	42,021 (52.7)	13,746 (17.2)
2011년	82,665 (100.0)	24,741 (29.9)	57,924 (70.1)	43,183 (52.2)	14,741 (17.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2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2011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24,741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43,183명, ‘일반학교 일반학급’ 14,741명 배치된 것으로 나타남
  - 통합교육 확대에 의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음

〈표 2-4-13〉 장애영역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지체	정서· 행동	자폐성	의사 소통	학습	건강	발달 지체
2002년	54,470 (100.0)	1,685 (3.1)	2,963 (5.4)	28,691 (52.7)	5,021 (9.2)	5,083 (9.3)	-	-	11,027 (20.2)	-	-
2003년	53,404 (100.0)	1,654 (3.1)	2,606 (4.9)	29,380 (55.0)	4,852 (9.1)	5,097 (9.5)	-	-	9,815 (18.4)	-	-
2004년	55,374 (100.0)	1,650 (3.0)	2,938 (5.3)	31,705 (57.3)	5,232 (9.4)	4,787 (8.6)	-	-	9,062 (16.4)	-	-
2005년	58,362 (100.0)	1,745 (3.0)	2,549 (4.4)	33,618 (57.6)	5,924 (10.2)	5,870 (10.1)	-	-	8,447 (14.5)	209 (0.4)	-
2006년	62,538 (100.0)	1,902 (3.0)	2,806 (4.5)	33,958 (54.3)	6,957 (11.1)	8,852 (14.2)	301 (0.5)	301 (10.8)	6,738 (1.6)	1,024 (1.6)	-
2007년	65,940 (100.0)	2,292 (3.5)	2,864 (4.3)	36,041 (54.7)	7,739 (11.7)	7,695 (11.7)	1,185 (1.8)	1,185 (10.6)	6,982 (1.7)	1,142 (1.7)	-
2008년	71,484 (100.0)	2,103 (2.9)	3,073 (4.3)	40,222 (56.3)	8,788 (12.3)	7,681 (10.7)	1,226 (1.7)	1,226 (9.4)	6,754 (2.3)	1,637 (2.3)	-
2009년	75,187 (100.0)	2,113 (2.8)	3,385 (4.5)	40,601 (54.0)	9,659 (12.8)	3,537 (4.7)	4,647 (6.2)	1,324 (1.8)	6,526 (8.7)	1,945 (2.6)	1,450 (1.9)
2010년	79,711 (100.0)	2,398 (3.0)	3,726 (4.7)	42,690 (53.6)	10,367 (13.0)	3,588 (4.5)	5,463 (6.9)	1,591 (2.0)	6,320 (7.9)	2,174 (2.7)	1,394 (1.7)
2011년	82,665 (100.0)	2,315 (2.8)	3,676 (4.4)	45,132 (54.6)	10,727 (13.0)	2,817 (3.4)	6,809 (8.2)	1,631 (2.0)	5,606 (6.8)	2,229 (2.7)	1,723 (2.1)

주 1) 건강장애 2005년~, 의사소통장애 2006년~, 발달지체 2009년~ 조사 실시

2) 2009년 이전까지 정서행동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통합하여 정서장애로 조사

3) 2009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영역별 조사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2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를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45,132명(54.6%)으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 10,727명(13.0%), 자폐성장애 6,809명(8.2%), 학습장애 5,606명(6.8%) 순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 건강장애 비율은 유지 또는 증가하는 반면, 학습장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 졸업생 진로 현황

〈표 2-4-14〉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단위: 명, %)

구 분	졸업자수	진학자 수				전학률	취업자수	취업률	미진학· 미취업자수
		소 계	전공과	전문대	대학				
2005년	전체	2,953	992	651	136	205	33.6	885	45.1
	특수학교	1,986	736	595	45	96	37.1	559	44.7
	특수학급	661	130	50	38	42	19.7	260	49.0
2006년	일반학급	306	126	6	53	67	41.2	66	36.7
	전체	3,084	1,100	737	177	186	35.7	870	43.9
	특수학교	2,000	795	658	29	108	39.8	487	40.4
2007년	특수학급	702	169	67	76	26	24.1	295	55.3
	일반학급	382	136	12	72	52	35.6	88	35.8
	전체	3,469	1,317	903	205	209	38.0	950	44.1
2008년	특수학교	2,169	938	812	43	83	43.2	497	40.4
	특수학급	940	218	72	102	44	23.2	380	52.6
	일반학급	360	161	19	60	82	44.7	73	36.7
2009년	전체	3,631	1,647	1,094	300	253	45.4	921	46.4
	특수학교	2,062	1,039	920	40	79	50.4	484	47.3
	특수학급	1,102	374	166	155	53	33.9	386	53.0
2010년	일반학급	467	234	8	105	121	50.1	51	18.2
	전체	4,489	2,013	1,258	383	372	44.8	1,193	48.2
	특수학교	2,181	1,099	968	47	84	50.4	534	49.4
2011년	특수학급	1,641	524	250	174	100	31.9	588	52.6
	일반학급	667	390	40	162	188	58.5	71	20.6
	전체	5,909	2,353	1,391	517	445	39.8	1,500	42.2
2010년	특수학교	2,258	1,147	1,019	47	81	50.8	488	43.9
	특수학급	2,195	750	354	276	120	34.2	898	62.1
	일반학급	1,456	456	18	194	244	31.3	114	88.6
2011년	전체	5,532	2,504	1,577	532	395	45.3	1,528	50.5
	특수학교	2,365	1,205	1,085	40	80	51.0	492	42.4
	특수학급	2,273	790	462	250	78	34.8	903	60.9
	일반학급	894	509	30	242	237	56.9	133	34.5

주 1)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의 진학률/취업률을 현황임

2) 진학률(%)=(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취업률(%)=(취업자 수/(졸업자 수-진학자 수))×1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2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진학률, 취업률' 설명 보기 : 368페이지 참조

- 2011년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의 진학률은 45.3%로, 특수학교(51.0%)에 속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학률이 높은 것은 특수학교 전공과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이며,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 졸업생의 취업률(34.5%)은 특수학급의 취업률(60.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15〉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취업 현황

(단위: 명)

구 分		전 체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임업 어업	전자 조립	제과 제빵	IT 및 정보 서비스	상업	이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 관공	기타
2005년	전 체	885	12	167	20	67	26	3	-	104	83	-	-	-	403
	특수학교	559	6	103	11	49	22	1	-	104	17	-	-	-	246
	특수학급	260	6	56	4	15	4	-	-	-	53	-	-	-	122
2006년	일반학급	66	-	8	5	3	-	2	-	-	13	-	-	-	35
	전 체	870	11	208	29	97	20	4	-	82	76	-	-	-	343
	특수학교	487	3	107	10	62	12	1	-	81	23	-	-	-	188
2007년	특수학급	295	8	90	12	29	5	3	-	1	38	-	-	-	109
	일반학급	88	-	11	7	6	3	-	-	-	15	-	-	-	46
	전 체	950	19	193	37	88	43	6	10	116	109	-	-	-	329
2008년	특수학교	497	7	96	12	58	24	5	1	116	10	-	-	-	168
	특수학급	380	10	91	16	29	15	1	4	-	67	-	-	-	147
	일반학급	73	2	6	9	1	4	-	5	-	32	-	-	-	14
2009년	전 체	921	17	240	26	91	28	12	13	83	98	-	-	-	313
	특수학교	484	14	114	11	54	14	8	2	82	25	-	-	-	160
	특수학급	386	2	116	13	33	13	-	10	1	62	-	-	-	136
2010년	일반학급	51	1	10	2	4	1	4	1	-	11	-	-	-	17
	전 체	1,193	28	179	31	-	18	16	5	117	99	14	73	569	44
	특수학교	534	6	82	1	-	8	9	1	117	29	1	29	230	21
2011년	특수학급	588	5	91	27	-	10	5	2	-	63	8	35	323	19
	일반학급	71	17	6	3	-	-	2	2	-	7	5	9	16	4
	전 체	1,500	10	194	40	-	50	13	10	124	106	9	55	716	173
2010년	특수학교	488	5	57	5	-	11	9	4	122	5	1	19	179	71
	특수학급	898	4	108	27	-	34	4	5	2	79	6	34	506	89
	일반학급	114	1	29	8	-	5	-	1	-	22	2	2	31	13
2011년	전 체	1528	10	268	16	-	24	16	6	94	114	37	49	478	416
	특수학교	492	5	70	3	-	8	5	2	90	12	3	6	125	163
	특수학급	903	5	177	11	-	16	9	3	2	93	30	33	338	186
2011년	일반학급	133	-	21	2	-	-	2	1	2	9	4	10	15	67

주 : 복지관 등\*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프로그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2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2010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은 50.5%로, 전체 취업자의 31.3%가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16〉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단위 : 교, 명)

구 분	전 체		전문대학		대학교	
	실시대학	학생수	실시대학	학생수	실시대학	학생수
1995년	8	113	2	6	6	107
1996년	18	217	2	16	16	201
1997년	36	276	6	42	30	234
1998년	45	355	6	57	39	298
1999년	46	396	6	47	40	349
2000년	57	368	9	55	48	313
2001년	54	421	11	61	43	360
2002년	61	614	15	194	46	420
2003년	61	427	14	117	47	310
2004년	73	424	24	115	49	309
2005년	64	389	11	45	53	344
2006년	73	419	10	31	63	388
2007년	80(78)	518	9(7)	79	71(71)	439
2008년	82(72)	560	8(7)	100	74(65)	460
2009년	90(80)	561	10(10)	74	80(70)	498
2010년	99(87)	652	19(12)	51	80(75)	601
2011년	103(91)	634	14(14)	60	89(77)	574

주 : 괄호는 최종 등록기준 학교수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2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2011년도에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실시대학은 전문대학 14개교와 4년제 대학교 89개 교로 모두 103개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는 전문대학 14개교 60명, 대학 77개교 574명으로 총 91개 대학 634명임

※ 1995년부터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다. 특수교육예산

〈표 2-4-17〉 특수교육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명)

구 분	교육과학기술부예산	특수교육예산	특수교육예산비율	수혜 학생 수	1인당 특수교육비
1995년	12,495,810,267	224,006,328	1.8	53,117	4,217
1996년	15,565,216,500	238,102,827	1.5	47,947	4,965
1997년	18,287,608,665	298,596,440	1.6	48,089	6,209
1998년	18,127,837,527	337,070,063	1.9	48,518	6,947
1999년	17,456,265,000	315,782,768	1.8	50,269	6,282
2000년	19,172,027,020	340,225,173	1.8	54,732	6,216
2001년	20,049,279,000	406,310,075	2.0	51,330	7,916
2002년	22,278,358,000	443,073,183	2.0	54,470	8,134
2003년	24,404,401,310	564,394,700	2.3	53,404	10,568
2004년	26,384,088,000	666,840,034	2.5	55,374	12,042
2005년	27,438,044,595	822,051,094	3.0	58,362	14,085
2006년	29,426,304,000	1,051,284,265	3.6	62,538	16,810
2007년	31,044,748,000	1,145,295,143	3.7	65,940	17,369
2008년	35,897,425,000	1,352,939,269	3.8	71,484	18,926
2009년	38,698,867,000	1,545,753,946	4.0	75,187	20,559
2010년	38,595,975,000	1,667,641,925	4.3	79,711	20,921
2011년	41,618,722,000	1,966,284,753	4.7	82,665	23,786

주 :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중 1995년~2007년까지 예산은 구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며,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2008년 이후 예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예산 중 교육 부문의 예산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2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비' 설명 보기 : 368페이지 참조

- 2011년도 특수교육 예산은 1조 9,662억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약 2,986억원 증가된 금액이며, 2011년 9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문 예산의 4.7%를 차지하며,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23,78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65천원 증액되었음

#### 4. 직업훈련

〈표 2-4-18〉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체	예	훈련 중	아니오
전 체	2,071,595	100.0	3.9	0.3	95.8
지 체	1,124,524	100.0	4.0	0.1	95.9
뇌 병 변	211,976	100.0	1.3	0.4	98.4
시 각	217,306	100.0	3.8	0.0	96.1
청 각	203,066	100.0	1.7	0.1	98.3
언 어	14,023	100.0	5.7	0.2	94.1
지 적	107,359	100.0	11.5	2.7	85.8
자 폐 성	4,043	100.0	16.7	3.1	80.1
정 신	84,552	100.0	5.8	0.9	93.3
신 장	48,284	100.0	3.0	0.0	97.0
심 장	13,771	100.0	0.7	0.0	99.3
호흡기	14,392	100.0	1.2	0.2	98.6
간	6,250	100.0	0.6	1.5	97.9
안 면	2,070	100.0	8.4	0.0	91.6
장루·요루	11,280	100.0	0.5	0.0	99.5
간 질	8,699	100.0	6.3	0.4	93.3

주 : 2008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 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받았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폐성장애 16.7%, 지적장애 11.5%로 두 장애유형은 비교적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19〉 공공/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

(단위 : %)

구 분		경제활동상태 변동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전 체		100.0	100.0	100.0	100.0
3차 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	있 음	0.8	0.9	1.0	0.3
	없 음	99.2	99.1	99.0	99.7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누적)	있 음	11.0	8.9	15.3	4.8
	없 음	89.0	91.1	84.7	95.2

주 : 직업능력개발 경험(누적)은 1차조사 시 파악한 과거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이후 새로 경험한 직업교육 훈련을 모두 고려하여 4차 조사시 장애인 개인이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직업능력개발’ 설명 보기 : 368페이지 참조

〈표 2-4-20〉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 정 수	2,202,333	924,968	61,595	1,215,77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지난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있 음	0.6	0.9	4.9
	없 음	99.4	99.1	95.1
현재까지 직업교육훈련 경험	있 음	7.8	10.9	26.8
	없 음	92.2	89.1	73.2

주 : 현재까지 직업교육훈련 경험은 1차 조사(2008년) 시 파악한 과거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이후 새로 경험 한 직업교육훈련을 모두 고려하여 4차 조사시 장애인 개인이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직업능력개발’ 설명 보기 : 368페이지 참조

- 지난 조사 이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의 비율은 0.6%, 현재까지 직업교육 훈련 이용경험이 있는 자의 비율은 7.8%로 나타남
- 실업자의 신규 및 평생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각각 4.9%, 26.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4-21〉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실시기관

		(단위 : %)
	구 분	비 율
	전 체	100.0
직업교육훈련 분야	농림어업, 광업분야(과수재배, 목재가공, 수산양식 등)	11.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화학제품 제조, 도자기 제조 등)	0.1
	금속분야(금속가공, 열처리 등)	4.1
	기계·장비 분야(기계가공, 선반, 밀링, 조립, 설계/제도 등)	5.7
	전기·전자 분야(기계설비/제어, 조립, 전기공사 등)	20.5
	컴퓨터·정보·통신분야(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래밍, DB 등)	10.8
	서비스 분야(음식조리, 제빵, 미용기술 등)	10.2
	업무관리분야(재무/경영, 생산사무, 판매사무, 사무지원 등)	4.8
	의료분야(물리치료, 간호, 침술, 약 조제, 의료 기술 등)	16.2
	산업응용분야(인쇄/출판, 디자인 개발, 광학분야 등)	2.4
	공예분야(귀금속, 가수, 자수, 도장 등)	6.2
	어학분야	4.8
	모름/응답거절	3.1
직업교육훈련 실시기관	공공직업훈련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15.0
	사설학원	17.8
	직업훈련법인(민간직업전문학교)	15.8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훈련기관	3.1
	복지관, 읍면동사무소, 구청 등	38.0
	기타	10.3

주 1) 지난 조사이후 직업교육훈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교육훈련기간이 가장 긴 직업교육훈련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직업능력개발' 설명 보기 : 368페이지 참조

- 직업교육훈련 분야로는 '전기·전자분야' 20.5%, '의료분야' 16.2%, '농림어업, 광업분야'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직업교육훈련 실시기관은 '복지관, 읍면동사무소, 구청 등' 38.0%, '사설학원'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22〉 직업교육훈련 참여 및 도움정도

(단위 : %)

구 分	전 체	구 分	전 체
참여정도	100.0	도움정도	100.0
보통	7.1	도움되지 않음	4.6
참여함	92.9	보통	36.2
		도움됨	59.2

주 1) 지난 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교육훈련기간이 가장 긴 직업교육훈련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2페이지 참조

☞ ‘직업능력개발’ 설명 보기 : 368페이지 참조

- 지난조사 이후 경험한 직업교육훈련 중 가장 기간이 길었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어느 정도 참여한 비율은 92.9%인 반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9.2%로 나타남

〈표 2-4-23〉 향후 직업훈련 희망분야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단위 : %)
								자폐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계분야	8.2	10.2	4.9	2.5	10.9	15.0	4.1	4.4
금속분야	0.5	0.0	0.0	0.3	0.0	4.4	4.9	0.0
화공·요업분야	0.5	0.0	1.9	4.2	0.0	0.0	0.6	0.0
전기·전자분야	4.2	3.3	5.2	0.5	10.2	4.1	8.1	9.8
통신분야	1.1	1.2	0.0	0.2	0.1	2.2	0.0	3.2
조선·항공분야	0.8	0.8	0.0	0.0	0.0	0.0	1.1	0.0
토목·건축분야	8.3	9.9	7.6	0.3	13.0	3.6	4.4	0.0
섬유분야	3.4	4.1	5.8	0.0	3.7	3.7	0.0	2.4
광업분야	-	-	-	-	-	-	-	-
컴퓨터·정보처리분야	26.8	29.2	30.3	19.1	19.4	22.8	16.8	23.9
공예분야	6.0	4.0	0.2	11.0	12.8	10.2	16.1	6.6
산업응용분야	0.5	0.0	0.1	4.5	0.4	1.4	0.0	0.0
침술·안마분야	4.2	5.2	3.4	7.4	0.7	0.0	0.0	0.0
사무분야	7.2	7.6	8.9	3.7	9.9	0.0	0.0	4.3
이·미용분야	4.2	4.7	3.7	4.0	2.7	2.0	0.5	2.9
제과·제빵분야	6.6	5.2	3.4	5.2	5.7	9.1	21.8	26.6
기타 서비스분야	9.8	8.7	17.3	15.1	6.5	17.1	12.9	2.4
기타	7.9	6.0	7.3	22.1	4.1	4.3	8.8	13.5

주 : 2008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향후 직업훈련 희망 훈련분야로는 전체의 26.8%가 '컴퓨터·정보처리 분야'로 가장 높았고, '기타 서비스분야' 9.8%, '토목·건축분야' 8.3%, '기계분야' 8.2%, '사무분야' 7.2%, '제과·제빵분야' 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23〉 향후 직업훈련 희망분야(계속)

구 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단위 : %)
								10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계분야	1.1	1.3	7.6	10.5	6.6	11.0	7.9	7.4
금속분야	0.0	2.5	0.7	0.0	2.0	0.0	7.5	0.8
화공·요업분야	0.0	0.0	0.0	0.0	0.0	2.0	0.0	0.7
전기·전자분야	4.6	6.2	8.1	4.3	3.6	7.0	5.2	6.2
통신분야	3.6	2.3	0.0	0.0	0.0	0.0	2.8	3.7
조선·항공분야	1.1	3.5	0.0	0.0	1.2	2.7	2.2	2.1
토목·건축분야	4.0	6.2	8.6	8.6	3.1	5.8	12.0	7.2
섬유분야	5.2	0.0	1.0	0.0	5.6	0.0	3.0	1.7
광업분야	-	-	-	-	-	-	-	-
컴퓨터·정보처리분야	24.6	39.8	24.6	31.4	25.1	23.6	13.5	22.7
공예분야	5.8	5.7	8.8	4.8	3.6	11.0	5.4	8.6
산업응용분야	1.1	0.0	0.0	0.0	2.0	0.0	0.0	0.0
침술·안마분야	0.0	0.4	4.6	5.7	1.9	0.0	0.0	3.4
사무분야	12.8	11.0	16.2	7.4	5.7	9.2	1.7	7.7
이·미용분야	4.0	5.4	6.9	2.5	7.1	5.7	5.5	7.6
제과·제빵분야	9.7	4.2	4.5	3.3	7.9	12.9	9.8	9.7
기타 서비스분야	5.9	7.0	2.9	21.6	15.7	6.5	12.7	5.5
기타	16.7	4.8	5.6	0.0	9.0	2.6	10.7	5.1

주 : 2008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향후 직업훈련 희망 훈련분야로는 전체의 26.8%가 '컴퓨터정보처리 분야'로 가장 높았고, '기타 서비스분야' 9.8%, '토목·건축분야' 8.3%, '기계분야' 8.2%, '사무분야' 7.2%, '제과·제빵분야' 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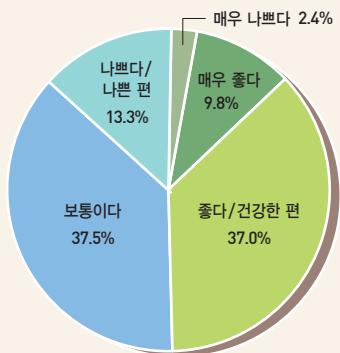
## 제 5 절 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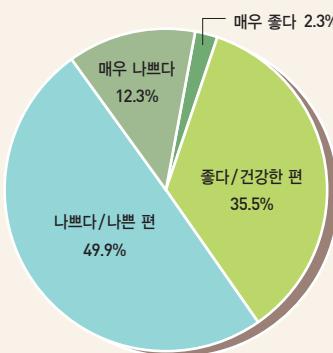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그림 2-5-1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전체인구



장애인구



주 1) 전체인구는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3) 장애인구는 4점 척도, 전체인구는 5점 척도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장애인은 ‘나쁘다’ 62.2%, ‘좋다’ 37.8% 등의 순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전체인구는 ‘좋다’ 46.8%, ‘보통이다’ 37.5%, ‘나쁘다’ 15.7% 등의 순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5-2 건강검진 수진율



주 1) 건강검진수진율 :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분율

2) 전체인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함

3) 2008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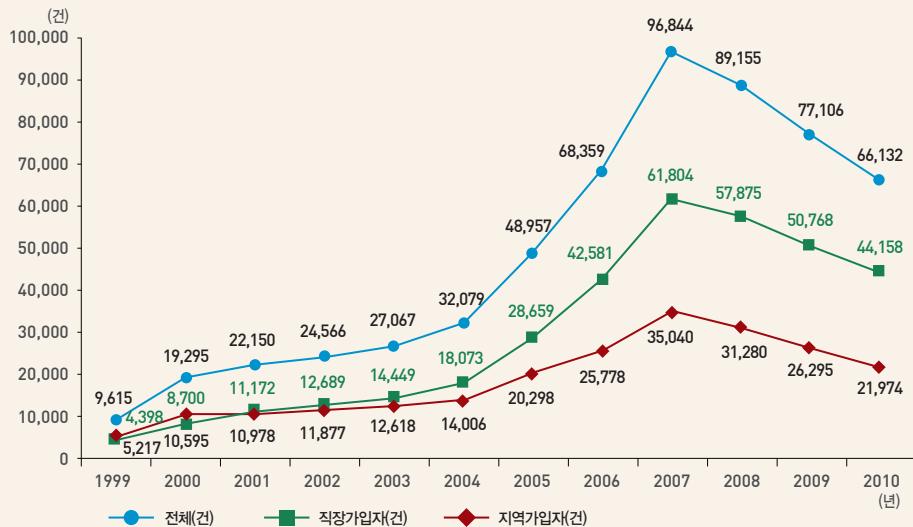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08 국민건강통계」, 2009.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 장애인구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52.7%로 전체인구의 건강검진 수진율 48.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인구의 성별 건강검진 수진율 격차는 7.4%p인 반면, 장애인구의 성별 격차는 0.4%p로 확연한 분포 차를 보이고 있음

그림 2-5-3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주 : 지급기준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

- 건강보험 급여 실적 중 장애인보장구 현금급여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장애인보장구 현금급여 지급건수는 66,132건이며, 직장가입자는 44,158건, 지역가입자는 21,974건임

## 1. 건강상태 및 행태

### 가. 주관적 건강평가

〈표 2-5-1〉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구 분	전 체		(단위 : %)
	전체인구	장애인구	
매우 좋음	9.8	2.3	
좋음	37.0	35.5	
보통이다	37.5	-	
나쁨	13.3	49.9	
매우 나쁨	2.4	12.3	

주 1) 전체인구는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3) 장애인구는 4점척도, 전체인구는 5점 척도 적용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5/321페이지 참조

〈표 2-5-2〉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주관적 건강평가

구 분	전체인구	장애인구	(단위 : %)
매우 좋다	2.3	0.8	
약간 좋다/건강한 편	17.3	8.8	
보통이다	31.7	25.3	
약간 나쁘다/나쁜 편이다	40.0	41.9	
매우 나쁘다	8.7	23.2	

주 : 1) 2008년 기준임

2) 2011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대한 주관적 건강평가 조사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35/321페이지 참조

- 2011년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장애인은 '나쁘다' 62.2%, '좋다' 37.8%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체인구는 '좋다' 46.8%, '보통이다' 37.5%, '나쁘다' 15.7% 등의 순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3〉 평소 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매우 좋음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2005년	2,099,279	100.0	2.7	34.5	-	42.9	19.9
2008년	2,137,226	100.0	5.7	16.7	25.7	35.1	16.8
2011년	2,611,126	100.0	2.3	35.5	-	49.9	12.3
지 체	1,325,878	100.0	1.6	36.7	-	50.9	10.7
뇌 병 변	316,309	100.0	0.6	15.2	-	56.3	27.9
시 각	256,839	100.0	2.4	42.6	-	48.0	7.0
청 각	278,337	100.0	3.1	41.5	-	47.8	7.7
언 어	21,049	100.0	11.6	37.7	-	45.1	5.6
지 적	153,333	100.0	7.3	56.0	-	32.3	4.4
자 폐 성	16,237	100.0	18.5	67.8	-	13.8	-
정 신	103,893	100.0	4.1	34.6	-	52.2	9.1
신 장	58,500	100.0	-	16.2	-	56.0	27.8
심 장	18,509	100.0	-	34.6	-	53.0	12.4
호흡 기	19,249	100.0	-	8.3	-	56.6	35.0
간	9,289	100.0	-	41.2	-	26.2	32.6
안 면	2,427	100.0	-	41.8	-	47.0	11.2
장루 · 요루	16,705	100.0	-	10.7	-	63.5	25.8
간 질	14,572	100.0	-	19.8	-	66.8	13.5

주 : 2005년의 경우 4점 척도, 2008년 5점 척도, 2011년 4점 척도 적용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62.2%로 2008년(51.9%)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1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호흡기장애(91.6%), 장루 · 요루장애(89.3%), 뇌병변장애(84.2%), 신장장애(83.8%)의 경우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자폐성장애(86.3%), 지적장애(63.3%)는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 장애치료

〈표 2-5-4〉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전체	2,611,126	100.0	72.4	27.6
지 체	1,325,877	100.0	67.7	32.3
뇌 병 변	316,309	100.0	87.4	12.6
시 각	256,841	100.0	70.3	29.7
청 각	278,337	100.0	70.5	29.5
언 어	21,049	100.0	72.0	28.0
지 적	153,332	100.0	49.7	50.3
자 폐 성	16,238	100.0	71.9	28.1
정 신	103,894	100.0	96.1	3.9
신 장	58,500	100.0	100.0	-
심 장	18,508	100.0	100.0	-
호흡기	19,249	100.0	97.3	2.7
간	9,289	100.0	100.0	-
안 면	2,426	100.0	61.1	38.9
장루·요루	16,705	100.0	93.2	6.8
간 질	14,572	100.0	100.0	-

주: 1) 2011년 기준

2)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치료' 설명 보기 : 369페이지 참조

- 현재 장애인들이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72.4%가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신장, 심장, 간 등 내부장애인의 경우 100% 진료를 받고 있어 다른 장애보다 월등하게 높아 차이를 보임.

## 다. 만성질환

〈표 2-5-5〉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전 체	2,611,126	100.0	70.0	30.0
지 체	1,325,877	100.0	68.3	31.7
뇌 병 변	316,309	100.0	88.1	11.9
시 각	256,841	100.0	64.7	35.3
청 각	278,337	100.0	70.7	29.3
언 어	21,049	100.0	56.1	43.9
지 적	153,332	100.0	36.1	63.9
자 폐 성	16,238	100.0	20.8	79.2
정 신	103,894	100.0	83.2	16.8
신 장	58,500	100.0	95.8	4.2
심 장	18,508	100.0	69.5	30.5
호흡기	19,249	100.0	96.6	3.4
간	9,289	100.0	70.0	30.0
안 면	2,426	100.0	57.9	42.1
장루·요루	16,705	100.0	81.1	18.9
간 질	14,572	100.0	100.0	-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현재 전체 장애인의 70.0%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간질장애가 10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호흡기장애 96.6%, 신장장애 95.8%, 뇌병변장애 88.1%, 정신장애 83.2% 등의 순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음

## 2. 보건의료이용

### 가. 예방

〈표 2-5-6〉 건강검진 수진율

(단위 :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전 체	2,224,316	100.0	70.4	29.6
지 체	1,203,431	100.0	75.5	24.5
뇌 병 변	281,341	100.0	58.1	41.9
시 각	223,262	100.0	72.1	27.9
청 각	255,696	100.0	72.3	27.7
언 어	14,846	100.0	75.2	24.8
지 적	44,197	100.0	62.0	38.0
자 폐 성	-	-	-	-
정 신	77,523	100.0	51.2	48.8
신 장	51,541	100.0	49.1	50.9
심 장	15,277	100.0	74.2	25.8
호 흡 기	19,043	100.0	50.9	49.1
간	8,595	100.0	78.2	21.8
안 면	1,923	100.0	69.1	30.9
장루 · 요루	16,705	100.0	62.6	37.4
간 질	10,936	100.0	53.3	46.7

주 1) 건강검진수진율 :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 여부

2) 자폐성장애 무응답

3) 2011년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6/321페이지 참조

○ 장애인구의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수진율은 70.4%로 2008에 비해 17.7%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78.2%), 지체장애(75.5%), 언어장애(75.2%), 심장장애(74.2%)등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율이 높았던 반면,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정신장애 등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표 2-5-7〉 건강검진 유형

(단위: 명, %)

구 分	전국추정수	건강검진 유형					
		소 계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산업장 특수건강검진	건강보험 건강검진	의료급여 대상	기 타
전 체	1,566,236	100.0	7.4	0.3	80.5	11.7	0.2
지 체	908,017	100.0	6.1	0.4	84.3	9.0	0.2
뇌 병 변	163,403	100.0	16.0	-	67.6	16.4	-
시 각	161,081	100.0	4.1	0.2	86.3	9.3	0.1
청 각	184,811	100.0	7.8	-	81.6	10.1	0.6
언 어	11,157	100.0	4.0	-	93.6	2.1	-
지 적	27,405	100.0	7.2	-	38.9	53.8	-
자 폐 성	-	-	-	-	-	-	-
정 신	39,667	100.0	1.4	-	61.1	37.5	-
신 장	25,310	100.0	18.1	-	71.4	10.5	-
심 장	11,341	100.0	6.3	-	72.5	21.2	-
호 흡 기	9,702	100.0	6.5	-	67.0	26.5	-
간	6,724	100.0	33.7	-	48.5	17.8	-
안 면	1,329	100.0	-	-	80.4	19.6	-
장루 · 요루	10,460	100.0	18.7	-	77.4	4.0	-
간 질	5,829	100.0	-	-	58.7	41.3	-

주 1) 건강검진수진율 :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 여부

2) 자폐성장애 무응답

3)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 유형으로는 「건강보험 건강검진」 80.5%, 「의료급여 대상」 11.7%, 「본인부담종합건강 검진」 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53.8%, 「간질장애」 41.3%, 「정신장애」 37.5%가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은 비율이 높고, 「간장애」 33.7%, 「장루 · 요루장애」 18.7%, 「신장장애」 18.1%, 「뇌병변장애」 16.0%의 순으로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을 많이 받음

## 나. 외래

〈표 2-5-8〉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단위 : %, 명)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전 체	2,611,126	100.0	18.9	81.1
지 체	1,325,877	100.0	20.9	79.1
뇌 병 변	316,309	100.0	24.9	75.1
시 각	256,841	100.0	15.9	84.1
청 각	278,337	100.0	13.6	86.4
언 어	21,048	100.0	5.4	94.6
지 적	153,332	100.0	16.5	83.5
자 폐 성	16,238	100.0	27.0	73.0
정 신	103,894	100.0	10.3	89.7
신 장	58,501	100.0	7.4	92.6
심 장	18,508	100.0	5.8	94.2
호흡기	19,249	100.0	11.5	88.5
간	9,289	100.0	14.7	85.3
안 면	2,426	100.0	16.8	83.2
장루·요루	16,704	100.0	29.0	71.0
간 질	14,573	100.0	22.2	77.8

주 1)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유무(치과 제외)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18.9%가 있다고 응답하여 진료가 필요하나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장루·요루장애」 29.0%, 「자폐성장애」 27.0%, 「뇌병변장애」 24.9%의 비율로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5-9〉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천원, %)

구 분	병의원에 가지 못한이유							
	소 계	경제적인 이유	예약이 힘들어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화장하는 시간에 병원이 문을 열지않음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기가 싫어서	증상이 가벼워서	기타
전 체	100.0	58.7	1.9	18.7	8.8	4.1	4.4	3.4
지 체	100.0	61.3	1.6	14.7	11.7	4.8	3.6	2.3
뇌 병변	100.0	43.6	2.6	38.2	2.9	2.3	2.1	8.3
시 각	100.0	63.4	1.2	13.5	7.5	1.9	10.9	1.7
청 각	100.0	56.3	4.6	25.8	5.2	3.6	3.7	0.7
언 어	100.0	63.8	-	-	-	-	36.2	-
지 적	100.0	67.3	2.3	5.4	3.4	6.2	10.0	5.4
자 폐 성	100.0	83.7	-	2.3	4.9	9.0	-	-
정 신	100.0	66.5	-	-	11.6	7.8	-	14.1
신 장	100.0	24.6	-	39.0	18.7	-	17.6	-
심 장	100.0	79.0	-	21.0	-	-	-	-
호흡기	100.0	46.3	-	33.8	10.5	-	9.3	-
간	100.0	100.0	-	-	-	-	-	-
안 면	100.0	16.2	-	-	83.8	-	-	-
장루·요루	100.0	57.6	-	39.6	-	-	2.9	-
간 질	100.0	89.4	7.8	-	-	-	-	2.8

주 1) 최근 1년간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최근 1년간 본인이 원하는 때에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58.7%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교통이 불편해서'가 18.7%로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최근 1년동안 병원에 가지못했다고 '간장애' 100%, '간질장애' 89.4%, '자폐성장애' 83.7% 순으로 높게 보고함.

## 다. 스트레스

〈표 2-5-10〉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단위 : 명, %, 일)

구 분	전국추정수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소 계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전 체	2,611,126	100.0	11.5	41.2	34.5	12.8
지 체	1,325,877	100.0	10.0	41.4	37.4	11.6
뇌 병 변	316,309	100.0	16.1	46.2	26.6	11.1
시 각	256,841	100.0	14.6	36.6	34.4	14.3
청 각	278,337	100.0	7.8	38.1	38.5	15.6
언 어	21,049	100.0	18.8	44.5	20.9	15.8
지 적	153,332	100.0	6.3	36.1	36.0	21.6
자 폐 성	16,238	100.0	19.9	45.2	23.9	11.1
정 신	103,894	100.0	18.0	44.0	21.8	16.2
신 장	58,500	100.0	19.3	43.4	31.5	5.7
심 장	18,508	100.0	6.1	68.6	24.7	0.7
호흡 기	19,249	100.0	10.7	52.7	24.3	12.3
간	9,289	100.0	19.9	19.3	35.9	24.9
안 면	2,426	100.0	23.9	31.0	30.1	15.0
장루 · 요루	16,705	100.0	13.1	48.0	30.8	8.2
간 질	14,572	100.0	22.5	57.9	13.9	5.7

주 :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알아본 결과 87.2%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52.7%의 장애인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장애유형은 안면장애, 간질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등이며, 지적장애, 간장애 등은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11〉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단위 : 만원,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전 체	2,611,126	100.0	21.0	79.0
지 체	1,325,877	100.0	17.6	82.1
뇌 병 변	316,309	100.0	33.2	66.8
시 각	256,841	100.0	17.4	82.6
청 각	278,337	100.0	14.3	85.7
언 어	21,049	100.0	12.4	87.6
지 적	153,332	100.0	14.1	85.9
자 폐 성	16,238	100.0	12.7	87.3
정 신	103,894	100.0	49.6	50.4
신 장	58,500	100.0	28.3	71.7
심 장	18,508	100.0	23.3	76.7
호흡기	19,249	100.0	26.1	73.9
간	9,289	100.0	38.8	61.2
안 면	2,426	100.0	25.3	74.7
장루·요루	16,705	100.0	22.1	77.9
간 질	14,572	100.0	58.0	42.0

주 1) 최근 1년동안 연속 2주이상 일상생활 지장줄 정도의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 지장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1%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함
  -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 정신장애, 간장애, 뇌병변장애 등이 다른 장애에 비해 슬픔, 절망감을 느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라. 기타

〈표 2-5-12〉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1순위)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단위 : %)	
								자폐성	자폐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종합병원재활의학과	29.7	31.3	28.3	32.9	27.5	34.9	21.8	10.4	
재활전문병원	27.3	32.0	30.6	19.0	23.9	30.8	19.8	13.8	
요양병원	7.8	6.0	11.0	8.9	8.8	13.3	6.2	-	
낮병원 또는 외래에서의 재활치료	3.3	3.4	3.0	3.0	3.3	-	3.4	3.7	
방문재활치료 장애인	13.4	12.9	19.4	10.0	13.8	8.2	12.8	11.6	
특화서비스(여성전문, 치과, 소아등)	11.9	9.1	3.7	16.7	13.8	8.4	28.0	54.7	
주치의(단골의사)	6.5	5.1	3.9	9.0	8.5	4.5	7.9	5.8	
기타	0.2	0.1	0.1	0.6	0.5	-	0.2	-	

구 分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정신·정서	간질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25.5	33.2	26.6	35.9	15.1	46.5	26.6	31.0
재활전문병원	14.8	15.0	16.1	15.9	22	1.7	3.7	27.4
요양병원	20.0	5.2	-	10.6	3.1	-	15.5	1.4
낮 병원 또는 외래에서의 재활치료	1.7	5.0	4.8	3.8	5.3	11.2	8.6	1.6
방문재활치료 장애인	12.0	13.0	3.8	14.4	9.0	6.8	16.7	10.5
특화서비스(여성전문, 치과, 소아등)	18.4	18.6	26.6	2.4	8.9	33.8	9.1	25.2
주치의(단골의사)	7.4	10.0	22.0	17.1	35.0	-	17.0	3.0
기타	0.3	-	-	-	1.0	-	2.8	-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로는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29.7%, '재활전문병원' 27.3%, '방문재활치료' 13.4%, '특화서비스' 11.9%, '요양병원' 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경우 각종 재활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를 전문으로 하는 재활전문 병원에 대한 응답이 각각 32.0%, 30.6%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54.7%)와 지적장애(28.0%)는 장애인 특화서비스를 다수 응답함

### 3. 보건의료제도

#### 가. 건강보험

〈표 2-5-13〉 건강보험 가입 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국총정수	전 체	직장건강 보험	지역건강 보험	의료급여		기타
					1종	2종	
2005년	2,101,057	100.0	43.1	38.5	12.2	5.8	0.4
2008년	2,137,226	100.0	44.9	33.3	15.7	5.6	0.5
2011년	2,611,126	100.0	53.1	29.4	14.4	2.7	0.4
지 체	1,325,877	100.0	55.4	31.9	10.3	2.1	0.3
뇌 병변	316,310	100.0	52.8	25.1	19.1	2.5	0.4
시 각	256,841	100.0	58.0	29.6	9.0	3.3	0.1
청 각	278,337	100.0	61.2	26.3	10.6	1.1	0.8
언 어	21,048	100.0	48.0	34.3	8.7	9.0	-
지 적	153,331	100.0	35.8	30.2	27.9	6.1	-
자 폐 성	16,239	100.0	64.6	24.8	6.6	4.0	-
정 신	103,894	100.0	22.1	20.4	49.1	7.9	0.5
신 장	58,500	100.0	41.0	38.3	18.6	1.5	0.7
심 장	18,509	100.0	57.8	10.4	23.9	7.9	-
호흡기	19,249	100.0	48.2	19.0	26.7	-	6.1
간	9,289	100.0	59.6	23.4	12.9	-	4.2
안면	2,426	100.0	42.9	46.4	10.8	-	-
장루·요루	16,704	100.0	76.0	17.7	6.3	-	-
간질	14,572	100.0	26.2	25.8	41.1	2.8	4.0

주 : 2005년의 경우 미가입의 비율을 기타로 분류함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건강보험 가입 여부' 설명 보기 : 369페이지 참조

- 건강보험 가입형태를 보면,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가입자' 82.5%, '의료급여대상자' 17.1%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08년 조사결과와 유사함
  - 장루·요루장애(93.7%), 자폐성장애(89.4%), 청각장애(87.5%), 지체장애(87.3%)가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정신장애(57.0%)와 간질장애(43.9%)는 의료급여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5-14〉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구 분	(단위 : 억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체	78,860	90,418	131,654	136,696	150,278	164,293	183,659	214,392	245,755	263,798	299,682	337,963
현물급여비	77,585	89,026	130,461	135,547	149,181	163,185	182,241	212,890	243,830	261,659	296,415	332,996
- 요양급여	76,529	87,893	129,406	134,245	147,552	161,305	179,886	209,316	239,557	255,999	289,164	324,968
(본인부담액사전지급)	-	-	-	-	-	(66)	(300)	(293)	(509)	(1,236)	(1,009)	(850)
- 건강진단비	1,056	1,133	1,054	1,302	1,629	1,880	2,356	3,574	4,273	5,660	7,251	8,027
현금급여비	1,276	1,392	1,194	1,149	1,096	1,108	1,417	1,502	1,925	2,138	3,266	4,967
- 요양비	274	264	215	238	255	242	175	167	169	177	213	217
- 장제비	454	465	500	521	513	500	492	466	500	38	1	1
- 본인부담액보상금	526	601	414	323	257	280	276	199	204	29	5	2
- 장애인보장구	21	62	65	67	71	86	217	380	615	440	343	289
(본인부담액사후환급)	-	-	-	-	-	-	(257)	(290)	(436)	(1,455)	(1,690)	(3,268)
임신 출산전 진료비										1,014	1,191	

주 1) 지급기준임

2) 반율립관계로 총계와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3) 본인부담액상한제는 2004.7.1 신설, 사전지급은 요양급여비에 포함, 사후환급은 현금급여로 구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0페이지 참조

☞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설명 보기 : 369페이지 참조

- 2010년 지출한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은 33조 7,963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8,281억원 증가함
  - 현물급여(요양급여, 건강진단비) 33조 2,996억원, 현금급여(요양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 등) 4,967억원임

〈표 2-5-15〉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단위 : 건, 천원)

구 분	전 체		직 장		지 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9년	9,615	2,123,966	4,398	972,581	5,217	1,151,384
2000년	19,295	6,172,894	8,700	2,654,100	10,595	3,518,794
2001년	22,150	6,489,959	11,172	3,102,702	10,978	3,387,257
2002년	24,566	6,693,043	12,689	3,322,603	11,877	3,370,440
2003년	27,067	7,149,238	14,449	3,674,048	12,618	3,475,190
2004년	32,079	8,599,146	18,073	4,686,056	14,006	3,913,090
2005년	48,957	21,669,161	28,659	12,329,071	20,298	9,340,090
2006년	68,359	37,969,972	42,581	23,153,019	25,778	14,816,953
2007년	96,844	61,536,703	61,804	38,403,159	35,040	23,133,544
2008년	89,155	44,046,494	57,875	28,063,964	31,280	15,982,530
2009년	77,106	34,286,658	50,768	22,178,437	26,295	12,099,186
2010년	66,132	28,902,450	44,158	18,870,772	21,974	10,031,678

주 1) 지급기준임

2) 반올림 관계로 총계와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0페이지 참조

☞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설명 보기 : 369페이지 참조

- 건강보험 급여 실적 중 장애인보장구 현금급여 지급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2010년 장애인보장구 현금급여 지급건수는 66,132건이며, 지급금액은 28,902,450천원임

〈표 2-5-16〉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

(단위 : 일, 원)

구 分	전 체	1종			2종			
		소계	일반	행려자	소계	일반	장애인 1차 진료	장애인 2차 진료
전당 내원일수	1.48	1.59	1.59	18.02	1.17	1.11	1.00	4.39
전당 의료급여비용	65,692	76,560	76,164	847,186	36,559	31,501	20,833	305,370
전당 기금부담금	64,465	75,793	75,397	847,186	34,097	29,584	19,775	274,749
일당 의료	내 원	44,371	48,008	48,014	47,001	31,133	28,305	20,818
급여비용	요 양	10,135	10,671	10,626	40,949	7,904	6,739	12,526
								28,865

주 1) 심사결정 기준임

2) 2010년 기준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0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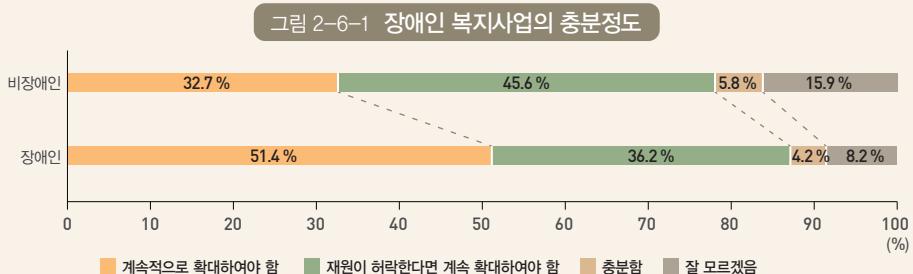
☞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설명 보기 : 369페이지 참조

- 2010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전당 평균의료급여비용은 36,559원이며, 그 가운데 장애인 1차 진료 시 20,833원, 2차 진료 시 305,370원임



## 제 6 절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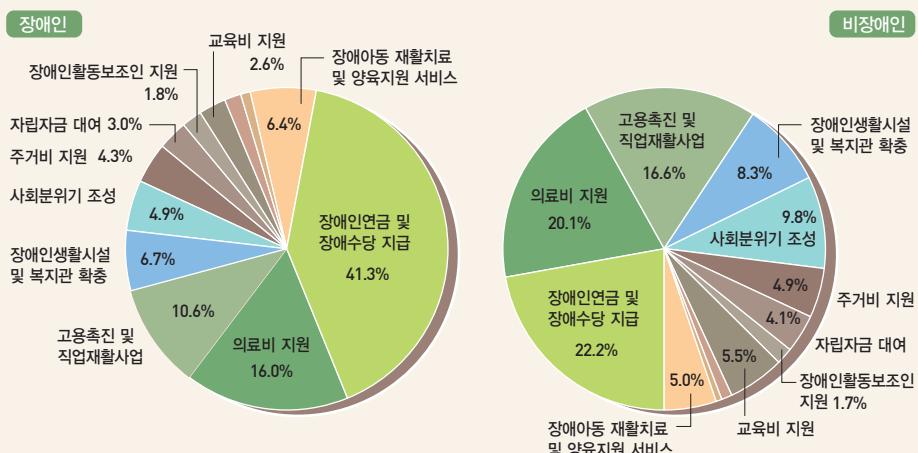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그림 2-6-2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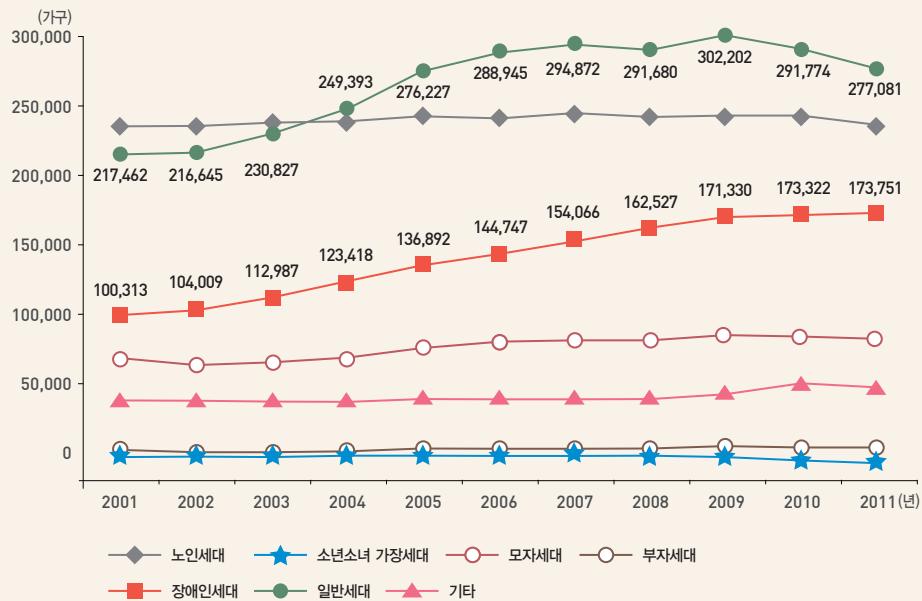
주 1)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주된 응답을 분석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1.

-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의 경우 장애인은 51.4%로 비장애인(32.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41.3%, ‘의료비 지원’ 16.0%,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10.6% 등의 순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주 : 각 년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2

- ◎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세대가 60.5%이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세대는 32.6%임  
-장애인세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전체 일반수급자 850,689가구 중 20.4%인 173,751 가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2-6-4 국민연금 수급자 수



주 1) 수급자 수는 동순위 수급자를 포함한 수임

2)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1 국민연금 통계연보」, 2012.

◎ 2011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수급자는 79,375명이며, 이 가운데 연금 수급자 수는 75,895명 (95.6%)이며, 장애일시보상금 수급자 수는 3,480명(4.4%)임

그림 2-6-5 장애인 복지시설 수



주 : 각 년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1.

- 장애인 생활시설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 452개소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는 422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2002년 336개소에서 2006년 1,125개를 거쳐 2010년 1,726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 복지서비스

〈표 2-6-1〉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매우 많이 받고 있다	약간 받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2005년	1,666,505	100.0	2.0	28.7	-	26.2	43.1
2008년	2,137,224	100.0	3.1	33.8	9.0	48.0	6.0
2011년	2,517,314	100.0	2.7	34.9	-	44.5	17.8
지 체	1,295,819	100.0	1.1	30.1	-	49.1	19.7
뇌 병 변	305,008	100.0	4.1	41.5	-	37.9	16.5
시 각	248,158	100.0	1.5	29.1	-	47.3	22.1
청 각	259,337	100.0	1.3	36.4	-	44.7	17.6
언 어	18,444	100.0	4.5	24.7	-	55.6	15.2
지 적	152,134	100.0	6.2	52.0	-	33.4	8.4
자 폐 성	15,793	100.0	5.3	42.9	-	40.4	11.3
정 신	99,803	100.0	5.8	53.5	-	30.9	9.8
신 장	56,600	100.0	19.0	49.4	-	22.7	8.9
심 장	12,864	100.0	8.4	45.8	-	37.3	8.5
호흡 기	17,218	100.0	21.1	33.5	-	40.1	5.3
간	8,117	100.0	7.7	33.1	-	22.3	36.8
안 면	2,426	100.0	-	51.5	-	24.0	24.5
장루 · 요루	13,509	100.0	-	24.7	-	43.4	31.9
간 질	12,084	100.0	13.1	40.3	-	35.6	11.1

주 : 2005년 4점 척도, 2008년 5점 척도, 2011년 4점 척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받은 혜택의 정도는 '받고 있다'가 전체의 37.6%, '받지 못하고 있다'가 62.3%로 나타나 등록 이후의 혜택에 불만족스러운 장애인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음
  - 2008년 조사에 비해 등록 이후의 혜택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0.7%p 늘어남.

## 가. 서비스 이용

〈표 2-6-2〉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

구 분	이용경험률 (단위 : %)
장애인연금 지급	11.3
경증장애인수당	14.6
장애인아동수당	1.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2.6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	1.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1
장애인 의료비 지원	7.5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4.3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	4.9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11.2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38.2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25.4
세금공제 및 면제	24.5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74.0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84.9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45.6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2.8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0.6
장애인아동재활치료바우처	2.0
노인장기요양보험	3.8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시책은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시책으로써 장애인의 84.9%가 경험하였으며, 다음이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책'으로 장애인의 74.0%가 경험,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시책은 장애인의 45.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률·이용희망률

구 분	이용경험률	이용희망률 (단위 : %)
직업재활시설	1.8	12.0
장애인복지관	10.8	31.2
장애인 재활병·의원	2.4	26.3
주간·단기보호시설	0.6	10.0
장애인체육관	1.5	16.5
장애인심부름센터	0.6	18.8
수화통역센터	0.4	0.9
정신의료기관	2.5	2.7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0.4	1.4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4	30.0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0.9	15.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	13.5
접자도서관	0.3	0.6
정신보건센터	0.3	1.7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4.9	2.6
특수교육지원센터	0.8	2.2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0.3	13.7
장애인아동 보육시설	1.0	0.7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인복지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실제로 이용경험이 있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10.8%로 가장 높고, 그 외의 기관은 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이용희망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31.2%,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0.0%, 「장애인 재활병·의원」 2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나. 서비스 욕구

〈표 2-6-4〉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명, %)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전국추정수	2,610,251	1,325,009	316,309	256,840	278,337	21,048	153,331	16,23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보장	38.2	39.5	32.9	38.5	35.9	24.6	43.4	12.5
의료보장	31.5	30.5	41.0	28.8	35.3	28.9	17.4	11.7
고용보장	8.6	9.2	5.6	8.6	8.7	20.6	10.5	8.2
주거보장	8.0	8.1	7.2	9.1	6.8	8.3	7.4	5.2
이동권보장	2.0	2.0	3.6	1.9	0.6	0.0	2.0	5.0
보육·교육 보장	2.4	1.6	1.2	2.2	2.5	5.4	9.5	29.7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6	2.0	1.1	0.9	1.4	6.4	1.4	2.8
장애인 인권보장	3.3	2.9	2.3	4.6	3.2	5.8	5.7	16.4
장애인 인식개선	1.8	1.4	1.2	2.9	2.8	0.0	2.1	7.8
장애인 예방	1.0	1.1	1.2	1.1	0.9	0.0	0.1	0.6
기타	0.4	0.4	0.8	0.3	0.0	0.0	0.5	0.0
없음	1.2	1.1	1.9	1.2	2.0	0.0	0.0	0.0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장'이 3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의료보장' 31.5%, '고용보장' 8.6% 등의 순임

〈표 2-6-4〉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계속)

(단위: 명, %)

구 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전국추정수	103,894	58,499	18,508	19,249	9,287	2,426	16,705	14,57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 보장	45.3	44.6	21.4	33.3	35.5	40.9	27.1	43.6
의료 보장	24.4	34.9	48.2	35.8	52.7	32.2	51.6	30.6
고용 보장	7.6	4.0	7.4	4.8	6.8	11.2	7.9	11.1
주거 보장	11.9	7.3	2.8	20.8	0.0	0.0	9.1	6.7
보육·교육보장	1.3	2.5	5.8	0.0	0.0	0.0	0.0	0.0
고용 보장	0.4	0.0	13.3	0.0	2.4	2.9	1.1	2.9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0.9	0.6	0.0	0.0	0.0	0.0	0.0	0.0
장애인인권 보장	3.2	4.6	0.0	1.9	0.0	10.8	1.5	0.9
장애인인식 개선	2.5	0.8	1.1	0.0	2.7	2.0	0.0	0.0
장애인예방	1.7	0.2	0.0	1.3	0.0	0.0	0.7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4.0
없음	0.9	0.4	0.0	2.1	0.0	0.0	1.0	0.0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장'이 3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의료보장' 31.5%, '고용보장' 8.6% 등의 순임

〈표 2-6-5〉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단위 : %)

구 분	전 체	계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재원이 허락한다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	충분함	잘 모르겠음
2007년	100.0	36.6	47.4	2.2	13.8
2009년	100.0	34.7	44.5	3.5	17.3
2011년	100.0	33.8	45.4	5.6	15.2
장애인	100.0	51.4	36.2	4.2	8.2
1~2급	100.0	64.1	29.7	2.7	3.6
3~4급	100.0	51.2	35.4	3.9	9.5
5~6급	100.0	46.4	39.6	5.0	9.0
비장애인	100.0	32.7	45.6	5.8	15.9

주 :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5페이지 참조

☞ '장애인 복지사업' 설명 보기 : 370페이지 참조

-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 15세 이상 인구의 45.4%가 '재원이 허락한다면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의 경우 장애인은 51.4%로 비장애인(32.7%)보다 높게 나타남

〈표 2-6-6〉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단위 : %)

구 분	2007년	2009년	2011년	장애인	비장애인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17.9	20.0	23.4	41.3	22.2
의료비 지원	21.3	19.0	20.0	16.0	20.1
교육비 지원	5.8	5.4	5.2	2.6	5.5
주거비 지원	5.4	5.3	4.8	4.3	4.9
자립자금 대여	4.2	5.5	4.0	3.0	4.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3.6	20.2	16.5	10.6	16.6
장애인생활시설 및 복지관 확충	7.5	9.6	8.1	6.7	8.3
장애인보조기구 배부	1.4	1.6	1.3	1.4	1.3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1.6	1.9	1.7	1.8	1.7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참여지원	0.4	0.7	0.4	0.9	0.5
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10.7	10.8	9.5	4.9	9.8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및 양육지원 서비스	-	-	5.0	6.4	5.0
기타	0.0	0.0	0.1	0.1	0.1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2)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5페이지 참조

☞ '장애인 복지사업' 설명 보기 : 370페이지 참조

-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지급' 41.3%, '의료비 지원' 16.0%,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10.6% 등의 순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2. 사회보장

### 가. 기초생활보장

〈표 2-6-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

(단위 :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비대상 가구	일반 수급가구	조건부 수급 가구	의료·교육· 자활특례
2005년	2,101,057	100.0	83.4	14.4	0.8	1.4
2008년	2,137,226	100.0	80.9	18.3	0.4	0.4
2011년	2,611,126	100.0	83.0	16.2	0.7	0.0
지 체	1,325,877	100.0	87.7	11.8	0.5	0.0
뇌 병 변	316,309	100.0	78.5	20.8	0.7	0.0
시 각	256,841	100.0	87.8	11.2	1.0	0.0
청 각	278,337	100.0	87.9	11.7	0.4	0.0
언 어	21,049	100.0	82.3	12.6	5.1	0.0
지 적	153,332	100.0	67.0	31.3	1.7	0.0
자 폐 성	16,238	100.0	89.4	10.6	0.0	0.0
정 신	103,894	100.0	43.0	54.4	2.6	0.0
신 장	58,500	100.0	79.9	20.1	0.0	0.0
심 장	18,508	100.0	68.1	31.9	0.0	0.0
호 흡 기	19,249	100.0	73.3	26.7	0.0	0.0
간	9,289	100.0	87.1	12.9	0.0	0.0
안 면	2,426	100.0	89.2	10.8	0.0	0.0
장루·요루	16,705	100.0	93.7	1.7	0.0	4.6
간 질	14,572	100.0	56.0	42.1	1.9	0.0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 설명 보기 : 371페이지 참조

- 장애인 중 16.2%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반수급가구'로 2008년(18.3%)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외 '조건부수급가구' 0.7%로 미미하고, '의료·교육·자활 특례'는 0.0%임
  - 정신장애(57.0%), 간질장애(44.0%), 지적장애(33.0%)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8〉 가구유형별 일반수급가구 수

(단위 : 가구, %)

구 분	전 체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대	일반 세대	기 타
2001년	698,075 (100.0)	237,443 (34.0)	13,613 (2.0)	70,152 (10.0)	19,128 (2.7)	100,313 (14.4)	217,462 (31.2)	39,964 (5.7)
2002년	691,018 (100.0)	235,893 (34.1)	13,638 (2.0)	65,132 (9.4)	17,289 (2.5)	104,009 (15.1)	216,645 (31.4)	38,412 (5.6)
2003년	717,861 (100.0)	238,790 (33.3)	13,932 (1.9)	66,636 (9.3)	17,158 (2.4)	112,987 (15.7)	230,827 (32.2)	37,531 (5.2)
2004년	753,681 (100.0)	240,030 (31.8)	14,387 (1.9)	70,951 (9.4)	17,916 (2.4)	123,418 (16.4)	249,393 (33.1)	37,586 (5.0)
2005년	809,745 (100.0)	244,565 (30.2)	14,823 (1.8)	77,985 (9.6)	19,450 (2.4)	136,892 (16.9)	276,227 (34.1)	39,803 (4.9)
2006년	831,692 (100.0)	242,470 (29.2)	14,713 (1.8)	81,189 (9.8)	19,963 (2.4)	144,747 (17.4)	288,945 (34.7)	39,665 (4.8)
2007년	852,420 (100.0)	245,935 (28.9)	14,475 (1.7)	82,920 (9.7)	19,934 (2.3)	154,066 (18.1)	294,872 (34.6)	40,218 (4.7)
2008년	854,205 (100.0)	243,132 (28.5)	14,276 (1.7)	82,880 (9.7)	19,744 (2.3)	162,527 (19.0)	291,680 (34.1)	39,966 (4.7)
2009년	882,925 (100.0)	244,529 (27.7)	13,533 (1.5)	86,961 (9.8)	21,115 (2.4)	171,330 (19.4)	302,202 (34.2)	43,255 (4.9)
2010년	878,799 (100.0)	243,708 (27.7)	11,565 (1.3)	85,970 (9.8)	20,879 (2.4)	173,322 (19.7)	291,774 (33.2)	51,581 (5.9)
2011년	850,689 (100.0)	237,213 (27.9)	9,798 (1.2)	83,525 (9.8)	20,479 (2.4)	173,751 (20.4)	277,081 (32.6)	48,842 (5.7)

주 :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0페이지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설명 보기 : 371페이지 참조

-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세대가 60.5%이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세대는 32.6%임
  - 장애인세대는 전체 일반수급자 850,689가구 중 20.4%인 173,751가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2-6-9〉 보장기간별 일반수급가구 수

(단위 : 가구, %)

구 분	전체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정세대	도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대	일반세대	기타
전 체	850,689 (100.0)	237,213 (100.0)	9,798 (100.0)	83,525 (100.0)	20,479 (100.0)	173,751 (100.0)	277,081 (100.0)	48,842 (100.0)
1년 미만	156,186 (18.4)	42,440 (17.9)	1,244 (12.7)	16,591 (19.9)	4,442 (21.7)	25,547 (14.7)	54,493 (19.7)	11,459 (23.5)
1~2년 미만	89,591 (10.5)	19,458 (8.2)	811 (8.2)	11,148 (13.3)	2,887 (14.1)	15,666 (9.1)	30,967 (11.2)	8,654 (17.7)
2~3년 미만	72,175 (8.5)	16,296 (6.9)	730 (7.5)	8,392 (10.0)	2,346 (11.5)	12,025 (6.9)	27,821 (10.0)	4,565 (9.3)
3~4년 미만	52,964 (6.2)	11,690 (4.9)	761 (7.8)	6,150 (7.4)	1,568 (7.7)	9,275 (5.3)	20,907 (7.5)	2,613 (5.3)
4~5년 미만	57,969 (6.8)	13,679 (5.8)	969 (9.9)	6,556 (7.8)	1,538 (7.5)	10,740 (6.2)	21,499 (7.8)	2,988 (6.1)
5~6년 미만	54,753 (6.4)	12,085 (5.0)	972 (9.9)	6,381 (7.6)	1,450 (7.0)	10,471 (6.0)	20,413 (7.4)	2,981 (6.1)
6~8년 미만	100,049 (11.8)	22,793 (9.6)	1,785 (18.2)	11,698 (14.0)	2,590 (12.6)	21,540 (12.4)	34,703 (12.5)	4,940 (10.1)
8~10년 미만	65,104 (7.7)	18,409 (7.8)	1,117 (11.4)	6,729 (8.1)	1,261 (6.2)	15,596 (9.0)	19,022 (6.9)	2,940 (6.0)
10년 이상	201,898 (23.7)	80,363 (33.9)	1,409 (14.4)	9,910 (11.9)	2,397 (11.7)	52,891 (30.4)	47,256 (17.1)	7,672 (15.7)

주 :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0페이지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설명 보기 : 371페이지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 가구의 보장기간별 현황을 보면, 8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31.4%이며, 장애인 세대 39.4%가 포함되어 있음

## 나.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표 2-6-10〉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예산액	지원인원
2005년	90,722	299,619
2006년	113,386	349,241
2007년	340,962	413,092
2008년	351,049	449,414
2009년	309,666	504,366
2010년	201,792	536,318

- 주 1) 2005년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한 장애수당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
- 2) 2006년 시설수급자까지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 3)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및 지급금액 인상(기초수급중증 7만원→13만원, 기초수급경증 2만원→3만원)
- 4) 2010년 예산(6개월분)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2010.7월)
- 5) 2005년~2009년까지 실 지원인원, 2010년 예산상 지원인원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주요업무참고자료」, 2010.

☞ ‘장애인수당, 장애 아동수당’ 설명 보기 : 371페이지 참조

- 2010년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예산은 201,792백만원이고 수급자 수는 536,318명임
  - 중증장애인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지원인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6-11〉 장애수당 수급자 수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기초생활	보장시설	차상위
2007년	398,197	319,211	38,441	40,545
2008년	433,413	328,422	40,153	64,838
2009년	486,642	349,088	41,238	96,316
2010년	308,243	212,914	11,202	84,127
2011년	316,861	210,471	10,381	96,009
서 울	43,272	30,829	533	11,910
부 산	25,588	19,572	671	5,345
대 구	17,048	12,380	751	3,917
인 천	14,117	10,288	364	3,465
광 주	10,635	6,757	314	3,564
대 전	9,241	6,300	495	2,446
울 산	4,064	2,660	90	1,314
경 기	43,526	29,952	1,508	12,066
강 원	16,849	9,538	474	6,837
충 북	13,360	8,140	972	4,248
충 남	15,468	9,801	738	4,929
전 북	23,803	14,798	833	8,172
전 남	26,538	14,436	728	11,374
경 북	25,679	16,801	904	7,974
경 남	23,146	15,136	719	7,291
제 주	4,527	3,083	287	1,157

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이 지원대상임

2) 2010년 12월부터 기초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2010년부터 장애수당 수급자는 경증장애인만 해당됨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1페이지 참조

☞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설명 보기 : 371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316,861명이며, 이 중 '기초수급계층'이 210,471명(66.4%), '차상위계층'이 96,009명(30.3%)임

〈표 2-6-12〉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

(단위 : 명)

구 分	전 체	기초			보장시설			차상위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2007년	14,895	11,440	7,864	3,576	-	-	-	3,455	2,448	1,007
2008년	16,001	11,724	7,821	3,903	-	-	-	4,277	3,036	1,241
2009년	17,724	12,181	7,789	4,392	-	-	-	5,543	3,724	1,819
2010년	23,057	12,637	7,982	4,665	4,112	3,231	881	6,308	4,229	2,079
2011년	23,586	12,493	7,833	4,660	4,120	3,216	904	6,973	4,670	2,303
서 울	3,591	1,814	1,183	631	684	550	134	1,093	756	337
부 산	1,558	879	562	317	303	246	57	376	260	116
대 구	1,403	740	466	274	284	232	52	379	249	130
인 천	1,157	617	386	231	125	103	22	415	286	129
광 주	1,122	580	389	191	185	130	55	357	255	102
대 전	886	473	291	182	168	95	73	245	165	80
울 산	352	168	111	57	67	59	8	117	78	39
경 기	4,032	2,026	1,320	706	620	509	111	1,386	909	477
강 원	939	506	304	202	124	95	29	309	200	109
충 북	1,151	527	293	234	330	253	77	294	190	104
충 남	1,077	644	422	222	176	152	24	257	167	90
전 북	1,441	833	500	333	245	178	67	363	245	118
전 남	1,362	797	493	304	184	128	56	381	243	138
경 북	1,645	920	544	376	295	224	71	430	288	142
경 남	1,425	720	432	288	250	196	54	455	320	135
제 주	445	249	137	112	80	66	14	116	59	57

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이 지원대상임

2) 중증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3) 경증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4) 시설 수급자의 경우 2009년도까지 장애수당 지급(2010년부터 장애아동수당 지급)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1페이지 참조

☞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설명 보기 : 371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23,586명이며, 이 중 '기초수급계층' 0] 12,493명(53.0%), '차상위계층' 0] 6,973명(29.6%)임

## 다. 연금

〈표 2-6-13〉 가입한 연금 종류

구 분	미가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개인연금(사적)	(단위 : %) 기타
2005년	66.3	20.8	0.8	-	0.0	0.1	2.1	0.0
2008년	62.1	34.4	1.4	0.3	0.5	0.9	0.3	-
2011년	59.9	32.9	1.4	0.2	0.4	1.9	3.2	0.1
지 체	54.6	37.4	1.4	0.2	0.3	1.8	4.2	0.1
뇌 병 변	69.0	25.5	1.2	0.2	0.6	1.6	1.9	0.0
시 각	53.8	38.6	1.5	0.3	0.1	2.2	3.2	0.3
청 각	59.9	31.2	1.7	0.2	0.5	4.2	2.3	0.0
언 어	40.3	57.6	0.0	0.0	0.0	0.0	2.1	0.0
지 적	84.8	14.0	0.0	0.0	0.0	0.0	0.9	0.3
자 폐 성	100.0	0.0	0.0	0.0	0.0	0.0	0.0	0.0
정 신	88.6	10.4	0.0	0.0	0.0	0.0	1.0	0.0
신 장	54.6	32.8	4.1	0.0	2.7	3.6	2.2	0.0
심 장	79.2	18.8	0.0	2.0	0.0	0.0	0.0	0.0
호흡기	69.1	28.6	0.0	0.0	0.0	0.0	0.0	2.3
간	28.8	60.3	4.9	0.0	0.0	5.3	0.7	0.0
안 면	50.4	33.0	0.0	0.0	0.0	0.0	16.6	0.0
장루·요루	62.0	26.9	6.7	0.0	1.0	3.4	0.0	0.0
간 질	80.5	10.0	3.2	0.0	0.0	4.0	2.3	0.0

주 : 2005년의 경우는 중복응답, 2008년의 경우 2순위까지 응답한 결과 값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32.9%, ‘개인연금(사적)’ 3.2%, ‘보훈연금’ 1.9%, ‘공무원 연금’ 1.4%, ‘군인연금’ 0.4%, ‘사립학교교원연금’ 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가입자는 59.9%로 2008년에 비해 2.2%p 감소함

〈표 2-6-14〉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수급자수	955,803	1,059,365	1,177,378	1,541,630	1,766,589	1,995,984	2,256,912	2,534,114	2,787,091	2,992,458	3,184,601
	금 액	1,569,257	1,915,255	2,328,449	2,914,015	3,584,901	4,360,239	5,182,611	6,180,804	7,471,934	8,635,467	9,819,295
노령연금	수급자수	602,197	717,488	819,800	1,156,098	1,349,626	1,517,649	1,731,560	1,949,867	2,149,168	2,330,128	2,489,614
	금 액	973,630	1,254,730	1,533,339	1,987,451	2,531,536	3,103,161	3,857,709	4,765,528	5,814,825	6,861,876	7,905,479
장애인 연금	연금 수급자수	27,456	32,876	39,727	47,260	54,467	61,762	67,091	72,166	74,535	76,280	75,895
	금 액	83,583	103,849	131,921	163,629	193,931	225,607	245,877	268,101	287,016	296,305	305,547
일시 보상금	수급자수	2,469	2,194	2,853	3,609	4,147	4,898	5,167	4,902	3,836	3,447	3,480
	금 액	18,286	16,419	21,978	29,297	35,714	44,240	48,325	47,921	40,940	37,299	41,918
유족연금	수급자수	145,717	171,186	198,343	226,806	254,116	286,656	320,377	353,594	388,458	424,180	459,700
	금 액	243,929	293,950	352,651	417,886	484,577	570,601	645,401	731,358	844,649	949,239	1,062,312
반환 일시금	수급자수	171,170	129,570	109,178	100,296	96,618	116,058	121,800	138,456	154,835	142,080	137,422
	금 액	243,445	238,685	278,233	303,194	324,885	400,674	368,374	348,026	460,476	465,123	475,050
사망 일시금	수급자수	6,794	6,051	7,477	7,561	7,615	8,961	10,917	15,129	16,259	16,343	18,490
	금 액	6,384	7,622	10,328	12,558	14,259	15,957	16,924	19,871	24,027	25,625	29,286

주 1) 수급자 수는 동순위 수급자를 포함한 수임

2)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1 국민연금 통계연보」,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1페이지 참조

- 2011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수급자는 79,37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가운데 연금 수급자 수는 75,895명(95.6%)이며, 장애일시보상금 수급자 수는 3,480명(4.4%)임
- 2011년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액은 347,466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2-6-15〉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 체	장 애 연 금				장애일시 보상금
			소 계	1 급	2 급	3 급	
전 체	수급자수	79,375	75,895	11,229	25,218	39,448	3,480
	금 액	347,466	305,547	61,569	112,288	131,689	41,918
성 별	남 성	수급자수	67,823	64,901	9,782	21,604	33,515
		금 액	301,507	265,326	54,016	97,938	113,371
	여 성	수급자수	11,552	10,994	1,447	3,614	5,933
		금 액	45,959	40,220	7,553	14,350	18,317
연 령 별	20~24세	수급자수	46	36	12	10	10
		금 액	228	133	72	30	95
	25~29세	수급자수	619	523	113	162	248
		금 액	2,761	1,867	611	595	660
	30~34세	수급자수	2,237	2,038	362	634	1,042
		금 액	9,589	7,559	1,866	2,371	3,321
	35~39세	수급자수	4,660	4,325	736	1,350	2,239
		금 액	20,078	16,522	3,789	5,600	7,133
	40~44세	수급자수	7,615	7,170	1,072	2,110	3,988
		금 액	33,323	27,871	5,744	8,965	13,161
	45~49세	수급자수	10,783	10,170	1,462	3,035	5,673
		금 액	47,969	40,435	8,097	13,282	19,056
	50~54세	수급자수	15,936	15,060	2,050	4,536	8,474
		금 액	71,255	59,932	11,074	20,396	28,461
	55~59세	수급자수	16,441	15,622	2,142	5,137	8,343
		금 액	73,970	63,607	11,927	23,205	28,474
	60~64세	수급자수	11,136	11,052	1,769	4,153	5,130
		금 액	746,269	45,609	10,021	18,873	16,713
	65~69세	수급자수	6,627	6,624	1,001	2,738	2,885
		금 액	28,294	28,281	5,622	12,749	9,902
	70세이상	수급자수	3,275	3,275	510	1,353	1,412
		금 액	13,725	13,725	2,740	6,217	4,767

주 :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1 국민연금 통계연보」,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1페이지 참조

☞ '장애인금' 설명 보기 : 372페이지 참조

### 3. 복지시설

#### 가. 장애인 생활시설

〈표 2-6-16〉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입소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시설 수	203	213	225	237	265	288	314	347	397	452
입소자 수	1,614	592	472	462	479	1,696	1,965	2,070	1,835	4,760
퇴소자 수	1,108	330	223	295	375	1,221	1,224	1,252	1,342	1,272
연말현제수용인원	17,720	17,959	18,432	18,906	19,668	20,598	21,709	22,250	23,243	24,395
성 별	남 성	10,559	10,618	10,975	11,267	11,860	12,416	13,149	13,447	14,148
	여 성	7,161	7,341	7,457	7,639	7,808	8,182	8,560	8,803	9,095
연 령 별	18세 남성	3,319	3,063	3,015	3,007	3,013	2,923	2,983	3,171	2,873
	미만 여성	2,257	2,147	2,083	1,997	1,947	1,950	1,971	1,842	1,876
장 애 유 형 별	18세 남성	7,240	7,555	7,960	8,260	8,847	9,493	10,166	10,276	11,275
	이상 여성	4,904	5,194	5,374	5,642	5,861	6,232	6,589	6,961	7,219
장애유형별	지체	3,774	2,905	2,876	2,580	2,658	2,754	2,781	2,893	2,230
	시각	797	744	645	695	609	823	848	875	760
	청각/언어	587	732	551	519	459	454	422	479	519
	지적	11,876	10,182	11,361	10,989	11,550	12,948	13,685	13,493	9,539
	기타	686	3,396	2,999	4,123	4,392	3,619	3,973	4,510	10,195

주 1) 정신지체→지적장애로 용어 변경(2008.2)

2)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2페이지 참조

▣ '장애인 생활시설' 설명 보기 : 372페이지 참조

- 장애인 생활시설 수는 2001년 203개소에서 2010년 452개소로, 연말 수용인원은 2001년 17,720명에서 2010년 24,39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이 61.2%,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58.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2-6-17〉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시설 수	203	213	225	237	265	288	314	347	397	452	490
	입소인원	17,720	17,959	18,432	18,906	19,668	20,598	21,709	22,250	23,243	24,395	25,345
지체장애인	시설 수	34	32	32	31	31	30	33	33	38	40	39
	입소인원	2,710	2,355	2,374	2,357	2,332	2,281	2,283	2,292	2,230	2,055	2,102
시각장애인	시설 수	10	11	12	12	13	15	14	14	14	14	15
	입소인원	623	708	708	717	632	824	792	784	760	744	787
청각장애인	시설 수	11	13	13	11	12	12	11	11	11	10	9
	입소인원	784	776	778	674	735	728	521	546	519	462	361
지적장애인	시설 수	75	86	90	96	110	122	131	144	172	196	226
	입소인원	7,490	7,512	7,685	7,750	8,015	8,408	9,325	9,192	9,539	10,178	10,788
중증장애인	시설 수	73	71	74	82	93	102	116	136	153	182	191
요양시설	입소인원	6,113	6,608	6,558	7,117	7,657	8,038	8,345	8,981	9,728	10,365	10,798
장애인 유아	시설 수	-	-	4	5	6	7	9	9	9	10	10
	입소인원	-	-	264	291	297	319	443	455	467	491	509

주 1) 정신지체→지적장애로 용어 변경(2008.2)

2)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12.

☞ '장애인 생활시설' 설명 보기 : 372페이지 참조

- 장애인 생활시설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90개소, 25,345명의 장애인이 입소하고 있음
  -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이 226개소(46.1%)로 가장 많으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191개소(39.0%), 지체장애인 시설 39개소(8.0%)의 순임

## 나. 직업재활시설

〈표 2-6-1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이용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 체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시설 수	이용인원	시설 수	이용인원	시설 수	이용인원	시설 수	이용인원	시설 수	이용인원
2002년	194	5,715	177	3,379	17	961	-	1,111	-	264
2003년	222	6,987	202	3,890	20	1,107	-	1,642	-	348
2004년	236	7,486	143	4,091	19	1,178	64	1,857	10	360
2005년	265	7,684	153	4,214	25	1,252	76	1,889	11	329
2006년	319	9,481	177	4,835	24	1,246	107	3,019	11	381
2007년	339	10,059	189	5,238	29	1,344	109	3,074	12	403
2008년	364	10,422	212	5,559	31	1,422	108	3,029	13	412
2009년	386	11,048	250	6,574	33	1,516	90	2,533	13	425
2010년	422	11,932	377	10,115	45	1,817	-	-	-	-
2011년	456	12,870	403	10,680	53	2,190	-	-	-	-

주 :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2.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명 보기 : 372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및 입소인원은 456개소, 12,87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작업시설의 수와 입소인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표 2-6-19〉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 체	복지관	의료 재활시설	주간 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	공동생활 가정	체육관	심부름 센터	수화 통역센터
2002년	시설수	336	92	14	61	15	63	13	40	38
	종사자수	3,912	2,760	371	188	44	84	61	282	122
2003년	시설수	440	106	14	90	25	100	15	45	45
	종사자수	4,509	3,068	412	285	87	125	79	310	143
2004년	시설수	536	121	14	100	30	152	18	51	50
	종사자수	5,328	3,520	426	310	117	177	164	394	220
2005년	시설수	1,049	130	14	259	61	331	22	124	108
	종사자수	7,108	3,811	472	841	242	398	260	648	436
2006년	시설수	1,125	137	26	274	69	358	25	129	107
	종사자수	7,461	4,036	493	885	253	446	266	641	441
2007년	시설수	1,286	157	16	321	76	400	24	149	143
	종사자수	8,617	4,525	611	1,052	307	506	270	783	563
2008년	시설수	1,419	171	17	365	84	450	26	152	154
	종사자수	9,188	4,656	731	1,197	323	555	297	841	588
2009년	시설수	1,563	185	18	395	91	531	27	154	162
	종사자수	9,798	4,969	868	1,252	377	633	298	811	590
2010년	시설수	1,726	191	18	443	103	589	27	154	176
	종사자수	10,925	5,372	921	1,472	441	739	312	870	684
2011년	시설수	1,851	199	17	485	119	637	27	156	180
	종사자수	11,692	5,825	889	1,624	511	825	327	875	700

주 :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2.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설명 보기 : 372페이지 참조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2002년 336개소에서 2006년 1,125개를 거쳐 2011년 1,85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생활가정과 주간보호시설의 증가가 두드러짐
  - 1,851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는 11,692명으로 과반수인 5,825명이 복지관에서 종사하고 있음

## 라. 장애인 편의시설

〈표 2-6-2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개, %)

구 분	2003년			2008년			증감 (%p)
	법정의무 설치 수(a)	실제 설치 수(b)	설치율 (b/a)	법정의무 설치 수(A)	실제 설치 수(B)	설치율 (B/A)	
전 체	691,638	500,003	72.3	3,760,792	2,915,369	77.5	5.2
공동주택	138,533	91,484	66.0	563,445	468,813	83.2	17.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38,453	399,854	74.3	3,160,937	2,422,520	76.6	2.3
공원	14,652	8,665	59.1	36,410	24,036	66.0	6.9

- 주 1) 설치대상수(법정의무설치 수)가 2003년 대비 2008년 조사 시 5배 이상 많아진 것은 편의시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조사항목이 세분화되고 항목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2) 설치율은 법정의무설치수 대비 편의시설 설치항목의 비율임  
 3) 도로 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0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 '장애인 편의시설' 설명 보기 : 373페이지 참조

- 2008년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로 2003년 설치율 72.3%와 비교하여 5.2% 증가하였음

〈표 2-6-2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 개)

구 분		설치율	대상편의시설 수	설치 수
	전 체	77.5	3,760,792	2,915,369
매개시설	접근로	82.9	861,707	714,499
	주차구역	67.4	269,025	181,360
	높이차이제거	71.7	212,108	151,984
	소 계	78.0	1,342,840	1,047,843
내부시설	출입구(문)	86.3	838,083	723,171
	복도	89.9	149,652	134,599
	계단	79.1	231,734	183,205
	승강기	87.5	289,640	253,551
	경사로	87.6	173,763	152,172
	소 계	86.0	1,682,872	1,446,698
위생시설	대변기	55.2	564,878	311,730
	소변기	56.6	16,504	9,342
	세면대	79.7	17,228	13,723
	욕실	78.3	5,100	3,992
	샤워실	78.1	5,100	3,982
	소 계	56.3	608,810	342,769
안내시설	접자블럭	50.6	35,652	18,035
	유도 안내 설비	24.8	5,612	1,389
	경보 피난설비	68.1	5,612	3,824
	소 계	49.6	46,876	23,248
기타시설	객실침실	63.0	51,096	32,197
	관람열람석	80.6	3,402	2,743
	접수작업대	79.7	22,346	17,801
	매표소 등	81.2	2,550	2,070
	소 계	69.0	79,394	54,811

주 : 2008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0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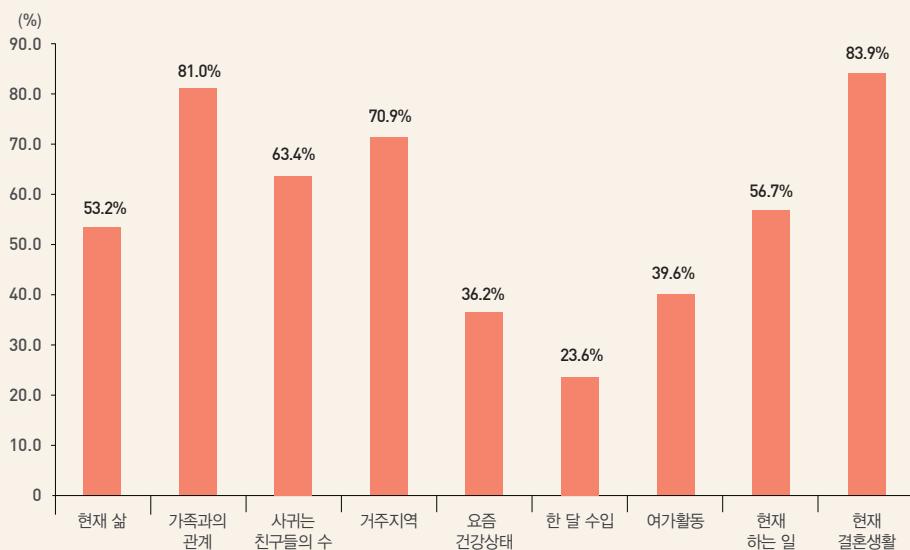
☞ '장애인 편의시설' 설명 보기 : 373페이지 참조

○ 내부시설이 가장 높은 설치율(86.0%)를 보이고 있으며, 안내시설이 49.6%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편의 시설 종류별로는 '복도' 89.9%, '경사로' 87.6%, '승강기' 87.5% 등의 순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 제7절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그림 2-7-1 일상생활 만족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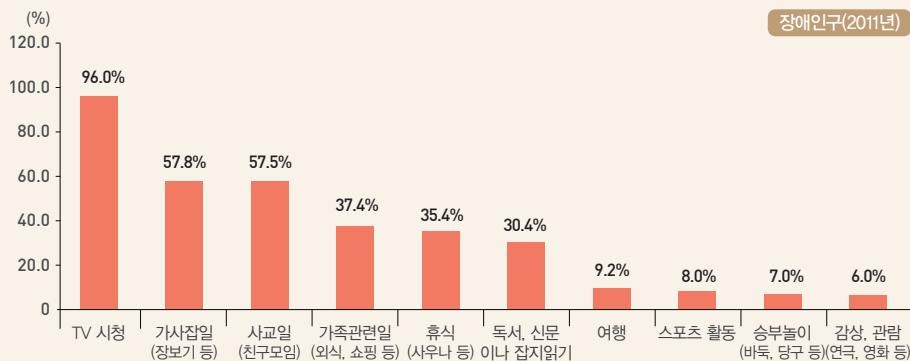
주 1) 각 항목별로 4점 척도를 적용하여 '만족하다'('매우만족'+'약간만족')고 응답한자의 비율임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일상생활 만족정도를 항목별로 보면, '현재 결혼생활' 83.9%, '가족관의 관계' 81.0%, '거주지' 7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2 여가활용방법



- 주 1) 전체인구(2011년) 13세 이상 대상,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복수응답)
- 2) 장애인구(2011년) 지난 1주일동안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
- 3) 각 항목별 응답률 상위 10개 항목만을 제시하였음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1.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여가활용방법으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TV시청'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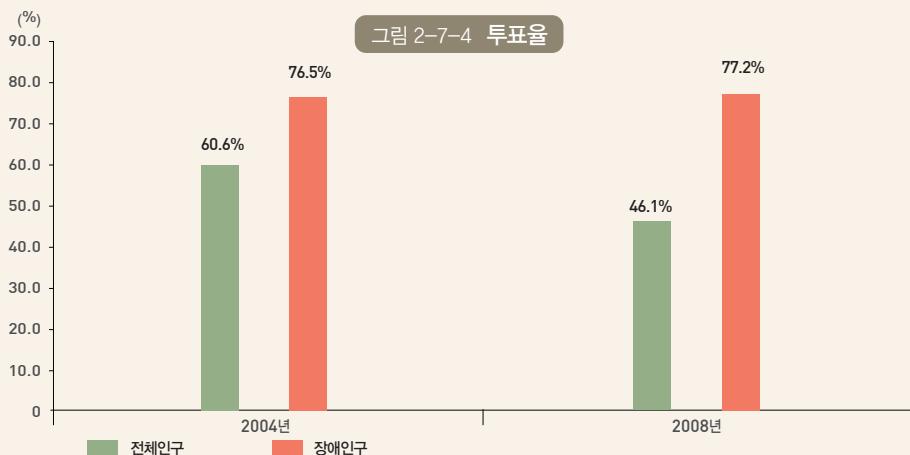
그림 2-7-3 예술행사 관람률



주 : 비장애인은 2006년 기준, 장애인은 2007년 기준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7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 2007.

그림 2-7-4 투표율



주 1)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여부에 대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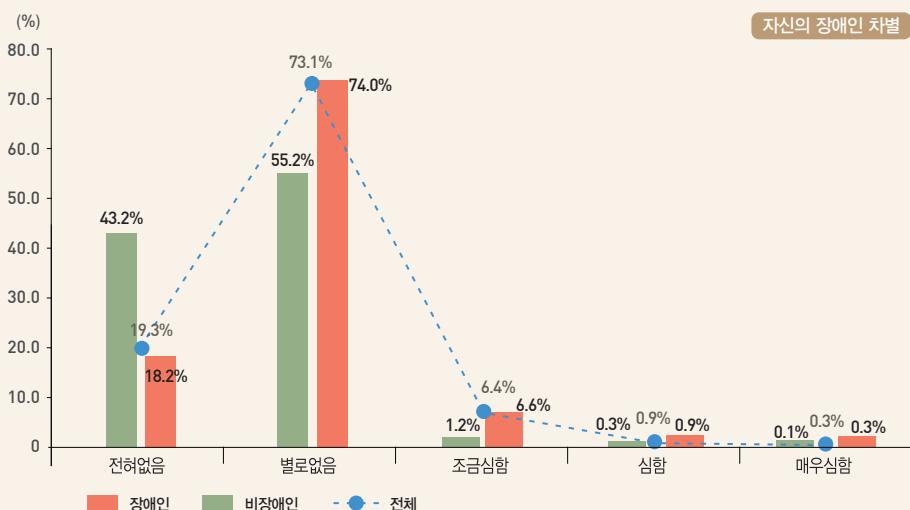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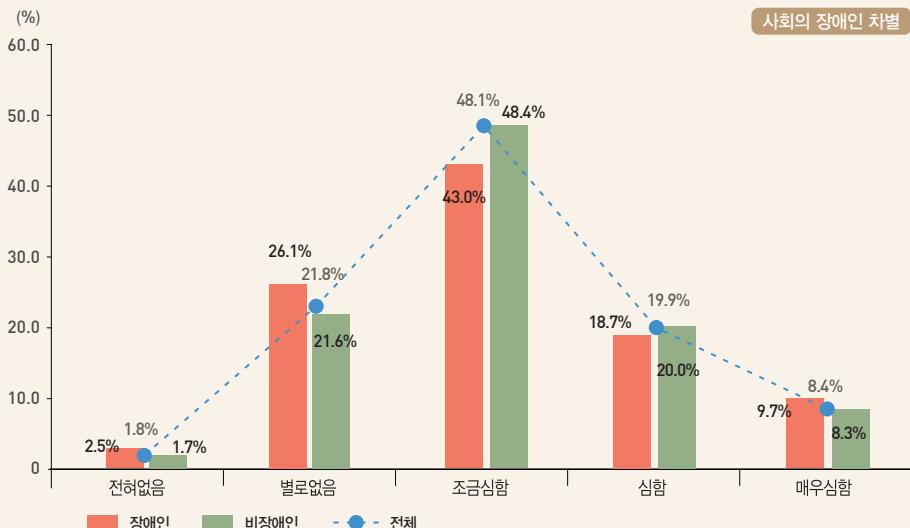
2) 전체인구는 실제 투표율이나 장애인구는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 비율임

3) 2008년 장애인구의 투표율은 투표권이 없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투표여부에 대한 비율을 재계산함

자료 |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 2010. (원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각년도.)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 장애인의 예술행사 관람률은 '영화' 13.3%, '미술전시회' 및 '대중가요콘서트/연예' 2.6%, '연극'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영화를 가장 많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의 경우 전체인구 투표율은 2004년 60.6%에서 2008년 46.1%로 14.5%p 감소한 반면, 장애인구는 76.5%에서 77.2%로 0.7%p 증가함

그림 2-7-5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주 : 2009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2009 사회조사보고서」, 2010.

-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6.4%인 반면, '자신'은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2.4%로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주관적 인식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1. 일상생활

### 가. 일상생활 만족도

〈표 2-7-1〉 일상생활 만족정도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현재 삶	53.2	58.1	31.4	59.8	59.5	57.7	52.5	52.5
가족과의 관계	81.0	83.4	74.2	85.3	83.5	82.3	76.5	83.6
사귀는 친구들의 수	63.4	74.0	39.7	71.7	64.5	68.4	31.1	29.6
거주지(살고있는 집)	70.9	71.9	63.0	75.2	71.8	69.3	75.5	78.4
요즘 건강상태	36.2	35.7	13.4	46.7	42.8	52.2	62.4	82.3
한 달 수입	23.6	24.3	21.6	22.3	25.3	16.5	24.6	14.7
여가활동	39.6	41.6	22.6	44.6	44.8	46.6	43.3	47.0
현재 하는 일	56.7	56.8	68.0	61.3	48.6	42.5	66.0	100.0
현재 결혼생활	83.9	85.6	75.9	86.2	81.7	75.9	81.9	-
구 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현재 삶	37.3	39.7	51.1	44.6	51.9	51.0	55.3	24.5
가족과의 관계	63.8	77.7	85.3	78.4	92.4	64.2	87.2	65.1
사귀는 친구들의 수	28.3	63.2	77.5	54.0	65.5	43.8	73.1	45.7
거주지(살고있는 집)	59.9	76.8	85.8	63.5	55.1	88.8	81.8	45.6
요즘 건강상태	35.9	24.9	38.4	7.9	40.5	55.1	15.9	12.9
한 달 수입	21.0	25.2	18.5	22.4	25.7	39.3	14.7	9.2
여가활동	39.2	35.2	51.5	20.1	35.8	21.5	34.3	22.0
현재 하는 일	34.0	62.8	50.3	60.9	73.1	45.5	32.4	50.3
현재 결혼생활	73.0	94.0	76.0	93.1	100.0	100.0	86.0	77.1

주 1) 각 항목별로 4점 척도를 적용하여 ‘만족하다’(‘매우만족’+‘약간만족’)고 응답한자의 비율임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일상생활 만족정도를 항목별로 보면, ‘현재 결혼생활’ 83.9%, ‘가족과의 관계’ 81.0%, ‘거주지(살고있는 집)’ 70.9%, ‘사귀는 친구들의 수’ 6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나.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표 2-7-2〉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혼자서 스스로	대부분 혼자서	일부도움 필요	대부분 필요	거의 남의 도움 필요
2005년	2,101,057	100.0	47.8	16.8	18.8	9.2	7.4
2008년	2,137,226	100.0	49.9	16.3	19.3	9.1	5.4
2011년	2,611,126	100.0	56.9	15.6	13.6	7.5	6.4
지 체	1,325,877	100.0	71.1	15.3	8.8	2.5	2.3
뇌 병 변	316,309	100.0	17.8	12.1	26.5	15.9	27.7
시 각	256,841	100.0	67.3	12.2	10.3	7.1	3.1
청 각	278,337	100.0	58.7	22.7	14.7	3.0	1.0
언 어	21,049	100.0	66.3	9.0	10.2	7.8	6.7
지 적	153,332	100.0	8.6	13.0	32.3	33.0	13.1
자 폐 성	16,238	100.0	0.0	0.4	17.4	58.1	24.0
정 신	103,894	100.0	34.8	21.7	16.1	19.2	8.1
신 장	58,500	100.0	67.8	15.9	12.0	2.0	2.2
심 장	18,508	100.0	65.5	27.2	7.3	0.0	0.0
호흡 기	19,249	100.0	35.6	26.2	25.3	3.9	9.1
간	9,289	100.0	82.5	10.6	1.7	0.0	5.3
안 면	2,426	100.0	72.4	27.6	0.0	0.0	0.0
장루 · 요루	16,705	100.0	62.8	21.9	3.4	1.8	10.1
간 질	14,572	100.0	63.5	17.5	13.9	3.9	1.1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일상생활 도움’ 설명 보기 : 373페이지 참조

- 전체의 56.9% 정도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경우는 27.5%로 나타남
  - 간장애, 안면장애, 지체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대부분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3〉 도와주는 사람 여부

(단위 :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도움주는 사람 유무		
		전체	있다	없다
전 체	1,124,682	100.0	84.0	16.0
지 체	382,949	100.0	72.0	28.0
뇌 병 변	260,026	100.0	94.0	6.0
시 각	83,996	100.0	84.4	15.6
청 각	115,023	100.0	82.4	17.6
언 어	7,087	100.0	90.0	10.0
지 적	140,516	100.0	96.9	3.1
자 폐 성	16,238	100.0	100.0	0.0
정 신	67,762	100.0	86.7	13.3
신 장	18,827	100.0	90.2	9.8
심 장	6,391	100.0	69.3	30.7
호흡기	12,403	100.0	77.7	22.3
간	1,629	100.0	100.0	0.0
안 면	669	100.0	10.6	89.4
장루·요루	6,214	100.0	72.5	27.5
간 질	5,312	100.0	85.4	14.6

주 1)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에 대해 ‘혼자서 스스로’ 응답한 경우와 무응답 제외함

2) 2011년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일상생활 도움’ 설명 보기 : 373페이지 참조

-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특별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84.0%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간장애와 자폐성장애가 100.0%, 지적장애 96.9%, 뇌병변 장애가 94.0%로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4〉 도움을 줄 외부인 활용 의사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필요없다
2005년	1,090,736	100.0	35.0	2.9	62.0
2008년	1,069,812	100.0	34.2	7.5	58.3
2011년	1,124,420	100.0	43.7	8.4	47.9
지 체	382,688	100.0	39.2	5.2	55.6
뇌 병 변	260,026	100.0	52.2	14.6	33.2
시 각	83,995	100.0	40.8	8.8	50.4
청 각	115,023	100.0	35.5	2.5	61.9
언 어	7,087	100.0	46.2	3.9	49.9
지 적	140,155	100.0	45.8	8.7	45.5
자 폐 성	16,237	100.0	62.4	18.0	19.5
정 신	67,763	100.0	46.4	11.1	42.5
신 장	18,828	100.0	49.8	3.8	46.4
심 장	6,392	100.0	28.3	0.0	71.7
호 흡 기	12,403	100.0	40.8	0.0	59.2
간	1,629	100.0	47.9	12.1	40.0
안 면	669	100.0	40.5	9.9	49.6
장루 · 요루	6,214	100.0	33.4	29.3	37.3
간 절	5,311	100.0	42.8	4.3	52.9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일상생활 도움’ 설명 보기 : 373페이지 참조

- 가족을 제외하고 도와줄 외부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필요 없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지만,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43.7%로 나타나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에 따르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가 외부인의 도움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고 특히, 장루 · 요루장애는 유급으로라도 봉사자를 이용할 의사가 29.3%로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7-5〉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이용자 수	비 율	이용자 수	비 율	이용자 수	비 율
전 체	14,515	100.0	19,498	100.0	27,818	100.0
소득수준별	기초생활수급자	3,245	22.4	7,824	40.1	10,398
	차상위 계층	3,502	24.1	1,343	6.9	2,260
	일반	7,768	53.5	10,331	53.0	15,160
성별	남 성	8,673	59.8	11,582	59.4	16,854
	여 성	5,842	40.2	7,916	40.6	10,964
연령별	아동(만 6~18세)	3,834	26.4	5,611	28.8	8,210
	성인(만 18~65세)	10,681	73.6	13,887	71.2	19,608

주 1)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

2)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보건복지백서」, 2008.

보건복지부, 「2008 보건복지백서」, 2009.

보건복지부, 「2009 보건복지백서」,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42페이지 참조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 설명 보기 : 373페이지 참조

- 2007년 4월 시행된 활동보조사업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의 제공기관을 통해 고용된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의 가구에 방문하여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 전자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시마다 본인이 이용한 시간만큼 결제하는데, 2009년 전국적으로 27,818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게 됨

## 다. 외출 및 이동

## 1) 외출

〈표 2-7-6〉 외출의 빈도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혼자 외출 여부	외 출 빈 도					
			전 체	거의 매일	주1~3회	월1~3회	연 10회 이내	전혀외출않음
2005년	2,100,729	84.0	100.0	65.2	20.6	7.6	3.9	2.8
2008년	2,137,226	83.6	100.0	66.6	21.1	7.1	3.9	1.2
2011년	2,611,126	85.7	100.0	66.6	20.0	8.5	-	4.9
지 체	1,325,878	94.2	100.0	71.5	20.0	6.5	-	2.0
뇌 병 변	316,309	56.0	100.0	44.3	19.3	17.3	-	19.1
시 각	256,840	87.9	100.0	72.4	17.3	7.9	-	2.4
청 각	278,337	94.0	100.0	72.8	18.1	7.1	-	2.0
언 어	21,049	90.5	100.0	81.0	9.9	0.0	-	9.0
지 적	153,332	64.3	100.0	73.9	14.8	5.7	-	5.5
자 폐 성	16,238	27.1	100.0	89.0	8.5	2.4	-	0.0
정 신	103,894	73.6	100.0	45.4	23.5	15.7	-	15.4
신 장	58,500	90.6	100.0	43.0	53.4	3.0	-	0.6
심 장	18,508	100.0	100.0	79.2	11.6	5.4	-	3.8
호 흡 기	19,249	79.5	100.0	26.0	42.7	26.0	-	5.3
간	9,289	97.9	100.0	52.5	31.7	9.4	-	6.3
안 면	2,426	100.0	100.0	61.7	20.2	18.2	-	0.0
장루 · 요루	16,704	88.1	100.0	55.5	20.6	19.2	-	4.7
간 질	14,573	89.8	100.0	58.8	17.6	23.6	-	0.0

주 : 지난 1년간 평균 외출 횟수에 대한 응답 값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혼자 외출이 가능한 경우는 85.7%, 그렇지 않은 경우는 14.3%로 많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66.6%, '주 1~3회' 20.0%, '월 1~3회' 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안면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지체장애 등은 독립적인 외출이 가능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뇌병변장애, 정신장애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2-7-7〉 외출의 목적

(단위: 명, %)

구 分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전국추정수	2,482,466	1,299,201	255,832	250,620	272,854	19,149	144,897	16,23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근·통학	37.2	42.0	15.8	41.6	36.8	55.6	48.7	84.8
병원 진료	12.8	10.9	26.9	8.4	7.8	3.8	3.4	1.3
쇼핑(물건사기)	4.1	4.0	1.8	3.5	3.7	2.2	6.7	0.0
산책	23.3	19.7	38.5	20.9	23.8	18.1	23.6	6.9
친척, 친구, 이웃 방문	11.6	13.0	7.6	13.9	13.8	6.1	5.4	0.0
여행	0.1	0.0	0.5	0.0	0.2	0.0	0.0	0.0
지역시설 이용/행사참여	9.4	8.8	8.1	10.2	12.6	12.5	11.1	4.7
일자리 구하기	0.8	1.0	0.3	0.8	1.0	1.7	0.0	2.3
기타	0.6	0.7	0.5	0.7	0.3	0.0	1.1	0.0

구 分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전국추정수	87,887	58,144	17,797	18,227	8,701	2,426	15,921	14,57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근·통학	11.6	16.4	54.0	6.7	30.2	21.5	8.3	21.8
병원 진료	16.0	57.9	12.5	32.0	3.3	10.8	15.9	10.7
쇼핑(물건사기)	12.0	2.0	0.0	3.8	11.3	16.2	3.9	16.3
산책	37.9	15.2	15.5	34.4	35.5	36.3	47.6	30.5
친척, 친구, 이웃 방문	11.0	8.3	1.7	2.2	3.5	0.0	10.7	8.3
여행	0.0	0.0	0.0	0.0	0.0	0.0	0.0	0.0
지역시설 이용/행사참여	11.5	0.0	16.4	19.9	16.1	4.1	9.8	5.0
일자리 구하기	0.0	0.2	0.0	0.0	0.0	11.2	0.0	1.9
기타	0.0	0.0	0.0	1.0	0.0	0.0	3.7	5.6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외출의 주된 목적은 '통근·통학' 37.2%, '산책' 23.3%, '병원진료' 12.8%, '친구나 이웃 방문'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루·요루장애(47.6%), 뇌병변장애(38.5%), 심장장애(33.9%), 정신장애(37.9%), 간장애(35.5%)는 외출의 주된 목적이 '산책' 인 것으로 나타나고, 신장장애는 외출의 주된 목적이 '병원 진료' (57.9%)인 것으로 나타남

## 2) 이동

〈표 2-7-8〉 교통수단

(단위: 명, %)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전국추정수	2,482,473	1,299,202	255,834	250,623	272,853	19,149	144,897	16,23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버스	32.1	31.9	19.0	38.1	36.0	31.9	34.1	3.5
일반택시	7.2	7.0	15.9	6.1	4.2	11.2	1.5	2.9
지하철·전철	13.3	12.3	9.8	18.6	14.6	14.8	9.4	12.3
장애인 콜택시	0.9	0.6	3.3	1.5	0.0	0.0	0.0	0.0
복지관버스	0.5	0.1	1.1	0.2	0.8	0.0	2.6	0.7
자가용	32.3	35.7	35.6	27.4	27.8	29.0	25.1	60.9
셔틀형 복지버스	0.3	0.1	0.5	0.2	1.2	0.0	0.5	0.0
전동휠체어	0.6	0.7	2.0	0.0	0.0	0.0	0.0	0.0
전동스쿠터	1.0	1.3	2.2	0.1	0.1	0.0	0.8	0.0
통학·통근버스	1.2	0.7	1.2	0.3	1.5	2.5	7.2	14.7
도보	6.7	5.4	7.7	4.3	8.6	9.8	16.0	5.0
기타	3.9	4.2	1.8	3.2	5.3	0.8	2.7	0.0

구 分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전국추정수	87,888	58,145	17,795	18,227	8,702	2,426	15,921	14,57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버스	41.0	40.8	33.0	23.0	17.3	5.8	44.4	45.4
일반택시	4.1	11.0	0.0	14.6	3.3	34.3	3.6	6.0
지하철·전철	21.6	7.0	22.4	14.2	25.5	25.3	21.8	25.4
장애인 콜택시	0.0	1.7	0.0	4.1	0.0	0.0	5.3	0.0
복지관버스	1.2	1.4	0.0	0.0	0.0	0.0	0.0	0.0
자가용	14.0	28.6	20.3	42.7	47.2	21.1	15.4	18.0
셔틀형 복지버스	0.1	0.0	0.0	0.0	5.6	0.0	0.0	0.0
전동휠체어	0.0	0.0	0.0	0.0	0.0	0.0	0.0	0.0
전동스쿠터	0.0	0.0	0.0	1.5	0.0	0.0	0.0	0.0
통학·통근버스	0.2	0.0	0.0	0.0	0.0	0.0	0.0	0.0
도보	14.3	1.5	14.3	0.0	1.1	10.8	5.6	0.0
기타	3.5	8.0	10.0	0.0	0.0	2.7	3.8	5.2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 32.3%, '일반버스' 32.1%, '지하철·전철' 13.3% 등임

〈표 2-7-9〉 저상버스 도입현황

(단위: 대, %)

구 분	보급율	전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국	10.0	3,206	60	162	364	304	500	978	838
서울	19.3	1,468	35	67	194	108	260	482	322
부산	4.4	112	3	5	7	7	5	25	60
대구	7.7	128	2	5	10	20	30	35	26
인천	7.2	149	4	20	20	30	17	28	30
광주	6.9	62	2	10	10	10	8	12	10
대전	9.0	87	12	14	8	8	8	12	25
울산	7.8	50	2	3	10	7	10	6	12
경기	7.6	717	-	-	77	89	125	200	226
강원	14.3	79	-	-	6	6	12	18	37
충북	13.0	70	-	3	9	8	6	36	8
충남	2.0	14	-	-	-	-	3	5	6
전북	2.1	17	-	-	-	-	4	10	11
전남	2.5	17	-	-	-	1	-	5	3
경북	1.6	18	-	-	8	1	2	3	4
경남	13.8	208	-	30	-	9	10	101	58
제주	6.1	10	-	5	5	-	-	-	-

주: 2011년 기준임

국토해양부 내부자료(2011)임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9페이지 참조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설명 보기 : 374페이지 참조

- 2004년부터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3,206대임
  - 서울시가 전체 저상버스 대수의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2006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대비 22.4%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7-10〉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단위 : 대, 명)

구 분	보급률		이용률	
	보급대수	지표값	연간 이용 장애인 수	지표값
전 국	1,476	-		-
서 울	300	31.2	702,840	7.3
부 산	100	25.5	229,057	5.9
대 구	60	21.4	151,327	5.4
인 천	112	39.3	310,379	10.9
광 주	40	25.8	61,932	4.0
대 전	60	36.7	82,584	5.1
울 산	24	23.2	66,451	6.4
경 기	212	18.6	114,077	0.7
강 원	110	48.0	22,899	2.2
충 북	61	27.8	21,979	2.9
충 남	31	10.3	30,149	1.8
전 북	77	26.6	28,968	6.4
전 남	20	5.5	36,509	1.2
경 북	55	13.8	39,776	1.2
경 남	209	50.3	41,559	5.3
제 주	5	6.3	7,910	2.6

- 주 1)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개인용무 수행을 위한 차량이동을 지원하는 것임  
 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등록장애인(1, 2급) 1만 명에 대하여 인허가 된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대수로 산정함

3)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은 등록장애인(1, 2급) 대비 연간 이용 장애인 수(2009년)를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29페이지 참조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설명 보기 : 374페이지 참조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을 보면 경상남도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는 48.0, 인천 39.3으로 분석됨  
 -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을 살펴보면 인천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은 7.3, 울산 및 전북이 6.4로 분석되었음

## 2. 문화 및 여가활동

〈표 2-7-11〉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감상·관람(연극, 영화 등)	6.0	6.1	3.2	6.7	4.7	11.2	10.2	14.3
TV신청(유선방송, 비디오 포함)	96.0	98.2	92.0	92.4	97.4	97.9	94.3	85.6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27.3	30.8	13.3	27.9	18.3	41.8	40.0	57.5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등)	7.0	8.9	3.2	6.7	7.6	5.2	2.9	11.3
창작적 취미(미술, 서예 등)	4.5	3.5	1.4	6.0	4.1	18.0	11.0	24.6
독서, 신문이나 잡지읽기	30.4	36.1	16.1	28.1	29.7	28.4	11.4	26.4
스포츠(축구, 테니스, 수영 등)	8.0	8.1	2.6	10.3	6.9	20.6	14.0	38.9
학습활동(영어, 한문 등)	4.3	3.7	3.1	6.6	3.1	5.2	7.7	18.2
사회(자원)봉사 활동	5.3	6.8	1.3	6.4	4.5	7.6	4.2	0.0
여행(관광, 등산, 낚시 등)	9.2	10.7	2.7	11.7	11.4	18.0	6.5	17.6
사교일(친구모임 등)	57.5	65.6	34.0	69.5	60.3	59.5	37.6	27.1
해외여행(지난 1년동안)	4.1	5.3	2.1	4.7	4.0	7.1	1.1	3.7
가족 관련일(외식, 쇼핑 등)	37.4	40.8	22.2	42.2	36.9	31.4	40.9	53.5
가사잡일(장보기 포함)	57.8	64.9	30.1	66.3	64.1	61.7	33.3	20.6
휴식(사우나 등)	35.4	39.9	26.3	39.0	36.3	25.3	26.9	33.2
기타	0.8	0.8	1.1	1.1	0.3	0.0	1.0	0.0

주 : 1) 지난 1주일 동안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TV시청' (9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잡일' (57.8%)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해외여행 참여'가 4.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TV시청'은 거의 대부분의 장애유형이 골고루 높게 답하고 있음

〈표 2-7-11〉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계속)

(단위: 명, %)

구 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류요루	간질
감상·관람(연극, 영화 등)	7.8	5.4	4.1	0.0	9.3	0.0	1.1	6.9
TV신청(유선방송 포함)	90.6	99.1	92.1	89.6	96.2	88.8	89.9	93.4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15.4	30.0	48.4	20.7	52.7	36.0	19.8	34.0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등)	1.4	3.0	6.2	7.0	8.9	15.8	8.2	5.1
창작적 취미(미술 등)	7.8	2.9	0.0	13.8	6.6	0.0	0.0	6.9
독서	26.8	41.7	43.3	33.9	55.7	69.2	26.2	27.9
스포츠(축구 등)	4.6	5.2	28.2	1.1	7.5	7.0	3.3	6.5
학습활동(영어 등)	2.7	4.5	18.7	2.6	11.2	30.3	1.1	0.6
사회봉사 활동	2.0	1.9	12.7	1.4	6.3	11.2	4.6	0.0
여행(관광 등)	4.1	5.3	0.0	2.5	20.1	8.7	9.1	0.0
사교일(친구모임 등)	33.0	44.9	55.5	41.6	66.1	47.5	54.0	54.1
해외여행(지난 1년동안)	0.9	1.5	0.0	0.0	6.3	0.0	0.0	2.6
가족 관련일(외식 등)	23.8	40.5	36.2	28.6	33.2	27.8	37.5	32.2
가사잡일(장보기 등)	44.8	71.6	84.4	42.6	68.4	77.0	53.7	69.4
휴식(사우나 등)	24.1	28.6	19.7	24.4	15.3	53.2	19.6	15.1
기타	1.3	0.0	0.0	0.0	0.0	0.0	0.0	0.0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TV시청' (9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잡일' (57.8%)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해외여행 참여'가 4.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TV시청'은 거의 대부분의 장애유형이 골고루 높게 답하고 있음

〈표 2-7-12〉 예술행사 관람률 및 연평균 관람횟수

(단위 : %, 회)

구 분	예술행사 관람률		연평균 예술행사 관람횟수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문학행사	4.4	1.9	0.1	3.3
미술전시회	6.8	2.6	0.2	3.5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3.6	0.9	0.1	1.8
전통예술공연	4.4	1.9	0.1	2.9
연극	8.1	2.3	0.2	2.3
무용	0.7	0.2	0.0	1.7
영화	58.9	13.3	3.9	4.6
대중가요콘서트/연예	10.0	2.6	0.2	2.6

주 : 비장애인은 2006년 기준, 장애인은 2007년 기준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7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 2007.

☞ 조사 설명 보기 : 329페이지 참조

- 장애인의 예술행사 관람률은 '영화' 13.3%, '미술전시회' 및 '대중가요콘서트/연예' 2.6%, '연극'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관람횟수는 '영화' 4.6회, '미술전시회' 3.5회, '문학행사' 3.3회, '전통예술공연' 2.9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장애인과 비교해 보면, 장애인의 연평균 관람횟수가 더 많았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영화를 가장 많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7-13〉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

구 분	생활체육 실행자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할 의지가 있는 자	현재 운동하지 않고 향후에도 운동할 의지가 없는 자
2006년	4.4	42.1	37.4	16.1
2007년	5.4	70.0	15.3	9.3
2008년	6.3	55.5	24.3	13.9
2009년	7.0	62.8	19.5	10.7
2010년	8.3	56.0	23.0	12.8
2011년	9.6	60.8	15.9	13.7

주 1) ‘장애인 운동’의 개념을 ‘건강을 위한 모든 신체활동’으로 정의함

2)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 운동을 하는 장애인 중 ‘1주일에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운동 목적이 ‘건강증진’, ‘여가활동’, ‘기타목적인 자’로서 집안이 아닌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대상자를 말함

3)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2011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 보고서」,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0페이지 참조

☞ ‘생활체육 실행자’ 설명 보기 : 374페이지 참조

- 최근 1년 동안 운동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운동을 하고 있다는 장애인 70.4% 중 주 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생활체육실행자는 9.6%로 전년 대비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할 의지가 있는 자’는 23.0%에서 15.9%로 7.1%p 감소하고, ‘현재 운동을 하지 않고 향후에도 운동할 의지가 없는 자’는 12.8%에서 13.7%로 0.9%p 증가함

〈표 2-7-14〉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코너) 설치 현황

(단위 : 개별단위)

전체		장애인 자료실 설치		장애인 코너 설치		설치되어 있지 않음	
개관	%	개관	%	개관	%	개관	%
768개소	100.0	81개소	10.5%	180개소	23.4%	507개소	66.0%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2011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1페이지 참조

- 전체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 자료실이 설치된 곳은 10.5%(81개소)이며 장애인 코너가 설치된 기관은 23.4%(180개소)로 조사됨
-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자료실 및 코너의 설치비율이 아주 저조하므로, 향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표 2-7-15〉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정도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2005년	2,091,882	100.0	2.1	9.9	30.6	33.4	24.0
2008년	2,137,225	100.0	4.4	14.8	39.3	26.9	14.5
2011년	2,611,126	100.0	4.3	35.2	-	38.7	21.8
지 체	1,325,877	100.0	4.5	37.0	-	40.9	17.6
뇌 병 변	316,309	100.0	1.6	21.6	-	33.6	43.2
시 각	256,841	100.0	7.5	35.8	-	39.7	17.0
청 각	278,337	100.0	3.7	41.1	-	37.2	17.9
언 어	21,049	100.0	1.3	44.2	-	30.2	24.3
지 적	153,332	100.0	5.5	37.8	-	34.5	22.2
자 폐 성	16,238	100.0	3.6	46.1	-	35.2	15.1
정 신	103,894	100.0	4.5	36.7	-	30.4	28.4
신 장	58,500	100.0	0.8	34.1	-	41.3	23.7
심 장	18,508	100.0	13.3	38.2	-	32.6	15.8
호 흡 기	19,249	100.0	0.0	17.6	-	60.3	22.1
간	9,289	100.0	6.0	24.5	-	53.8	15.8
안 면	2,426	100.0	0.0	21.5	-	31.0	47.5
장루 · 요루	16,705	100.0	0.0	34.8	-	40.2	25.1
간 절	14,572	100.0	0.0	17.3	-	44.3	38.4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39.5%, '불만족한다' 60.5%로 나타나 불만족의 비율이 더 높음.  
- 간질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순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남

### 3. 사회참여

#### 가. 정치참여

〈표 2-7-16〉 선거 투표 여부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단위 : 명, %)
					비해당 (투표권 없었음)
2005년	1,995,791	100.0	76.5	23.5	-
2008년	2,137,226	100.0	74.0	21.8	4.2
2011년	2,611,126	100.0	71.6	24.1	4.2
지 체	1,325,877	100.0	80.9	18.1	0.9
뇌 병 변	316,309	100.0	50.5	45.1	4.4
시 각	256,841	100.0	77.4	19.5	3.1
청 각	278,337	100.0	82.2	15.7	2.1
언 어	21,049	100.0	52.9	27.4	19.7
지 적	153,332	100.0	32.6	35.0	32.4
자 폐 성	16,238	100.0	8.7	12.8	78.5
정 신	103,894	100.0	48.4	50.9	0.6
신 장	58,500	100.0	72.5	27.1	0.4
심 장	18,508	100.0	70.6	16.1	13.3
호흡기	19,249	100.0	71.2	27.7	1.1
간	9,289	100.0	75.6	23.7	0.7
안 면	2,426	100.0	58.3	38.8	2.9
장루·요루	16,705	100.0	74.1	25.9	0.0
간 질	14,572	100.0	51.3	48.7	0.0

주 1) 2005년의 경우는 17대 국회위원 선거, 2008년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2011년의 경우 제 1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임

2) 2005년의 경우는 비해당(투표권 없음) 255건 및 무응답 14건을 제외하고 비율을 제시함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2011년 제1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체 장애인의 71.6%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가 82.2%로 가장 높고, 지체장애 80.9%, 시각장애 77.4%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나. 사회의 인식

〈표 2-7-17〉 장애인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 분	전 체	장애인을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함	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할 수 밖에 없음
2007년	100.0	63.3	32.2	4.4
2009년	100.0	63.8	32.6	3.6
2011년	100.0	66.8	30.0	3.2
장애인	100.0	68.7	30.9	0.4
비장애인	100.0	66.7	30.0	3.3

주 :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5페이지 참조

-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바람직한 시각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이 66.8%로 가장 많았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함'이 30.0%, '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할 수 밖에 없음'은 3.2%로 나타남
  - '장애인을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한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남

〈표 2-7-18〉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 분	전 체	전혀 문제되지않음	반대는 하지않음	반대하는 편	절대로 안 됨
2007년	100.0	34.4	59.8	5.4	0.4
2009년	100.0	37.9	55.4	6.2	0.5
2011년	100.0	35.9	57.9	5.7	0.5
장애인	100.0	54.9	43.5	1.4	0.2
비장애인	100.0	34.9	58.6	5.9	0.5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5페이지 참조

- 최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의 장애인 관련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되지 않음' 35.9%, '반대는 하지 않음' 57.9%, '반대하거나 절대로 안 됨' 6.2%로 나타남
  - 장애인의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반대는 하지 않음'이 98.4%로 나타난 반면 비장애인은 93.5%로 나타나 상호간 다소 견해차를 보임

〈표 2-7-19〉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단위 : 교, %)

구 분		학교 수	비 율
유치원	전 체	8,334	100.0
	연2회 이상	6,071	72.8
	연1회	2,115	25.4
초등학교	전 체	5,944	100.0
	연2회 이상	5,592	94.1
	연1회	300	5.0
중학교	전 체	3,152	100.0
	연2회 이상	2,875	91.2
	연1회	230	7.3
고등학교	전 체	2,283	100.0
	연2회 이상	1,945	85.2
	연1회	295	12.9

주 1) 2003년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권장해 왔으며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08년부터는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추진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2페이지 참조

- 모든 학교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한 학교 비율은 '유치원' 72.8%, '초등학교' 94.1%, '중학교' 91.2%, '고등학교' 85.2%임

## 다. 차별

### 1) 차별인식

〈표 2-7-20〉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구 분	전 체	전혀없음	별로없음	조금심함	심 합	매우심함	(단위 : %)
사회의 장애인 차별							
2007년	100.0	2.3	21.5	43.4	22.7	10.2	
2009년	100.0	1.8	21.8	48.1	19.9	8.4	
2011년	100.0	2.2	25.5	46.1	18.7	7.5	
장애인	100.0	3.5	30.6	42.1	15.8	7.9	
1~2급	100.0	3.1	27.5	38.1	20.1	11.2	
3~4급	100.0	3.7	32.1	41.8	14.5	7.8	
5~6급	100.0	3.6	30.5	43.9	15.3	6.7	
비장애인	100.0	2.1	25.2	46.3	18.9	7.5	
자신의 장애인 차별							
2007년	100.0	18.4	70.3	9.6	1.2	0.4	
2009년	100.0	19.3	73.1	6.4	0.9	0.3	
2011년	100.0	18.3	67.8	12.0	1.4	0.5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5페이지 참조

-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2.3%인 반면, 「자신」은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6.1%로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주관적 인식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21〉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전 체	2,611,126	100.0	8.7	31.2	36.4	23.7
지 체	1,325,877	100.0	5.8	27.3	38.4	28.6
뇌 병 변	316,309	100.0	11.1	35.2	38.4	15.4
시 각	256,841	100.0	7.9	30.6	34.9	26.5
청 각	278,337	100.0	10.5	39.7	36.5	13.3
언 어	21,049	100.0	27.7	40.8	25.8	5.7
지 적	153,332	100.0	18.1	40.5	24.5	16.9
자 폐 성	16,238	100.0	29.5	31.6	17.0	21.9
정 신	103,894	100.0	18.7	38.6	28.5	14.2
신 장	58,500	100.0	5.1	24.4	36.2	34.3
심 장	18,508	100.0	1.1	23.3	30.3	45.3
호흡기	19,249	100.0	4.9	26.1	46.6	22.5
간	9,289	100.0	7.8	27.0	40.6	24.5
안 면	2,426	100.0	25.9	72.4	0.0	1.7
장루·요루	16,705	100.0	10.0	17.2	47.1	25.7
간 질	14,572	100.0	19.4	39.1	34.3	7.2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현재 장애란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전체의 39.9%가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함
  - 안면장애인의 98.3%가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많은 반면, 심장장애인의 75.6%는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22〉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많다	매우 많다
전 체	2,611,126	100.0	0.8	18.5	48.3	32.4
지 체	1,325,877	100.0	1.0	20.0	48.3	30.7
뇌 병 변	316,309	100.0	0.7	16.9	47.1	35.2
시 각	256,841	100.0	0.9	15.6	50.9	32.6
청 각	278,337	100.0	0.6	20.1	51.1	28.2
언 어	21,049	100.0	1.1	16.5	27.1	55.2
지 적	153,332	100.0	1.4	10.5	45.0	43.1
자 폐 성	16,238	100.0	0.0	1.6	41.2	57.2
정 신	103,894	100.0	0.3	17.5	45.6	36.6
신 장	58,500	100.0	0.0	20.8	43.9	35.3
심 장	18,508	100.0	0.0	28.4	44.8	26.8
호흡 기	19,249	100.0	0.0	20.1	62.2	17.7
간	9,289	100.0	0.0	9.6	66.8	23.6
안 면	2,426	100.0	0.0	0.0	61.2	38.8
장루 · 요루	16,705	100.0	0.0	34.1	52.2	13.8
간 질	14,572	100.0	0.0	12.6	49.0	38.4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많다' 48.3%, '매우 많다'가 32.4%, '별로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8.5%, '전혀 없다'는 0.8%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경우가 80.7%로 사회조직에서 장애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음
  - 안면장애(100.0%)와 자폐성장애(98.4%)가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차별이 '없다'는 경우는 장루·요루장애인 34.1%로 가장 많음

## 2) 사회적 차별 경험

〈표 2-7-23〉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입학	유치원(보육시설)	30.5	24.6	28.3	13.5	28.6	13.6	40.4
·	초등학교	34.2	33.4	36.7	21.8	34.0	32.5	40.5
전학	중학교	29.8	27.0	33.0	19.1	28.7	53.9	35.9
·	고등학교	29.3	23.7	32.9	16.0	33.0	62.6	39.7
학교 생활	대학교	16.3	14.4	7.5	13.9	20.9	58.5	30.7
	교사로부터	21.4	9.4	21.8	16.7	23.7	30.8	40.2
	또래학생으로부터	49.2	45.8	41.1	27.4	39.7	82.5	69.0
	학부모로부터	15.1	7.2	25.4	5.7	10.9	18.4	31.1
결혼		26.5	23.5	18.0	19.1	28.4	40.9	69.4
취업		34.0	31.6	42.0	27.7	30.5	75.0	62.8
직장 생활	소득	20.7	18.7	26.4	14.7	20.7	34.7	54.6
	동료와의 관계	16.9	12.5	22.4	12.0	26.3	41.5	43.4
	승진	14.2	11.1	17.6	10.9	18.6	36.8	36.8
운전면허 제도상(취득 시)		14.3	10.4	12.8	31.4	11.7	11.0	76.0
보험제도(계약 시)		53.7	52.7	64.1	40.8	39.8	65.5	78.5
의료기관 이용 시		3.7	2.7	4.6	3.0	5.0	6.7	7.2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2.0	0.3	1.2	6.6	7.3	7.3	2.0
지역사회생활		7.8	4.8	11.0	8.1	6.9	15.0	22.6

주 1)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로 인한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보험제도 계약 시(53.7%)'이며, 그 다음은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49.2%)', '초등학교 입학·전학시 차별(34.2%)' 순임

〈표 2-7-23〉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계속)

구 분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단위: %) 간질
학교 생활	유치원(보육시설)	40.3	49.5	0.0	0.0	0.0	0.0	0.0	-	0.0
	초등학교	45.2	33.5	0.0	0.0	73.6	0.0	100.0	-	36.0
	중학교	47.8	46.8	40.3	0.0	0.0	-	-	-	30.6
	고등학교	27.5	57.6	0.0	0.0	0.0	-	-	-	38.2
	대학교	0.0	57.0	0.0	0.0	-	0.0	0.0	-	0.0
	교사로부터	42.1	42.4	0.0	0.0	0.0	0.0	7.7	-	6.0
	또래학생으로부터	66.5	76.1	38.7	1.6	73.6	0.0	62.9	-	44.0
	학부모로부터	28.5	23.4	0.0	0.0	85.5	0.0	0.0	-	15.0
결혼		100.0	50.9	21.4	0.0	18.6	0.0	100.0	0.0	41.9
취업		5.5	59.5	24.2	34.1	28.6	27.1	95.8	6.7	43.8
직장 생활	소득	10.9	35.8	19.2	19.0	11.7	5.6	94.2	5.3	31.2
	동료와의 관계	10.9	44.8	6.9	7.9	6.4	0.0	94.2	6.2	29.7
	승진	10.9	25.2	19.8	13.9	0.0	16.8	94.2	7.1	33.3
운전면허 제도상(취득 시)		-	31.1	24.5	36.7	0.0	0.0	0.0	0.0	0.0
보험제도(계약 시)		74.1	60.3	82.4	55.9	40.6	86.0	100.0	38.5	71.2
의료기관 이용 시		19.4	5.2	4.6	4.5	3.5	0.0	0.0	2.4	1.6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11.3	1.1	1.5	0.0	0.0	0.0	0.0	0.3	0.6
지역사회생활		43.1	10.0	7.1	3.5	13.9	0.0	24.6	7.6	13.1

주 1)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안면장애는 '보험제도상(계약 시) 차별' 경험이 100.0%로 가장 높고, 간장애는 86.0%, 신장장애 82.4%로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7-2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전 체	2,611,126	100.0	7.8	21.3	70.8
지 체	1,325,877	100.0	8.6	24.1	67.3
뇌 병 변	316,309	100.0	5.3	17.7	77.0
시 각	256,841	100.0	8.5	21.9	69.6
청 각	278,337	100.0	5.8	14.5	79.7
언 어	21,049	100.0	9.8	15.6	74.6
지 적	153,332	100.0	7.5	17.9	74.6
자 폐 성	16,238	100.0	16.6	31.8	51.6
정 신	103,894	100.0	4.7	15.7	79.6
신 장	58,500	100.0	11.8	25.9	62.3
심 장	18,508	100.0	7.9	10.4	81.7
호흡기	19,249	100.0	6.9	37.0	56.1
간	9,289	100.0	24.7	35.9	39.4
안 면	2,426	100.0	15.3	17.0	67.7
장루·요루	16,705	100.0	2.0	20.9	77.2
간 질	14,572	100.0	13.2	8.4	78.4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1페이지 참조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가 70.8%,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21.3%, '알고 있다'가 7.8%로 나타남.

- 심장장애(81.7%), 청각장애(79.7%), 정신장애(79.6%)의 순으로 '알지 못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음

# 3

## Chapter

### 해외 장애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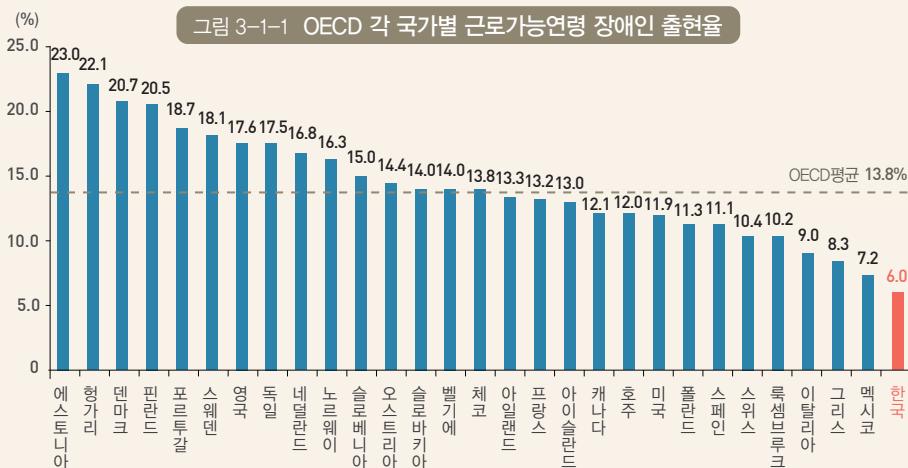
- 제1절 OECD
- 제2절 독일
- 제3절 미국
- 제4절 일본
- 제5절 프랑스
- 제6절 영국



#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제1절 OECD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주 1) 2000년대 중반 20~64세 인구 대비 자가 판정 장애인 비율임

2) OECD 평균은 27개국에 대해 기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제외)



주 1) 2000년대 중반 20~64세 인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격차임

2) OECD 평균은 27개국에 대해 기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제외)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 1. 장애인구

〈표 3-1-1〉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출현율

(단위 : %)

구 분	장애인 출현율
에스토니아	23.0
헝가리	22.1
덴마크	20.7
핀란드	20.5
포르투갈	18.7
스웨덴	18.1
영국	17.6
독일	17.5
네덜란드	16.8
노르웨이	16.3
슬로베니아	15.0
오스트리아	14.4
슬로바키아	14.0
벨기에	14.0
체코	13.8
아일랜드	13.3
프랑스	13.2
아이슬란드	13.0
캐나다	12.1
호주	12.0
미국	11.9
폴란드	11.3
스페인	11.1
스위스	10.4
룩셈브루크	10.2
이탈리아	9.0
그리스	8.3
멕시코	7.2
한국	6.0
OECD-27	13.8

- 주 1) 2000년대 중반 20~64세 인구 대비 자가 판정 장애인 비율임
-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 3) 각 국가별 인구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원자료를 참조
    - 최소한 6개월 동안 만성 건강문제로 일상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 호주 : 심오한(극심한) 또는 중도(가벼운) 핵심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 캐나다 : 건강 및 활동에 제한(가벼운 활동에서부터 아주 힘든 활동까지)이 있는 자
    - 덴마크·노르웨이 : 오랜 건강 문제 또는 장애가 있는 자
    - 한국 : 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
    - 멕시코 :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자
    - 네덜란드 : 임금근로를 수행하거나 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지속적인 불만,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자(직업적 장애)
    - 폴란드 : 법적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 스위스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
    - 영국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
    - 미국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일에 제한을 받는 자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원자료 : EU-SILC(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2007(Wave 4)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캐나다 - PALS(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2006

덴마크·노르웨이 - LFS(Labour Force Survey) 2005

한국 -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네덜란드 - LFS 2006

폴란드 - LFS 2004

스위스 - LFS 2008

영국 - LFS 2006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8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설명 보기 : 375페이지 참조

- 2000년대 중반 OECD 27개국의 20~64세 인구의 평균 장애인 출현율은 13.8%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6.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2〉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 연령별

구 분	20~34세	35~49세	50~64세	(단위 : %)
한국	2.6	5.1	13.3	
멕시코	4.5	6.8	13.9	
이탈리아	3.5	8.0	15.8	
아이슬란드	10.3	13.5	16.2	
스위스	5.0	9.7	16.9	
그리스	2.4	7.0	16.9	
룩셈브루크	4.0	10.1	17.2	
미국	6.1	10.5	19.8	
캐나다	5.6	11.1	19.9	
스페인	4.7	10.3	20.9	
벨기에	6.4	13.4	21.9	
프랑스	6.3	11.1	23.0	
호주	5.2	10.4	23.2	
아일랜드	6.7	11.3	23.6	
체코	5.7	11.6	23.6	
스웨덴	10.6	18.1	25.5	
폴란드	3.2	7.9	26.0	
네덜란드	9.0	15.5	26.1	
슬로베니아	5.6	12.8	26.5	
슬로바키아	5.2	11.1	26.5	
오스트리아	5.7	11.6	26.8	
노르웨이	8.5	13.2	27.2	
영국	8.8	15.4	29.5	
덴마크	12.7	18.6	29.9	
독일	7.1	14.2	30.4	
핀란드	10.5	17.4	32.4	
포르투갈	7.5	15.4	35.9	
헝가리	6.8	17.9	41.5	
에스토니아	10.3	19.1	42.8	
OECD-27	6.5	12.1	23.8	

주 1) 2000년대 후반 연령별 인구 대비 자가 판정 장애인 비율임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장애개념 및 원자료는 〈표 3-1-1〉 참조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2. 경제

〈표 3-1-3〉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구 분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단위 : 점)	
			2000년대	2000년대 중반
멕시코	-	1.03	1.03	1.03
아이슬란드	-	-	-	0.98
스위스	0.94	0.90	0.95	0.95
스웨덴	0.95	0.94	0.93	0.93
핀란드	0.89	0.83	0.91	0.91
노르웨이	-	-	-	0.91
슬로바키아	-	-	-	0.91
룩셈브루크	-	-	-	0.90
오스트리아	0.94	0.92	0.89	0.89
프랑스	0.89	0.88	0.89	0.89
덴마크	0.90	0.90	0.88	0.88
캐나다	0.79	0.83	0.87	0.87
네덜란드	0.93	0.93	0.87	0.87
그리스	0.80	0.76	0.87	0.87
독일	0.97	0.95	0.86	0.86
체코	-	-	-	0.86
이탈리아	0.87	0.88	0.85	0.85
슬로베니아	-	-	-	0.85
헝가리	-	-	-	0.84
스페イン	0.77	0.73	0.84	0.84
폴란드	-	0.86	0.83	0.83
한국	-	-	-	0.80
포르투갈	0.82	0.80	0.80	0.80
벨기에	0.96	1.07	0.79	0.79
에스토니아	-	-	-	0.76
영국	-	0.77	0.73	0.73
아일랜드	0.89	0.79	0.71	0.71
미국	0.67	0.66	0.69	0.69
호주	0.73	-	-	0.68
OECD-27	-	-	-	0.85

- 주 1) 근로가능연령(20~64세) 인구의 평균 소득 비율 대비 장애인 소득 수준임(전체 소득수준을 1로 가정)  
2) 소득은 가구크기에 상응하는 개인당 가치분소득을 말함

3)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원자료 : EU-SILC(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2005(Wave 2)

ECHP 2000, 1995 (Waves 7, 2)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1998

캐나다 - SLID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2005, 2000, 1995

덴마크 - SFI 데이터베이스 2005, 2002, 1995

핀란드 - IDS 데이터베이스 2005, 2000, 1995

한국 - 2006 한국복지패널연구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2000, 1996

노르웨이 - EU-SILC 2004

폴란드 - HBS(Household Budget Survey) 2004, 2000

스웨덴 - ECHP 1997

스위스 - SHS(Swiss Health Survey) 2002, 1997

영국 - FRS(Family Resource Survey) 2004, 2002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4, 2001, 1996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2000년대 중반 대부분의 OECD 국가의 20~64세 장애인의 소득은 국가 평균에서 1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20~30%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4〉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 경제활동상태별

구 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
멕시코	1.1	1.0		0.9
스웨덴	1.0	0.8		0.9
핀란드	1.0	0.7		0.9
노르웨이	1.1	0.6		0.8
슬로바키아	1.0	0.6		0.9
스위스	1.0	0.8		0.8
룩셈브루크	1.0	0.5		0.8
오스트리아	0.9	0.7		0.9
프랑스	1.0	0.8		0.8
덴마크	1.0	0.7		0.7
캐나다	1.1	0.5		0.7
네덜란드	1.0	0.7		0.8
그리스	1.0	0.6		0.8
독일	1.1	0.6		0.8
체코	1.1	0.6		0.8
이탈리아	1.0	0.6		0.8
헝가리	0.9	0.6		0.8
스페인	1.0	0.7		0.8
폴란드	1.4	0.5		0.8
한국	0.9	0.5		0.7
포르투갈	0.9	0.8		0.7
벨기에	0.9	0.6		0.7
영국	0.9	0.5		0.6
아일랜드	0.9	0.5		0.6
미국	0.9	0.7		0.6
호주	1.0	0.5		0.5
OECD-26	1.0	0.6		0.8

주 1) 2000년대 중반 근로가능연령(20~64세) 인구의 평균 소득 비율 대비 장애인 소득 수준임

2) OECD-26은 26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

3) 소득 개념 및 원자료는 〈표 3-1-3〉 참조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표 3-1-5〉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빈곤 비율

(단위 :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미국	47.6	24.0
호주	44.7	16.6
아일랜드	36.8	14.5
한국	35.6	14.6
캐나다	32.2	17.2
에스토니아	26.9	14.1
멕시코	25.5	23.9
포르투갈	25.5	15.1
슬로베니아	24.8	14.1
덴마크	24.8	15.0
스페인	24.1	17.4
영국	23.6	11.6
핀란드	21.6	12.6
이탈리아	21.2	15.4
독일	20.7	11.1
그리스	19.5	15.4
벨기에	18.8	10.8
폴란드	18.6	15.5
오스트리아	17.7	10.8
헝가리	17.5	12.5
프랑스	17.1	11.1
아이슬란드	16.4	15.8
룩셈브루크	16.0	10.8
체코	14.1	9.2
스위스	13.7	11.8
네덜란드	11.5	11.0
슬로바키아	11.3	12.1
노르웨이	10.8	11.4
스웨덴	10.4	12.2
OECD-27	22.1	14.1

주 1) 2000년대 중반 근로가능연령(20~64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비율임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원자료는 〈표 3-1-3〉 참조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3. 고용

〈표 3-1-6〉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단위 :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1990년대중반	2000년대	2000년대중반	1990년대중반	2000년대	2000년대중반
스웨덴	54.6	53.6	62.3	77.7	80.1	83.9
아이슬란드	-	-	61.3	-	-	86.4
에스토니아	-	-	55.8	-	-	82.2
멕시코	47.2	60.2	55.4	61.1	65.8	66.8
스위스	-	-	54.9	-	-	85.5
덴마크	55.7	50.1	52.3	79.1	81.6	81.6
룩셈브루크	-	49.7	50.4	-	71.7	71.3
독일	52.4	60.4	50.4	74.0	77.2	73.7
포르투갈	50.2	51.8	47.9	75.7	79.3	75.4
캐나다	-	43.8	46.9	-	76.9	79.0
프랑스	45.9	49.1	45.8	68.5	70.0	71.8
영국	38.0	42.1	45.3	81.2	80.9	81.4
한국	43.9	44.7	44.7	71.5	68.8	70.3
노르웨이	-	47.1	44.7	-	86.0	83.4
네덜란드	40.2	48.5	44.5	65.5	74.8	80.5
오스트리아	48.9	48.7	43.9	74.8	76.7	70.8
핀란드	48.4	54.4	43.5	69.7	77.3	76.8
슬로베니아	-	-	41.3	-	-	69.7
슬로바키아	-	-	41.1	-	-	74.0
이탈리아	34.9	32.8	40.7	58.3	59.1	63.7
호주	41.9	-	39.8	76.6	-	79.4
미국	40.4	35.1	38.5	84.7	83.6	83.9
벨기에	38.6	43.9	36.3	67.5	70.6	71.5
스페인	27.0	25.5	35.7	56.3	63.0	71.1
체코	-	-	35.0	-	-	73.1
그리스	35.0	31.7	34.2	62.5	65.0	67.0
아일랜드	25.7	33.6	32.9	60.0	71.5	72.7
헝가리	-	-	31.7	-	-	71.3
폴란드	24.8	21.0	17.6	70.7	66.7	62.1
OECD-27	-	-	43.6	-	-	75.1

주 1) OECD-27은 27개국의 고용률과 19개국의 대략 지난 10년간에 걸친 상대적인 고용률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평균을 말함(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2) 본 조사에서 근로가능연령은 20~64세로 봄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원자료 : EU-SILC 2007(Wave 4), ECHP 1995(Wave 2)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1998

캐나다 - PALS(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2006

덴마크 - LFS 2005, 1995

핀란드 - ECHP 1996

한국 - 장애인 실태조사(2005, 1995)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1996

네덜란드 - LFS 2006, 1995

노르웨이 - LFS 2005

폴란드 - LFS 2004, 1996

스웨덴 - ECHP 1997

스위스 - LFS 2008

영국 - LFS 2006, 1998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8, 1996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2000년대 중반 OECD 27개국의 평균 20~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43.6%, 비장애인은 75.1%로 나타나 장애인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20~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44.7%로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비장애인은 70.3%로 나타남

〈표 3-1-7〉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시간제 근로률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단위 : %)
네덜란드	41.1	26.9	
스위스	39.0	23.9	
아일랜드	38.4	23.9	
노르웨이	36.3	16.8	
폴란드	33.3	9.8	
미국	33.1	14.6	
호주	32.8	20.8	
영국	27.4	20.0	
벨기에	26.9	15.9	
독일	25.7	20.3	
스웨덴	22.0	7.4	
캐나다	21.8	12.5	
룩셈브루크	21.6	14.8	
프랑스	21.4	12.4	
멕시코	18.8	13.2	
아이슬란드	18.0	7.2	
한국	17.3	10.6	
이탈리아	16.7	12.4	
오스트리아	15.6	15.0	
덴마크	14.5	6.7	
그리스	14.3	10.6	
핀란드	13.4	9.2	
포르투갈	12.4	5.3	
슬로베니아	11.6	2.6	
스페인	10.2	8.8	
슬로바키아	9.5	1.6	
헝가리	8.4	3.2	
체코	8.4	1.7	
에스토니아	7.2	5.0	
OECD-27	22.1	12.8	

주 1) 시간제 근로란 일반적으로 주업에서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를 말함. 단, 미국의 경우 지난 4주간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를 말함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2000년 후반 기준임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원자료 : EU-SILC 2007(Wave 4)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캐나다 - PALS(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2006

한국 - 장애인 실태조사(2005)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노르웨이 - LFS 2005

폴란드 - LFS 2004

스위스 - LFS 2008

영국 - LFS 2006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8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2000년대 후반 OECD 27개국의 평균 장애인 시간제 근로률은 22.1%, 비장애인은 12.8%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시간제 근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국의 장애인 시간제 근로률은 17.3%, 비장애인은 10.6%로 OECD 평균 격차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8〉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실업률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단위 : %)
체코	28.3	9.4	
벨기에	27.7	9.3	
독일	23.1	9.2	
폴란드	21.8	19.0	
스페인	21.7	9.5	
아일랜드	20.1	7.3	
핀란드	19.5	8.4	
오스트리아	18.7	6.6	
그리스	18.0	9.4	
프랑스	17.7	8.5	
포르투갈	15.7	9.5	
헝가리	14.4	9.6	
슬로바키아	14.1	8.0	
룩셈브루크	12.8	3.9	
이탈리아	11.6	8.5	
한국	11.3	3.6	
캐나다	9.0	5.8	
스위스	8.4	2.7	
슬로베니아	27.4	9.8	
네덜란드	8.0	3.4	
호주	7.8	4.2	
스웨덴	7.6	3.7	
덴마크	7.6	4.5	
영국	7.4	4.2	
노르웨이	6.9	3.7	
미국	6.5	4.7	
에스토니아	8.2	4.6	
멕시코	2.7	2.5	
아이슬란드	1.2	1.0	
OECD-27	13.7	6.7	

주 1)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2) 2000년대 중반 20~64세 기준임

3) 원자료는 〈표 3-1-6〉 참조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4. 교육

〈표 3-1-9〉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단위 :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포르투갈	86.8	64.4
그리스	69.1	34.2
스페인	67.4	42.9
아일랜드	65.3	30.5
이탈리아	62.1	43.9
프랑스	46.5	24.4
룩셈브루크	44.7	32.3
호주	44.7	28.1
덴마크	42.3	23.7
벨기에	39.8	18.0
네덜란드	39.6	22.1
아이슬란드	39.1	27.6
슬로베니아	32.7	16.5
노르웨이	32.0	20.5
핀란드	29.7	16.2
헝가리	29.3	15.4
영국	28.2	12.6
오스트리아	27.4	14.7
스위스	27.0	12.2
캐나다	25.5	13.9
폴란드	25.3	10.5
에스토니아	21.0	9.7
미국	20.3	10.0
스웨덴	19.8	11.8
체코	19.4	8.0
독일	18.7	13.5
슬로바키아	14.1	5.0
OECD-25	38.6	22.2

주 1) 2000년대 후반 낮은 학력수준(상등중등교육 미만의 학업성취에 해당하는 저학력 수준(ISCED 0-2))을 가진 근로가능연령 인구(20-64세)의 비율임

2) OECD-25는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원자료는 〈표 3-1-1〉 참조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 5. 복지

〈표 3-1-10〉 OECD 각 국가별 GDP 대비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지출

(단위 : %)

구 분	장애급여			상병급여			장애급여 + 상병급여		
	1990년	2000년	2007년	1990년	2000년	2007년	1990년	2000년	2007년
호주	1.1	1.2	1.2	0.4	1.7	1.2	1.5	2.9	2.4
오스트리아	2.1	2.2	1.6	1.3	1.1	1.0	3.4	3.3	2.6
벨기에	1.4	1.2	1.3	1.4	0.7	0.8	2.8	1.9	2.1
캐나다	0.4	0.4	0.4	0.1	0.1	0.1	0.5	0.5	0.5
체코	1.2	1.1	1.2	1.0	1.2	0.9	2.3	2.3	2.2
덴마크	1.6	1.5	1.8	1.4	1.1	1.4	2.9	2.6	3.1
핀란드	2.1	1.9	1.8	1.5	1.2	1.2	3.7	3.0	2.9
프랑스	0.9	0.8	0.7	0.6	0.7	0.7	1.6	1.5	1.4
독일	1.3	1.3	1.1	1.9	1.6	1.3	3.2	2.9	2.4
그리스	1.0	0.7	0.7	0.8	0.7	0.5	1.9	1.4	1.2
헝가리	-	0.2	1.3	-	0.7	0.6	-	1.0	1.9
아이슬란드	0.9	1.7	2.1	1.5	1.4	1.5	2.3	3.1	3.6
아일랜드	0.5	0.6	0.8	0.8	0.6	0.8	1.3	1.1	1.6
이탈리아	1.2	0.9	0.7	0.9	0.7	0.5	2.1	1.6	1.2
일본	0.3	0.3	0.4	0.1	0.1	0.1	0.4	0.4	0.4
한국	0.1	0.2	0.2	0.1	0.1	0.1	0.2	0.3	0.3
룩셈브루크	2.0	1.7	1.0	0.6	0.6	0.8	2.6	2.3	1.8
멕시코	0.0	0.0	0.0	0.0	0.0	0.0	0.0	0.0	0.0
네덜란드	4.7	2.7	2.1	2.9	2.2	1.6	7.6	4.9	3.7
뉴질랜드	0.6	0.9	0.9	0.3	0.3	0.3	0.9	1.2	1.3
노르웨이	2.5	2.3	2.5	2.6	2.7	2.3	5.1	5.1	4.8
폴란드	2.1	2.0	1.2	0.7	0.7	0.6	2.8	2.7	1.8
포르투갈	1.7	1.7	1.7	0.0	0.0	0.0	1.7	1.7	1.7
슬로바키아	-	0.9	0.8	-	1.0	0.3	-	1.9	1.2
스페인	1.2	1.2	1.2	1.0	1.0	1.1	2.2	2.2	2.3
스웨덴	1.9	2.0	2.2	3.1	2.0	1.4	5.0	4.1	3.6
스위스	1.0	1.8	1.9	1.2	1.1	1.0	2.2	2.8	2.9
터키	0.1	0.1	0.1	0.0	0.0	0.0	0.1	0.2	0.1
영국	1.6	2.0	1.9	0.6	0.7	0.4	2.2	2.8	2.3
미국	0.7	0.9	1.0	0.8	0.6	0.7	1.5	1.5	1.7
OECD	1.3	1.2	1.2	1.0	0.9	0.8	2.3	2.1	2.0

- 주 1) 장애급여는 공공 및 민간 장애급여를 모두 포함하고, 상병급여는 공공 및 병가 프로그램(산업재해로 인한 상해 및 기타 질병에 의한 일일 비용)으로 지출되는 민간급여를 모두 포함함
- 2) 2007년 호주 자료는 2005년 자료로 대체함
- 3) 캐나다에 대한 데이터는 장애 지정과 지역 사회보조수당에 대한 지출(대략 지출수치의 2배가 되는)과 자발적인 민간의 장기적 장애계획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원자료 : OECD,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http://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2007년 OECD 국가의 장애보상에 대한 지출은 GDP의 1.2% 수준(상병급여까지 합치면 2%)인 반면, 한국은 0.2%(상병급여까지 합치면 0.3%)로 낮은 수준임

〈표 3-1-11〉 OECD 각 국가별 근로기능연령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구 분	연 도	비 율	연 도	비 율
헝가리	2000년	12.2	2008년	11.6
스웨덴	1995년	8.2	2008년	10.3
노르웨이	1995년	7.7	2008년	10.3
핀란드	1995년	10.0	2008년	8.5
에스토니아	1995년	6.2	2008년	8.3
네덜란드	1999년	9.4	2008년	8.2
덴마크	1995년	7.4	2008년	7.2
폴란드	2004년	9.2	2007년	7.2
체코	1995년	6.8	2008년	7.0
영국	1995년	7.0	2007년	7.0
아일랜드	2001년	5.2	2008년	6.5
미국	1995년	4.7	2008년	6.2
벨기에	1996년	4.8	2008년	6.1
슬로바키아	1995년	6.7	2007년	5.5
호주	1995년	4.2	2008년	5.4
스위스	1995년	3.7	2008년	5.3
그리스	2005년	4.2	2008년	5.1
슬로베니아	2000년	4.7	2008년	5.0
이스라엘	1999년	4.1	2007년	4.9
룩셈브루크	1995년	7.2	2005년	4.9
포르투갈	1995년	6.5	2008년	4.6
오스트리아	1995년	4.9	2007년	4.6
캐나다	1996년	4.3	2007년	4.4
독일	1995년	4.2	2008년	3.9
뉴질랜드	1995년	2.4	2008년	3.8
스페인	1995년	3.1	2007년	3.8
프랑스	1995년	2.9	2007년	3.7
이탈리아	2000년	3.2	2007년	3.3
일본	2003년	1.9	2008년	2.1
한국	1995년	0.1	2008년	1.6
멕시코	1995년	0.7	2008년	0.6
OECD-28	-	5.5	2008년(최근년도)	5.7

- 주 1) 1990년대 중반과 가능한 최근 연도의 28개 OECD 회원국과 3개 가맹국의 20~64세 인구의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임
- 2) OECD-28은 28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
- 3)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관계당국에 의해 그리고 그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됨. OECD에 의한 자료의 사용은 국제법의 조건 아래서 골란고원, 동부 예루살렘, 웨스트뱅크(요르단 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지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사용됨
- 4) 형가리에 대한 데이터는 심각한 건강상 장애를 요하고 등등한 기회를 촉진하고자 하는 세 가지의 다른 비-기여 급여들 모두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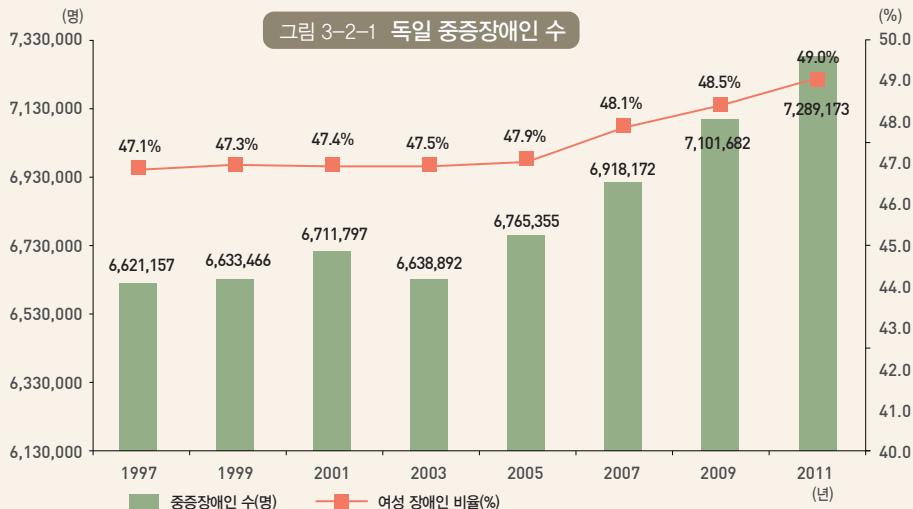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2008년(또는 최근년도) OECD 20~64세 인구의 약 6%가 장애급여를 받고 있으며, 한국, 멕시코는 2% 이하 수준임

## 제2절 독일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주 :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장애인으로서 담당기관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함

자료 | 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2012.



주 :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일부 공공기관 6%)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1. 장애인구

〈표 3-2-1〉 독일 중증장애인 수

(단위 : 명)

구 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전 체	6,621,157	6,633,466	6,711,797	6,638,892	6,765,355	6,918,172	7,101,682	7,289,173
남 성	3,501,132	3,497,458	3,530,018	3,485,341	3,527,983	3,587,250	3,658,107	3,733,913
여 성	3,120,025	3,136,008	3,181,779	3,153,551	3,237,372	3,330,922	3,443,575	3,555,260

주 : 독일에서 장애판정의 기준은 “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Gutachtertätigkeit”(장애의 의학적 판정을 위한 기준)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 장애 영역별로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 GdB)에 따라 1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나뉘어 있다.

- 장애가 있는 사람 :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이 6개월 이상 그 연령에 전형적인 상태 외는 차이가 상당하고 사회에서의 생활참여에 지장이 있는 사람
-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장애인으로서 담당기관(부양사무소, Versorgungsamt)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사람(주로 의학적 판단)
- 준중증장애인 : 장애정도가 30 이상 50 미만인 장애인 중에서 장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중증장애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사무소(Arbeitsamt)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학적 판단 + 직업재활적 접근)

자료 : 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76페이지

- 2011년 독일의 중증장애인 수는 7,289,173명으로 전체인구의 8.9%에 해당하고 남성은 3,733,913명(51%), 여성은 3,555,260(49%)명으로 나타남

〈표 3-2-2〉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연령별

(단위 : 명, %)

구 分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전 체	6,621,157	6,633,466	6,711,797	6,638,892	6,765,355	6,918,172	7,101,682	7,289,173
15세 미만	126,347	127,431	127,161	123,985	120,213	120,227	123,319	126,558
15~24세	128,186	132,596	138,987	146,680	153,064	157,075	160,405	162,679
25~34세	268,036	247,819	227,247	210,406	200,061	200,510	210,081	223,679
35~44세	415,801	442,721	464,455	476,492	468,581	447,270	417,603	390,234
45~54세	661,851	665,975	734,219	770,516	794,660	826,264	874,509	916,329
55~64세	1,632,117	1,611,454	1,552,336	1,485,261	1,424,805	1,410,756	1,452,236	1,579,000
65세 이상	3,388,819	3,405,470	3,467,392	3,425,552	3,603,971	3,756,070	3,863,529	3,890,694

자료 : 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표 3-2-3〉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단위 : 명, %)

구 分	중증장애인 수	비 율
전 체	7,289,173	100.0
팔다리의 일부 혹은 전체 손실	64,332	0.9
팔다리 기능 장애	976,663	13.4
척추, 몸통 장애 및 흉부계 기형	867,029	11.9
시각 장애	350,655	4.8
언어 장애, 청각 장애, 평형감각 장애	305,135	4.2
한쪽 또는 양쪽 유방 손실, 기타 유방 장애	179,391	2.5
내부기관 장애	1,806,355	24.8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 장애, 중독 장애	1,459,841	20.0
기타 장애	1,279,772	17.6

주 :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2011년 독일 중증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5세 미만' 1.7%, '15~24세' 2.2%, '25~34세' 3.0%, '35~44세' 5.4%, '45~54세' 12.6%, '55~64세' 21.7%, '65세 이상' 53.4%로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4〉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50	60	70	80	90	100
1999년	중증장애인 수	6,633,466	1,942,333	1,065,083	775,890	855,724	355,969	1,638,467
	비 율	100.0	29.3	16.1	11.7	12.9	5.4	24.7
2001년	중증장애인 수	6,711,797	2,005,326	1,071,372	772,737	840,886	353,681	1,667,795
	비 율	100.0	29.9	16.0	11.5	12.5	5.3	24.8
2003년	중증장애인 수	6,638,892	2,039,827	1,062,939	756,466	815,512	343,392	1,620,756
	비 율	100.0	30.7	16.0	11.4	12.3	5.2	24.4
2005년	중증장애인 수	6,765,355	2,044,599	1,098,587	770,049	828,419	351,423	1,672,278
	비 율	100.0	30.2	16.2	11.4	12.2	5.2	24.7
2007년	중증장애인 수	6,918,172	2,093,757	1,119,760	778,112	842,713	359,683	1,724,417
	비 율	100.0	30.3	16.2	11.2	12.2	5.2	24.9
2009년	중증장애인 수	7,101,682	2,170,575	1,143,002	791,562	861,327	369,167	1,766,049
	비 율	100.0	30.6	16.1	11.1	12.1	5.2	24.9
2011년	중증장애인 수	7,289,173	2,286,617	1,173,261	809,208	876,456	375,098	1,768,533
	비 율	100.0	31.4	16.1	11.1	12.0	5.1	24.3

주 1)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 GdB)는 50에서 100으로 갈수록 중증임

2)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표 3-2-5〉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원인별

(단위 : 명, %)

구 분	중증장애인 수	비 율
전 체	7,289,173	100.0
선천적 원인	301,368	4.1
일반적 질병	6,079,359	83.4
산업재해 및 직업병	69,069	0.9
교통사고	38,925	0.5
가정 내 사고	7,322	0.1
그밖의 사고	25,175	0.3
전쟁, 군복무 및 대체복무 중 상해	46,357	0.6
기타	721,588	9.9

주 :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2011년 독일 중증장애인의 장애정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중증장애인의 24.3%가 장애정도(GdB) 100에 해당하는 가장 중한 중증장애인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장애정도별 비율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장애의 원인을 보면, 전체 중증장애인의 83.4%가 '일반적 질병'으로 인한 것이고 '선천적 원인'은 4.1%임

## 2. 고용

### 가. 경제활동상태

〈표 3-2-6〉 독일 중증장애인의 실업자 수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실업자 수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비 올
2001년	3,852,564	171,351	4.4
2002년	4,061,345	156,909	3.9
2003년	4,376,795	167,877	3.8
2004년	4,381,281	173,948	4.0
2005년	4,860,880	194,000	4.0
2006년	4,487,057	197,900	4.4
2007년	3,776,425	176,991	4.7
2008년	3,267,943	164,138	5.0
2009년	3,423,283	167,379	4.9
2010년	3,238,421	175,254	5.4

자료 :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나. 고용서비스

〈표 3-2-7〉 독일 통합사무소 지출

(단위 : 백만유로)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체	393.13	351.23	341.99	334.13	369.80
노동시장 프로그램	14.51	11.16	6.86	11.44	15.83
중증장애인	26.13	24.22	25.02	27.30	30.93
고용주 지원	156.69	145.01	131.65	123.13	139.24
통합 프로젝트	46.85	46.73	45.94	47.65	56.41
기관지원	138.96	114.67	124.23	115.68	117.96
교육과 홍보	5.25	4.97	4.52	4.99	5.45
연구	2.92	2.46	1.87	2.20	3.76
기타	1.82	2.01	1.89	1.74	2.22

자료 :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3. 고용의무 현황

〈표 3-2-8〉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구 분	(단위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체	3.8	3.8	4.0	4.1	4.2	4.3	4.2	4.3	4.5	4.5
민간부문	3.4	3.4	3.6	3.7	3.7	3.7	3.7	3.7	3.9	4.0
공공부문	5.1	5.2	5.4	5.6	5.7	5.9	6.0	6.1	6.3	6.4

주 1)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2)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기관들은 6%임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표 3-2-9〉 독일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구 分	(단위 :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체	5.2	5.4	5.6	5.7	5.9	6.0	6.1	6.3	6.4	
연방 최고기관	5.3	5.3	5.2	5.9	5.9	5.9	6.5	6.5	6.7	
연방기관(고용의무율 6% 기관)	7.2	7.9	-	7.3	8.5	8.6	8.9	9.1	9.3	
주(州) 최고기관	4.6	4.8	4.9	5.1	5.3	5.4	5.5	5.7	5.8	
기타 공공기관	5.4	5.6	5.7	5.9	6.0	6.1	6.2	6.3	6.4	
기타 공공기관(고용의무율 6% 기관)	7.0	8.1	8.0	8.4	8.2	8.2	8.4	8.3	8.6	

주 1)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한 일부 기관의 법정 고용의무율은 6%이며, 그 외는 5%를 적용함

2) 공공부문은 아래의 기관을 의미함

- 모든 최고연방기관과 그 하위기관, 연방대통령실, 연방의회와 연방참의회의 사무처, 연방현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 연방법원, 연방검찰청, 연방철도청
- 모든 최고 주(州)기관과 정무 및 주지사청, 그 하위기관, 주(州)의회의 사무처, 감사원, 주(州)현법기관과 기타 인사행정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주(州)기관
- 기타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지방단체의 연합체
- 기타 모든 공법(公法) 상 법인(法人), 공단(公團), 재단(財團)을 의미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표 3-2-10〉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규모별

구 분	(단위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체	3.8	3.8	4.0	4.1	4.2	4.3	4.2	4.3	4.5	4.5
20~40인 미만	2.6	2.6	2.6	2.7	2.7	2.8	2.6	2.7	2.8	2.8
40~60인 미만	2.8	2.8	2.8	2.9	2.9	3.0	2.8	2.9	3.0	3.0
60~250인 미만	3.3	3.2	3.4	3.4	3.5	3.5	3.4	3.5	3.6	3.7
250~500인 미만	3.7	3.7	3.9	4.0	4.0	4.0	4.0	4.0	4.2	4.2
500~1,000인 미만	3.9	3.9	4.1	4.3	4.3	4.4	4.4	4.4	4.6	4.7
1,000~1,250인 미만							4.5	4.7	4.8	4.9
1,250~1,500인 미만						4.4 <sup>3)</sup>	4.2	4.3	4.5	4.6
1,500~2,000인 미만	4.2 <sup>3)</sup>	4.2 <sup>3)</sup>	4.3 <sup>3)</sup>	4.4 <sup>3)</sup>	4.6 <sup>3)</sup>		4.3	4.3	4.8	4.8
2,000~3,000인 미만							4.8	5.0	5.0	5.2
3,000~5,000인 미만						5.0	4.9	5.0	5.3	5.4
5,000~10,000인 미만		4.4	4.6	5.3	4.9	5.0	4.9	4.9	5.1	5.4
10,000~50,000인 미만	4.5	4.6	4.8	4.7	5.0	5.1	5.4	5.6	5.8	6.0
50,000~100,000인 미만	4.3	4.1	4.8	5.0	4.5	4.7	4.9	5.0	5.3	5.3
100,000인 이상	5.1	4.8	5.2	5.4	5.8	6.0	5.9	6.0	6.2	6.4

주 1)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2)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기관들은 6%임

3) 연도별로 규모 분류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 비교 시 유의

- 2001년 1,000~10,000인 미만, 2002~2005년 1,000~5,000인 미만, 2006년 1,000~2,000인 미만 분류 적용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의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2010년의 경우 2,000인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대체적으로 5%가 넘는 것으로 보임

〈표 3-2-11〉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구 분	(단위 :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체	3.8	4.0	4.1	4.2	4.3	4.2	4.3	4.5	4.5	
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2.9	3.0	3.1	3.2	4.2	2.9	2.8	2.9	3.0	
광업	4.8	10.0	14.6	10.9	11.1	5.8	6.0	6.3	6.6	
제조업	3.8	3.8	3.9	4.0	4.1	4.1	4.1	4.3	4.4	
에너지·수도사업	4.7	5.0	5.1	5.1	5.4	5.4	5.3	5.4	5.6	
건설업	2.5	2.7	2.8	3.0	3.1	2.7	2.8	2.9	3.0	
도·소매업, 자동차판매 및 수리업	2.6	3.1	3.1	3.8	3.2	2.9	2.9	3.1	3.1	
숙박업	2.1	2.3	2.3	2.4	2.6	2.3	2.5	3.1	2.6	
운수 및 보관업	3.3	3.8	4.2	4.2	4.3	3.9	3.7	4.5	4.7 <sup>6)</sup>	3.1 <sup>6)</sup>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신용 및 보험업)	3.3	3.5	3.6	3.7	3.8	3.9	3.9	4.1	4.2	
부동산업·임대업 (부동산업·임대업, 기업대상 서비스업)	3.1	2.8	2.7	2.7	2.7	3.1	4.5	4.6	4.8	
학문, 기술 서비스	-	-	-	-	-	3.0	3.3	4.1 <sup>4)</sup>	4.2	
기타 경제 서비스	-	-	-	-	-	-	-	2.7 <sup>4)</sup>	2.7	
공공행정, 방위, 사회보험	5.3	5.9	5.9	6.1	6.4	6.2	6.4	6.6	6.7	
교육 및 교육업	4.5	4.3	4.5	4.5	4.6	4.5	4.4	4.5	4.4	
예술, 여가 산업	4.3	4.6	4.7	4.8	4.9	4.9	4.8	3.8 <sup>5)</sup>	3.8	
보건, 복지 부문 (공공서비스부문)	-	-	-	-	-	-	-	4.9 <sup>5)</sup>	5.0	
기타 (개인서비스부문)	3.9	4.3	4.4	4.4	4.6	5.3	5.1	4.5	3.3	

주 1)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2)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기관들은 6%임

3) ( )안은 과거 산업분류 기준으로, 2007년부터 현 산업분류를 적용함에 따라 자료 비교 시 유의  
- 교육-/기술-/경제서비스의 경우 2007년 적용된 산업분류임에 따라 과거 자료 없음

4) 2009년 이전엔 한 항목으로 묶여 있었음. 자료 비교시 유의

5) 2009년 이전엔 한 항목으로 묶여 있었음. 자료 비교시 유의

6) 2010년 이전엔 한 항목으로 묶여 있었음. 자료 비교시 유의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독일의 2010년 중증장애인 고용률의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방위, 사회보험’, ‘광업’, ‘에너지·수도사업’, ‘보건·복지부문’이 법정 고용의무를 5%를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12〉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0년)

(단위 : 명, %)

구 분	고용주	적용대상 근로자 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고용률
전 체	139,555	20,513,512	990,386	931,059	4.5
민간부문	128,549	15,695,522	748,591	623,048	4.0
공공부문	11,006	4,817,990	241,795	308,011	6.4

주 1)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2)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기관들은 6%임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 : 375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표 3-2-13〉 독일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0년)

(단위 : 명, %)

구 分	적용대상 근로자 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고용률
전 체	4,817,990	241,795	308,011	6.4
연방 최고기관	109,436	5,460	7,367	6.7
연방기관(고용의무율 6% 기관)	170,535	10,232	15,933	9.3
주(州) 최고기관	1,756,579	87,825	102,499	5.8
기타 공공기관	2,626,782	129,060	168,860	6.4
기타 공공기관(고용의무율 6% 기관)	154,658	9,219	13,352	8.6

주 1)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한 일부 기관의 법정 고용의무율은 6%이며, 그 외는 5%를 적용함

2) 공공부문의 범위는 〈표 3-2-9〉 참조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독일의 2010년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4.5%로 법정 고용의무율(5~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의 고용률은 6.4%로 민간부문의 고용률 4.0%에 비해 약 2.4%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14〉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고용주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체	151,595	151,865	132,091	123,972	119,162	113,485	131,919	135,525	137,244	139,555
전체 고용의무 고용주 가운데 고용률 0% 고용주 수	59,225	58,210	39,766	35,078	32,341	30,820	37,955	37,816	37,550	37,574
고용률 0% 고용주 비율	39.1	38.3	30.1	28.3	27.1	27.2	28.8	27.9	27.4	26.9

자료 :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표 3-2-15〉 독일 조정금 납부 고용주 현황

구 分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중증장애인 고용률	3.8	3.8	4.0	4.1	4.2	4.3	4.2	4.3	4.5	4.5
고용주 수	151,595	151,865	132,091	123,972	119,162	113,485	131,919	135,525	137,244	139,555
고용의무 미이행 고용주 수	120,702	120,385	106,013	98,243	93,505	88,189	104,710	106,872	106,653	107,914
고용의무 미이행 고용주 비율	79.6	79.3	80.3	79.2	78.5	77.8	79.4	78.9	77.7	77.3

주 : 고용의무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은 물론 국가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의 고용주도 매월 미고용된 부분만큼의 조정금을 납부함

자료 :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조정금'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표 3-2-16〉 독일 조정금 수입 규모

구 分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조정금	588.19	573.19	525.78	489.71	466.33	478.89	519.5	518.15	466.50

주 : 조정금 수입 규모는 조정금 기금으로 이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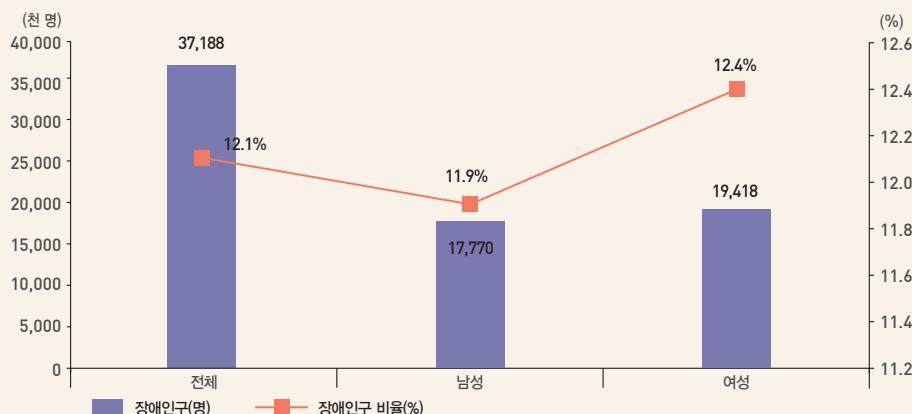
▣ '조정금'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고용률이 0%인 고용주는 2001년 39.1%에서 2010년 26.9%로 감소하였으며,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정금을 납부하는 고용주는 2001년 79.6%에서 2010년에는 77.3%로 소폭 감소함

## 제 3절 미국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그림 3-3-1 미국 장애인 수



주 1) 청각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보행장애, 자기관리(self-care)장애,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장애  
2) 2011년 기준임

그림 3-3-2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1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2.

## 1. 장애인구

〈표 3-3-1〉 미국 장애인 수 - 성별

구 분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전 체	306,560,685(100.0)	37,188,115(12.1)	269,372,570(87.9)
남 성	149,631,235(100.0)	17,770,227(11.9)	131,861,008(88.1)
여 성	156,929,450(100.0)	19,417,888(12.4)	137,511,562(87.6)

주 1) 장애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보행장애, 자기관리(self-care)장애,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장애를 말함

2) 각 수치는 추정치임

3) 2011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1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5페이지 참조

〈표 3-3-2〉 미국 장애인 수 - 연령별

구 분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전 체	306,560,685(100.0)	37,188,115(12.1)	269,372,570(87.9)
5세 미만	20,064,356(100.0)	166,470(0.8)	19,897,886(99.2)
5~17세	53,710,173(100.0)	2,780,158(5.2)	50,930,015(94.8)
18~64세	192,699,903(100.0)	19,582,613(10.2)	173,117,290(89.8)
65세 이상	40,086,253(100.0)	14,658,874(36.6)	25,427,379(63.4)

주 1) 장애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보행장애, 자기관리(self-care)장애,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장애를 말함

2) 각 수치는 추정치임

3) 2011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1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5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의 수는 37,188,115명으로 전체 지역사회 거주 인구의 12.1%를 차지
  - 전체 장애인 수 중에서 여성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2.2%로 남성장애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인구에 비해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3〉 미국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인 원	비 율
청 각	10,474,872	14.5
시 각	6,623,262	9.2
인 지	14,078,648	19.5
보 행	19,892,572	27.6
자기관리	7,682,209	10.6
자립생활	13,437,594	18.6

주 1)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 자기관리장애인은 5세 이상, 자립생활장애인은 18세 이상임

2) 각 수치는 추정치임

3) 중복장애인 포함

4) 2011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1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5페이지 참조

〈표 3-3-4〉 미국 장애인 수 -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5세 미만		5~17세 미만		18~64세 미만		65세 이상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청 각	10,474,872	100.0	116,904	4.3	338,782	3.2	3,988,796	38.1	6,030,390	57.6
시 각	6,623,262	100.0	98,433	7.7	419,949	6.3	3,377,037	51.0	2,727,843	41.2
인 지	14,078,648	100.0	-	-	2,096,304	14.9	8,198,444	58.2	3,783,900	26.9
보 행	19,892,572	100.0	-	-	350,779	1.8	10,071,515	50.6	9,470,278	47.6
자기관리	7,682,209	100.0	-	-	503,959	6.6	3,682,054	47.2	3,550,196	46.2
자립생활	13,437,594	100.0	-	-	-	-	6,946,046	51.7	6,491,548	48.3

주 1)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 자기관리장애인은 5세 이상, 자립생활장애인은 18세 이상임

2) 각 수치는 추정치임

3) 중복장애인 포함

4) 2011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1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5페이지 참조

-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보행장애의 비율이 다른장애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체적으로 「18~64세」의 장애유형별 인원의 비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청각장애는 「65세 이상」 57.6%, 「18~64세 미만」 38.1%, 「5세 미만」 4.3%, 「5~17세 미만」 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 경제

〈표 3-3-5〉 미국 장애인의 빈곤수준

(단위: 명, %)

구 分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16세 이상						
전 체	238,696,314	100	34,611,534	14.5	204,084,780	85.5
100% 미만	33,656,180	100	7,510,703	22.3	26,145,477	77.7
100~149%	21,960,061	100	5,053,284	23.0	16,906,777	77.0
150% 이상	183,080,073	100	22,047,547	12.0	161,032,526	88.0

주 1) 각 수치는 추정치임

2) 2011년 기준임

3) 2012년 48개 주와 콜롬비아주의 빈곤 가이드라인

연방빈곤수준의 100%(2인가족 기준: \$15,130, 3인가족 기준: \$19,090, 4인가족 기준: \$23,050)

연방빈곤수준의 150%(2인가족 기준: \$22,695, 3인가족 기준: \$28,635, 4인가족 기준: \$34,575)

자료 : U.S. Census Bureau, 「2011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5페이지 참조

☞ '수입, 빈곤층' 설명 보기 : 377페이지 참조

〈표 3-3-6〉 미국 장애인의 소득수준

(단위: 명, %)

구 分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16세 이상						
전 체	157,420,883	100	9,310,327	5.9	148,110,556	94.1
\$1~\$4,999 미만	18,261,344	100	1,661,652	9.1	16,599,692	90.9
\$5,000~\$14,999	26,604,030	100	2,164,306	8.1	24,439,724	91.9
\$15,000~\$24,999	24,242,806	100	1,428,652	5.9	22,814,154	94.1
\$25,000~\$34,999	20,779,451	100	1,087,239	5.2	19,692,212	94.8
\$35,000~\$49,999	23,298,194	100	1,239,929	5.3	22,058,265	94.7
\$50,000~\$74,999	22,825,921	100	1,050,343	4.6	21,775,578	95.4
\$75,000 이상	21,409,137	100	678,206	3.2	20,730,931	96.8

주 1) 소득은 지난 12개월간 소득전체를 말함

2) 각 수치는 추정치이며, 2011년 물가조정 달러임

3) 2011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1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5페이지 참조

☞ '수입, 빈곤층' 설명 보기 : 377페이지 참조

〈표 3-3-7〉 미국 장애인의 중위소득

(단위 : 달러)

구 분	전 체
장애인	19,735
비장애인	30,285

주 1) 소득은 16세 이상의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일정하게 얻는 수입으로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제구입비, 노조회비, 의료보험공제 등 공제 전 급여 또는 임금을 말함

2) 지난 12개월 중위소득임

3) 각 수치는 추정치이며, 2011년 물가조정 달러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1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5페이지 참조

〈표 3-3-8〉 미국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 연령별

(단위 : 명, %)

구 分	18세 미만		18~64세		65세 이상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전 체	2,954,635 (100.0)	71,062,889 (100.0)	19,048,426 (100.0)	172,089,634 (100.0)	14,351,651 (100.0)	24,780,601 (100.0)
건강보험 적용	2,800,867 (94.8)	65,298,269 (91.9)	15,630,151 (82.1)	134,605,179 (78.2)	14,251,969 (99.3)	24,493,179 (98.8)
개인의료보험	1,279,601	42,834,116	8,183,188	121,885,962	8,820,803	17,264,874
공공의료보험	1,786,195	24,828,882	9,621,163	16,277,332	14,114,632	23,746,855
건강보험 비적용	153,768 (5.2)	5,764,620 (8.1)	3,418,275 (17.9)	37,484,455 (21.8)	99,682 (0.7)	287,422 (1.2)

주 1) 각 수치는 추정치임

2) 2010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0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5페이지 참조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난 12개월 동안 개인 중위소득을 보면, 장애인은 19,735달러, 비장애인은 30,285달러로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18~64세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은 82.1%, 비장애인은 78.2%로 장애인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 고용

〈표 3-3-9〉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천명, %)

구 분	16~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전체	199,889	146,504	133,222	13,282	53,385	73.3	9.1	66.6
장애인	15,047	4,854	4,067	787	10,193	32.3	16.2	27.0
비장애인	184,842	141,650	129,155	12,495	43,192	76.6	8.8	69.9

주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6~64세 인구)×100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취업자/16~64세 이상 인구)×100

4) 2011년 기준임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5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77페이지 참조

〈표 3-3-10〉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장애유형별

(단위 : 명, %)

구 분	18~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청각	3,924,360	2,253,198	1,928,750	324,448	1,671,162	57.4	14.4	49.1
시각	3,209,067	1,476,245	1,194,184	282,061	1,732,822	46	19.1	37.2
인지	7,943,002	2,597,495	1,855,059	742,436	5,345,507	32.7	28.6	23.4
보행	9,856,708	3,015,239	2,405,715	609,524	6,841,469	30.6	20.2	24.4
자기관리	3,444,202	711,152	563,110	148,042	2,733,050	20.6	20.8	16.3
자립생활	6,648,058	1,404,072	1,051,918	352,154	5,243,986	21.1	25.1	15.8

주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8~64세 이상 인구)×100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취업자/18~64세 이상 인구)×100

4) 2010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0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1.

-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73.3%, 66.6%, 9.1%인 반면 장애인은 32.3%, 27.0%, 16.2%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은 76.6%, 69.9%, 8.8%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인지장애의 실업률(28.6%)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립생활장애(25.1%), 자기관리장애(20.8%), 보행장애(20.2%), 시각장애(19.1%), 청각장애(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11〉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월별

(단위 : 천명, %)

구 分	16세 이상 장애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소 계	취업자	실업자				
2010.10	26,545	5,682	4,842	840	20,863	21.4	14.8	18.2
2010.11	26,886	5,784	4,945	839	21,102	21.5	14.5	18.4
2010.12	26,984	5,679	4,869	810	21,305	21	14.3	18
2011. 1	26,885	5,406	4,669	737	21,479	20.1	13.6	17.4
2011. 2	27,179	5,592	4,730	862	21,587	20.6	15.4	17.4
2011. 3	27,631	5,794	4,891	903	21,836	21	15.6	17.7
2011. 4	27,603	5,699	4,873	827	21,904	20.6	14.5	17.7
2011. 5	27,669	5,828	4,917	911	21,841	21.1	15.6	17.8
2011. 6	27,665	5,903	4,903	1,000	21,762	21.3	16.9	17.7
2011. 7	27,278	5,773	4,802	970	21,505	21.2	16.8	17.6
2011. 8	27,431	5,774	4,842	932	21,657	21	16.1	17.7
2011. 9	27,355	5,770	4,843	927	21,585	21.1	16.1	17.7
2011.10	27,214	5,802	5,037	765	21,412	21.3	13.2	18.5
2011.11	27,331	5,676	4,938	738	21,655	20.8	13	18.1
2011.12	27,339	5,652	4,889	763	21,687	20.7	13.5	17.9
2012. 1	27,482	5,502	4,792	710	21,979	20.0	12.9	17.4
2012. 2	27,882	5,542	4,665	878	22,280	19.9	15.8	16.8
2012. 3	28,158	5,671	4,810	861	22,487	20.1	15.2	17.1
2012. 4	28,209	5,736	5,021	715	22,473	20.3	12.5	17.8
2012. 5	28,059	5,821	5,068	752	22,238	20.7	12.9	18.1

주 1) 계절조정 안함

2) 경제활동 참가율(%)=(경제활동인구/16~64세 인구)×100

3)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4) 고용률(%)=(취업자/16세 이상 인구)×100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6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77페이지 참조

#### 4. 교육

〈표 3-3-12〉 미국 장애인의 교육수준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25세 이상						
전 체	202,409,797	100	32,566,634	16.1	169,843,163	83.9
고등학교 졸업 미만	27,904,647	100	8,402,192	30.1	19,502,455	69.9
고등학교 졸업(GED포함)	57,224,748	100	11,235,489	19.6	45,989,259	80.4
전문대 졸업(Associate's Degree포함)	58,842,409	100	8,402,192	14.3	50,440,217	85.7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	58,437,993	100	4,526,761	7.7	53,911,232	92.3

주 1) 각 수치는 추정치임

2) 2011년 기준임

3) GED: 미국·캐나다에서 정규 고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고졸 학력 인증서, general equivalency diploma or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의 약어

4) Associate's Degree: 학사 학위 Bachelor's Degree의 하위단계학위. 보통 full time으로 2년제 과정을 거친 대학생들에게 부여됨

자료 : U.S. Census Bureau, 「2011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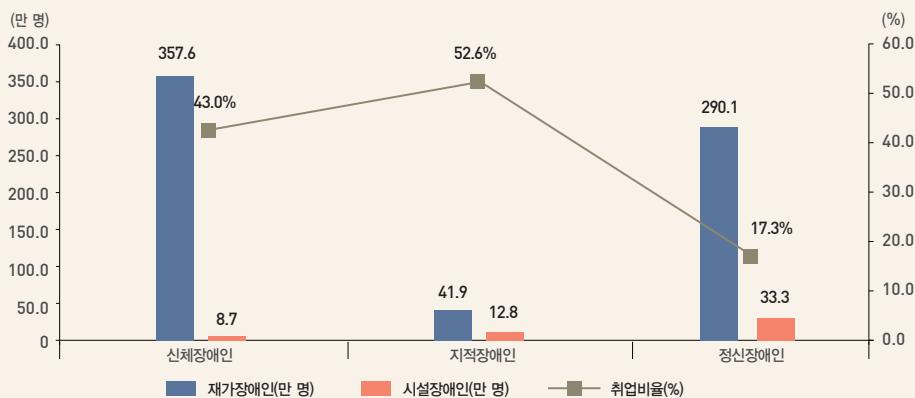
☞ 조사 설명 보기 : 345페이지 참조

- 미국 25세 이상 장애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32,566,634명 중 24,164,442명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이수하였으며 이는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은 34.5%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미만 및 전문대 졸업은 25.8%,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은 13.9%의 순으로 나타남

## 제 4 절 일본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그림 3-4-1 일본 장애인 수 및 취업비율



주 1) 신체장애인 2006년, 지적장애인 2005년, 정신장애인 2008년 기준임

2) 취업비율은 15세 이상 2006년 기준임

자료 | 내각부, 「2010 장애인백서」, 2012.

후생노동성, 「2006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08.

그림 3-4-2 일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주 : 공공부문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0~2.1%, 민간기업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1.8%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2011.

## 1. 장애인구

〈표 3-4-1〉 일본 장애인 수

구 분		전 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단위 : 만명)
신체장애인 (2006년)	전 체	366.3	357.6	8.7	
	18세 미만	9.8	9.3	0.5	
	18세 이상	356.4	348.3	8.1	
지적장애인 (2005년)	전 체	54.7	41.9	12.8	
	18세 미만	12.5	11.7	0.8	
	18세 이상	41.0	29.0	12.0	
정신장애인 (2008년)	미 상	1.2	1.2	0.0	
	전 체	323.3	290.1	33.3	
	20세 미만	17.8	17.3	0.4	
	20세 이상	305.4	272.5	32.9	
	미 상	0.6	0.5	0.1	

- 주 1) 정신장애인 수는 지적장애를 제외한 수에 간질과 알츠하이머환자 수를 더한 결과이며, 「환자조사」의 외래환자를 재가, 입원환자를 시설입소자로 파악함  
 2) 신체장애인의 시설장애인 수에는 고령자 관련 시설입소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3) 자료가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음(이하 같은 자료에서 동일)

자료 : 내각부, 「2012 장애인백서」, 2012.

- 신체장애인(재가) - 후생노동성, 「신체장애아(인) 실태조사」, 2006.
- 신체장애인(시설입소자) -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2006.
- 지적장애인(재가) - 후생노동성, 「지적장애아(인) 실태조사」, 2005.
- 지적장애인(시설입소자) -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2005.
- 정신장애인(재가, 시설) - 후생노동성, 「환자조사」, 2008.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장애인 및 장애정도' 설명 보기 : 378페이지 참조

- 일본의 신체장애인 수는 366.3만명(2006년 기준), 지적장애인 수는 54.7만명(2005년 기준), 정신장애인 수는 323.3만명(2008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4-2〉 일본 신체장애인 수

(단위 : 만명)

구 분	1980년	1987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전 체	197.7	250.6	280.3	301.5	332.7	357.6
시각장애	33.6	31.3	35.7	31.1	30.6	31.5
청각장애	31.7	36.8	36.9	36.6	36.1	36.0
지체장애	112.7	151.3	160.2	169.8	179.7	181.0
내부장애	19.7	31.2	47.6	63.9	86.3	109.1

주 1) 1980년은 신체장애아(0~17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2) 재가장애인에 한함

자료 : 내각부, 「2012 장애인백서」, 2012.

☞ 「장애인 및 장애정도」 설명 보기 : 378페이지 참조

〈표 3-4-3〉 일본 지적장애인 수

(단위 : 만명)

구 분	전체	최중증	중증	중간	경증	미상
전 체	41.9	6.2	10.2	10.7	9.8	5.0
18세 미만	11.7	2.2	2.8	2.6	3.3	0.8
18세 이상	29.0	4.0	7.4	7.9	6.3	3.4
미상	1.2	0.1	0.0	0.2	0.1	0.8

주 : 재가장애인에 한하며, 2005년 기준임

자료 : 내각부, 「2012 장애인백서」, 2012.

☞ 「장애인 및 장애정도」 설명 보기 : 378페이지 참조

〈표 3-4-4〉 일본 정신장애인 수

(단위 : 만명)

구 분	2002년	2005년	2008년
전 체	223.9	267.5	290.1
간질	25.1	26.6	21.2
알츠하이머	7.0	14.7	20.7
그 외 정신 및 행동장애	9.1	11.1	15.2
신경성 장애, 스트레스장애 및 신체표현성장애	49.4	58.0	58.4
기분(감정) 장애(조울증 포함)	68.5	89.6	101.2
통합실조증, 통합실조증형 장애 및 망상성 장애	53.1	55.8	60.7
정신작용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콜에 의한 행동장애 포함)	3.8	4.3	5.2
혈관성 및 원인불명의 인지 장애	8.4	9.1	9.8

주 : 재가장애인(외래 정신질환 환자)에 한하며, 질환명은 조사시점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

자료 : 내각부, 「2012 장애인백서」, 2012.

☞ 「장애인 및 장애정도」 설명 보기 : 378페이지 참조

## 2. 취업현황

### 가. 취업현황

〈표 3-4-5〉 일본 장애인의 취업현황

(단위 : %, 천명)

구 分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 체	취업	미취업	무용답	전 체	취업	미취업	무용답	전 체	취업	미취업	무용답
전 체	100.0 (1,344)	43.0	53.7	3.4	100.0 (355)	52.6	45.0	2.5	100.0 (351)	17.3	80.7	2.0
15~19세	100.0 (11)	26.5	73.5	0	100.0 (50)	24.4	73.6	2	100.0 (2)	25.0	75.0	0
20~24세	100.0 (26)	50.0	50.0	0	100.0 (54)	70.0	28.5	1.5	100.0 (10)	26.3	71.1	2.6
25~29세	100.0 (40)	52.5	44.3	3.3	100.0 (50)	62.0	35.9	2	100.0 (21)	18.8	80	1.3
30~34세	100.0 (55)	58.7	38.9	2.4	100.0 (55)	63.6	32.3	4.1	100.0 (41)	20.8	78.6	0.6
35~39세	100.0 (65)	54.6	42.9	2.6	100.0 (42)	56.8	40.8	2.4	100.0 (48)	19	79.3	1.7
40~44세	100.0 (82)	58.5	40.7	0.8	100.0 (33)	52.5	45.1	2.5	100.0 (48)	16.5	81.9	1.6
45~49세	100.0 (113)	55.3	41.2	3.5	100.0 (20)	52.1	44.8	3.1	100.0 (50)	19.7	78.9	1.3
50~54세	100.0 (203)	52.4	44	3.6	100.0 (21)	44.1	52.9	2.9	100.0 (40)	18.2	79.4	2.4
55~59세	100.0 (337)	41.1	55.2	3.7	100.0 (16)	47.4	50.0	2.6	100.0 (45)	10.7	84.2	5.1
60~64세	100.0 (386)	28.6	67.8	3.6	100.0 (12)	16.4	83.6	0	100.0 (47)	8.2	91.0	0.7
무용답	100.0 (25)	25.6	63.5	10.8	100.0 (3)	30.8	61.5	7.7	100.0 (10)	33.3	61.5	15.1

주 1) 15세 이상 인구 대상임

2) 2006년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2006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08.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표 3-4-6〉 일본 장애인의 취업현황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단위 : 천명, %)

구 분		전 체	취업	미취업	무응답
신체장애인	소 계	1,344 (100.0)	578 (43.0)	722 (53.7)	46 (3.4)
	중증	657 (100.0)	214 (32.6)	420 (63.9)	23 (3.5)
	경증	652 (100.0)	350 (53.7)	283 (43.3)	20 (3.0)
	기타	35 (100.0)	13 (37.1)	19 (54.2)	3 (8.6)
지적장애인	소 계	355 (100.0)	187 (52.6)	160 (45.0)	9 (2.5)
	중증	139 (100.0)	59 (42.6)	75 (54.3)	4 (3.1)
	경증	190 (100.0)	116 (61.0)	71 (37.3)	3 (1.7)
	기타	27 (100.0)	12 (44.3)	14 (51.1)	1 (4.6)
정신장애인	소 계	351 (100.0)	61 (17.3)	283 (80.7)	7 (2.0)
	1급	48 (100.0)	6 (11.7)	41 (85.6)	1 (2.8)
	2급	208 (100.0)	32 (15.3)	173 (83.3)	4 (1.7)
	3급	66 (100.0)	16 (24.7)	48 (73.7)	1 (2.0)
	기타	29 (100.0)	7 (23.6)	21 (72.7)	1 (3.6)

주 1)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으로 갈수록 장애정도가 경함

2) 15세 이상 인구 대상임

3) 2006년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2006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08.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일본의 신체장애인 취업비율은 43.0%, 지적장애인은 52.6%, 정신장애인은 17.3%로 정신장애인의 취업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 취업비율은 낮음

## 나. 취업자 특성

〈표 3-4-7〉 일본 장애인의 직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구 분	신체장애인 수
전 체	100.0
농림수산	4.3
사무	16.7
관리	6.4
판매	6.5
안마, 마사지, 침구	3.9
전문직, 기술직	16.3
서비스직종	11.0
생산, 공정, 노무	14.4
기타	12.3
무응답	8.2

주 1) 신체장애인에 한함

2) 2006년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2006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08.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신체장애인의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전체의 1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 기술직' 16.3%, '생산, 공정, 노무'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4-8〉 일본 장애인의 취업형태별 취업자 구성비

구 분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단위 : %)
전 체		100.0	100.0	100.0	
상용 고용		48.4	18.8	32.5	
상용 고용 이외	소개	47.1	80.0	59.7	
	자영업	16.7	0.9	3.1	
	가족종업원(자영업보조)	4.4	2.8	4.8	
	회사, 단체의 임원	9.9	-	5.3	
	임시, 일용직	3.2	10.8	2.6	
	부업	1.7	-	0.9	
	수산시설 등	3.5	32.2	8.8	
	작업소 등	3.0	26.9	28.9	
	기타	4.7	6.4	5.3	
무응답		4.5	1.1	7.9	

주 : 2006년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2006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08.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상용고용' 설명 보기 : 378페이지 참조

〈표 3-4-9〉 일본 장애인의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구 分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단위 : %)
전 체		100.0	100.0	100.0	
20시간 미만		9.5	1.2	29.7	
20~29시간		12.2	12.8	27.0	
30시간 이상		77.3	82.6	40.5	
무응답		1.0	3.5	2.7	

주 : 2006년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2006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08.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상용고용' 설명 보기 : 378페이지 참조

- 전체 취업자 중 상용고용자의 비율은 신체장애인 48.4%, 지적장애인 18.8%, 정신장애인 32.5%로 나타남
  - 상용고용 이외의 취업형태 중에서는 신체장애인 '자영업' 16.7%, 지적장애인 '수산시설 등' 32.2%, 정신장애인 '작업소 등' 2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가 신체장애인 77.3%, 지적장애인 82.6%, 정신장애인 40.5%로 나타남

#### 다. 미취업자 특성

〈표 3-4-10〉 일본 장애인의 미취업자 취업희망 여부

구 분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단위 : %)
전 체	100.0	100.0	100.0	
취업을 희망	58.7	40.9	62.3	
취업을 희망하지 않음	35.4	49.3	33.1	
무응답	5.9	9.8	4.6	

주 : 2006년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2006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08.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표 3-4-11〉 일본 장애인의 미취업자 희망 취업형태

구 분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단위 : %)
전 체	100.0	100.0	
상용고용	20.9	39.9	
상용고용 이외	73.8	55.9	
임시, 일용직	15.0	30.4	
자영업	2.8	5.2	
수산시설, 작업소	36.6	11.9	
기타	19.4	8.4	
무응답	5.3	4.2	

주 : 2006년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2006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08.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미취업 장애인 중 신체장애인의 58.7%, 지적장애인의 40.9%, 정신장애인의 62.3%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을 희망하는 지적장애인 미취업자 중 36.6%가 「수산시설, 작업소」를 희망하는 반면에 정신장애인은 「상용고용」 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 고용의무 현황

#### 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4-12〉 일본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설고용률	(단위 : 명, %)
2001년	2,401,850	49,723	2.07	-
2002년	2,370,783	48,982	2.07	-
2003년	-	-	-	-
2004년	2,736,098	52,524	1.92	-
2005년	2,758,549	52,725	1.91	74.8
2006년	2,744,674	53,415.5	1.94	75.4
2007년	2,707,165	55,717.5	2.06	79.1
2008년	2,477,848	52,372	2.11	84.4
2009년	2,449,521	53,001.5	2.16	85.6
2010년	2,454,376	54,549.5	2.22	86.4
2011년	2,715,922	57,422	2.11	82.2

- 주 1) 공공부문의 법정 고용의무율은 국가기관, 도도부현기관, 시정촌기관, 독립행정법인 등은 2.1%,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는 2.0%임
- 2) 201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를 포함하여, 0.5명으로 산정함
- 3) 장애인 수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전체를 말함  
 1993년~2005년 : 신체, 지적장애인(중증 신체장애인은 이중계산)  
 중증 신체장애인 또는 중증 지적장애인 단시간근로자  
 2003년도 이전 적용제외직종 적용  
 2006년~ 신체, 지적장애인(중증 신체장애인은 이중계산),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장애인, 중증 지적 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단시간 근로자(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로 계산)
- 4) 201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2011년 일본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11%로 고용의무율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달성비율은 82.2%로 일부 기관에서 고용의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13〉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명, %, 기관)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305,997.0	6,869.0	2.24	39/39	100.0
행정기관	277,782.5	6,211.5	2.24	30/30	100.0
입법기관	3,575.0	81.5	2.28	5/ 5	100.0
사법기관	24,639.5	576.0	2.34	4/ 4	100.0

주 1) 일본 국가기관 법정 고용의무율은 2.1%임

2) 201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표 3-4-14〉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명, %, 기관)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326,662.0	7,805.0	2.39	142/157	90.4
도도부현 지사부국	260,148.5	6,321.0	2.43	47/ 47	100.0
기타 도도부현 기관	66,513.5	1,484.0	2.23	95/110	86.4

주 1) 도도부현(都道府縣) :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縣)을 말하며, 도쿄도(東京都), 히카이도(北海道), 교도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와 토호쿠(東北) 등 43개의 현(縣)으로 구성됨

2) 일본 도도부현 기관 법정 고용의무율은 2.1%임

3) 201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2011년 일본의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2.24%로 고용의무율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기관별로도 모든 국가기관이 고용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39%로 고용의무율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아직까지 15개 기관이 고용의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15〉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명, %, 개소)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시정촌 기관	1,049,375.5	23,363.0	2.23	1,970/2,353	83.7

주 1) 시정촌 :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시군구(市郡區)와 유사함  
 2) 일본 시정촌 기관 법정 고용의무율은 2.1%임

3) 201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표 3-4-16〉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명, %, 개소)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686,659.5	12,154.0	1.77	94/139	67.6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585,104.0	10,266.5	1.75	14/ 47	29.8
시정촌 교육위원회	101,555.5	1,887.5	1.86	80/ 92	87.0

주 1)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법정 고용의무율은 2.0%임

2) 201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표 3-4-17〉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명, %, 개소)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347,228.0	7,231.0	2.08	201/288	69.8
독립행정법인(국립대학 제외)	174,269.5	3,865.5	2.22	85/ 98	86.7
국립대학법인	132,188.5	2,691.0	2.04	59/ 90	65.6
지방독립행정법인 등	40,770.0	674.5	1.65	57/100	57.0

주 1) 독립행정법인 등은 국가가 독점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지방 공기업) 등을 말함

2)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법정 고용의무율은 2.1%임

3) 201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23%,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는 1.77%, 독립행정법인 등은 2.08%로 나타남

## 나.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4-18〉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장애인 수	설고용률	달성비율
1991년	214,814	1.32	51.8
1992년	229,627	1.36	51.9
1993년	240,985(237,621)	1.41(1.39)	51.4
1994년	245,348	1.44	50.4
1995년	247,077	1.45	50.6
1996년	247,982	1.47	50.5
1997년	250,030	1.47	50.2
1998년	251,443	1.48	50.1
1999년	254,562(249,920)	1.49(1.48)	44.7
2000년	252,836	1.49	44.3
2001년	252,870	1.49	43.7
2002년	246,284	1.47	42.5
2003년	247,093	1.48	42.5
2004년	257,939	1.46	41.7
2005년	269,066	1.49	42.1
2006년	283,750.5(281,833)	1.52(1.51)	43.4
2007년	302,716	1.55	43.8
2008년	325,603	1.59	44.9
2009년	332,811.5	1.63	45.5
2010년	342,973.5	1.68	47.0
2011년	366,199.0	1.65	45.3

주 1) 민간기업 법정 고용의무율은 1.8%임

2) 장애인 수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전체를 말함

1990년~1992년 : 신체장애인(중증 신체장애인은 이중계산), 지적장애인

1993년~2005년 : 신체, 지적장애인(중증 신체장애인은 이중계산)

중증 신체장애인 또는 중증 지적장애인 단시간근로자

2006년~ 신체, 지적장애인(중증 신체장애인은 이중계산),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장애인, 중증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단시간 근로자(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로 계산)

3) 각년도 6월 1일 기준이며, ( ) 안은 각각 제도개정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수치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2011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1.65%, 달성비율은 45.3%로 법정 고용의무율 1.80%에 못 미침

〈표 3-4-19〉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기업규모별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기업 수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전 체	75,313	22,260,915.5	366,199.0	1.65	34,102	45.3
56~99명	29,200	2,156,943.0	29,345.0	1.36	12,591	43.1
100~299명	32,620	5,043,862.5	70,805.0	1.40	15,320	47.0
300~499명	6,248	2,218,378.0	34,856.0	1.57	2,814	45.0
500~999명	4,206	2,714,946.0	44,782.5	1.65	1,864	44.3
1000명 이상	3,039	10,126,786.0	186,410.5	1.84	1,513	49.8

주 1) 근로자 수는 법정 고용 장애인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이며, 2010년 7월 1일 부터는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2) 201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표 3-4-20〉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단위 : 개소, 명, %)

구 分	기업 수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전 체	75,313	22,260,915.5	366,199.0	1.65	34,102	45.3
농림어업	217	26,864.0	460.5	1.71	124	57.1
광업	44	8,312.5	130.0	1.58	24	54.5
건설업	2,559	608,668.0	8,886.5	1.46	1,158	45.3
제조업	20,480	6,574,568.5	116,663.5	1.77	11,078	54.1
전기 · 가스 · 열공급 · 수도업	208	226,278.0	4,181.0	1.85	95	45.7
정보통신업	3,732	1,257,623.0	17,466.5	1.39	979	26.2
운수업, 우편업	5,399	1,391,762.0	23,526.5	1.69	2,650	49.1
도 · 소매업	12,588	3,750,222.5	53,001.0	1.41	4,382	34.8
금융 · 보험업	1,300	1,209,233.0	20,880.5	1.73	516	39.7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1,259	336,083.0	4,734.5	1.41	426	33.8
학술연구, 전문 · 기술 서비스업	1,854	563,391.0	8,257.0	1.47	605	32.6
외식업, 숙박업	2,225	639,832.5	9,503.5	1.49	869	39.1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2,436	551,434.5	10,288.0	1.87	867	35.6
교육, 학습지원업	1,627	389,861.5	5,335.5	1.37	624	55.3
의료, 복지	11,395	2,056,642.0	39,076.0	1.90	6,306	39.0
복합서비스업	898	639,080.5	11,415.0	1.79	432	48.1
서비스업	7,036	2,017,427.5	32,205.5	1.60	2,939	41.8
기타	56	13,631.5	188.0	1.38	28.0	50.0

주 1) 기타는 분류할 수 없는 산업임

2) 201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1.

〈표 3-4-21〉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단위 : 개소)

구 분	전 체	56~99명	100~ 299명	300~ 499명	500~ 999명	1,000명 이상	
전체 기업 수	75,313	29,200	32,620	6,248	4,206	3,039	
미달성 기업 수	41,211	16,6.9	17,300	3,434	2,342	1,526	
부족 인원	0.5명 또는 1명	26,334	16,609	8,158	892	473	202
	1.5명 또는 2명	8,626	-	7,137	843	465	181
	2.5명 또는 3명	3,001	-	1,588	795	426	192
	3.5명 또는 4명	1,547	-	374	550	414	209
	4.5명 이상 9명 이하	1,394	-	43	354	534	463
	9.5명 이상 20명 이하	241	-	-	-	30	211
	20.5명 이상 50명 이하	61	-	-	-	-	61
	50.5명 이상	7	-	-	-	-	7
고용 장애인이 0인 기업 수	25,273	16,219	8,936	104	14	0	

주 1) 부족인원이란 법정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 추가로 더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를 말함

2) 201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의 수는 41,211개소이고, 그 가운데 61.3%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음
  - 기업 규모별 의무이행 달성비율은 1,000명 이상 대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4. 고용서비스

〈표 3-4-22〉 일본 Hello Work 서비스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신규구직신청건수	유효구직건수	취직건수	취업률
1999년	76,432	126,254	26,446	34.6
2000년	77,612	131,957	28,361	36.5
2001년	83,557	143,777	27,072	32.4
2002년	85,996	155,180	28,354	33.0
2003년	88,272	153,544	32,885	37.3
2004년	93,182	153,984	35,871	38.5
2005년	97,626	146,679	38,882	39.8
2006년	103,637	151,897	43,987	42.4
2007년	107,906	140,791	45,565	42.2
2008년	119,765	143,533	44,463	37.1
2009년	125,888	157,892	45,257	36.0
2010년	132,734	169,116	52,931	39.9
2011년	148,358	182,535	59,367	40.0

주 1) Hello Work는 일본 후생노동성 고용지원국 소속의 직업소개기관이며, 우리나라의 고용센터와 유사함

2) 취업률(%)=(취직건수/신규구직신청건수)×100

자료 : 내각부, 「2012 장애인백서」,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Hello Work' 설명 보기 : 379페이지 참조

- 2011년 Hello Work 서비스를 통한 신규구직 신청건수는 148,358건, 유효구직 신청건수는 182,535건, 취업건수는 59,367건으로 취업률은 40.0%임

〈표 3-4-23〉 일본 Hello Work 신규구직신청건수

(단위 : 건)

구 분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기 타
		소 계	중증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1999년	76,432	57,239	23,828	14,673	3,117	4,255	265
2000년	77,612	57,393	24,216	15,143	3,132	4,803	273
2001년	83,557	61,548	25,839	16,357	3,382	5,386	266
2002년	85,996	62,888	26,514	16,511	3,156	6,289	308
2003년	88,272	62,450	25,944	17,602	3,292	7,799	421
2004년	93,182	63,305	26,790	18,953	3,245	10,467	457
2005년	97,626	62,458	26,203	20,316	3,525	14,095	757
2006년	103,637	62,217	26,298	21,607	3,919	18,918	895
2007년	107,906	61,445	26,120	22,273	3,983	22,804	1,384
2008년	119,765	65,207	26,836	24,381	4,299	28,483	1,694
2009년	125,888	65,142	26,507	25,034	4,244	33,277	2,435
2010년	132,734	64,098	26,237	25,815	4,411	39,649	3,172
2011년	148,358	67,379	27,478	27,748	4,856	48,777	4,454

자료 : 후생노동성,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2012.5.15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Hello Work' 설명 보기 : 379페이지 참조

〈표 3-4-24〉 일본 Hello Work 유효구직건수

(단위 : 건)

구 分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기 타
		소 계	중증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1999년	126,254	93,492	38,971	24,221	6,470	8,040	501
2000년	131,957	96,172	40,424	25,982	6,901	9,342	461
2001년	143,777	103,605	43,448	28,794	7,657	10,885	493
2002년	155,180	110,807	46,783	31,317	8,265	12,553	503
2003년	153,544	107,113	45,209	31,544	8,261	14,333	554
2004년	153,984	104,580	44,711	32,220	8,079	16,667	517
2005년	146,679	95,571	41,053	31,320	7,872	19,149	639
2006년	151,897	94,109	40,820	32,870	8,385	24,092	826
2007년	140,791	82,017	35,925	30,561	7,820	27,101	1,112
2008년	143,533	80,313	34,505	30,200	7,692	31,655	1,365
2009년	157,892	84,953	35,982	32,526	8,161	38,488	1,925
2010년	169,116	86,694	36,543	34,078	8,684	45,756	2,588
2011년	182,535	89,018	37,673	36,061	9,225	53,994	3,462

자료 : 후생노동성,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2012.5.15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Hello Work' 설명 보기 : 379페이지 참조

〈표 3-4-25〉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단위 : 건)

구 분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기 타
		소 계	중증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1999년	26,446	18,162	7,214	6,805	1,696	1,384	95
2000년	28,361	19,244	7,693	7,414	1,962	1,614	89
2001년	27,072	18,299	7,480	7,069	1,797	1,629	75
2002년	28,354	19,104	7,402	7,269	1,749	1,890	91
2003년	32,885	22,011	8,678	8,249	1,966	2,493	132
2004년	35,871	22,992	9,210	9,102	2,126	3,592	185
2005년	38,882	23,834	9,427	10,154	2,270	4,665	229
2006년	43,987	25,490	10,024	11,441	2,823	6,739	317
2007년	45,565	24,535	9,835	12,186	3,090	8,479	365
2008년	44,463	22,623	8,884	11,889	3,010	9,456	495
2009년	45,257	22,172	8,460	11,440	2,869	10,929	716
2010년	52,931	24,241	9,289	13,164	3,211	14,555	971
2011년	59,367	24,864	9,678	14,327	3,547	18,845	1,331

자료 : 후생노동성,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2012.5.15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Hello Work' 설명 보기 : 379페이지 참조

〈표 3-4-26〉 일본 Hello Work 취직률

(단위 : %)

구 分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기 타
		소 계	중증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1999년	34.6	31.7	30.3	46.4	54.4	32.5	35.8
2000년	36.5	33.5	31.8	49.0	62.6	33.6	32.6
2001년	32.4	29.7	28.9	43.2	53.1	30.2	28.2
2002년	33.0	30.4	27.9	44.0	55.4	30.1	29.5
2003년	37.3	35.2	33.4	46.9	59.7	32.0	31.4
2004년	38.5	36.3	34.4	48.0	65.5	34.3	40.5
2005년	39.8	38.2	36.0	50.0	64.4	33.1	30.3
2006년	42.4	41.0	38.1	53.0	72.0	35.6	35.4
2007년	42.2	39.9	37.7	54.7	77.6	37.2	26.4
2008년	37.1	34.7	33.1	48.8	70.0	33.2	29.2
2009년	36.0	34.0	31.9	45.7	67.6	32.8	29.4
2010년	39.9	37.8	35.4	51.0	72.8	36.7	30.6
2011년	40.0	36.9	35.2	51.6	73.0	38.6	29.9

주) 취업률(%)=(취직건수/신규구직신청건수)×100

자료 : 후생노동성,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2012.5.15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Hello Work' 설명 보기 : 379페이지 참조

〈표 3-4-27〉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산업별

(단위 : 건, %)

구 分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기 타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전 체	59,367	100.0	24,864	100.0	14,327	100.0	18,845	100.0	1,331
농림어업	1,179	2.0	302	1.2	355	2.5	500	2.7	22
광업	13	0.0	10	0.0	1	0.0	2	0.0	0
건설업	2,178	3.7	1,151	4.6	256	1.8	729	3.9	42
제조업	9,282	15.6	3,971	16.0	2,684	18.7	2,418	12.8	209
전기 · 가스 · 수도업	61	0.1	39	0.2	3	0.0	17	0.1	2
정보통신업	1,098	1.8	562	2.3	111	0.8	388	2.1	37
운송업, 우편업	3,389	5.7	1,677	6.7	639	4.5	1,004	5.3	69
도 · 소매업	9,203	15.5	3,072	12.4	2,839	19.8	3,095	16.4	197
금융 · 보험업	905	1.5	723	2.9	60	0.4	108	0.6	14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719	1.2	367	1.5	127	0.9	206	1.1	19
학술연구·전문기술 서비스업	1,358	2.3	687	2.8	128	0.9	476	2.5	67
음식업, 숙박업	2,996	5.0	948	3.8	1,040	7.3	951	5.0	57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1,862	3.1	684	2.8	565	3.9	567	3.0	46
교육, 학습지원업	1,131	1.9	577	2.3	203	1.4	327	1.7	24
의료, 복지	13,751	23.2	5,474	22.0	3,088	21.6	4,942	26.2	247
복합 서비스업	947	1.6	454	1.8	142	1.0	321	1.7	30
서비스업	7,358	12.4	3,183	12.8	1,733	12.1	2,281	12.1	161
공무 · 기타	1,937	3.3	983	4.0	353	2.5	513	2.7	88

주) 2011년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2012.5.15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Hello Work' 설명 보기 : 379페이지 참조

- 2011년 Hello Work 서비스를 통한 취업건수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의 23.2%가 「의료, 복지업」에 취업 하였으며, 「제조업」 15.6%, 「도 · 소매업」 15.5%, 「서비스업」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공통적으로 「의료, 복지업」 취업비율이 가장 높고,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제조업의 취업비율이 두 번째로 높으나, 지적장애인은 「도 · 소매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28〉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직종별

(단위 : 건, %)

구 分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기 타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전 체	59,367	100.0	24,864	100.0	14,327	100.0	18,845	100.0	1,331
전문직·기술직	6,284	10.6	3,600	14.5	535	3.7	1,965	10.4	184
관리직	48	0.1	34	0.1	0	0.0	11	0.1	3
사무직	11,992	20.2	6,915	27.8	1,008	7.0	3,726	19.8	343
판매직	3,956	6.7	1,249	5.0	1,202	8.4	1,389	7.4	116
서비스직	4,890	8.2	1,817	7.3	1,418	9.9	1,552	8.2	103
보안직업	1,005	1.7	688	2.8	67	0.5	225	1.2	25
농림어업	1,906	3.2	469	1.9	606	4.2	794	4.2	37
운수통신업	1,971	3.3	1,455	5.9	52	0.4	421	2.2	43
생산공정·노무직	27,315	46.0	8,637	34.7	9,439	65.9	8,762	46.5	477

주) 2011년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2012.5.15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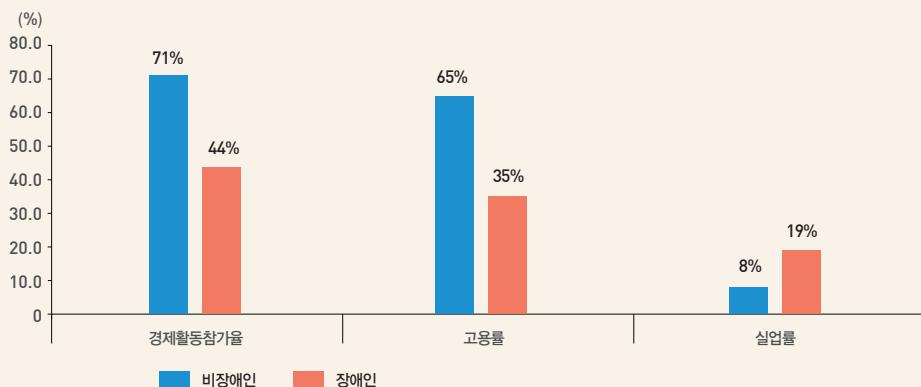
☞ 'Hello Work' 설명 보기 : 379페이지 참조

- 2011년 Hello Work를 통한 취업건수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의 46.0%가 '생산공정·노무직'에 취업하였고, '사무직' 20.2%, '전문직·기술직' 10.6%, '서비스직' 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 5 절 프랑스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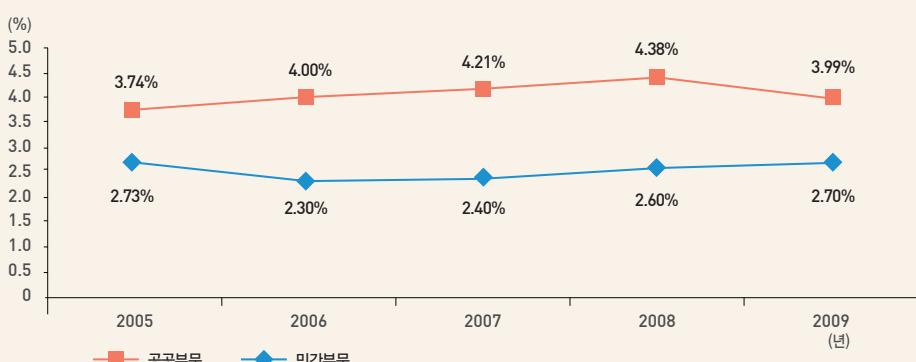
그림 3-5-1 프랑스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주 : 2007년 기준, 프랑스 전체 15~64세 인구와 Cotorep/CDAPH로부터 인정된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그림 3-5-2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자료 | 공공부문 장애인고용기금(IFPHFP), 「연간보고서」 2006, 2008,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공공부문 장애인고용기금(IFPHFP), 2012년 2월 12일 보도자료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 1. 장애인구

〈표 3-5-1〉 프랑스 장애인 수

(단위 : 백만, %)

구 분		전 체	장애인
성별	전 체	41	2.5
	비 율	100	100
연령별	남 성	49	56
	여 성	51	44
교육정도별	15~24세	29	9
	25~39세	20	15
	40~49세	22	28
	50~64세	29	48
교육정도별	전문대졸 이상	27	10
	고졸	17	9
	CAP-BEP(직업과정)	25	30
	중등교육 수료	31	51

주 1) 대상 : 프랑스 전체 15~64세 인구

2) 장애 인정 : 16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부족 또는 저하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된 사람, 노동 불능률이 80% 이하인 경우에 Cotorep / CDAPH에서 인정함

3) CAP-BEP : 프랑스의 직업고등학교에서 기술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 CAP(직업과정)이나 BEP(직업교육수료증)이라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게 되고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곧바로 직업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음

4) 2008년 기준임

자료 : Drees ; Insee.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2008년 기준 프랑스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경제활동인구)는 4,100만명, 이중 장애인은 약 250만명으로 장애인 출현율은 6%임
  - 장애인의 변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50~64세 비율이 48%이며, 전체의 51%가 중등교육수료자임

〈표 3-5-2〉 프랑스의 장애 인정방법에 따른 장애인 수

구 분	취업 장애인		(단위 : %)
	전 체	100	
Cotorep/CDAPH의 RQTH (장애인 근로자 자격 인정)	70		76
산업재해 장애인	19		11
연금수혜 장애인	8		13
상이군인 및 그에 준하는 자	3		0.4

주 1) 장애 인정 - 16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부족 또는 저하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된 사람, 노동 불능률이 80% 이하인 경우에 Cotorep/CDAPH에서 인정함

2) 2008년 기준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원자료 : 국립통계경제연구원, 「HID(Handicaps-Incapacités-Dépendance : 장애, 노동 불능, 의존) 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Cotorep/CDAPH' 설명 보기 : 380페이지 참조

〈표 3-5-3〉 프랑스의 2005년 RQTH 결정 현황

구 分	전 체		신 규		갱 신		(단위 : 건, %)
	건수	비 율	건수	비 율	건수	비 율	
전 체	279,261	100.0	140,829	100.0	138,432	100.0	
A영역 승인	52,355	18.7	33,812	24.0	18,543	13.4	
B영역 승인	154,361	55.3	85,515	60.7	68,846	49.7	
C영역 승인	72,545	26.0	21,502	15.3	51,043	36.9	
총 승인율		84.3		81.8		87.1	
총 거부수치	27,148	8.2	15,806	9.3	11,342	7.1	
판정 유예 및 미결정	24,737	7.5	15,605	9.1	9,132	5.7	
총 결정률	331,146	100.0	172,240	100.0	158,906	100.0	

주 1) 장애 인정 - 16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부족 또는 저하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된 사람, 노동 불능률이 80% 이하인 경우에 Cotorep/CDAPH에서 인정함

2) A영역 : 가벼운 장애, B영역 : 보통장애, C영역 : 심각하고 결정적인 장애

3) 모든 결정은 기한 제한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갱신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함

4) 2008년 기준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원자료 : Drees(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Etudes, de l'E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 노동고용보건부 연구  
조사평가통계국)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장애인 근로자 자격(RQTH)' 설명 보기 : 381페이지 참조

## 2. 고용

### 가. 경제활동상태

〈표 3-5-4〉 프랑스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

구 분	15~64세 전체인구			2005년 법에 의해 Cotorep/CDAPH로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남 성	여 성
경제활동참가율	71	75	67	44	48	39
15~24세	41	43	38	59	62	57
25~39세	89	96	82	63	68	56
40~49세	90	95	86	57	61	53
50~64세	56	60	53	28	32	23
고용률	65	70	60	35	39	31
15~24세	33	36	29	28	38	17
25~39세	82	89	74	51	56	45
40~49세	85	90	81	48	51	45
50~64세	53	57	50	23	27	18
실업률	8	7	9	19	18	22
15~24세	20	17	23	-	-	-
25~39세	8	7	10	18	17	20
40~49세	6	5	6	16	17	16
50~64세	5	5	6	19	18	20

주 1) 장애 인정 : 16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부족 또는 저하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된 사람, 노동 불능률이 80% 이하인 경우에 Cotorep/CDAPH에서 인정함

2) 경제활동참가율 : 전체인구에 대한 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의 수

    고용률 : 전체 개인에 대한 취업자의 수 (노동연령의 인구에 한정, 15세~64세)

    실업률 :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수의 비율

3) 프랑스 전체 15~64세 인구 대상임

4) 2007년 기준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원자료 : 노동부 연구조사통계국, 「고용실태 보강조사」, 2007.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인구' 설명 보기 : 381페이지 참조

○ 프랑스 15~64세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 고용률은 65%, 실업률은 8%인 반면, 2005년 법에 의해 Cotorep/CDAPH로부터 인정된 장애인은 각각 44%, 35%, 19%로 나타남

## 나. 취업자 특성

〈표 3-5-5〉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수

(단위 : %)

구 分	경제활동참가율	장애인 근로자	
		인 원	비 율
전 체	100.0	248,972	100.0
15~29세	19.5	14,451	5.8
30~39세	27.1	43,982	17.7
40~49세	28.6	82,824	33.3
50~59세	22.5	102,116	41.0
60세 이상	2.3	5,599	2.2

주 : 2005년 기준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원자료 : 국립통계경제연구원, 「고용실태조사」, 2005.

노동부 연구조사통계국,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보고」, 2005(기존 자료를 재구성함).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표 3-5-6〉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수 - 성별, 연령별

(단위 : %)

구 分	남 성		여 성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158,731	100.0	90,221	100.0
25세 이하	2,967	1.9	1,842	2.0
25~29세	5,998	3.8	3,644	4.0
30~34세	11,308	7.1	6,276	7.0
35~39세	17,335	10.9	9,063	10.0
40~44세	23,548	14.8	13,145	14.6
45~49세	29,076	18.3	17,055	18.9
50~54세	34,836	21.9	20,175	22.4
55~59세	29,926	18.9	17,179	19.0
60세 이상	3,737	2.4	1,842	2.0

주 : 2005년 기준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원자료 : Dares-DOETH 2005.

노동부 연구조사통계국,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보고」, 2005(기존 자료를 재구성함).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표 3-5-7〉 프랑스 장애인의 직업별 구성비

구 분	장애인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비율 (단위 : %)
전 체	100	100
농업, 원근해 어업	6.4	3.9
건축, 토목	6.5	7.5
전기, 전자	0.9	0.5
기계, 금속	3.3	3.1
산업원료가공	3.5	2.7
유연재가공, 그래픽산업	2.1	1.6
기계 정비	2.6	2.2
기술자 및 고위 간부	0.1	0.4
운수업, 물류운송업, 관광업	11.2	9.1
수공업	0.3	0.3
경영, 행정	15.6	13.3
정보통신	1.3	1.4
조사연구	0.1	0.5
공무원 및 법조인	0.9	1.0
은행원 및 보험원	0.2	0.7
상업	9.0	13.6
숙박업 및 요식업	4.4	6.1
기업서비스업 및 특수서비스업	25.1	19.6
커뮤니케이션, 정보, 예술공연	2.3	5.9
보건,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	3.1	4.8
교육자	0.9	1.6

주 : 2007년 기준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원자료 : ANPE(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 국가고용사무소) 자료, 2007.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2007년 프랑스 장애인의 직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업서비스업 및 특수서비스업’ 19.6%, ‘상업’ 13.6%, ‘경영, 행정’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5-8〉 프랑스 기업규모별 장애인근로자 근속연수

구 분	전 체	(단위 : 년, %)				
		20-49명	50-99	100-199	200-499	500 이상
평균 근속연수	15.9	11.3	13.2	14.7	17.4	22.0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년 미만	7	10	9	8	6	3
1년	5	8	7	6	4	2
2~5년	17	25	21	18	14	8
6~10년	13	16	14	14	12	8
11~15년	11	12	12	13	12	9
16~20년	9	9	10	10	10	8
21~25년	11	7	9	10	12	15
26~30년	11	6	8	10	12	18
31년 이상	16	7	10	13	19	29

주 : 2005년 기준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원자료 : 노동부 연구조사통계국,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보고」, 2005.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2005년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5.9년으로 6년 이상인 경우는 70% 이상으로 나타남

## 다. 미취업자 특성

〈표 3-5-9〉 프랑스 고용 수요 현황

(단위: 명, %)

구 분	즉시 구직 가능한 사람				구직이 불가능한 사람 카테고리 4~8
	소 계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전체인구	205,864	129,299	62,537	14,028	52,630
장애인구	2,696,963	2,078,569	358,020	260,374	1,043,281
비 율	7.6	6.2	17.5	5.4	5.0

- 주 1) 장애 인정 : 16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부족 또는 저하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된 사람, 노동 불능률이 80% 이하인 경우에 Cotorep/CDAPH에서 인정함
- 2) 카테고리 1~3 : 직업이 없어 즉시 취업이 가능함  
 카테고리 4~5 : 즉시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로, 긍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며, 월별로 자신들의 요구를 갱신할 수 없는 그룹  
 카테고리 6~8 : 즉시 취업이 불가능하고 임시 또는 한 달에 78시간 이하의 경제활동을 하며, 지속적인 고용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룹
- 3) 2007년 기준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원자료 : ANPE(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 국가고용사무소) 자료, 2007.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고용 수요' 설명 보기 : 382페이지 참조

〈표 3-5-10〉 프랑스 장애인 구직자 현황

(단위: 명, %)

구 分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전체구직자	3,501,194	4,193,879	4,351,883	4,584,152	최근 1년간+5.3%
장애인 구직자	213,445	231,227	259,516	295,611	최근 1년간+13.9%
비장애인 비율	6.1	5.6	6.0	6.4	-

주 : 12월말 기준

자료 : 정부부문 장애인고용기금(FIPHFP)과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장애인과 고용-주요 통계」 2011.

부문 장애인고용기금(FIPHFP)과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장애인과 고용-주요 통계」 2012.

원자료: Pôle emploi(프랑스 고용지원센터)

〈표 3-5-11〉 프랑스 장애인 구직자 특성

구 分		구직자	(단위: 명, %)
	전체 인원	81,671	41,237
연령별	만26세 이하	8.2	7.8
	만26-39세	31.9	35.3
	만40-49세	35.0	36.3
	만50세 이상	24.9	20.7
주 장애별	이동	50.7	54.3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	24.0	23.0
	정신질환	8.0	5.2
	감각장애	6.7	8.3
	지적장애	3.1	3.6
	기타(중복장애, 외상성뇌손상 등)	7.4	5.7
교육수준별	V단계	21.0	17.3
	Vbis단계	11.5	10.4
	IV단계	46.7	48.9
	III단계	13.2	15.2
	I-III단계	7.6	8.2
장애인정별	Cotorep/CDAPH	89.7	96.3
	장애인정 대기	3.9	1.0
	기타	6.4	2.7
고용상태별	고용중	6.9	10.5
	실업기간 6개월 미만	25.2	29.5
	실업기간 6-12개월	14.1	14.4
	실업기간 1-2년	16.4	15.5
	실업기간 2년 이상	33.0	26.2
	취업경험 없음	4.4	3.9

주 1) 2006년 Cap Emploi(지방차원에서 CDAPH, Pôle emploi 및 기타 장애인고용 유관기관과 협력 하에 장애인 취업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실적임

## 2) 교육수준

- V단계-의무교육 이수. 프랑스의 의무교육은 만15세까지임(중등교육 제1과정 수료)
- Vbis-중등교육 제1과정 수료 후 최소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수료
- V단계-CAP-BEP(직업과정)에 상응하는 직업훈련 이수
- IV단계-고졸(상업 및 공업고교 포함) 학력 이수
- I-III단계-전문대졸 이상 이수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 'Cap Employ' 설명 보기 : 382페이지 참조

### 3. 고용의무 현황

〈표 3-5-12〉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공공부문	-	3.74	4.00	4.21	4.38	3.99	4.22
민간부문	2.67	2.73	2.30	2.40	2.6	2.7	-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자료 : 정부부문 장애인고용기금(FIPHFP), 「연간보고서」 2006, 2008.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프랑스 공공부문장애인고용관리기금 (FIPHFP), 2012년 2월 12일 보도자료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표 3-5-13〉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구 分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체	3.74	4.00	4.21	4.38	3.99	4.22
정부부문	3.72	3.88	3.99	4.12	3.10	3.31
공공의료 부문	3.78	4.08	4.45	4.68	4.86	4.99
지방정부	3.73	4.17	4.41	4.62	4.83	5.1

자료 : 정부부문 장애인고용기금(FIPHFP), 「연간보고서」 2006, 2008.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FIPHFP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율 발표

Taux d'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dans la fonction publique et action du FIPHFP, 2012년 2월 16일 보도자료

〈표 3-5-14〉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고용의무 사업체수	122,800	126,200	129,100
총근로자 수	9,021,100	9,368,000	9,456,000
장애인근로자 수	482,000	498,800	502,800
지체장애인 근로자	233,200	262,700	284,000
정규직 장애인 근로자	200,200	226,600	243,300

자료 : 「2008년 민간부문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장애인고용 현황」 Dares, 2010년

Dares, 「L'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dans les établissements de 20 salariés ou plus du secteur privé, bilan de l'année 2008」, 2010

원자료 : 장애인고용의무현황 보고서, Dares, 2010년

Dares, DOETH (Déclaration Obligatoire de l'Emploi de Travailleurs Handicapés). 장애인 고용 의무 신고 자료

#### 4. 복지

〈표 3-5-15〉 프랑스 Cotorep/CDAPH의 2005년 정책 신청 현황

구 분	건 수	비 율	(단위 : 건, %)
			2004년-2005년 변화추이(%)
전 체	1,857,435	100.0	10.4
직업 관련 정책	532,921	28.7	-3.9
장애인 인정	319,268	17.2	-1.7
직업지도	206,332	11.1	-3.5
기타	7,321	0.4	-53.9
사회보장 차원	1,324,514	71.3	17.5
장애인 카드	451,746	24.3	0.2
성인장애인보조금	371,346	20.0	3.9
수입보존	169,111	9.1	-
제3자를 위한 보상수단	69,762	3.8	4.5
기타	262,549	14.1	4.0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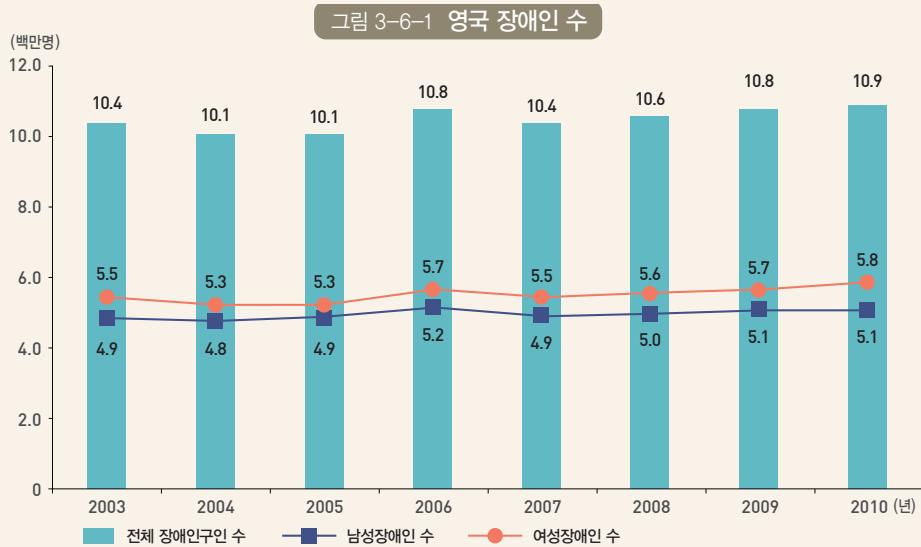
원자료 : Drees(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Etudes, de l'E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 노동고용보건부 연구 조사평가통계국)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2005년에 Cotorep/CDAPH에서 1,857,435건의 신청을 받았고, 이 중 71.3%가 사회보장 차원의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으면 이것은 2004년에 비하면 17.5% 상향한 수치임
- Cotorep/CDAPH에서 담당한 사업의 직업 관련 정책은 대부분의 장애인 인정으로 전체 신청 건수에서 17.2%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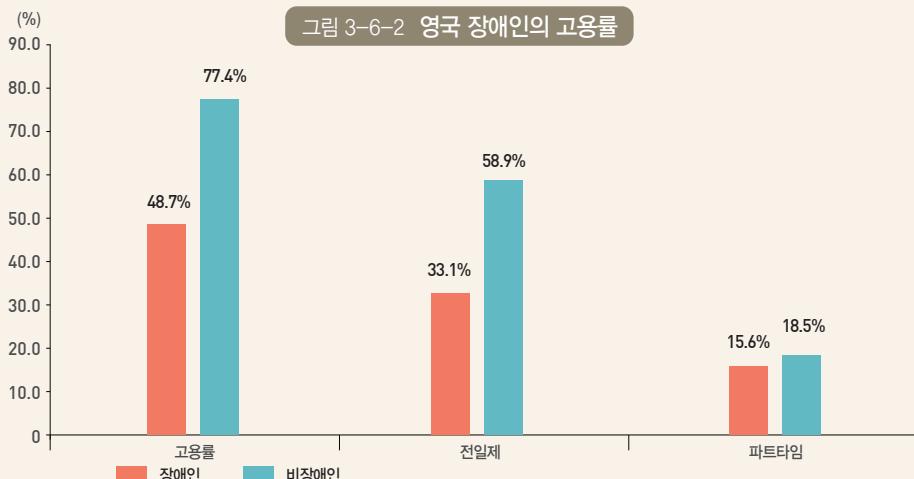
## 제 6 절 영국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주 : 장애는 장기간 지속되는 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일상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차별법에 의해서 분류하나, 분류되지 않는 장애 개념도 있음

자료 | 노동연금부, 「FRS(Family Resources Survey : 가족자원조사) 2011」.



주 :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장애는 장애인 차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자료 | 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 : 2분기 노동력조사」.

## 1. 장애인구

〈표 3-6-1〉 영국 장애인 수

(단위 : 백만명)

구 분	전 체	성 인	아 동
2003년	10.4	9.7	0.7
2004년	10.1	9.5	0.7
2005년	10.1	9.5	0.7
2006년	10.8	10.1	0.7
2007년	10.4	9.8	0.7
2008년	10.6	9.8	0.8
2009년	10.8	10.1	0.7
2010년	10.9	10.1	0.8

주 1) 장애는 장기간 지속되는 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일상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함

2) 장애의 개념은 장애인차별법 (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의해서 분류하나, 분류되지 않는 장애 개념도 있음

3) 각 항목의 수치는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prevalence factsheet」.

원자료 : 노동연금부, 「FRS(Family Resources Survey : 가족자원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장애인구' 설명 보기 : 384페이지 참조

〈표 3-6-2〉 영국 장애인 수 - 성별

(단위 : 백만명)

구 分	전 체	남 성	여 성
2003년	10.4	4.9	5.5
2004년	10.1	4.8	5.3
2005년	10.1	4.9	5.3
2006년	10.8	5.2	5.7
2007년	10.4	4.9	5.5
2008년	10.6	5.0	5.6
2009년	10.8	5.1	5.7
2010년	10.9	5.1	5.8

주 1) 장애 개념은 〈표 3-6-1〉 참조

2) 각 항목의 수치는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prevalence factsheet」.

원자료 : 노동연금부, 「FRS(Family Resources Survey : 가족자원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표 3-6-3〉 영국 장애인 수 – 장애유형

(단위 : 백만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체	10.4	10.1	10.1	10.8	10.4	10.6	10.8	10.9
이동능력	6.3	6.2	6.0	6.2	6.2	6.3	6.4	6.2
들어올리기, 나르기	5.9	5.9	6.0	6.1	6.0	6.0	6.0	5.9
손기능	2.5	2.6	2.5	2.5	2.6	2.6	2.7	2.6
억제능력	1.3	1.3	1.2	1.6	1.5	1.5	1.5	1.5
의사소통	1.6	1.7	1.9	2.0	1.9	2.0	2.0	2.1
기억력/집중력/학습	2.0	2.0	2.0	2.0	1.9	2.0	2.2	2.2
위험에 대한 지각력	0.5	0.6	0.6	0.6	0.7	0.7	0.7	0.7
신체협응력	-	-	2.2	2.2	2.4	2.4	2.4	2.4
기타	1.6	1.9	2.8	3.2	3.2	3.4	3.5	3.7

주 1) 장애유형은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활동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말함

2) 각 항목의 수치는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prevalence factsheet」.

원자료 : 노동연금부, 「FRS(Family Resources Survey : 가족자원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2010년 영국의 장애인 수는 10.9백만명으로, 성인은 10.1백만명, 아동은 0.8백만명이며, 남성은 5.1백만명, 여성은 5.8백만명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분포를 보면, 이동능력 및 들어올리기, 나르기 등과 같은 신체적인 장애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2. 고용

〈표 3-6-4〉 영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2002년	38.8	5.7	6.9	52.2	71.7	9.0	4.7	15.3
2003년	39.2	6.2	7.3	51.0	71.1	9.6	4.5	15.5
2004년	40.2	6.6	6.4	50.0	70.8	9.7	4.5	15.7
2005년	40.8	6.2	7.1	49.4	71.0	9.5	4.3	15.9
2006년	40.7	6.8	8.4	48.2	70.7	9.5	5.0	15.5
2007년	40.7	6.5	8.4	48.4	70.3	9.7	4.9	15.9
2008년	41.6	6.7	8.6	47.1	70.3	9.8	5.0	15.8
2009년	40.8	6.5	10.1	47.3	68.1	9.7	7.5	15.9
2010년	41.5	6.9	11.0	45.6	67.9	9.6	7.5	16.2
2011년	41.6	7.2	10.9	45.2	67.9	9.6	7.6	16.2

주 1) 근로 가능한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 2)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 3) 최근 조사 인구에 대한 재추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표된 LFS(Labor Force Survey)의 수치와 약간 차이가 있음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 : 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 : 2분기 노동력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84페이지 참조

○ 영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2002년에 비해 2011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의 비율은 모두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함

- 2011년 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45.2%이나 비장애인은 16.2%로 약 2.8배 높게 나타남

〈표 3-6-5〉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단위 : %)

구 분	장애인 고용률			비장애인 고용률		
	전 체	전일제	파트타임	전 체	전일제	파트타임
2002년	44.5	31.4	13.0	80.7	61.6	19.1
2003년	45.4	31.9	13.5	80.7	61.5	19.2
2004년	46.8	32.4	14.3	80.5	61.5	19.0
2005년	47.0	33.3	13.6	80.4	61.6	18.8
2006년	47.4	33.3	14.1	80.2	61.8	18.4
2007년	47.3	32.9	14.4	80.0	61.7	18.2
2008년	48.3	34.3	14.0	80.1	61.8	18.3
2009년	47.4	32.9	14.4	77.8	59.5	18.3
2010년	48.4	33.5	14.8	77.5	58.6	18.8
2011년	48.7	33.1	15.6	77.4	58.9	18.5

주 1)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3) 최근 조사 인구에 대한 재추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표된 LFS(Labor Force Survey)의 수치와 약간 차이가 있음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 : 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 : 2분기 노동력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1년 현재 48.7%로 비장애인 고용률 77.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장애인 중 파트타임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 비율은 15.6%이며, 전일제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 비율은 33.1%임

〈표 3-6-6〉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 장애유형별

구 분	(단위 :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팔, 손	45	49	51	53	50	53	50	50	52	59
다리, 발	39	44	43	44	43	45	45	44	46	46
등, 목	42	42	43	40	45	44	46	45	47	48
피부질환	79	69	69	75	-	-	77	-	73	80
가슴, 호흡문제	68	65	65	67	67	65	65	66	65	64
순환기계	54	56	59	59	61	63	62	59	62	66
소화기관	58	54	58	59	64	55	62	61	63	64
당뇨	70	68	71	70	72	70	74	71	71	70
우울증	25	24	24	26	26	27	29	28	34	31
간질	47	-	47	55	48	-	47	-	48	52
급성질환	43	42	46	48	41	47	45	50	49	44
기타 장애	55	57	58	58	58	57	58	59	56	61

주 1)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 2)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 3)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주요 장애를 식별하도록 함
- 4) 각 항목의 수치는 95% 신뢰구간의 상한점이며, 몇 가지 장애유형(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질환, 공포증과 공황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은 샘플 크기가 작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 : 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 : 2분기 노동력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 영국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 현재 「피부질환」 80%, 「당뇨」 70%, 「순환기계」 66% 등의 순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울증」 31%, 「급성질환」 44%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임

### 3. 취업자 특성

〈표 3-6-7〉 영국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 비율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장애인	46.3	48.0	47.9	48.7	47.7	48.8	48.4	49.7	50.1	49.6
비장애인	52.2	53.0	53.6	53.8	54.7	55.0	55.5	55.8	56.2	55.2

주 1)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고위직이라 함은 전문 직종에서 관리자, 중간 책임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를 뜻함

3)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 : 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 : 2분기 노동력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표 3-6-8〉 영국 장애인의 추가 희망 취업자 비율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장애인	8.1	7.5	6.9	8.3	8.3	7.9	9.2	11.4	10.5	11.1
비장애인	7.2	7.0	6.7	7.0	7.0	7.2	7.6	9.6	10.2	10.2

주 1) 보수의 기본 수준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는 취업자의 비율임

2)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3)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4) 최근 조사 인구에 대한 재추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표된 LFS(Labor Force Survey)의 수치와 약간 차이가 있음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 : 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 : 2분기 노동력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 2011년 현재 영국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 비율은 49.6%로 비장애인 55.2%에 비해 5.6%p 낮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추가 희망 취업자 비율은 11.1%, 비장애인은 10.2%로 장애인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3-6-9〉 영국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

(단위 : 파운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장애인	8.72	9.17	9.43	9.79	10.39	10.36	11.19	11.46	12.16	11.78
비장애인	9.67	9.93	10.51	10.87	11.22	11.68	11.98	12.47	12.68	12.88

주 1)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 : 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 : 2분기 노동력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 영국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는 2011년 현재 11.78 파운드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 12.88 파운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연도별 추이를 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매년 시간당 급여수준이 증가해왔으나 2011년 경우 장애인은 전년대비 0.38% 감소, 비장애인의 경우 0.2%증가하여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가 낮아짐



## 부 록

- 1. 수록 통계 소개
- 2. 주요 용어 해설



## 1. 수록 통계 소개

### 가. 국내통계

#### 1) 조사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Disabilities Survey, 제11732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조사목적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근거
조사연혁 및 주기	- 1980년 이후 5년마다 조사 - 1996년 12월 9일 지정통계로 지정 - 관련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조사대상	- 표본의 크기 : 200개 표본조사구의 약 45,000가구(조사구당 평균 223가구) - 조사완료가구 및 가구원수 : 38,231가구의 가구원 수는 105,496명 - 조사장애인 수 : 6,010명
조사내용	- 가구 및 장애 판별 조사 - 장애인 개별 조사(제가장애인 조사)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
조사방법	- 가구부문 조사 :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 - 사회복지시설 조사 : 사회복지통합망 행복e음을 통해 조사
조사기간	- 2011. 5. 30 ~ 2011. 8. 18 (약 3개월)
조사항목	〈장애인 개별조사〉 - 일반특성(성, 연령, 교육정도 등),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특성(장애발생시기, 장애원인, 장애정도, 장애부위 등),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등 〈사회복지시설 조사〉 - 시설 일반사항(시설명, 시설종류, 시설 거주자 등), 시설장애인 특성(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역사회 내 공동생활가정 전이 여부)
조사체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02-2023-82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02-380-8387)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a href="http://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a>

-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제38303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1년)

조사목적	- 장애인의 생애경제활동 관련 전반적인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직업 획득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자료 제공
조사연혁 및 주기	- 2007년 패널구축조사 실시 - 2008년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완료 - 2009년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완료 - 2010년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완료 - 2011년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완료
조사대상	- 조사 모집단 :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육체적·정신적 활동제약자 표기 가구 중 조사목적에 적합한 가구 및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명부 - 표본의 크기 : 2008년 1월 1일 현재 만 15~75세 5,092명 등록장애인(제주 제외) - 조사완료 : 총 4,397명
조사방법	-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을 활용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 조사기준시점 : 2011. 4. 30 - 조사기간 : 2011. 5 ~ 2011. 7 (3개월)
조사항목	- 패널의 인적사항 및 장애정보,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현황, 현재 경제활동상태 판별, 현재 하고 있는 주업의 일자리,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일상생활과 삶의 질, 개인소득, 가구 일반사항, 직업력 ※ 지난 조사 결과 재확인 및 지난 조사 이후의 변화와 경험, 현재 상태, 지난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일한 모든 일자리에 대해 피악하는 직업력 등
조사체계	- 조사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부
담당부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031-728-7157)
정보출처	- <a href="http://edi.kead.or.kr">http://edi.kead.or.kr</a>

-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Korean Housing Survey, 제09008호)」,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2009년)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및 주거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실태 및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li> <li>※ 주택법 제5조 1항과 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조</li> </ul>
조사연혁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일반(가구)조사 실시</li> <li>- 2007년 특수(노인가구, 장년가구, 시설거주 노인)조사 실시</li> <li>- 2008년 일반(가구)조사 실시</li> <li>- 2009년 특수(장애인가구)조사 실시</li> <li>※ 일반조사는 짹수해, 특수조사는 홀수해 실시</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거주 장애인〉</li> <li>- 조사 모집단 : 2009년 6월 현재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명부</li> <li>- 조사완료 : 총 9,676명</li> <li>〈생활시설 거주 장애인〉</li> <li>- 조사 모집단 : 2007년 12월말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생활 시설현황 등록부</li> <li>- 조사완료 : 총 502명</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을 활용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li> </ul>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사 : 2009. 9. 23 ~ 2009. 12. 24 (약 3개월)</li> <li>- 보완조사 : 2009. 12. 25 ~ 2009. 12. 30 (약 1주간)</li> </ul>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 가구특성, 주택 및 주거상태, 주택가격 및 경제상태, 장애특성 및 편의시설, 주거이동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건강 및 경제활동</li> <li>-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 시설특성, 개인특성, 시설이용 및 주거환경, 주거이동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li> </ul>
조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관↔국토연구원↔국토해양부</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02-2110-8247)</li> <li>- 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031-380-0227)</li> </ul>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krihs.re.kr">http://www.krihs.re.kr</a></li> </ul>

-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 장애인(Survey on the Digital Divide Index and Status, 제12017호)」,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1년)

조사목적	-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및 정보격차 현황의 주기적 파악·분석을 통해 장애인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도출과 정책성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음
조사연혁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부터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정보격차 조사 실시 ※ 2006년까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은 매년, 장노년층 및 농어민은 격년 조사</li> <li>- 2004년부터 조사대상에 일반국민 포함</li> <li>- 2007년부터 일반국민 및 4개 모든 취약계층 대상의 조사 매년 추진 ※ 종합 보고서와 취약계층별 정보격차 현황보고서 등 총 5종의 보고서 발간</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모집단 : 전국 만 7~69세 재가 등록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li> <li>- 조사 모집단 : 2011년 8월 1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 7~69세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장애)</li> <li>- 조사완료 : 전국 16개 광역시도 3,800명</li> </ul>
조사방법	- 가구 개별 방문을 통한 대인 면접 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준시점 : 2011. 8. 1</li> <li>- 조사기간 : 2011. 8 ~ 2011. 11</li> </ul>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기기 보유 및 이용 현황</li> <li>- 정보이용 및 비이용 특성 : 일상활동별 인터넷 활용도, 인터넷 이용·비이용 형태 및 특성, 정책니즈 파악 등</li> <li>- 정보격차지수 산출 : 접근, 역량, 양적활용, 질적활용</li> </ul>
조사체계	- 조사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행정안전부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문화과(02-2100-4075)</li> <li>-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사회통합기획부(02-3660-2707)</li> </ul>
정보출처	- <a href="http://www.nia.or.kr">http://www.nia.or.kr</a>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Survey on the Economic Activity Status of Disabled Persons, 제10003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년)

조사목적	- 장애인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명확한 정책대상의 기준 및 규모를 제시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연혁 및 주기	- 2010년 최초의 장애인 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 신설 - 2010년 통계청 1회한 조건부 승인
조사대상	- 목표 모집단 : 2010년 5월 15일 현재 우리나라 거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 조사 모집단 : 2009년 11월 30일 기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명부(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및 접근 불가능한 요양소 수용자 제외) - 조사완료 : 총 8,000명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로 실시
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 2010. 5. 9 ~ 2010. 5. 15 [1주간] - 사전조사기간 : 2010. 4. 26(월) ~ 2010. 5. 30 [1주간] ※ 경제활동상태 사전 파악 - 본조사 : 2010. 5. 17(월) ~ 2010. 7. 16(금) [9주간]
조사항목	- 개인특성(성별, 생년월일, 가족구성원 등), 장애특성(장애등록여부, 장애등록연도,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가구정보(가구주 파악, 총 가구원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여부) - 경제활동상태 판별(지난 주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 휴직 여부 및 이유, 4주간 구직여부), 취업자(종사상 지위, 근무직종, 근무환경 등), 실업자(취업가능성, 과거 취업경험, 향후 희망 취업 관련 등), 비경제활동인구(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성 및 과거 취업 경험, 향후 취업의사 등),
조사체계	- 조사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부
담당부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팀(031-728-7205)
정보출처	- <a href="http://edi.lead.or.kr">http://edi.lead.or.kr</a>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d in business, 제38302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년)

조사목적	- 우리나라 전체(제주 제외)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근거
조사연혁 및 주기	- 2000년부터 5년 단위로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실시 - 관련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2년 단위로 「사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실시 -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로 명칭 변경
조사대상	- '2009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한 전국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체의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 표본 수는 2,067개(고용기업체 1,579개, 미고용업체 488개)조사완료 · 표본은 '2009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의 명부를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231개 기업체(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는 제외
조사방법	- CAPI(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ing) 및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를 활용, 면접 타계식으로 조사
조사기간	- 2010. 8. 23 ~ 2010. 11. 19
조사항목	- 장애인 고용현황, 모집과 채용, 채용계획, 노무관리, 업무환경, 교육과 훈련, 장애인고용에 대한 만족도, 법·제도에 대한 인식, 장애인고용 인식,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
조사체계	- 조사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부
담당부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031-728-7162)
정보출처	- <a href="http://edi.kead.or.kr">http://edi.kead.or.kr</a>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The survey on the disabled enterprises, 제14214호)」, 중소기업청(2011년)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장애인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li> </ul> <p>※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7조 근거</p>
조사연혁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년 단위로 실시</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모집단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li> <li>- 조사 모집단 : 2009년도 조사모집단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규등록기업 가운데 조사시점 현재 유효 장애인기업 리스트</li> <li>- 조사완료 : 2,500개 장애인기업</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li> </ul>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 9 ~ 2011. 10</li> </ul>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현황(일반적 현황, 인력, 대표자 현황)</li> <li>- 재무관련 현황(재무정도, 자금 조달방법, 자금사정)</li> <li>- 창업관련 사항(창업배경, 창업지원, 창업 시 어려움/수요)</li> <li>- 경영활동사항(판매 및 마케팅, 공공구매, 사업확대, 조직화 현황, 경영 애로사항, 향후 경영활동계획)</li> <li>- 지원정책사항(기업활동 지원정책,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정책수요)</li> </ul>
조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청</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042-481-3950)</li> </ul>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smba.go.kr">http://www.smba.go.kr</a></li> </ul>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Report 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제11735호)」,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08년)

조사목적	-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 및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세분화된 전수조사 데이터를 확보하여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편의시설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조 근거
조사연혁 및 주기	- 1998년 제1차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2003년 제2차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2008년 제3차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조사대상	- 목표 모집단 : 전국의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조사 모집단 : 편의증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107,730개소
조사방법	- 대상건축물 방문 현황실측조사
조사기간	- 2008. 7 ~ 2009. 4 (10개월)
조사항목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 또는 침실, 관람석 또는 열람석, 접수대 또는 작업대,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조사체계	- 시·도 및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02-2023-8652)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국토해양부(2011년)

조사목적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DB를 업데이트하고, 7대 도시 교통복지수준 및 이동편의지수 평가를 통해 각 도시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를 통하여 현재 실정에 맞는 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함
조사연혁	- 2006년 교육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표본조사(전국) - 2007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전수조사(전국) - 2008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표본조사(전국) - 2009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표본조사(7대도시) - 2010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표본조사(9개 지방자치단체) - 2011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전수조사(전국)
조사대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5조에 의거 7대 특별 및 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등
조사항목	- 교통약자 인구현황 및 장래예측, 이동실태,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지하철역사 내 휠체어리프트 현황 등
조사체계	- 시 · 군 · 구↔한국교통연구원↔국토해양부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복지과(02-2110-8688)
정보출처	- <a href="http://weak.mltm.go.kr">http://weak.mltm.go.kr</a>

## ○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07년)

조사목적	- 장애인의 문화활동 실태 및 문화활동 수요를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문화복지 시책 및 장 · 단기 장애인 문화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조사대상	- 조사 모집단 : 2006년 12월 31일 현재 만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조사결과 : 총 1,500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
조사기간	- 2007. 9. 1 ~ 2007. 9. 30
조사항목	- 여가생활(여가시간, 여가비 지출, 여가활용, 걸림돌) - 예술향유(예술행사 관람, 관련활동, 소비) - 문화시설 이용(이용실태, 참여율, 만족도, 참여의향, 걸림돌) - 문화관광(역사문화유적지 방문실태, 지역축제 관람실태, 의향, 걸림돌) - 문화예술교육(경험, 의향, 걸림돌) - 사이버문화활동(인터넷 이용, 문화관련 사이트 이용경험, 이용의향) - 장애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경험 및 정부정책 요구사항(경험, 참여의향, 의견) - 사회인구학적 속성(성, 연령, 거주지, 장애유형, 장애등급, 직업, 월소득 등)
조사체계	- 조사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02-2669-9858)
정보출처	- <a href="http://www.mest.go.kr">http://www.mest.go.kr</a> - <a href="http://www.kcti.re.kr">http://www.kcti.re.kr</a>

-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Survey on participation in sports for Disabled, 제11320호)」,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2011년)

조사목적	-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현황,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생활체육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책기초자료 수집
조사연혁 및 주기	- 2008년 12월 16일 작성승인 - 조사주기 : 1년
조사대상	- 조사 모집단 : 전국의 등록장애인 - 조사 대상 : 전국의 10~69세 등록장애인 - 조사규모 : 1,500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기본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대인면접 등을 병행 조사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11. 12. 8 ~ 2011. 12. 20
조사항목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및 비실행 비율, 운동의 목적, 운동의 횟수, 운동 시간, 운동 장소,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 장애인 생활체육 비참여 실태(운동에 대한 의지, 희망하는 운동 종목,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 -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장애인 생활체육관련 정보 신뢰성, 장애인 운동의 효과, 전문지도자의 필요성,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하는 것에 대한 인식, 선호하는 장애인 할인 혜택, 장애인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은 경험, 장애인 전문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육프로그램 필요성) -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체육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신규결성 및 조직 확대의 필요성, 자치단체의 관심에 대한 인식, 기업의 후원에 대한 인식, 기타 의견) - 인구통계학적 사항 등
조사체계	- 조사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문화체육과(02-3704-9898)
정보출처	- <a href="http://www.mcst.go.kr">http://www.mcst.go.kr</a> - <a href="http://www.kosad.or.kr">http://www.kosad.or.kr</a>

## ○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국립중앙도서관(2011년)

조사목적	-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 접자도서관, 특수학교도서관, 청각장애인 도서관을 대상으로 관종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장애인서비스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장서 개발, 시설, 직원, 예산 등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함
조사대상	- 조사 모집단 : 총 817개관(공공도서관 776개관, 접자도서관 36개관, 청각장애인복지관 5개관) - 조사결과 : 총 809개관(공공도서관 768개관, 접자도서관 36개관, 청각장애인복지관 5개관)
조사방법	- Fax 및 E-mail을 활용한 조사(단, 전화 면담을 통해 응답 유도)
조사기간	- 2011. 1. 16 ~ 2011. 2. 8
조사항목	- 설치 여부 및 위치(장애인 도서관(자료실) 설치 여부, 장애인 코너 설치 여부, 도서관 위치) - 전담인력 운영 현황(장애인서비스 전담인력 운영 여부) - 시설 현황(자료열람 및 대체자료 제작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보조공학기기 보유현황(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 장서 현황(일반자료 소장 현황, 대체자료 소장 현황, 연간 증가 자료 수, 대체자료 제작 현황) - 이용 및 정보 서비스 현황(등록 회원 수, 방문 이용자 수, 자료대출서비스 이용 현황, 정보서비스 이용 현황) - 예산 현황(도서관(복지관) 총예산, 예산 지출 내역, 예산 수입 내역)
조사체계	- 조사기관↔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02-3483-8855)
정보출처	- <a href="http://www.nl.go.kr">http://www.nl.go.kr</a>

## ○ 「인구주택총조사(Population-Housing Census, 제10101호)」, 통계청(2005년)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 자료 제공</li> <li>-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li> </ul> <p>※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인구주택총조사 규칙(2000.7.1.제정) 근거</p>
조사연혁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총조사 : 1925년 이후 5년 주기로 조사, 2005년은 17차에 해당</li> <li>- 주택총조사 : 1960년 이후 5년 주기로 조사, 2005년은 9차에 해당</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 가구 방문에 의한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 인터넷 조사 병행</li> </ul>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기간 : 2005. 11. 1 ~ 2005. 11. 15 (15일간)</li> <li>- 조사기준시점 : 2005. 11. 1 0시 현재</li> </ul>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조사, 표본조사 모두 인구에 관한 사항, 가구에 관한 사항, 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li> <li>- 이 중 10% 표본조사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에 관한 사항 : 아동보육, 5년 전 거주지, 활동체약, 통근통학 여부, 통근 통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산업, 직업, 근로장소, 혼인년월, 총 출생아 수, 추가 계획 자녀 수, 고령자 생활비 원천 등</li> <li>· 가구에 관한 사항 : 거주기간, 자동차 보유 대수, 주차시설, 임차료 등</li> <li>· 주택에 관한 사항 : 거처의 종류, 연건평, 대지면적, 방수, 건축년도 등</li> </ul> </li> </ul>
조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 : 통계청</li> <li>-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조사구 : 시 · 도 ⇔ 시 · 군 · 구 ⇔ 읍 · 면 · 동 ⇔ 조사관리자 ⇔ 조사원</li> <li>· 특별조사구 : 해외주재공관(외교통상부), 교도소 · 소년원(법무부), 군부대(국방부),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의무소방대(소방방재청)</li> </ul> </li> </ul>
담당부서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042-481-3740)
정보출처	- <a href="http://www.kosis.kr">http://www.kosis.kr</a>

## ○ 「인구동향조사(Vital Statistics, 제10103호)」, 통계청(2008년)

조사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 주택, 보건, 사회복지, 교육, 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통계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조사연혁	- 신라시대부터 호적제도 존재 - 1938년 조선총독부 총독령에 의한 조선인구동태조사 규칙제정 - 1970년 호적신고항목과 인구동태조사항목을 통합 일원화 - 1997년 8월 인구동태신고시스템 개발로 현지 입력방식 채택 - 2004년 1월 인구동태신고시스템 인터넷웹기반으로 전환 운영 - 2008년 1월 인구동태조사규칙 시행(제정 2007.12.28 재정경제부령 591호) - 2008년 10월 통계 명칭 변경(인구동태조사→인구동향조사)
조사주기	- 매월
조사대상	- 대한민국 영토 내 혹은 외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써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를 한 자
조사방법	-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작성, 시·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기관 공무원이 인구동태조사 항목을 PC를 이용하여 『인구동태입력시스템』에 입력
조사기간	- 매월 1일 ~ 말일
조사항목	- 출생신고(신고일, 출생자에 관한 사항, 혼인신고 시 성·본 협의서 제출 여부,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 모의 총 출산아수) - 사망신고(신고일, 사망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사망장소, 최종졸업 학교, 발병(사고)당시 직업, 혼인상태, 사망종류, 사고종류, 사고 발생지역, 사고 발생장소, 사망원인,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 사망원인 진단자) - 혼인신고(신고일, 혼인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전혼인해소 일자, 성·본 협의서 제출여부, 실제결혼생활시작일, 혼인종류, 최종졸업학교, 직업) - 이혼신고(신고일,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실제결혼(동 거)생활시작일, 실제이혼연월일, 20세 미만 자녀수, 이혼의 종류, 이혼사유, 최종졸업학교, 직업)
조사체계	- 읍·면·동, 시·구↔시·도 및 군↔통계청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042-481-2258)
정보출처	- <a href="http://www.kosis.kr">http://www.kosis.kr</a>

- 「경제활동인구조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제10104호)」, 통계청 (2011년)

조사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3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표본조사로 실시</li> <li>- 2005년 7월 : 공식실업률 작성기준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변경</li> <li>- 2007년 9월 : 표본 개편(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기준, 32,580→32,000가구)</li> <li>- 2008년 1월 : 조사표 개편, 인터넷조사(CASI) 도입</li> <li>- 2009년 7월 : 전화면접조사(CATI) 도입</li> </ul>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모집단 : 조사대상 월에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자 중 만 15세 이상인 자(단, 현역군인 및 공의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li> <li>- 표본의 크기 : 약 32,000가구</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직원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조사내용을 PDA에 내장된 전자조사표(CAPI)에 직접 입력</li> <li>- 부재가구 등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화 또는 자기기입식 조사도 일부 허용</li> <li>- 희망 적격 가구에 대하여는 전화면접조사(CATI), 인터넷조사(CASI) 조사</li> </ul> <p>※ 준비조사 기간에 보조조사표를 배부하여 가구 변동내용을 미리 파악</p>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기간 :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li> <li>- 조사실시기간 : 조사대상기간 다음 1주간</li> </ul>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관계</li> <li>- 확인항목 :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의 구직여부, 1개 월간의 구직여부</li> <li>- 세부사항 : 부업여부, 취업시간, 구직기간, 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성 여부, 비구직사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부 및 시기,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이직사유</li> </ul>
조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담당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3939)</li> </ul>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kosis.kr">http://www.kosis.kr</a></li> </ul>

## ○ 「사회조사(Social Survey, 제10118호)」, 통계청(2011년)

조사목적	-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 통계법 제 17조 1항 근거
조사연혁 및 주기	- 1977년 이후 매년 조사 - 1996년 지정통계 지정 - 2008년 사회통계조사를 사회조사로 명칭 변경
조사대상	-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내의 만 13세이상 가구원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조사기간	- 조사대상시점 : 2011. 7. 15 - 조사기간 : 2011. 7. 15 ~ 2009. 7. 29 (15일간)
조사항목	- 기본항목(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등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순환조사 - 2009년 조사부문(5개) : 문화와 여가, 복지, 소득과 소비, 노동, 사회참여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지방청(사무소)⇒통계청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042-481-2272)
정보출처	- <a href="http://www.kosis.kr">http://www.kosis.kr</a>

○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제11702호)」,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08년)

조사목적	-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통계를 산출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근거
조사연혁 및 주기	- 국민영양조사와 국민건강조사를 통합하여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 - 제1기(1998년), 제2기(2001년), 제3기(2005년), 제4기(2007~2009년) 조사 실시
조사대상	- 조사 모집단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모든 가구와 국민 - 표본의 크기 : 매년 200개 조사구, 4,60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3,800명
조사방법	- 면접조사(영양조사) 및 검진조사(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
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 1. 1 ~ 12. 31 - 조사실시기간 : 연중 매주 3일간 전국 4개 지역 조사(연중조사체계)
조사항목	- 건강설문조사 :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안전의식, 비만 및 체중조절, 활동제한, 삶의 질, 손상, 이환, 의료이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 검진조사 : 신체계측, 혈압 및 맥박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폐기능 검사, 흉부X-선검사, 안검사, 이비인후검사, 골밀도 및 체지방검사 - 영양조사 : 식생활조사, 식품섭취빈도조사, 식품섭취조사
조사체계	-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질병정책관 건강정책과(02-2023-7489) -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과(02-380-2189~2192)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2) 보고통계

### ○ 「등록장애인현황(Registered Disabled Persons, 제11761호)」,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 등록장애인 현황파악을 통한 효율적 정책수립 및 지원
작성대상	- 전국의 등록장애인
작성사항	- 전국의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시도별 현황, 연령별 유형별 성별 현황, 연령별 등급별 성별 현황(15개 장애유형별 구분), 연령별 지역별 성별 현황 등
작성주기	- 분기
작성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전국 읍면동사무소의 등록장애인 현황 결과표를 집계
공표방법	- 전산망(인터넷)
통계간행물명	- 보건복지통계연보(매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02-2023-8188)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Present Status on the Obligatory Employment of the Disabled, 제11830호)」,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작성목적	-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 민간부문의 부담금 징수누락 확인, 장애인 고용정책 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대상	- 정부부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민간부문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작성사항	- 정부부문 :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장애유형별 장애인공무원 현황 - 민간부문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장애인근로자 명부 등
작성주기	- 반기
작성체계	- 정부부문 : 중앙인사기관장, 광역지자체장, 지방교육청장↔고용노동부장관 - 민간부문 : 고용노동부 제출 명령↔상시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 집계↔고용노동부 보고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기상황보고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기상황 보고서”는 매년 7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
공표방법	- 언론(보도자료)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평등정책관 장애인고령자고용과((02-2110-731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지원국 기업지원부(031-728-7238)
정보출처	- <a href="http://www.molit.go.kr">http://www.molit.go.kr</a> - <a href="http://www.kead.or.kr">http://www.kead.or.kr</a>

○ 「산재보험통계(Report 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제11811호)」,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작성목적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수, 종사자 수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험요율 조정, 징수 등의 현황 파악 및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지급현황을 파악하여 보험료 징수 및 보상기준 등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가 지급된 산재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작성사항	- 사업종류별 월말 적용 사업장 수, 신규적용 사업장 수, 소멸사업장 수, 산재보험 징수 결정액, 충당액, 수납액 및 결손액 - 업종별 급여종류별 수급자수 및 지급건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금액 현황
작성주기	- 매월
작성체계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담당자(노동보험시스템 전산 처리)↔근로복지공단 본부(매월 취합하여 마감처리)↔고용노동부
공표방법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통계간행물명	- 산재보험사업연보 - 산재보험 및 고용징수 실적 분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산재보험과(02-2110-7224)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연구2부(02-2670-0249)
정보출처	- <a href="http://www.moel.go.kr">http://www.moel.go.kr</a> - <a href="http://www.kcomwel.or.kr">http://www.kcomwel.or.kr</a>

○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Quarterly Analysis Report of Employment Service for the Disabled, 제38301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작성목적	-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과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의 특성·동향을 파악하여 정책 자료 및 기초 통계로 활용
작성대상	- 취업지원관련 기관(공단, 취업알선사업 공동수행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투게더( <a href="http://www.worktogether.or.kr">www.worktogether.or.kr</a> )를 통한 구인업체 및 구직자
작성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사항 :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대별, 직종별, 지역별 구인인원, 구직자 수 및 취업건수</li> <li>- 구인사항 : 규모별, 산업별 구인인원 및 취업건수</li> <li>- 구직사항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장애등급별 구직자수 및 취업건수</li> </ul>
작성주기	- 매분기
작성체계	- 공단 및 취업알선사업 공동수행기관 담당자(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전산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취합하여 마감처리)↔고용노동부
표현방법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통계간행물명	-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담당부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팀(031-728-7346)
정보출처	- <a href="http://www.lead.or.kr">http://www.lead.or.kr</a>

○ 「보육시설 및 이용자통계(Statistics on childcare facilities and users, 제15407호)」,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 보육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대상	- 전국 보육시설(일반 보육시설, 장애아 전담시설, 장애아 통합시설)
작성사항	- 보육시설 수·보육아동 수·종사자 현황, 장애아 전담시설 수 및 아동현황, 장애아 통합시설 수 및 아동현황, 종사자, 아동현원 남녀구분, 정부인건비지원시설 현황, 보육시설 미설치지역현황, 보육료지원대상 자격요건, 일반시설(특수보육시설 외) 시간연장형 등 특수보육 현황
작성주기	- 1년
작성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li> <li>- 전국 시군구 및 보육시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자료 활용</li> </ul>
표현방법	- 간행물, 국가모니터링 시스템에 공표
통계간행물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통계</li> <li>- 보건복지통계연보</li> </ul>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02-2023-8919)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건강보험통계(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s, 제92006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대상	- 건강보험 적용인구
작성사항	- 건강보험 적용인구, 요양기관, 건강보험재정현황, 급여실적, 건강보험심사실적,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작성주기	- 1년
작성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인구, 보험료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li> <li>- 보험급여, 진료실적 등 : 요양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li> </ul> <p>※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건강보험 급여 및 진료자료, 의료급여청구서 등을 바탕으로 함</p>
공표방법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통계간행물명	- 건강보험통계연보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분석팀(02-3270-9848)</li> <l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정책지원실 통계정보공개부(02-2182-2541)</li> </ul>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Livelihood Protection Recipients Statistics, 제11714호)」,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작성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작성사항	- 소득 및 재산보유상황, 가족상황, 생활상태, 기타 보호에 필요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작성주기	- 1년
작성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li> <li>- 지방행정정보망의 복지행정시스템 정책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함</li> </ul>
공표방법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통계간행물명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2-2023-8131)
담당부서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장애인수당 수급자 현황(Allowance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Recipient, 제11762호)」,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 장애수당 수급자 과학을 통한 효율적 정책수립 및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작성대상	-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이상 전체 등록 장애인
작성사항	- 전국 장애수당 예산액 및 수급자 수
작성주기	- 반기
작성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행복e음' 통계자료 추출 및 읍·면·동(지방자치단체의 장애수당 집행실적 보고 자료) 활용
공표방법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통계간행물명	- 보건복지통계연보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02-2023-8054)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국민연금통계(National Pension Statistics, 제32202호)」, 국민연금공단

작성목적	-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작성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작성사항	- 가입자현황 : 종별 가입자, 시·군·구별 가입자 현황 등 - 징수현황 : 월별징수 현황 등 - 급여현황 : 급여종류별 급여지급 현황 등 - 심사청구현황 : 사안별 심사청구 처리 현황 등 - 기금현황 : 기금조성, 운용 현황
작성주기	- 1년
작성체계	- 가입자 및 보험료, 급여, 심사청구 현황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지사(제신고서 접수 및 입력)↔국민연금공단 - 기금 현황 : 기금운용본부↔국민연금공단
공표방법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통계간행물명	- 국민연금통계연보
담당부서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지원부(02-3218-8615)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a href="http://www.nps.or.kr">http://www.nps.or.kr</a>

## 3) 그 외

## ○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작성목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추진내용 수록
작성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급) 교사, 특수학교(급) 기관 관리자 등
작성사항	- 특수학교 현황(교직원, 학급 수, 학생 현황 등),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특수학급 수 및 학생 수, 교원 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반학급 배치 현황 등) - 고등부 졸업생 취업 현황 등
작성주기	- 1년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특수교육지원과(02-2100-6561)
정보출처	- <a href="https://www.knise.kr">https://www.knise.kr</a>

##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 보건복지분야의 정책수립, 학술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대상	- 국내외 보건복지분야
작성사항	- 인구, 국민건강,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산업,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생활환경, 재정경제, 국제통계
작성주기	- 1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 보건복지정책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성과 기록
작성대상	- 국내외 보건복지분야
작성사항	- 부문별 보건복지 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건강보험, 연금제도,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 육성사업, 의약품·식품 정책, 국민건강 증진정책, 한의약정책, 정책지원)
작성주기	- 1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나. 해외통계

### 1) OECD

#### ○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OECD

조사설명	- 장애 문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의 이해 도모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두 가지 정의 개념을 이용 · 정책적인 진행절차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자기보고식에 의해 보고한 장애인
조사주기	- vol 1 :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2006) - vol 2 : 호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2007) - vol 3 :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2008) - 종합보고서 발간(2010)
정보출처	- <a href="http://www.oecd.org/els/disability">http://www.oecd.org/els/disability</a>

## 2) 독일

## ○ 「중증장애인 통계(Statistik der schwerbehinderten Menschen)」, 독일 연방 통계청

조사설명	- 「사회법전 제9권」제131조(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와 연방통계법을 법적인 근거로 하여 조사 - 사회정치적, 정책적인 계획을 위한 기본원칙 정보를 제공
조사기관	-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조사주기	- 2년(끌자리 홀수연도에 시행)
조사내용	- 성별, 연령별, 주(州)별, 장애정도별, 장애종류별 중증장애인 현황
조사대상	- 중증장애인(「사회법 전 제9권」에 따른 장애정도 50이상)
조사 방법 및 배포	- 조사된 내용이 사회보장청에서 지방통계청으로 제공되면 지방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관청에 등록된 기록과 검토됨. 연방통계청은 16개 지방통계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합하여 정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
정보출처	- <a href="http://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a>

## ○ 「중증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Statistik aus dem Anzeigeverfahren gemäß § 80 Abs.2 SGB IX)」, 독일 연방 노동공단

조사설명	- 「사회법전 제9권」제80조 제2항에 따른 고용의무 통계
조사기관	- 연방 노동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
조사주기	- 매년 실시
조사내용	- 상시근로 20인 이상 고용주 수, 공공 및 민간부문 중증장애인 고용률,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준 중증장애인고용인원, 중증장애인 고용률별 현황, 고용주 규모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산업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성별/연령별/장애 정도별/지역별/산업분야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조사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고용주 (민간 및 공공부문)

## ○ 「연례보고서(Jahresbericht)」, 독일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

조사기관	-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Integrationsämter und Hauptfürsorgestellen)
조사주기	- 매년 실시
조사내용	- 각 주(州)별 조정금 징수 및 지출에 관련한 통계, 중증장애인 해고 등의 관련 통계
조사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고용주(민간 및 공공부문)
참고사항	- 통계보고서 아님. 연례보고서 안에 중증장애인 관련 통계자료가 들어있음

### 3) 미국

#### ○ 「American Community Survey」, U.S. Census Bureau

조사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기관 프로그램의 추산과 행정을 위해 연방, 주, 지방정부 정보 제공</li> <li>- 매년 중요한 경제, 사회, 인구통계 및 주택정보를 제공</li> <li>- 10년 주기로 진행되는 인구센서스는 단순히 인구의 수만 파악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센서스조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ACS를 사용</li> </ul>
조사기관	- U.S. Census Bureau
조사주기	- 매년
장애판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S는 장애를 판별하기 위해 6개의 질문에 기초하고 있음. 다음 질문에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라는 응답을 하면 장애가 있다고 판별하되, 인지장애, 보행장애, 자기관리장애는 5세 이상, 자립생활장애는 18세 이상에 한함</li> <li>1) hearing disability(청각장애) : 청각장애 또는 듣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li> <li>2) vision disability(시각장애) : 맹인이거나 또는 안경을 썼음에도 시력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li> <li>3) cognitive disability(인지장애)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인하여 집중, 기억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li> <li>4) ambulatory disability(보행장애) :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li> <li>5) self-care disability(자기관리장애) : 옷을 입거나 목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li> <li>6) independent living(자립생활장애) :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의사를 찾아가거나 쇼핑 같은 일을 혼자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가?</li> </ul>
정보출처	- <a href="http://www.census.gov">http://www.census.gov</a>

## O 「Current Population Survey」,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조사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노동력 통계 및 소득 통계에 관한 정보 제공</li> <li>- 2008년 6월 16세 이상 장애인(시설입소자 제외)을 판별할 수 있는 문항 추가</li> </ul>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 Bureau of Labor</li> </ul>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li> </ul>
장애판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S는 장애를 판별하기 위해 6개 질문 세트를 이용함. 다음 질문에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라는 응답을 하면 장애가 있다고 판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달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인하여 일상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6세 이상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응답.</li> </ul> </li> </ul> <p>1) 청각장애 또는 듣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  2) 맹인이거나 또는 안경을 썼음에도 시력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  3)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인하여 집중, 기억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  4)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  5) 옷을 입거나 목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6)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의사를 찾아가거나 쇼핑 같은 일을 혼자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가?</p>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bls.gov/cps/cpsdisability.htm">http://www.bls.gov/cps/cpsdisability.htm</a></li> </ul>

#### 4) 일본

##### ○ 「장애인 백서」, 내각부

조사기관	- 내각부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주소 : <a href="http://www8.cao.go.jp/shougai/whitepaper/index-w.html">http://www8.cao.go.jp/shougai/whitepaper/index-w.html</a></li> <li>- 파일주소 : <a href="http://www8.cao.go.jp/shougai/whitepaper/h22hakusho/zenbun/index.html">http://www8.cao.go.jp/shougai/whitepaper/h22hakusho/zenbun/index.html</a></li> </ul>

##### ○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후생노동성

조사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 취업형태, 직종 등 취업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경제활동 참여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li> </ul>
조사연혁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조사 발표(2008. 1. 18)</li> <li>- 2008년 11월 1일부터 실시 예정</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의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2006. 7. 1 현재,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신체장애인 수첩, 요육수첩 또는 정신보건복지수첩 등 소지자) 및 장애인 가족</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 방문에 의한 면접 조사</li> </ul>
조사기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 7. 1 현재</li> </ul>
담당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후생노동성</li> </ul>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주소 : <a href="http://www.mhlw.go.jp/houdou/2008/01/h0118-2.html">http://www.mhlw.go.jp/houdou/2008/01/h0118-2.html</a></li> <li>- 파일주소 : <a href="http://www.mhlw.go.jp/houdou/2008/01/dl/h0118-2a.pdf">http://www.mhlw.go.jp/houdou/2008/01/dl/h0118-2a.pdf</a></li> </ul>

##### ○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후생노동성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li> </ul>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장애인 고용 현황</li> <li>- 웹주소 : <a href="http://www.mhlw.go.jp/">http://www.mhlw.go.jp/</a></li> <li>- 파일 주소 : <a href="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02i9x.html">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02i9x.html</a></li> </ul>

##### ○ 「Hello Work 취업 현황 보고」, 후생노동성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li> </ul>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 &lt;2009년 장애인 취업소개 현황&gt;(2010.5.7 후생노동성 보도자료)</li> <li>- 웹주소 : <a href="http://www.mhlw.go.jp/">http://www.mhlw.go.jp/</a></li> <li>- 파일주소 : <a href="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6572.html">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6572.html</a></li> </ul>

## 5) 프랑스

### ○ 「2008 Atlas National」, Agefiph

조사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전국의 장애인 실태를 다루고 있는 자료집</li> <li>- 주요 단체의 통계조사를 수집, 분석한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법, 사회, 경제적 배경 속에 제시하고 시대에 따라 비교함</li> </ul>
담당기관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정보출처	- 웹주소 : <a href="http://www.Agefiph.fr">http://www.Agefiph.fr</a>

### ○ 기타 조사

AN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PE(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 국가고용사무소</li> <li>- 구직자와 구인 사업체를 바탕으로 집계된 통계자료 생산</li> <li>- 아틀란스에 사용된 자료</li> <li>- 월말 구직 : ANPE에 월말 등록된 구직자</li> <li>- 등록 구직 : 일정기간 실직 등록된 자의 구직 동향 집계 자료</li> <li>- 실직탈출 구직 : 일정기간 실직에서 벗어난 자의 구직 동향 집계 자료</li> <li>- 등록 구인 : ANPE에 등록된 구인 집계 자료</li> </ul>
CCM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농업 상호증정금고</li> <li>- 농업활동 및 농업급여, 농업과 관련된 사업체 및 근로자에 관한 통계자료 이용</li> <li>- 아틀란스에 사용된 자료</li> <li>- 성인장애인수당(농업종사자)</li> <li>- 산업재해·직업병보조금(농업종사자)</li> <li>- 장애연금(농업종사자)</li> </ul>
Cnam-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질병보험금고</li> <li>- 산업재해·직업병보조금, 장애연금 관련 통계자료 이용</li> </ul>
Da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내부 연구조사통계국</li> <li>- 프랑스 노동부 내에서 노동, 고용, 직업훈련분야 통계의 생산, 분석, 보급을 담당</li> </ul>
Dr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li> <li>- 보건 및 사회의료분야의 분석 및 조사 실시</li> <li>- 아틀란스에 사용된 자료</li> <li>- Cotorep/CDAPH의 활동 :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간으로 추출</li> <li>- 사회기반 설문조사 : 4년에 한번 근로지원센터, 보호작업장, 장애아동 및 성인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편설문조사</li> <li>- 사회보건기관 국가색인 : 이를 이용하여 Dress 및 지방, 현 사회보건국이 사업 우영 중인 기관과 재정 지원되는 기관의 수 파악, 또한 이 색인 사회기관 설문 조사의 기초자료로 쓰이며 온라인 자료서비스인 “Statiss 2007”에 자료 지원</li> </ul>
Ins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국립경제연구원</li> <li>- 프랑스 경제 및 사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 보급</li> <li>- 아틀란스에 사용된 자료</li> <li>- 2002, 2007년 고용 설문조사 자료</li> <li>- 1998~2001년까지의 설문조사 ‘장애 무능력 의존’의 결과</li> <li>-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인구평가</li> <li>- 경제활동률, 고용률, 실업률 생성</li> </ul>

## 6) 영국

## ○ 「LFS(Labor Force Survey)」, 영국 통계청

조사설명	-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발효 이전에 장애정도와 근로 조건 및 상태에 대한 정보 수집
조사기관	- 영국 통계청
조사형태	- 가구조사
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    애 : 모든 유형</li> <li>- 대상인구 : 특정 연령대의 인구집단(16~64세 연령대 남성, 16~59세 연령대 여성)</li> <li>- 모집단 포함범위 : 62.5%(전체인구에서의 근로연령인구 비율)</li> <li>- 경제활동 : 모든 경제활동</li> <li>- 고용상태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li> <li>- 고용지위 : 근로자, 자영업자, 공공근로나 공공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있는 자, 무급가족 종사자</li> <li>- 사업체 : 모든 형태와 규모</li> <li>- 지역 : 전국</li> <li>- 제한사항 : 조사 샘플에는 지역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나 호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음</li> </ul>
장애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로 쓰이는 용어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장애인/근로제약이 있는 장애</li> <li>-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 : 정신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불리한 장기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상의 문제</li> <li>- 근로제약 :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유형과 양에 영향을 끼치는 장기적인 건강상의 문제</li> <li>- 용어의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법(1995년)</li> <li>- 장애로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 1년</li> </ul>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분류체계 : 근로연령 범주 내에서의 모든 연령대 구분)</li> <li>- 교육수준(분류체계 : ISCED 국제 표준교육분류)</li> <li>- 기타 개인 특성(분류체계 : 다른 EU 국가들과 동일)</li> <li>- 생활상태 종류(분류체계 : 다른 EU 국가들과 동일)</li> <li>- 고용상의 지위(분류체계 : ILO 기준 적용)</li> <li>- 직업(분류체계 : 기본직업분류)</li> <li>- 경제활동(분류체계 : ILO 기준)</li> </ul>
교차변수	- 장애 변수는 모든 변수별로 교차분석이 가능함
배포	- 정부간행물 : 노동시장경향 - 계간 부록

## O 「FRS(Family Resources Survey)」, 영국 노동연금부

조사설명	- 개인가구의 환경과 소득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1992년부터 실시
조사기관	- 영국 노동연금부(DWP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조사방법	- 영국 전역 2만 9천 가구를 뽑아 표본조사로 실시
조사주기	- 매 년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연금부 업무와 관련된 내용</li> <li>·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포함한 개인의 소득, 주택 가격, 자산과 저축, 경제 상태 등을 파악</li> <li>·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인종별 장애인 수에 대한 자료 파악 가능. 단, 영국 전체의 가구주와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본조사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아님.</li> <li>· 조사의 표본 안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조사함</li> </ul>
장애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보유자 포함(Disability, including long standing illness)</li> <li>· 개인의 삶의 1가지 이상의 영역에 확실한 어려움을 주는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이라고 정의됨</li> <li>·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차별금지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의해서 분류</li> <li>· 장애인차별법에 의하여 분류해 내지 못하는 장애 개념도 있음</li> <li>· 본 장애 개념은 경제활동 상태에서 사용하는 “장애” 개념과는 다름</li> </ul>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보고서 발행</li> <li>- <a href="http://www.dwp.gov.uk/asd/frs">http://www.dwp.gov.uk/asd/frs</a></li> </ul>

## 2. 주요 용어 해설

### 가. 국내통계

#### 1) 장애인구

##### ○ 등록장애인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장애인현황</li> <li>-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을 한 자</li> <li>- 장애인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함</li> <li>·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li> </ul> </li> <li>- 장애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5가지로 분류</li> <li>· 1999년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1차 확대</li> <li>· 2003년 안면장애, 간질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등 2차 확대</li> </ul> </li> <li>- 장애유형 및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1~3급, 5급)</li> <li>·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2~4급)</li> <li>·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을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1~6급)</li> <li>·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1~6급)</li> <li>· 신장장애 : 투석치료증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2급, 5급)</li> <li>·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1~3급, 5급)</li> <li>·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핵물,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2~4급)</li> <li>·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3~4급)</li> <li>· 자폐성장애 : 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1~3급)</li> <li>· 장루·요루장애 :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2~5급)</li> <li>·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 장애(1~3급)</li> <li>·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1급~3급)</li> <li>·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1급~6급)</li> <li>·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2급~6급)</li> <li>·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1~3급)</li> </ul> </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제도」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출현율에 의한 실제 장애인 수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제도」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출현율에 의한 실제 장애인 수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중증장애인

사용통계	- 등록장애인현황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며, 단,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장애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 장애인도 인정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li> </ul> </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관련 법령상의 중증장애인 정의는 서로 상의하여 적용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10년 관련 법 개정으로 호흡기, 간질 3급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음</li> </ul>

### ○ 가구, 가구원, 장애인가구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li> <li>- 가구원 :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가구원이 될 수 있음. 가족이란 용어와는 개념상 구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에 포함된 사람 : 여행, 출장 등으로 국내외의 다른 곳에 잠시 출타 중인 사람, 기도원, 병원에 입원(입소) 중인 사람, 공익근무, 1개월 미만의 가출자, 미결수, 선박·항공기·철도 텁승승무원,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는 하숙인·자취인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동거 중인 사람</li> <li>· 조사에서 제외된 사람 :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외지 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에 살고 있는 사람, 군대 또는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집을 떠나 있는 사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장기간 요양하거나 수용되어 있는 사람</li> </ul> </li> <li>- 장애인가구 :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li> </ul>
이용 상 유의점	- 보육원, 양로원, 수도원 등의 특수사회시설 및 각종 기숙사 시설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가구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조사하지 않음

### ○ 중증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이 1, 2급인 장애인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관련 법령상의 중증장애인 정의는 서로 상의하여 적용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가구주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증명서이나 주민등록상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책임자 :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 호주 또는 세대주와 가구주는 상이한 개념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혼인상태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적이나 주민등록 상의 신고와는 관계없이 15세 이상자에 대한 사실상의 혼인 상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 : 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li> <li>· 유배우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li> <li>· 사별 :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li> <li>· 이혼 :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li> <li>· 별거 : 이혼을 전제로 하여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li> </ul> </li> </ul>

##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 일상 생활활동 :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동작 즉, 식사하기, 옷 입기, 화장실에 가기, 목욕하기, 위생처리하기 등 개인적인 독립에 기초한 하루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독립적으로 하는 동작들</li> <li>- 수단적 일상 생활활동 : 보다 진보된 것으로서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그리고 더 복잡한 환경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동작들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과정에는 가정관리와 지역사회 생활기술, 건강관리, 안정관리 등이 포함됨</li> </ul>

## ○ 장애인보조기구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기구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까지는 ‘재활보조기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2007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보조기구’라는 용어로 대체됨</li> </ul> </li> </ul>

## 2) 경제

### ○ 가구 월평균 소득, 가구 월평균 지출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월평균 소득 : 기본급, 상여금, 사업소득, 축산·어업·농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보험수령액, 연금, 증권수익, 임대료,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보조금 등 가구원 전원이 3개월간 버는 수입을 모두 합한 월평균 금액</li> <li>·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계산</li> <li>· 농가의 경우 ‘연간 쌀 몇 가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현재 살 가격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을 환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계산</li> <li>- 가구 월평균 지출 : 식료품비(주부식비), 연료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공과금, 내구재구입 등 가구원 전원이 한 달 쓰는 돈을 모두 합산한 금액</li> <li>· 연간 총 지출액만 아는 경우에는 연간 총 지출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함</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 사업용도,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등은 가구지출액에서 제외, 부채나 이자 지출은 포함</li> </ul>

###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 장애인이 아닌 경우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은 본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이며, 재활보조기구, 컴퓨터 구입과 같은 일회성 비용은 내구기한을 고려하여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함</li> </ul>

### ○ 소득계층

사용통계	-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에 소득증가율 3.90%를 적용하여 소득범위를 결정</li> <li>- 소득증가율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1인가구 이상 전가구의 명목소득에서 비경상소득과 비소비지출을 뺀 소득의 2007년과 2008년 사이 증가율을 적용</li> <li>- 세금 등을 제외한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 185만원 이하(1~4분위)</li> <li>· 중소득층 : 185만원 초과 363만원 이하(5~8분위)</li> <li>· 고소득층 : 363만원 초과(9~10분위)</li> </ul> </li> </ul>

## ○ 주택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아래의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li> <li>·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춤</li> <li>·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li> </ul> </li> <li>- 주택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 일반단독주택(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 다가구단독주택(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li> <li>·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li> <li>·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li> <li>·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math>660\text{m}^2</math>(200평)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li> <li>· 그 외 :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주택), 오피스텔(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쪽방(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공식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주거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주거용도로 사용되나 건축 제료나 구조측면에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 기타(사람이 거주하나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li> </ul> </li> <li>- 점유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 : 전세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li> <li>·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li> <li>·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li> <li>·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해 가는 경우</li> <li>·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대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li> </ul> </li> </ul>
용어설명	

## ○ 소득, 생활비

사용통계	-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 및 사업소득 :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 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 포함됨(상여금 등 포함)</li> <li>·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 또는 채권 등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됨(자산의 가치가 변화했더라도 실제 매매를 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미포함)</li> <li>· 부동산소득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됨(단,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미포함)</li> <li>· 기타소득 : 사회보험,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은 돈,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지원금, 보험금, 퇴직금, 복권 탄 돈, 중여 또는 상속으로 받은 돈이 포함됨</li> </ul> </li> <li>- 생활비 : 매달 거의 일정하게 지출되는 식비, 의복비, 주거비, 가구 가사 용품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비의 월평균 합계를 의미함(단, 주택임대료 및 저축,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나 특별한 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제외)</li> <li>- 주거비 :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됨(단,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택수선·유지비는 제외)</li> </ul>

##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사용통계	-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측정</li> <li>- 주택 만족도 측정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택 내부 구조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 ② 건물이 기울어져 있음</li> <li>③ 주요 구조부(기둥, 보, 벽 등)가 파손되었음 ④ 화재나 수해 시 취약함</li> <li>⑤ 통풍이 잘되지 않음 ⑥ 채광이 잘되지 않음 ⑦ 단열이 잘되지 않음</li> <li>⑧ 방수가 잘되지 않음 ⑨ 방음이 잘되지 않음 ⑩ 급수가 잘되지 않음</li> <li>⑪ 전반적인 주택 만족도</li> </ul> </li> <li>- 주거환경 만족도 측정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장·대형마트·백화점까지 접근용이성 ② 병·의원·약국 등 의료기관 까지 접근용이성 ③ 시청·읍/면/주민센터(동사무소)·경찰서 등 공공기관까지 접근용이성 ④ 문화시설 및 공원·놀이터까지 접근용이성 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일반복지시설까지 접근용이성 ⑥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용이성</li> <li>⑦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주차시설 접근용이성 ⑧ 출퇴근 및 통학 소요시간</li> <li>⑨ 학교(특수학교) 및 학원 등 교육 환경 ⑩ 방범 및 치안 상태 ⑪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 ⑫ 이웃 간 소음 ⑬ 집주변 위생 상태(청소, 쓰레기, 악취 등)</li> <li>⑭ 공용공간(아파트내 놀이터, 공원 등) 관리 상태 ⑮ 집주변의 가로등의 상태</li> <li>⑯ 집주변의 대기오염 ⑰ 주변 자연환경(산, 강, 호수, 바다, 시내, 하천 등)에 대한 만족도 ⑱ 전반적인 거주환경 만족도</li> </ul> </li> </ul>

## ○ 주거지원프로그램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비 보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주거급여 포함</li> <li>- 공공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모자가정, 등록장애인,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 입주 대상임</li> <li>· 국민임대주택 :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며 30년간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등록장애인의 경우 20% 이내 우선 공급 대상임</li> </ul> </li> <li>- 장기전세주택 : 시중 전세가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주택임(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Shift가 대표적인 예)</li> <li>-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의미로 정부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li> <li>-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정부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li> <li>-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 현재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며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li> </ul>

## ○ 정보격차 지수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 장애인</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역량·활용 부문별 격차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다차원적 개념의 계량 지표</li> <li>-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여 격차 산출</li> <li>- 정보격차 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적은 것을 의미함</li> <li>- 지수 산출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지수=필요시 접근가능성×0.6+정보기기 성능×0.2+정보기기 보유정도×0.2</li> <li>· 역량지수=컴퓨터 사용능력×0.5+인터넷 사용능력×0.5</li> <li>· 활용지수=양적 활용지수×0.6+질적 활용지수×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양적 활용지수=PC·인터넷 사용여부×0.7+PC·인터넷 사용시간×0.3</li> <li>&gt;&gt; 질적 활용지수=일상생활 도움정보×0.6+세부 권장용도별 이용정도×0.4</li> </ul> </li> <li>· 종합지수 = 접근지수 × 0.3 + 역량지수 × 0.2 + 활용지수 × 0.5</li> <li>· 정보격차 지수 ={1-(장애인의 지수 원점수/일반국민의 지수 원점수)}×100</li> </ul> </li> </ul>

## 3) 고용

## ○ 경제활동상태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 이상 인구 :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중 제외자(현역군인, 체소자 등)를 제외한 인구로 노동가구 인구로 봄</li> <li>-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li> <li>- 취업자 : 조사대상기간에 소득, 이의,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li> <li>· 일시휴직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li> </ul> </li> <li>- 실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li> <li>- 적극적 구직활동 :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 활동으로 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li> <li>-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등으로 구분됨</li> <li>- 경제활동참가율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li> <li>- 실업률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li> <li>-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념과 기준을 적용함</li> <li>- 무급으로 동일가구 내 비혈연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별도로 달리하는 가구원의 일을 돋는 것은 무급가족일로 볼 수 없음</li> <li>- 일시휴직자는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하여야 하며,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복귀가 확실하면 취업자로 분류하고, 무급이면서 복귀가 불투명한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자인 경우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판단함</li> <li>- 실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직활동은 적극적 구직활동의 개념을 적용하며 대상 기간은 4주임</li> <li>- 발령예상일이 30일 미만인 발령대기자는 구직을 하고 있는 실업자로 간주하며, 30일 이상의 발령대기자는 구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함</li> </ul>

## ○ 종사상 지위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li> <li>- 임금근로자 :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년 이상, 고용계약 미설자 중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li> <li>·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일정한 사업(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li> <li>·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li> </ul> </li> <li>- 비임금근로자 :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영주나 또는 자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동일가구 내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무보수로 18시간 일하고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li> <li>·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로,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li> <li>·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 이상) 일한 사람</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계약기간이 아님)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이 처음부터 임시 또는 일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우선하여 임시 또는 일용으로 분류함</li> <li>-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자영자로 분류함</li> <li>- 동일가구 내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됨</li> <li>- 직위가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고용주 또는 자영자이나 법인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함</li> </ul>

## ○ 산업, 직업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의 주된 활동 : 사업체내에서 조사대상자의 활동이 아니라 소속된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체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말함</li> </ul> </li> <li>- 직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종사한 일의 기능별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의 종류 : 조사대상의 직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직명, 직위와는 다르며, 직무 또는 직업을 의미함</li> </ul> </li> </ul>

### ○ 취업시간

사용통계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 일한 시간</li> <li>- 취업시간 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보낸 시간</li> <li>· 정규근무시간이외 초과근무시간도 포함</li> <li>· 가족이 경영하는 농업, 상점 등의 일을 도운 시간</li> <li>·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 0.5시간(30분)이상은 반올림하여 한 시간으로 간주</li> <li>·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직무와 관련해서 일한 시간을 포함</li> <li>· 실질적인 거래는 없어도 거래를 위해 사업장 밖에서 보내 시간도 포함</li> </ul> </li> <li>- 취업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 통근소요시간</li> <li>· 집안일(가사)에만 종사한 시간</li> <li>· 사적 용무를 본 시간</li> <li>· 무보수 봉사와 같은 활동에 종사한 시간</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 일거리가 변하여 동일한 일에 대한 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의 내용에 상관없이 계산함</li> </ul>

### ○ 근로형태

사용통계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이외의 근로자</li> <li>- 비정규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시적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비기간제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li> <li>&gt;&gt; 비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li> </ul> </li> <li>· 시간제 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 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li> <li>· 비전형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파견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li> <li>&gt;&gt; 용역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li> <li>&gt;&gt; 특수형태근로 :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사자</li> <li>&gt;&gt; 가정 내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형태</li> <li>&gt;&gt; 일일(단기)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li> </ul> </li> </ul> </li> </ul>

## ○ 구직기간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li> </ul> </li> <li>- 구직기간 계산 :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활동 첫 시작일로부터 조사대상기간 마지막날(土)까지</li> <li>· 구직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며 15일이상은 반올림하여 1개월로 계산</li> <li>· 최소 구직기간은 1개월이 되도록, 15일 미만도 1개월로 기입</li> <li>· 구직알선 의뢰 후 지속적으로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만 구직기간에 포함</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상태에서 취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변경된 기간은 해당이 되지 않음</li> <li>- 실업상태에서 연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만 계산됨</li> </ul>

## ○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조건은 지난 주 수입이 되는 일이나 18시간 이상 무급 가족종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li> <li>·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은 하였으나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li> <li>·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li> </ul> </li> <li>- 활동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 : 조사대상기간에 주로 미취학자녀(초등학교 입학 전)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미취학자녀 양육과 가사 일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육아로 분류함</li> <li>· 가사 :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한 사람의 경우 해당됨</li> <li>· 통학 : 조사대상기간에 공사립학교, 학원 및 직업훈련학원(사업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제외)에서 주로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됨. 중고등학생이 방학 중에 있거나 일시적인 병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함</li> <li>· 취업준비 :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li> <li>· 진학준비 : 혼자 집이나 도서실 등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li> <li>· 연로 : 조사대상기간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입 있는 일, 구직활동, 가사도 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해당됨</li> <li>· 심신장애 : 정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장기적인 질환, 정신·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함</li> <li>· 결혼준비 : 결혼을 하기 위해 조사대상기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준비 중인 사람</li> <li>· 쉬었음 :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li> </ul> </li> </ul>

## ○ 구직단념자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전공·경력·임금수준·근로조건, 주변)</li> <li>· 지난 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li> <li>· 자격이 부족하여(교육·기술 경험 부족,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li> </ul> </li> <li>- EDI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 기준 노동시장적 사유</li> <li>·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li> <li>·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li> <li>·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돼서</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I 구직단념자 기준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한 것임에 따라 전체인구와 절대적인 비교 어려움</li> </ul>

##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년도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하고, '00년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li> <li>· '04년도부터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을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주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li> <li>· '06년도부터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공안직군, 검사, 경찰·군인·소방·경호공무원에 한정하고,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li> <li>· '07년부터는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공사실적액 기준에서 실제 근로자 수로 변경</li> <li>· '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의무율을 2%에서 3%로 상향조정</li> <li>· '10년부터 민간부문 고용의무율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그 외 2.3%로 상향조정</li> <li>· '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시행</li> </ul> </li> <li>- 고용의무인원(명)=적용대상인원(명)×고용의무율(2~3%) (소수점 이하 절사)</li> <li>- 장애인 고용률(%)=(장애인 수(명)/적용대상인원(명))×100 (소수점 세째 반올림)</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부문의 장애인 수는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의 장애인 공무원 수임으로 전체 장애인 공무원 수는 아님</li> <li>-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고용의무 사업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노동시장의 장애인 고용률로 간주할 수 없음</li> </ul>

## ○ 사업체

사용통계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용어설명	-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사업체는 사업주 단위의 기업(enterprise)을 의미함. 따라서 하나 이상의 사업장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사업체와 구분됨. 또한 사업체는 법인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법인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회사이외 법인(사단, 재단, 학교), 실체를 갖고 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비영리 단체의 비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는 동시에 경영자로서 참여하는 개인 사업체가 있음

## ○ 상시근로자

사용통계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용어설명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인 근로자를 의미함

## ○ 장애인 근로자

사용통계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용어설명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상시근로자로 한정함 -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며, 정부기관과 국공립교원은 제외됨
이용 상 유의점	- 타 통계수치와 비교 시 주의 필요

## ○ 장애인 근로자 채용방식

사용통계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채용(공개채용, 특별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채용인지 특별채용인지와는 무관하게 「장애인만을 채용하려는 특별한 목적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함께 제공된 채용 기회에 대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채용전형이 진행되는 경우」를 말함</li> <li>· 채용전형에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해 최종 합격자 수나 비율을 설정하는 것 이외의 배려(가산점 부여, 연령제한 완화, 학력제한 완화, 추가 테스트 시간 배정, 보조도구나 편의시설 제공, 수화통역사를 비롯한 지원인력 배치 등)를 제공한 경우도 일반 공개채용으로 인정</li> </ul> </li> <li>- 장애인 할당채용(또는 구분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을 장애인에게 할당하여 채용 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을 통하여 채용하는 제도</li> </ul> </li> <li>- 장애인 특별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장애인을 배제하고 장애인만을 채용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채용 전형</li> </ul> </li> </ul>

## ○ 산재보험 장해급여

사용통계	- 산재보험통계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掌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li> <li>- 장해급여 : 업무 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 :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산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을 말함</li> <li>· 14등급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지급형태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연금 : 제1급(329일분) ~ 제7급(138일분)</li> <li>&gt;&gt; 일시금 : 제8급(495일분)~제14급(55일분)</li> <li>&gt;&gt; 제1급~제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 제4급~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제8급~제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li> </ul> </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 수는 세목별로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세목별 합이 합계와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전년도 재해자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 수에 포함됨</li> </ul>

## ○ 장애인기업

사용통계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li> <li>-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중소기업법상 소기업 제외)이 장애인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규정</li> </ul>

## ○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사용통계	-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인수 : 해당 분기 내에 신규로 등록된 구인인원 수</li> <li>- 구직수 : 해당 분기 내에 신규로 등록된 구직인원수</li> <li>- 취업수 : 해당 분기 내에 신규로 등록된 취업인원수</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고용전산망에 등록된 구인, 구직 및 취업확정 자료를 집계한 자료이며, 2006년 4/4분기부터는 노동부 워크넷의 자료가 포함됨</li> <li>- 장애인 노동시장의 전체 수급상황을 대표하지는 못함</li> </ul>

## ○ 고용서비스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용페널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할 사회복지재단이 취업알선, 직업상담, 보장구 지원, 창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의 전반적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li> <li>- 고용서비스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직업)상담 : 구직 장애인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듣고, 일자리 선택의 기준과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것</li> <li>· 취업정보제공 : 구직 장애인이 희망하는 일자리에 맞는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li> <li>· 직업능력평가 : 자신의 직업적성이나 능력을 알고 싶을 때, 직업훈련을 받고자 할 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진로결정에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실시되는 평가</li> <li>· 직업탐색 : 구직장애인의 장애특성(장애유형 및 정도)과 직업적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li> <li>· 진로지도 : 구직장애인의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따라 적합한 진로를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li> <li>· 취업알선 :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서비스</li> <li>· 취업 후 지도 :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업환경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는 서비스</li> <li>· 창업자금용자 :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융자 서비스</li> <li>· 영업장소전대지원 : 창업을 희망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금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영업장소를 임대하여 빌려주는 제도</li> <li>· 통근차량용자(자동차구입 자금용자) :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li> <li>· 직업생활안정 자금용자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li> <li>· 시설자금 융자 : 장애인근로자가 작업보조기기나 장비 등을 통해 작업환경에서 근로능력을 보완하고, 사업장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융자를 제공하는 제도</li> <li>· 시설자금무상지원 : 장애인근로자가 작업보조기기나 장비 등을 통하여 작업환경에서 근로능력을 보완하고, 사업장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초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li> <li>· 운영자금용자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운영을 위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li> <li>· 표준사업장 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설립과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하는 제도</li> <li>· 고용관리 비용지원 :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을 사업장에 위촉 또는 배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li> </ul> </li> </ul>
용어설명	

## ○ 고용서비스(계속)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용폐널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서비스 종류(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용 장려금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고용의무율(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li> <li>· 장애인신규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보험법령」상의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중증장애인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규 고용하여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아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li> <li>· 지원고용 :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실시하거나 직무지도원등을 배치하는 프로그램.</li> <li>·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 장애인이 적성, 희망, 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li> <li>· 직업재활훈련 :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및 신체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일자리(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훈련</li> <li>· 자립생활훈련 :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li> <li>· 정보화교육 : 장애인이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li> <li>· 보호고용 : 보호된 작업환경 속에서 장애인 개인에게 근로경험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장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과 생산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나가도록 도와주는 고용 방법 (예: 보조작업장, 재택고용, 기업내 집단고용)</li> <li>· 활동보조인 및 근로지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활동보조인 : 장애인 근로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보조자로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육체적인 활동을 매일 보조함</li> <li>&gt;&gt; 근로지원인 : 장애인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내용을 지원하는 보조자로서, 이들은 장애인의 직무 중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 부수적인 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함</li> </ul> </li> <li>· 직업적응훈련 :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하여 직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li> <li>·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직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작업보조기기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li> </ul> </li> </ul>

#### 4) 고용

##### ○ 보육시설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보육하는 시설</li> <li>-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li> <li>-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 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시설</li> <li>-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li> <li>· 법인 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인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li> <li>·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li> <li>· 가정 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li> <li>· 직장 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li> <li>· 민간 보육시설 :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외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법인의 보육시설, 민간개인 보육시설)</li> </ul> </li> <li>- 보육시설종사자 :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li> </ul>
용어설명	

##### ○ 특수교육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연차보고서</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li> <li>-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선정·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li> <li>-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 접근지원 등</li> <li>-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li> <li>- 특수학교 :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li> <li>-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li> </ul>

### ○ 진학률, 취업률

사용통계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학률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전공과, 전문대, 대학 등 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100</li> </ul> </li> <li>- 취업률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진학자를 제외한 학생 수 대비 취업한 학생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100</li> </ul> </li> <li>- 전공과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설치한 1년 이상의 교육과정</li> </ul>

### ○ 특수교육비

사용통계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특수교육 담당교직원의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특수교육에 투자하는 예산</li> </ul>

### ○ 직업능력개발

사용통계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고자 자신의 기능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워드 자격증 준비, 토플 밀 토익학습, 텔레마케터를 위한 전화예절 교육, 지게차 운전면허교육, 창업교육 등</li> </ul> </li> <li>-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회성, 단발성 프로그램</li> <li>·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프로그램(이벤트성, 인성 관련 프로그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하기, 길 찾기 등의 훈련이 일자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을 때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 인정함</li> </ul> </li> </ul> </li> </ul>

### 5) 보건

#### ○ 장애 치료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재활관련 기관의 의사 또는 전문가에 의한 치료 등 주된 장애의 치료를 위해 이용한 기관을 모두 포함함</li> </ul>

#### ○ 건강보험 가입 여부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가입 : 건강보험에 전혀 가입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li> <li>- 직장건강보험 : 사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 공무원,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li> <li>- 지역건강보험 :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li> <li>- 의료급여 1종 :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급여 1종에 가입된 경우</li> <li>- 의료급여 2종 :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급여 2종에 가입된 경우</li> </ul>

#### ○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사용통계	- 건강보험통계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보장구 현금급여 : 등록장애인의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보장구(휠체어 등 77종) 구입 시 상한액의 80% 지급</li> <li>-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타법에 의한 지원자, 행려환자</li> <li>&gt;&gt; 타법에 의한 지원자 : 이제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li> <li>&gt;&gt; 행려환자 : 환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행정기관(시군구청,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진료를 받게 하였으며, 부양의무자(1촌 이내의 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li> <li>•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li> </ul> </li> </ul>

## 6) 복지

## ○ 장애인 복지사업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수당의 지급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li> <li>-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등</li> <li>- 교육비 지원 :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li> <li>- 자립자금 대여(창업자금 대여 등)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li> <li>-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 장애인 고용의무, 직업재활시설운영 등</li> <li>- 기타 : 장애인 고용의무, 무료법률 구조제도 등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업</li> <li>- 실시 주체별 복지사업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시행사업 :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무료 교부,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공판장)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보험) 실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결연사업,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li> <li>• 기타 중앙행정 기관 시행사업 :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혜택,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장애인 고용의무,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의 감면</li> <li>•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면제·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체 구입면제,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등 요금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li> <li>• 지방이양사업 : 청각장애인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재활 병·의원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정신지체인 자립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li> <li>• 기타기관 시행사업 : 전화요금 할인,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동주택특별분양 알선, 무료법률구조제도,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초고속인터넷 요금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전기요금 할인 등</li> </ul> </li> </ul>
용어설명	

##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수급가구 :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과제외자)</li> <li>-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교육·자활특례 제외(조건부 수급자 가구 포함)</li> <li>· 의료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li> <li>· 교육 : 실제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험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li> <li>· 자활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li> </ul> </li> </ul>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용통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임</li> <li>-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세대) 단위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li> <li>- 수급자 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는 가구(세대)의 모든 세대원 수이며, 수급률은 총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을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수급자 : 시설수급자 이외의 수급자</li> <li>·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 시설수급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사용

## ○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사용통계	-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수당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수</li> <li>-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 아동 중 장애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수</li> </ul>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해당년도의 월평균 장애수당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것임

## ○ 장애연금

사용통계	- 국민연금통계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li> <li>- 장애일시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4급) 남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li> </ul>
이용 상 유의점	

## ○ 장애인 생활시설

사용통계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등</li> <li>-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lt;별표 5&gt;</li> <li>· 주요내용 :공통기준, 시설 설비기준,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등</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생활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및 주거시설임. 따라서 수용시설이 아님</li> <li>- 지방자치단체 입소의뢰에 따라 입소가능하고 사회복귀(퇴소)는 자유임</li> </ul>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용통계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li> <li>-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등 5개</li> <li>- 보호고용 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에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적정임금 및 최저임금)를 지급받는 장애인</li> </ul>
이용 상 유의점	-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중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6개소, 각 시 · 도 1개소)은 통계에서 제외됨

##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사용통계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련 &lt;별표 4&gt;</li> <li>· 주요내용 :공통기준, 시설 설비기준, 관리 및 운영요원 자격 및 배치기준 등</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규모, 종류, 형태가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므로 시설 수만 가지고 복지수준을 판단 할 수 없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말함</li> <li>-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li> <li>· 규정내용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대상을 포함한 시설임</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설치 현황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동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전수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li> </ul>

## 7)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 ○ 일상생활 도움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실태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 시 보호(수발) 및 간병에 대해 장애인이 받는 주관적인 도움 정도를 파악</li> <li>- 대가 지불 여부 : 혈연관계와 무관하게, 보호(수발) 및 간병에 대한 대가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파악함. 장애인이 형제나 부모에게 자신을 보호(수발) 또는 간병해 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li> </ul>

###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백서</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자서 일생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신변처리(목욕, 대소변, 세면, 식사 보조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금전·시간·일정 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낭독 보조, 대필 보조 등), 이동보조, 동료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li> <li>- 등록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1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단, 2급 이하 장애인이 이용을 희망할 경우 개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음</li> <li>-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독거장애인 등 활동보조없이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180시간 까지 지원됨</li> <li>-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8,0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4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서비스대상자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인 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음</li> </ul>

###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사용통계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상버스 :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기존 버스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li> <li>- 특별교통수단 :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개인용무에 차량으로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드려 사회활동과 복지향상 및 재활하는데 기여하는 수단</li> </ul>

### ○ 생활체육 실행자

사용통계	-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체육(운동) : 일상생활 가운데 각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가시간에 각 개인의 자발적인 참가의지에 의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주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함</li> <li>-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 운동을 하는 장애인 중 ‘1주일에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운동 목적이 ‘건강증진’, ‘여가활동’, ‘기타목적인 자’로서 집안이 아닌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대상자</li> <li>-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li> </ul>

## 나. 해외통계

### 1) OECD

#### ○ 장애인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국가별 개별 통계 취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SILC(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2007(Wave 4)</li> <li>·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li> <li>· 캐나다 : PALS(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2006</li> <li>· 덴마크 · 노르웨이 : LFS(Labour Force Survey) 2005</li> <li>· 한국 : 2005 장애인 실태조사</li> <li>·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li> <li>· 네덜란드 : LFS 2006</li> <li>· 폴란드 : LFS 2004</li> <li>· 스위스 : LFS 2008</li> <li>· 영국 : LFS 2006</li> <li>·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8</li> </ul> </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 최소한 6개월 동안 만성 건강문제로 일상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 심오한(극심한) 또는 중도(가벼운) 핵심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li> <li>· 캐나다 : 건강 및 활동에 제한(가벼운 활동에서 아주 힘든 활동까지)이 있는 자</li> <li>· 덴마크 · 노르웨이 : 오랜 건강 문제 또는 장애가 있는 자</li> <li>· 한국 : 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li> <li>· 멕시코 :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자</li> <li>· 네덜란드 : 임금근로를 수행하거나 구하는 것을 자연시키는 지속적인 불만,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자(직업적 장애)</li> <li>· 폴란드 : 법적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자</li> <li>· 스위스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li> <li>· 영국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li> <li>· 미국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일에 제한을 받는 자</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국가별 인구조사에서 장애인은 자기 판정을 통해 구별됨</li> <li>-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장애관련 조사 설문지는 비슷하나, 국가별 비교가능성은 설문지의 번역상의 문화적 차이와 자기 판정의 주관적인 요소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이 있음</li> </ul>

## 2) 독일

### ○ 연방노동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촉진, 고용 창출, 실업 수당 및 실업부조 등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장애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자문, 훈련알선, 취업알선</li> <li>· 고용주 자문 및 지원</li> <li>· 준 중증장애인 인정 및 취소</li> <li>· 고용주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여부 감독</li> <li>· 장애인작업장 선정 및 취소</li> <li>· 통합전문가(서비스)의 선정 및 재정적 지원</li> </ul> </li> <li>- 연방노동공단은 각 주(州)별로 주노동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총 10개의 주노동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li> </ul>
------	---

### ○ 중증장애인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정도(Gdb)가 50/100이상인 사람을 의미함. 한편 장애정도가 30/100~50/100 미만인 장애인 가운데 노동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사람(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함</li> <li>- 독일에서 장애판정의 기준은 ‘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Gutachtertätigkeit’ (장애의 의학적 판정을 위한 기준)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 장애 영역별로 장애정도에 따라 점수가 차등화되어 있음. 장애정도는 각 장애 영역별로 1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나뉘어 있음</li> </ul>
------	---

###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까지는 16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고용주는 상시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6%이상 고용해야 함</li> <li>- 2001년부터 법정 고용의무율을 인하하여 일부 연방 정부기관(6%)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li> <li>- 독일 「사회법전 제9권」을 일부 개정하여 고용주가 중증장애인에게 훈련자리를 제공할 경우 1인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며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훈련자리를 제공할 경우 중증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함</li> </ul>
------	---

## ○ 조정금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까지는 법정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율 6%를 미달했을 경우 일률적으로 중증장애인 미고용 1인당 월 200마르크의 조정금을 납부해야했음. 그러나 2001년부터 중증장애인 실제 고용률에 따라 조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 0~2% 미만 : 미고용 1인당 월 260유로</li> <li>· 고용률 2~3% 미만 : 미고용 1인당 월 180유로</li> <li>· 고용률 3~5% 미만 : 미고용 1인당 월 105유로</li> </ul> </li> </ul>
------	--

## 3) 미국

### ○ 경제활동상태

사용통계	-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인구(Employed persons)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기간동안 유급노동자, 자기경영자 또는 15시간 이상 가족과 관련된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한 경우</li> <li>2) 직업은 있으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나 병, 자연재해, 휴가, 양육 문제, 노동분쟁, 모성/부성 휴가 또는 다른 가족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쉬는 동안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 지에 대해서는 불문함) 각각 한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한 명의 취업인구로 계산됨. 집안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집안일, 페인트칠, 수선 그 외), 종교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자선활동 등 이와 비슷한 기관에서의 활동의 경우는 제외함</li> </ol> </li> <li>- 실업인구(Unemployed persons)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기간 동안 일을 가지지 않으며</li> <li>2) 일시적인 질환을 제외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li> <li>3) 조사기간으로부터 4주 동안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이 구직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의 사람을 뜻함. 입사대기자의 경우에는 실업인구로 분류</li> </ol> </li> <li>- 경제활동인구(Civilian labor force) : 취업중이거나, 실업중인 사람 모두를 뜻함</li> <li>- 실업률(Unemployment rate) :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 실업인구의 비율</li> <li>- 경제활동참가율(participation rate) : 전체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li> <li>-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 : 전체인구 중 취업인구 비율</li> <li>- 비경제활동인구(Not in the labor force) : 취업이나 실업상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li> </ul>

### ○ 수입, 빈곤층

사용통계	- ACS(American Community Survey)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봉급, 수수료, 보너스와 텁의 총액</li> <li>· 소유와 동업을 포함한 비농업과 농업 사업의 자영업 수입</li> <li>· 토지와 신탁으로 부터의 얻는 이자, 배당금, 순임대료, 이용</li> <li>· 사회보장연금과 철도퇴직금; 보충적소득보장제도(SSI)</li> <li>· 주 그리고 지방 복지사무소로부터 얻는 생활보호와 보조금</li> <li>· 퇴직, 유가족, 장애 연금</li> <li>· 퇴역군인연금(VA), 실업수당, 자녀양육과 이혼수당과 같이 정기적으로 받는 다른 수입</li> </ul> </li> <li>- 빈곤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관리예산국에서 빈곤 수준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li> <li>· 미국인구조사국은 가족 수와 구성으로 하여 달려 기준으로 소득수준 이용</li> <li>· 가족 총수입이 평균 소득수준 보다 적으면 빈곤층으로 분류됨</li> </ul> </li> </ul>

#### 4) 일본

### ○ 장애인 및 장애정도

사용통계	-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 : 신체장애인 수첩 1, 2급인 자</li> <li>· 경증 : 신체장애인 수첩 3~6급인 자</li> </ul> </li> <li>- 지적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 : 요육수첩 등의 장애정도가 A1, A2, 1급, 2급 등인 자</li> <li>· 경증 : 요육수첩 등의 장애정도가 B1, B2, C, 3급, 4급인 자</li> </ul> </li> </ul>

### ○ 상용고용

사용통계	-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용어설명	- 1주의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 단,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자 및 1년 이상 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

## ○ 고용의무현황, 고용률

사용통계	-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법정 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기업 - 일반 민간기업(56명 이상 규모의 기업) : 1.8%</li> <li>· 특수법인(48명 이상 규모의 특수법인 및 독립행정법인) : 2.1%</li> <li>· 국가, 지방공공단체(48명 이상 규모의 기관) : 2.1%</li> <li>·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50명 이상 규모의 기관) : 2.0%</li> </ul> </li> <li>※ ( ) 안은 각각의 비율(법정 고용률)에 의해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기업 등의 규모임</li> <li>※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중증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1명을 고용했을 때, 1명의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됨</li> <li>※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고용률에는 계산되지 않으나,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중증지적장애인 단시간근로자(1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명으로 인정하고, 정신 장애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0.5명으로 계산함</li> <li>- 근로자 수(법정 고용 장애인 수 산정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 : 전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율에 상당하는 인원(신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이 취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 정해진 비율로 곱해서 얻은 수)을 제외한 근로자 수를 말함</li> <li>- 실고용률 : 장애인 수/근로자 수×100</li> </ul>

## ○ Hello Work

사용통계	- Hello Work 취업 현황 보고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공공 직업안정소(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센터와 비슷한 역할 수행)</li> <li>- 일본의 고용안정서비스의 대민 접촉 창구이자 정부의 고용 및 노동시장정책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기관</li> <li>- 출장소와 분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610개소가 설치 운영</li> </ul>

## 5) 프랑스

### O Agefiph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션 : 1987년 7월 10일 법에 따라 Agefiph는 장애인의 일반고용 시장 진출과 고용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미션으로 함</li> <li>- 재정 지원 대상 : 법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민간부문 사업체(20인 이하도 포함), 교육기관, 직업체활 담당자 등</li> <li>- 주요 사업 :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촉진, 교육, 직업을 통한 사회통합 및 고용유지, 장애수당 지급(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li> </ul>
------	--

### O Cotorep/CDAPH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5년 법령에 의거하여 창설된 Cotorep은 연령이 최소 20세인 성인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단위기관으로 특수교육 도위원회(CDES)를 대체함. 2005년 법령에 의거하여 CDAPH(장애인의 권리 및 독립위원회)가 각 도에 있는 CDES와 Cotorep을 대체할 것임</li> <li>- 장애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취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능력 손실 또는 결손의 보상을 위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컨대 취업, 경제적 독립, 주거, 제3자의 도움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해당자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음</li> <li>-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및 직업 교육 : 장애인 근로자 자격의 인정, 인정 기한(2~10년 및 카테고리 명시, A, B 또는 C)</li> <li>· 직업 지도 : 직업 교육 (수련, 직업 재배치 연수, 사전 오리엔테이션), 일반직업 환경 또는 보호직업환경 내 배치(보호작업장, 직업에 따른 원조센터 등), 공직 취업</li> <li>· 사회경제적 원조 : 관련자의 장애율 평가 및 장애자카드 부여, 성인 장애인에게 보조금 부여, 제3자를 위한 보상 수당, 직업 비용을 위한 보상 수당, 보조인 노후 보장, 사회기관이나 사회-의료기관, 또는 특수업무기관 내 가입 허가, 유럽 주차카드 발급</li> </ul> </li> </ul>
------	---

### ○ 장애인 근로자 자격(RQTH)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의 직업동화 능력과 관련하여 세워진 행정적 카테고리임</li> <li>· 장애인 근로자는 16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부족 또는 저하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된 모든 사람을 의미</li> <li>· 이 능력의 평가는 특수위원회 차원의 전문가 그룹이 수행(cotorep/CDAPH - 직업지도 및 재분류 기술위원회)</li> <li>· 노동 불능률이 80% 이하인 장애인은 장애인 근로자로 인정받음</li> <li>· 노동 불능률이 80% 이상인 장애인은 법적으로 근로를 면제받음</li> </ul> </li> <li>- 신규 신청 및 갱신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결정은 기한 제한이 있으며, 이로 인해 두 가지 상황이 발생</li> <li>· Cotorep에 신규 신청하는 것은 새로운 장애인 근로자의 유입을 반영</li> <li>· 갱신 신청은 기한 만료 이전의 결정을 재검토</li> </ul> </li> </ul>
------	---

### ○ 경제활동인구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see, 2007</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인구비율 : 전체 해당 인구에 대한 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의 수</li> <li>- 취업자 비율 : 전체 개인에 대한 취업자의 수. 전체인구에 대해서 비율을 구할 수도 있으나, 노동연령의 인구에 한정해서 주로 측정됨 (15~64세로 주로 정의됨) 또는 하위범위로 노동연령인구를 설정함(예, 25~29세 여성)</li> <li>- 실업자 비율 :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의 백분율</li> </ul>

## ○ 고용 수요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PE</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수요의 카테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테고리 1~3 : 직업이 없어 즉시 취업이 가능함.(임시 또는 한달에 78시간 이하의 축소된 경제활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카테고리 1 : 직업이 없어 즉시 취업 가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무기한 상근직을 구하는 사람</li> <li>&gt;&gt; 카테고리 2 : 직업이 없어 즉시 취업 가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무기한 파트타임직을 구하는 사람</li> <li>&gt;&gt; 카테고리 3 : 직업이 없어 즉시 취업 가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한정 기한 임시적 또는 계절적, 단기 고용직을 구하는 사람</li> </ul> </li> <li>· 카테고리 4~5 : 즉시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며 월별로 자신들의 요구를 갱신할 수 없는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카테고리 4 : 직업이 없고 즉시 취업 불가능한 구직자</li> <li>&gt;&gt; 카테고리 5 : 직업이 있으면서 다른 직업을 찾는 구직자</li> </ul> </li> <li>· 카테고리 6~8 : 즉시 취업 불가능하고 임시 또는 한 달에 78시간 이하의 경제활동을 하며, 적극적인 고용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카테고리 6 : 즉시 취업 불가능하고 무기한 상근직을 찾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li> <li>&gt;&gt; 카테고리 7 : 즉시 취업 불가능하고 무기한 파트타임직을 찾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li> <li>&gt;&gt; 카테고리 8 : 즉시 취업 불가능하고 임시적, 계절적, 단기 고용적 등 한정 기한의 다른 직업을 찾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li> </ul> </li> <li>- 구직활동인구의 유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PE, 자료는 실업의 유출입과 관련된 항시적 변동 상태에 있음</li> <li>· DEFM(월말 고용 수요)는 정확한 날짜 대개는 월말에 산출된 고용 수요의 수치를 신출한 것</li> </ul> </li> </ul> </li> </ul>

## ○ Cap Employ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gefiph의 지원으로 형성된 취업알선 기관들의 네트워크</li> <li>-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취업알선을 목표로 함</li> <li>- 각 지자체의 장애인 취업 관련 파트너와 연계하여 활동함</li> </ul>
------	--

## ○ 장애인 고용의무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체는 정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li> <li>- 고용의무사업체(민간부문)는 관련법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직접고용 혹은</li> <li>·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과의 연계고용 체결 혹은</li> <li>·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혹은</li> <li>· 장애인 고용협약 체결(프랑스의 경우 장애인 고용협약을 맺는 경우 장애인 고용노력으로 인정되어 부담금이 경감됨. 단,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수년 간 단계적으로 반드시 실행하여야 함. 대상은 주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로 대기업이 대상이며 Agefiph와 맺음)</li> </ul> </li> <li>- 장애인의 대우를 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DAPH(구 Cotorep) 및 MDPH의 권리위원회가 승인한 장애인 근로자</li> <li>· 산재근로자</li> <li>· 직업병근로자</li> <li>· 상이군경 및 상이연금 수령자</li> <li>· 상이군인 연금을 수령하는 전쟁 상이군인의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li> <li>· 20세 이하의 전쟁고아</li> <li>· 군인인 남편의 사망 후 재혼하였으나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미망인</li> <li>·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 이상을 겪어 격리 수용된 정신장애인의 배우자</li> <li>· 임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된 소방관</li> <li>· 장애인카드 소지자</li> <li>· 성인 장애수당 수령자</li> </ul> </li> </ul>
------	---

## 6) 영국

## ○ 장애인구

사용통계	- FRS(Family Resource Survey)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보유자 포함(Disability, including long standing ill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삶의 1가지 이상의 영역에 확실한 어려움을 주는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이라고 정의됨</li> </ul> </li> <li>·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차별법 (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의해서 분류</li> <li>· 장애인차별법에 의하여 분류해 내지 못하는 장애 개념도 있음</li> <li>· 본 장애 개념은 경제활동 상태에서 사용하는 장애 개념과는 다름</li> <li>- 성인(Adult) : 비록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6세 이상이면 성인이라고 봄</li> <li>- 어린이(Child) :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칭함. 16세~19세 라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면 어린이라고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하지 않았고, 시민동반자(Civil Partnership)도 아니고, 동반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li> <li>· 동반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li> <li>· 전 시간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무급 정부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li> </ul> </li> </ul>

## ○ 경제활동상태

사용통계	- LFS(Labor Force Survey)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근로자(Employee) :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 2~3개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한 번만 계산</li> <li>- 자영업자(Self-employed) : 스스로 자영업주라 일컫는 자로서 주로 작업하는 일자리가 자신의 경영하에 있는 경우, 종업원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 없음.</li> <li>- 취업자(In employment) : 고용인, 자영업주와 정부의 훈련계획의 참가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li> <li>- 실업자(Unemployed) : ILO 기준에 의하면, 현재 직업이 없으나 향후 2주간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원하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거나 이미 일자리를 구하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li> <li>-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 취업자와 ILO기준 실업자를 합함</li> <li>- 비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inactive) : 취업 중에 있지 않고 실업 중에 있지도 않음. 가정에서 돌봄을 받거나, 은퇴하거나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li> </ul>

조사통계 2012-02

## 2012 장애인 통계

---

발행일 2012년 12월 15일

발행인 권기돈

발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주소 (463-9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59

전화 (031) 728-7108

팩스 (031) 728-7143

홈페이지 (고용개발원) <http://edi.lead.or.kr>  
(공단) <http://www.lead.or.kr>

전자우편 [survey@lead.or.kr](mailto:survey@lead.or.kr)

I S B N 978-89-5813-884-6 93330

편집 및 인쇄처 자유기획인쇄 (02) 2263-0271

---

\*비매품



9 788958 138846 93330

ISBN 978-89-5813-884-6

A standard linear barcode is positioned vertically. Above the barcode, the number "9 788958 138846" is printed. To the right of the barcode, the number "93330" is printed. Below the barcode, the text "ISBN 978-89-5813-884-6" is printed.